

면지 넣을것

집필자

김민정(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김수산(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

김재원(이주여성인권연대)

김현순(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김혜민(제네바대학 대학원)

문은현(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

배윤호(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

백미순(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

신병곤(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

양혜우(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다솜(런던 정경대 학부과정)

이병렬(한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석준(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

장서연(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목 차

| | |
|-----------------------------------|-----|
| I. 전체결과보고서 | 1 |
| II. 시설별 조사결과 | 37 |
| 1. 화성외국인보호소 | 39 |
| 2. 청주외국인보호소 | 90 |
| 3.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 129 |
| 4.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 146 |
| 5.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 163 |
| 6.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 209 |
| 7.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 223 |
| 8.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 235 |
| 9.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 | 248 |
| 10. 청주여자교도소 | 290 |
| III. 참고자료 | 323 |
| 1. 관련 규정 | 325 |
| 2. 해외사례 | 332 |
| IV. 붙임 | 383 |
| 1. 외국인 보호시설 조사표 | 385 |
| 2.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지 | 396 |
| 3.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 조사를 위한 심층면접지 | 407 |
| 4. 외국인 교정시설 조사표 | 424 |
| 5. 외국인 교정시설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 | 433 |
| 6. 외국인 교정시설 실태조사를 위한 심층면접지 | 442 |

I. 전체 결과보고서

미등록 외국인 보호 및 교정시설 방문조사결과보고서

I. 서론

1. 조사배경

- 2007. 2. 여수외국인보호소의 화재사건 이후 보호시설 내에서의 과도한 기본권 제한 및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 미등록 외국인 보호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사회적으로 요청되었다. 또한 2007년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가 남성외국인 전담교도소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여성외국인 전담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와 더불어 외국인에 대한 교도소 내 처우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007. 6월 부터 11월까지 이주 관련 단체 활동가, 변호사, 의사, 건축사 등 30여명의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외국인보호 및 교정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목적

- 외국인 보호시설 내 처우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국제기준 및 우리 위원회의 기권고 내용과 비교하여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 구금시설 내에서 외국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

II. 조사개요

1. 조사일정 및 참여자

가. 방문조사에 대한 상임위원회 의결

- 2007. 4. 26 : (목) 제16차 상임위원회

나. 기획회의

- 1차 : 2007. 5. 2. 15 : 00 ~ 18 : 00
- 2차 : 2007. 5. 18.(금) 10 : 00 ~ 13 : 00

다. 설문지 및 심층면접지 작성회의

- 1차 : 2007. 5. 18.(금) 17 : 00 ~ 22 : 00
- 2차 : 2007. 5. 25.(금) 14 : 00 ~ 18 : 00
- 3차 : 2007. 6. 1.(금) 10 : 00 ~ 14 : 00

라. 방문조사

| 일정 | 대상기관 | 외부전문가 | 국가인권위원회 |
|-----------|------------|---|--|
| 6. 12.(화)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박선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양혜우, 이주노동자인권연대 김재원, 이주여성인권연대 장서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김경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이석준, 이주인권팀장 신병곤, 이주인권팀 조사관 백미순, 이주인권팀 조사관 배윤호, 부산지역사무소 조사관 |
| 6. 13.(수)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 김민정,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 한모임 김형진,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이지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전병호,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권혁근, 부산지방변호사회 | 이광영, 부산지역사무소 소장 배윤호, 부산지역사무소 조사관 강석권, 부산지역사무소 조사관 신병곤, 이주인권팀 조사관 |
| 6. 14.(목) |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 이지훈, 아시아노동인권센터 정병진, 여수외국인선교회 조상균, 전남대 법학과 | 류승미, 광주지역사무소 조사관 송병관, 광주지역사무소 조사관 김현순, 광주지역사무소 조사관 문은현, 이주인권팀 조사관 |
| 6. 14.(목)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 양혜우, 이주노동자인권연대 김재원, 이주여성인권연대 | 김수산, 이주인권팀 조사관 백미순, 이주인권팀 조사관 |
| 6. 15.(금)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 곽영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양혜우, 이주노동자인권연대 김대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김재원, 이주여성인권연대 김철효, 국제이주기구(IOM) 정현정, 유엔난민기구(UNHCR) Balde, 유엔난민기구(UNHCR) | 이석준, 이주인권팀장 문은현, 이주인권팀 조사관 |
| 6. 19.(화) | 화성외국인보호소 | 곽영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박선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양혜우,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최현모, 이주노동자인권연대 김대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김재원, 이주여성인권연대 김민정, 이주여성인권연대 장서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라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김경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김철효, 국제이주기구(IOM) 정현정, 유엔난민기구(UNHCR) 이병렬, 한중대 사회학과 홍승권, 서울대 의대 | 김수산, 이주인권팀 조사관 문은현, 이주인권팀 조사관 신병곤, 이주인권팀 조사관 백미순, 이주인권팀 조사관 |

외국인 보호 및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보고서

| 일정 | 대상기관 | 외부전문가 | 국가인권위원회 |
|-----------|-------------|--|--|
| 6. 20.(수) |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 김민정,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유한모임 김형진,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전병호,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 원형은, 위원 이광영, 부산지역사무소 소장 배운호, 부산지역사무소 조사관 강석권, 부산지역사무소 조사관 신병곤, 이주인권팀 조사관 |
| 6. 20.(수) | 천안소년교도소천안지소 | 박선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최현모, 이주노동자인권연대 김민정, 이주여성인권연대 김재원, 이주여성인권연대 김경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김철효, 국제이주기구(IOM) 이병렬, 한중대 사회학과 | 김호준, 상임위원 이석준, 이주인권팀장 문은현, 이주인권팀 조사관 백미순, 이주인권팀 조사관 |
| 6. 21.(목) | 청주외국인보호소 | 곽영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박선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양혜우, 이주노동자인권연대 김재원, 이주여성인권연대 김민정,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유한모임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장서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라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김철효, 국제이주기구(IOM) | 이석준, 이주인권팀장 문은현, 이주인권팀 조사관 배운호, 부산지역사무소 조사관 김현순, 광주지역사무소 조사관 |
| 6. 22.(금) | 청주여자교도소 | 곽영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양혜우,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장서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라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김민정, 이주여성인권연대 김재원, 이주여성인권연대 | 강인영, 성차별팀 조사관 김수산, 이주인권팀 조사관 백미순, 이주인권팀 조사관 |
| 6. 28.(목)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 | 강석권, 부산지역사무소 조사관 배운호, 부산지역사무소 조사관 |
| 8. 16.(목)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 김민정,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유한모임 전병호,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 이광영, 부산지역사무소 소장 배운호, 부산지역사무소 조사관 |

| 일정 | 대상기관 | 외부전문가 | 국가인권위원회 |
|-----------|------------|--|--|
| 9. 3.(월)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 박선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곽영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김기돈,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상재,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양혜우,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최현모,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
| 9. 7.(금)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 김민정,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권혁근, 부산지방변호사회 | 이광영, 부산지역사무소 소장 배윤호, 부산지역사무소 조사관 |
| 9. 7.(금) | 화성외국인보호소 | 박선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MASUD,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신순영,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김사강,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상재,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양혜우,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영아,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최현모, 이주노동자인권연대 김대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장서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지동석, 성도엔지니어링 | 김수산, 이주인권팀 조사관 문은현, 이주인권팀 조사관 신병곤, 이주인권팀 조사관 백미순, 이주인권팀 조사관 |
| 11.22.(수) | 청주여자교도소 | | 김수산, 이주인권팀 조사관 |

라. 평가회의

- 2007. 7. 12.(목) 14 : 00 ~ 17 : 00

마.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회의

- 1차 : 2007. 8. 16.(목) 10 : 30 ~ 17 : 00
- 2차 : 2007. 8. 31.(금) 13 : 00 ~ 14 : 00
- 3차 : 2007. 9. 20.(목) 14 : 00 ~ 18 : 00
- 4차 : 2007. 12. 4.(화) 13 : 00 ~ 21 : 00

바. 조사대상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 자료제출 요구 : 2007. 5. 29.(화)
-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 2007. 11. 30.(금)

2. 조사내용

가. 미등록 외국인 보호시설

- 보호외국인 신체 및 소지품 검사 현황
- 보호거실 내 시설 현황
- 보호거실 내 채광 및 환기 등 현황
- 보호외국인의 전화, 면회, 서신 보장 현황
- 운동 등 여가 활동 및 종교활동 보장현황
- 여성피보호자 관련 업무 담당자 배치 현황
- 식습관 문화 배려 및 식사의 질 현황
- 생활규칙, 권리 및 권리구제 고지 현황
- 감시카메라 설치 등 현황
- 경비·계호 인력 현황 등

나. 외국인 교도소

-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권리구제 관련 현황
- 거실수용 현황
- 운동 등 여가 활동 및 종교활동 현황
- 외국인수용자의 식습관 문화 배려 및 식사의 현황
- 통역서비스 제공 현황(의료, 고충처리 관련)
- 의료서비스 제공상황(입소 시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제공)
- 폭행·가혹행위 및 비인격적 대우 관련 현황
- 면접권 보장 현황 등

3. 조사방법

- 설문조사
 - 보호외국인에 대한 설문지는 네팔어, 러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파키스탄어, 태국어로 번역되어 제공
 -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설문지는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영어, 방글라데시어, 몽골어로 번역되어 제공
- 심층면접조사
- 시설조사
 - 조사표를 구성하여 ○, × 또는 수치를 기재
 - 해당 시설 업무담당자와 인터뷰
- 자료조사
 - 조사대상 시설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 선행연구 조사
 - 관련 법제 조사
 - 해외 사례조사

Ⅲ. 조사결과 분석

1. 미등록 외국인 보호시설 내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

가. 보호의 법적 의미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1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 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3조 제1항은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때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를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외국인 보호는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것이 가능할 때까지 행하여지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의 보호는 대부분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인 강제퇴거의 대상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이 발부한 보호명령서에 의해 특정한 장소에 인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형벌적 요소가 배제된 행정작용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출입국관리법」상 행해지는 보호행위는 사법절차상의 구인·구금 또는 수용과 유사한 것으로 보호외국인의 기본권을 폭넓게 제한하고 있어, 위원회는 이미 법률 상 보호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분명히 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권고는 한편으로 보호가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포괄적인 기본권 제한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인신의 보호는 필요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되 그 과정은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권리보장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다른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경우 보호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이 필수적인 경우에만 한정

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 개정절차 과정에 있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개정되는 법률 제명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에 관한 법률」, 이하 “입법예고안”) 제2조 10의 2는 ‘보호’를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자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외국인보호실·외국인보호소, 그 밖의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으로 규정함으로써 보호에 대한 개념만을 규정할 뿐 보호 일변도의 강제퇴거 정책에 대한 성찰과 보호에 따른 절차적 인권과 처우에 대한 개선에 대한 내용은 담지 않고 있다.

위원회가 2007년 5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시한 방문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보호시설에 보호된 외국인들은 대부분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해 단속된 자, 형의 집행을 마친 자, 다른 국가기관의 통보에 의해 신병이 확보된 자들로서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강제퇴거대상자이거나 강제퇴거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보호조치 되고 있었다. 또한 보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시설 관리 및 처우에 있어서 기본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한 형편이었다.

따라서 단순한 신병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적 작용으로서의 ‘보호’ 개념에도 불구하고 보호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 광범위한 기본적 권리의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현행의 보호조치를 우선으로 하는 미등 록 강제퇴거 정책에 대한 대안과 보호과정에서 처우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나. 보호조치의 최소화를 위한 개선 방안 모색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의하면, 유효여권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 발견되거나 발생하는 등 하자 있는 입국을 했던 경우, 허가받

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였거나 체류자격을 위반하여 활동하는 등으로 입국 후 체류자격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등의 사유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자 등은 강제퇴거의 대상자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 「출입국관리법」 하에서 법무부는 강제퇴거 대상자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은 물론 강제퇴거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강제출국 시까지 해당 외국인을 보호조치 하고 있다.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는 10일 이내이나, 다만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보호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한편, 「출입국관리」 제67조와 제68조는 출국권고와 출국명령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체류기간을 초과하였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로서 그 위반정도가 가벼운 경우 등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출국 권고를 하여 보호조치 없이 출국권고서가 발급된 날부터 5일 안에 출국기한을 정하도록 하여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해당하는 강제퇴거의 대상자이지만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자나 출국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다. 출국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즉 현행의 「출입국관리법」은 보호를 수반하는 강제퇴거 전에 출국권고, 출국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강제퇴거 대상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2006년 ‘출입국관리 통계연보’ 중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통계를 보면, 강제퇴거된 경우는 18,574명인데 비해 출국명령으로 자진 출국한 경우는 901명, 출국권고를 통해 출국한 경우는 2,509명에 불과해 법무부가 출국 권고나 출국명령보다는 주로 강제퇴거 조치를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들을 출국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캐나다 및 영국 등의 외국사례를 보면, 이주관련법의 위반자나 범죄자 등을 퇴거대상자로 정하고 퇴거의 집행 절차를 엄정히 수행하고 있지만 구금에 따른 비용과 미등록 이주자에 대한 인권을 고려하여 구금을 통한 강제 출국보다 자진출국을 유도하는 절차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도주의 우려가 있는 지, 혹은 공공에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이나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대기 기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호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출입국 정책은 재고되어야 하며 현행과 같은 보호조치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출국권고나 출국명령의 방안을 활용한다면 외국인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보호조치의 대안적 절차로서 이러한 방법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 절차를 통하여 출국한 자에 대해서 입국금지 기간을 줄여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출국권고나 출국명령의 준수를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 보호절차의 개선 방안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실질적으로 인신의 자유를 제약하는 체포나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에 있어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권리보장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이미 2005. 5. ‘출입국공무원의 권한행사, 특히 단속, 연행, 보호, 긴급보호 등 사실상 체포와 구금의 작용을 내포하고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영장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한 외국인 단속과 연행, 보호, 긴급보호 등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 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04진인139, 04진기131 병합, 2005. 5. 23. 전원위원회 결정)

그러나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단속은 실제적 진실이 엄격히 규명되어야 하는 형사피의자의 수사와 달리 불법상태의 판별이 매우 용이한 외국인을 신속히 국외로 퇴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복잡한 형사절차에 의하기보다는 행정절차로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불법체류 외국인의 출국이라는 행정목적은 담보할 대체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출국 시까지 최단기간의 수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자유 제한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범의 구금과는 그 목적이나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고, 불법체류 외국인의 단속 즉 보호와 강제 퇴거는 국가주권적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영장주의가 배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에는 보호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보호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피하고 현행의 보호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 외에 이의신청절차가 지극히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것에 대한 개선책이나 보호, 긴급보호 등에 대한 실질적 감독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무부의 위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보호외국인에게는 보호조치로 인하여 신체적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권리의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보호조치가 형사범에 대한 체포나 구속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이 실질적인 구제절차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위원회의 2005. 5. 권고를 수용하여 이번 입법 예고안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한 외국인 보호 및 긴급보호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감독 체계를 사법절차에 준하는 내용으로 마련되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라. 보호시설 내 처우개선 방안

1) 법률에 의한 보호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 및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호조치가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신의 자유와 같은 근본적인 기본권 제한을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출입국관리법」에는 기본권의 보장 및 제한에 관한 실질적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상당부분이 외국인보호규칙과 동 규칙 시행세칙에 규정되고 있다는 점이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위원회는 2007. 4. 9.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로 인한 사망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법무부장관 및 국회의장에게 ‘기본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보호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천명하고, 보호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의 종류와 그 내용, 보호 절차상에 있어서 보호외국인이 누려야 할 일반적인 권리, 면회와 통신권, 청원권, 보호 중 물리력 사용에 대한 제한, 건강, 급식 및 진료와 관련된 권리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입법예고안 제56조의6이 기존에 사무소장 등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해왔던 점견·서신수수·전화통화 등을 허가 사항이 아닌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고, 제56조의7이 보호시설에서의 처우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청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게 된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운동이나 급양, 집필, 보호거실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 등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은 여전히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은 수정이 필요하다.

2) 보호기간을 최소화해야한다

가) 이번 조사 대상 보호시설 중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1년 이상 보호된 외국인 3명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보호된 외국인이 19명이었다.

나)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보호는 「출입국관리법」상 그 기간의 제한이 없고 외국인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기한으로 보호조치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법원의 영장 없이 행해지는 외국인의 신체에 대한 심각한 제약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사전사후 통제절차 등 장기보호에 대한 실질적 통제절차나 권리구제절차가 없다.

법무부가 이번 입법예고안에 보호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보호에 대한 내부적 통제절차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내부통제절차를 거치는 최저기간인 6개월까지 최초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외에 실질적 통제나 권리구제절차가 없고, 6개월 이상 보호 승인 절차 과정에서 보호외국인의 이의신청권이나 의견진술기회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여전히 미흡하다. 법무부장관의 승인 이후 보호기간 연장 시 재승인 받아야 하는 기간도 2006. 7.에 마련되었던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3개월’보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6개월’로 연장된 것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수준으로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 또한 법무부는 보호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상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보호가 법원의 영장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러한 조치가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호기간은 최대한 단기간이어야 한다.
- 라) 한편 법무부는 1개월 이상 장기보호자에 대하여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해제 하는 방안, 장기보호에 대한 승인절차 과정에서 장기 보호외국인의 이의신청권이나 불복 방법을 부여하는 방안, 실질적 통제절차를 거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장기보호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 마) 위원회의 방문 조사 시 심층 인터뷰에 응답한 많은 보호외국인들이 임금 체불, 전세금 반환 등 금품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곧바로 출국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어 금품문제의 미해결이 장기 보호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보호외국인 스스로 체불임금 등의 금품 문제를 해결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일부 외국인보호소가 체불임금 및 금품 관련 해결을 위해 지방노동(지)청과 협력하여 근로감독관이 보호소를 방문하여 체불임금 상담을 지원하고 있지만, 근로감독관이

속한 지방노동(지)청 관할지역과 보호외국인이 임금체불을 당한 사업장의 소재지역이 다르고, 임금체불이 발생한 시점이 오래되었거나 공장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인해 이러한 방문 상담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형편이다.

고액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출입국 내부 지침으로 천만 원 이상의 임금체불, 전세금 등의 금품 관련 피해자들에게는 일시적으로 보호를 해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호일시해제의 조건으로 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 납부, 한국인 신원 보증인, 소송 및 진정 진행의 근거 자료 제출을 정하고 있어 보호외국인들 스스로 보호일시해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호외국인들의 금품문제를 해결하고 단기간 내에 출국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지원시스템이 강구되어야 한다.

3) 보호시설 내 보호외국인의 이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보호로 인한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강제퇴거의 심사나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신병확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 혹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그쳐야 하며,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징벌이나 교정교화의 목적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은 허용될 수 없다. 이는 보호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이 필수적인 경우에만 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번 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 보호시설의 시설 현황과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 면에서 UN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은 물론 현행의 「외국인보호규칙」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 중 각 보호시설의 보호집행 과정의 문제라기보다는 법무부 차원에서 보호외국인의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 예산을 집행하거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항만 지적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보호시설 내에서 보호외국인의 이동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

다. 보호실 밖의 출입문이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고 외벽으로 향한 복도의 경우 창문에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는 등 탈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보호외국인은 복도 밖으로조차 이동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공중전화가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보호담당직원의 허락을 얻어서야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복도에 비치된 도서를 읽기 위해 거실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어렵다. 심지어 보호거실의 출입문에조차 한 사람 정도만 드나들 수 있는 걸음쇠 장치를 해놓은 보호시설도 많이 있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보호외국인이 보호시설이라고 하는 정해진 공간 내로 주거의 자유가 제한 될 뿐 보호시설 내에서는 최대한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정해진 규칙 안에서 보호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주체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통제 대상으로만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강제퇴거 대상 가족 구금센터인 알스우드 강제퇴거센터(Yarl's Wood Immigration Removal Center)는 보호시설 내에서 보호외국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되고 있었는데, 보호외국인은 운동장, 체력단련실, 도서관, TV시청실, 의료실 등 보호외국인을 위해 마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근무 시간 내인 한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 더욱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남성들만 구금되어 강제퇴거를 기다리고 있는 영국 도버강제퇴거센터(Dover Immigration Removal Center)에서조차도 보호외국인들은 일몰 전까지 운동장에서 자유롭게 스포츠를 즐기고 있었으며, 특별한 계호 없이 체력단련실이나 도서관, 공예작업실 등을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다.

만약 보호시설 내에서라도 보호외국인들을 보호거실 밖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운동장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호시설 내에서 보호외국인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과 인신의 자유가 제한됨에 따른 불안감 등이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보호외국인의 기본권 제한을 필요최소한도 내에서 제한

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보호시설에 대한 경비인력의 증가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현행 보호시설 내 보호외국인 처우를 근본적으로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의복 등의 반입과 집필권은 보호외국인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가) 「외국인보호규칙」 제10조는 보호외국인이 보호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동안 필요한 물품인 의류, 필기구와 종이, 도서, 가족사진, 화장품 등을 소지하고 사용하는 것을 소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보호규칙」에서 보호시설 내 보호외국인의 생활에 필요한 의류 등 물품소지 및 사용, 일용품의 지급여부 문제를 보호소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결과, 많은 보호시설에서는 보호외국인의 생활필수품인 의류는 물론 여벌의 내의 반입조차 금지하고 있다.

보호외국인은 보호시설 내에서 사복이 아닌 보호복을 착용해야만 하는데, 방문조사 대상 대부분의 보호소에서 보호복을 여벌 없이 한 벌씩만 지급하고 있고 보호복의 교환도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결과, 하절기에는 보호외국인이 보호복을 직접 세탁하고 건조하는 동안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있는 상황이 빈번히 목격되었다. 또한 일부 보호시설에서는 여벌의 내의 반입을 허용하지 않아 보호외국인이 속옷을 밤에 빨아 널었다가 아침에 입는 일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N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에서 보호외국인의 의류 및 침구에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에 의하면, 본인의 의류를 입도록 허용되지 아니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기후에 알맞고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가 지급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류는 결코 저급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모든 의류는 청결하여야 하며 적합한 상태로 간수되어야 한다. 내의는 위생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만큼 자주 교환되고 세탁되어야 한다.

법무부는 보호외국인의 보호복 착용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보호외국인의 의류 반입을 허용하여 보호복이 아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보호외국인의 위생 및 인격권 측면에서 여벌의 보호복을 지급하고 보호복의 정기적 교환 및 세탁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내의 등의 반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나) 또한 방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보호시설에서 보호외국인은 담당직원의 허가를 받아 필요시에만 필기구 및 종이 등을 반입하거나 지급받아 사용 후 반납하고 있었다.

보호시설 안에서의 집필권은 수용 관리의 편의성, 통제의 편의성이라는 관점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필기구와 종이, 도서 등의 반입 및 사용을 현행과 같이 허가사항으로 해서는 안되며, 보호외국인의 기본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최대한 인정하되 예외적 사유에 한하여만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보호규칙」 제10조를 개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입법예고안에도 반영해야 할 것이다.

5) 보호거실 내 시설이 개선되어야한다

UN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에서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 보호거실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보면, 수용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설비, 특히 모든 수면 시설은 기후상태와 공기의 양, 최소 공간, 조명, 난방 및 환기의 조건을 고려함으로써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수용자가 기거하거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모든 장소의 창문은 수용자가 자연광선으로 독서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넓어야 하며, 인공적인 통풍설비의 유무와 관계없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인공조명은 수용자가 시력을 해치지 아니하고 독서하거나 작업하기에 충분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주외국인보호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사대상 보호시설은 창문을 통한 보호거실의 자연채광과 환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화장실이 아닌 보호거실

내 창문의 크기가 매우 작거나 창문이 없고 창문이 쇠창살과 아크릴판으로 밀폐되어서 한낮에조차 형광등을 켜야 하는 시설도 있었고, 환기시설 용량이 작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보호시설 내 공기상태가 좋지 않은 시설도 많았다.

몇몇 보호시설에서는 화장실과 보호거실 사이 설치된 차폐시설 높이가 보호외국인이 변기에 앉았을 때 상반신이 드러나는 정도로 낮은 경우가 있었고, 샤워시설 쪽 창문이 불투명 유리로 제작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해 화장실이나 샤워시설을 이용하는 보호외국인의 모습이 거실 내 다른 보호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거실 내 설치된 CCTV로 이를 모니터링하는 직원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형편이어서 보호외국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법무부는 이러한 시설 현황의 점검을 통해서 적절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6) 보호실의 보호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보호 적정인원의 엄격한 준수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가) 이번 방문조사 결과, 보호소와는 달리 대부분의 보호실은 사무용 건물의 일부를 보호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UN 「피구금자의처우에관한 최저기준규칙」에서 보호거실이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채광, 환기, 통풍, 위생 등의 최소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현행의 보호거실의 시설을 개선하는 것 외에 보호실에서 외국인을 보호하는 기간을 최단기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도 이러한 문제를 이미 인식하고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 퇴거 전에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을 보호소로 이송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 보호실 내에서 평균 보호기간인 2~3일을 넘어서 일주일 이상 보호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서의 보호기간을 보호명령서를 발급 받기 이전까지로 제한하고 그 이후는 보호소로 이송하는 방법 등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현재 보호가능인원에 대하여 외국인 보호소는 보호거실 2평당 1명을 적

정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은 1.2평당 1명을 최대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외국인보호소의 경우 적정 보호 인원이 잘 준수되고 있으나 많은 보호실에서는 적정 보호인원을 초과하여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법무부가 6~7월을 자진출국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거의 실시하지 않았던 2007년은 예외적 경우이고, 적정 보호규모 13명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은 2005년 일평균 34.8명, 2006년에는 21.3명을 수용하였으며, 적정 보호규모 45명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은 2005년 일평균 122명을, 2006년에는 70명을 보호한 바 있다.

이러한 과밀 수용은 단속에 대한 정책과 연관되어 있어 단속이 강화될 경우 다시 과밀 수용현상이 벌어질 우려가 높다. 따라서 보호소, 보호실내 과밀 수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인원의 적정규모를 산출하고, 이에 따른 대안 마련 및 엄격한 내부지침을 설정, 준수해야 할 것이다.

7) 징벌적 독거수용은 지양하고 절차적 통제와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 「외국인보호규칙」 제40조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강제력의 행사와 더불어 보호외국인을 격리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 규정에 근거해 보호외국인이 자살 또는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도주,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거부나 방해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별다른 절차 없이 보호외국인을 독거실에 수용하고 있다.

보호외국인은 강제퇴거를 위한 신병확보 차원에서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보호생활 가운데에서는 생활이 일상적인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받는 것이 원칙이다. 보호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주체로서는 보호외국인에게 소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과 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겠으나 보호외국인이 그러한 규칙 등을 위반했을 경우 구두 경고, 시설이용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단계적 방법을 통하여 규칙의 준수를 유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최후의 방법

으로만 격리수용하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현행처럼 보호외국인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인식하여 다른 대안적 수단을 먼저 강구, 실시해 봄이 없이 보호질서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해당 외국인을 독거실에 격리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운동, 면회, 독서 등을 금지하는 것은 징벌적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강하고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초래한다.

- 나) 현행 「외국인보호규칙」 제40조는 격리보호 시 소장에게 보고하고 특별계호지시서를 발부받도록 하는 내부적 절차만을 규정함으로써 격리보호 절차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하다. 또한 격리보호 대상 외국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부여도 소장의 재량사항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와 「외국인보호규칙」 제40조를 개정하여 격리보호 요건을 최소화하고, 격리보호조치의 당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는 행정제도 상의 징벌위원회와 같은 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이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8) 감시카메라가 과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여성거실의 감시카메라 모니터링은 여성직원이 해야 한다

- 가)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8은 사무소장 등이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긴급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감시장비를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그러한 시설과 감시장비는 피보호자의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설치·운영되도록 그 한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방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보호시설은 거실 내 1개의 감시카메라로 보호외국인 거동의 특이사항만을 파악하고 있는데 비해 일부 보호시설에서는 5~6명 보호가 적정한 규모인 거실 하나에 두 개 이상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경우가 있었다. 보호인력이 적은 보호시설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 감시카메라를 통한 일상적 감시를 지양하고 보호시설 내 보호전담 인력을 충원,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과도한 감시장비 설치 상황을 개선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나) 보호전담 인력이 부족한 일부 보호시설에서는 여성보호거실의 감시카메라를 남성 직원이 관찰하고 있는데, 출입문 벽 위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로 거실 내 움직임이 모두 파악될 뿐더러 위에서 지적된 것처럼 화장실 차폐시설이 낮은 경우에는 보호여성의 인격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여성보호거실의 관리를 위한 보호전담 여성직원을 배치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9) 생활규칙 및 권리구제 안내와 고지가 고용허가제 MOU 체결국가 이상의 언어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가) 이번 방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보호시설에서 설문에 응한 보호외국인 중 구두로 생활규칙 및 권리구제 절차에 대해 설명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고, 주로 보호거실 내 벽에 붙은 안내문이나 비치된 책자를 통해서 안내받았다고 응답하였다. 그나마 일부 보호시설에서 배포된 ‘보호외국인 준수사항’ 및 대부분의 보호시설 내 보호거실 벽에 게시된 ‘생활규칙’, ‘이의신청’, ‘인권위 진정 등 권리구제 방법’은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되어 있어 그 외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출신인 보호외국인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이 때문에 보호외국인 중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권리나, 보호소 내 처우와 관련한 청원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 등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도 매우 적었다.

- 나) 법무부의 입법예고안 제57조는 제2항에 사무소장 등은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보호의 일시해제의 청구, 청원, 접견 등에 관한 절차를 외국인보호실 및 외국인보호소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호외국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이는 보호의 통지에 관한 사항 및 변호인 선임에 관한 사항,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호시설

내의 처우에 관한 중요사항의 서면 고지와 게시, 보호시설 내 보호에 관한 법령의 주요 내용 비치 등의 내용까지 담고 있던 2006. 7.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의 현 입법예고안을 2006. 7.에 마련되었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수준으로 보완하되 고지 내용에 인권위 진정권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고지 및 게시언어도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체결국가 이상의 다양한 언어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10) 공휴일이나 일과 후 저녁 시간에 접견기회를 보장하고 면회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가) 보호시설의 현행 면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평일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보호외국인의 면회신청자는 평일 늦게이거나 일요일이 아니면 면회 오기가 어려운 형편인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면회시간대와 요일의 제한으로 보호외국인들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번 방문조사에서 심층면접에 응한 많은 보호외국인들은 현행 면회시간 규정에 대하여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보호외국인에게는 출국 준비를 위해 동료 등과의 면회가 필수적임에도 현행과 같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평일 오전과 오후 시간대의 면회만 허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보호외국인의 외부 교통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공휴일이나 일과 후 저녁 시간에 접견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나)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보호의 법적 성격이 강제출국을 위한 인신의 확보에 불과하므로, 면회 시 면회신청자와 보호외국인 간에 자유로운 대면을 통해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현행과 같이 면회신청자와 보호외국인이 아크릴 벽 등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면회하도록 하는 것은 징벌적 구금자가 아닌 보호외국인에 대한 지나친 제한일 뿐만 아니라 보호조치가 아닌 구금조치를 당하였다는 느낌을 주는 면회방식이다. 이에

현행의 면회시설을 개선하여 자유로운 대면 하에 면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11) 운동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보호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한다

가) 방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모든 조사대상 보호시설에서 운동이 매일 허용되고 있는 경우는 한 곳도 없으며, 보호소를 제외하고는 모든 보호시설에 운동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실외운동은 모든 피구금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UN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제21조 제1항은 운동과 관련하여 ‘실외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피구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보호규칙」 제24조에서조차 보호외국인의 하루생활표에는 운동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6조는 보호외국인에게 운동의 기회를 허용해야 하고 운동장 시설이 없는 시설의 경우 보호실 내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에 보호외국인은 운동시간 중에 보호시설에 비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하거나 다른 보호외국인과 단체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각 보호시설 내에 실내운동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운동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운동장이 있는 화성과 청주보호소는 구기종목을 위한 약간의 운동기구만을 비치하고 있을 뿐이다.

나) 방문조사대상 보호시설에는 보호외국인의 운동을 비롯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의 외국인인 하루 종일 TV를 보는 것 이외에 다른 소일거리가 없으며, 보호시설에 비치된 도서조차도 다양한 언어로 구비되어 있지 않고 도서대출시스템도 체계적이지 않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많은 외국인들이 장기 보호되고 있는 화성과 청주보호소는 보호외

국민들에게 보호기간 동안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보호외국인들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심리적 안정을 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두 보호소에서조차 모든 보호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다.

최근 화성외국인보호소는 보호 외국인에 대해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한국어 교육, 한국 전통예절, 민속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서비스 제공여부는 보호외국인 숫자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비스가 비교적 보호인원이 적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각 보호시설이 보호외국인의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무부 차원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보호외국인에게 운동기회가 「피구금지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에 부합하게 허용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운동장시설이 없는 보호시설을 위한 실내운동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2) 보호외국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소방시설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2007. 2. 11.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으로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통하여 보호시설 전반의 안전성을 증진시킬 것과 보호외국인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경비·계호인력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이미 법무부에 권고하였다.

방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각 보호시설이 화재 등 비상사건에 대비하여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내 직원들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호외국인들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비상상황에 처했을 때 보호외국인이 대피요령이나 대처방안에 대하여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큰 사고를 예방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화성이나 청주외국인보호소 처럼 장기보호시설인 경우에는 경비·계호인력 뿐만 아니라 보호외국인을 포함한 훈련방안이 마련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한편, 보호시설 별로 비치하고 있는 소방설비도 효과적으로 화재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법무부는 여수화재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소방설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13) 보호업무 수행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보호소의 경우 보호집행을 전담하는 직원과 계호와 경비를 담당하는 용역직원이 배치되어 있다. 보호실의 경우 보호를 전담하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거나 전담 직원이 없는 경우 다른 업무 담당 직원이 외국인이 보호될 경우에만 돌아가면서 보호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이 때 공익근무요원들이 직원의 보호업무를 상당부분 지원한다.

보호업무는 보호외국인과 직접 대면하여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의 보호생활을 지원하고 생활상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최일선의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담당자들이 보호외국인의 법률 상 지위와 권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정기적으로 내실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UN 「피구금자처우에 관한최저기준규칙」 제47조 또한 시설직원은 임무를 부여받은 후 재직 중 적당한 기간마다 행하여지는 직무교육과정에 참가함으로써 자기의 지식 및 직무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보호시설에서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직원이나 용역직원, 공익근무요원의 인권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교육이 대부분 자체 교육이고 월례조회 등과 같이 겸하여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보호외국인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법무부는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용역직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권교육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대상별로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각 보호시설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와 담당직원의 직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2. 교도소 내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처우

가. 총평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이하 ‘천안지소’) 및 청주여자교도소에 대한 방문조사는 외국인 수용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교도소 내에서의 의사소통의 정도, 입소 시 생활안내 여부, 법무부 청원 및 인권위 진정 제기 정도, 수용거실 형태 및 운동, 종교, 의료, 식단 등 일상생활에서의 처우가 적정한지를 조사하였다.

두 교도소는 수용자의 대부분이 장기거주를 하는 공간이고 행형법 등의 관련 법규에 부합하도록 시설이 운영되고 있어, 거실 내 창문의 크기와 자연채광, 환기 등 정도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며, 운동의 횟수, 감시시설의 설치 등 몇 가지 처우에 관해서는 외국인 수형자들이 오히려 보호외국인보다 안정적이고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천안지소와 청주여자교도소가 전문적인 외국인구금시설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외국인 수용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 교도소 내 처우개선 방안

1) 면회 시 자국어 사용이 허용되어야한다

수용자는 적절한 방식으로 외부의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접견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수용자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UN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제37조는 피구금자가 필요한 감독 하에 일정기간마다 가족 또는 신뢰할 만한 친구와의 통신 및 접견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수용자의 접견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에도, 「행형법 시행령」 제60조는 수용자를 접견하는 때에는 외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장이 특히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허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외국인 수용자나 접견 상대방이 매번 접견 때마다 소장의 특별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이들이 한국어로 의사소통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면 접견권 보장은 의미가 없어지고 만다.

현재 천안지소는 재량에 의해 특별히 문제가 없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접견 시 자유로운 언어사용을 보장하고 있는데 비해 청주여자교도소는 접견실 근무자에 따라 면회신청자와 외국인 피면회자 간에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한다.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사용 능력에 상관없이 자국어로 면회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기도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만 통역자 등을 대동하고 면회할 수 있도록 「행형법 시행령」 제60조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수용등급에 관계없이 정기적인 전화사용이 허용되어야 한다

외국인수용자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거나 있어도 체류자격이 등록외국인이 아니라면 수용생활 내내 외부와 접견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실질적으로 외부와 단절되어 생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외국인 수용자에게는 접견보다는 전화통화가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외부교통 수단이다.

현재 천안지소와 청주여자교도소의 외국인 전화사용 규정은 내국인의 기준과 동일한데, 수용자의 누진계급별로 1급과 2급 수형자에게만 전화사용이 허용되고 3·4급에 대해서는 전화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추석이나 명절 등에 외국인에게는 특별히 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행형법」제18조의3 제1항은 ‘소장은 수용목적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제51조와 「수용자전

화사용지침」제7조는 제1급의 수용자는 월 5회, 제2급은 월 3회의 범위에서 허가하며 미결수용자의 경우 월 5회의 범위에서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제3급과 제4급에 대한 규정은 없다.

두 교도소의 외국인 전화사용 규정 또한 이런 규정에 맞추어 정해진 것이지만, 수용자가 외국인일 경우 접견이나 서신의 방법으로 외부교통을 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3급과 4급의 수용자에게도 통화 기회를 정기적으로 부여해야 할 것이다.

3) 다양한 언어의 도서가 구비되어야한다

UN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제40조는 구금시설이 모든 범주의 피구금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오락적, 교육적인 도서를 충분히 비치한 도서실을 갖추어야 하며 피구금자들이 이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주여자교도소는 4,736권, 천안지소는 5,600여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다. 두 교도소 모두 철학에서부터 역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책을 보유하고 있는데 청주여자교도소의 외국어서적은 러시아어 5권, 네덜란드어 13권에 불과하고 천안지소는 외국어사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어 책이다. 따라서 두 교도소는 외국인 수용자 전담기관으로서 수용외국인의 출신국 언어를 고려하여 좀 더 다양한 도서를 비치해야만 할 것이다.

4) 수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생활안내와 고충상담이 이루어져야한다

두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입소 시 생활안내를 충분히 받았다고 응답한 수용자의 비율은 매우 낮았다. 설명을 들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답변한 경우도 있었다. 수용생활을 함에 있어 반드시 수용자가 알아야 할 필수적 사항에 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적어도 수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과 언어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형법」 제8조의2는 소장이 신입자에게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지되어야 할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으로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접견 및 서신에 관한 사항, 규율·징벌 및 청원에 관한 사항, 기타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자체 제작한 수용생활 안내서를 각 사동 거실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용생활에 대한 안내서는 외국인 수용자가 한국말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라고 해도 일상용어를 벗어난 경우 그 의미를 해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안내서가 외국인 수용자에게 특히 필요하고 이는 개별시설에서보다는 법무부에서 마련하여 배포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교도소 내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겪게 되는 의료문제를 비롯한 각종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기회가 반드시 제공되어야만 한다.

「외국인수용자처우지침」 제5조 제1항은 외국인수용자를 수용하는 교도소 등의 장은 외국어의 해독이 가능한 1명 이상의 교화직공무원 등을 교화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일상적인 개별면담, 고충해소, 종교관계자와의 접촉주선, 통역, 번역, 영사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내용만으로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다양한 국가출신인 수용자들에 대한 개별면담, 고충해소 등이 심도 깊게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외국인 전담 교도소로서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언어 통역자가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5) 식생활의 특성을 고려한 식단이 공급되어야한다

「외국인수용자처우지침」 제9조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의 출신자에게는 쌀이나 보리류를, 그 밖의 외국인에게는 빵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두 교도소에서는 비 아시아권 출신들에게는 빵과 양식으로 구성된 외국인용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

서양식 식단은 비용이 한식보다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원하는 모든 외국인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아시아권 출신의 수용자라고 해도 의무관 등의 판단에 의해 서양식 식단이 제공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같은 아시아권 출신이라고 해도 맵거나 짠 한국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도소 식단을 견디기 힘들어한다. 쌀이나 보리를 주로 한 한식을 제공할 때라도 반찬의 조리 방식을 달리한다면 이런 문제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두 교도소에서는 내국인 식단과 동일한 음식으로 조리되고 공급되기 때문에 외국인 특성에 맞게 한식을 만들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같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시아권이라고 하더라도 수용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존중하여 식단을 구성하고 식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 론

방문조사로 드러난 사항들과 관련하여 현행의 보호 및 교정 관련 제도와 시설은 외국인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하도록 아래와 같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 외국인 보호절차의 개선과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 가. 출국권고나 출국명령 등 강제퇴거의 대안적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호조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 나. 보호조치에 대해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다. 법률에 의해서만 보호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출입국관리법에 운동이나 급양, 집필, 보호거실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 등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 라. 보호의 적정화를 위해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때 3개월마다의 승인, 승인과 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권이나 의견진술기회 보장, 보호기간의 상한 규정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외국인들의 체불임금 등 금품문제를 해결하고 보호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보호일시해제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시스템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마. 보호시설 내에서 외국인이 일과 시간 중에 운동장, 도서 등에 대한 접근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실 밖의 자유로운 이동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바. 보호시설 내에서 의복 등의 반입과 집필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외국인보호규칙」 제10조를 개정하여 보호외국인이 보호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동안 필요한 물품인 의류, 필기구와 종이, 도서, 가족사진, 화장품 등을 소지하고 사용하는 것을 소장의 허가사항이 아닌 기본적 허용사항으로 하고, 보호외국인의 사복착용 허용, 여벌의 보호복 지급, 보호복의 정기적 교환 및 세탁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마련 등 보호복의 청결과 위생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사. UN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에서 정하는 구금거실의 기준에 충족하도록 보호거실 내 자연채광, 환기, 환풍 등의 현황을 점검하고 보호시설의 화장실 및 목욕실 차폐시설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다.

- 아. UN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에서 정하는 구금거실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인보호실내 보호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보호인원 적정규모 준수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자. 보호시설 내 징벌적 독거수용은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독거수용 통제방안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와 「외국인보호규칙」 제40조를 개정하여 격리보호 요건을 최소화하고, 격리보호의 당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는 행정제도 상의 징벌위원회와 같은 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 과정 중 해당외국인에게 항변의 기회를 반드시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차. 감시장비로 인한 피보호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도한 감시장비 설치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여성보호거실의 감시카메라 모니터링은 여성직원에게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카. 보호시설 내에서 실효성 있는 생활규칙 및 권리구제 안내를 위하여 보호의 통지에 관한 사항 및 변호인 선임에 관한 사항,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등 보호외국인에게 보장되는 권리와 보호시설 내의 처우에 관한 중요사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 등을 기본적 고지사항으로 정하여 이의 게시뿐만 아니라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체결국가 이상의 다양한 언어의 안내문을 제작하여 보호거실 내에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출입국관리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타. 공휴일이나 일과 후 저녁 시간에 접견기회를 보장하고 면회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 파. 운동기회가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에 부합하게 허용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호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하. 보호외국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소방시설 현황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 거. 보호업무 수행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외국인 수용자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 가. 「행형법시행령」 제60조를 개정하여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사용 능력에 상관없이 자국어로 면회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기도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만 통역자 등을 대동하고 면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나. 「수용자분류처우규칙」 제51조와 「수용자전화사용지침」 제7조를 개정하여 외국인 수용자의 전화사용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다. 수용자의 출신국적을 고려하여 다양한 언어의 도서를 구비해야 할 것이다.
- 라. 수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생활안내와 고충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마. 외국인 수용자 출신국의 식생활 특성을 고려한 식단을 공급해야 할 것이다.

II. 미등록 외국인 보호 및 교정 시설 방문조사결과보고서

■ 목 차 ■

| | |
|-------------------------|-----|
| 1. 화성외국인보호소 | 39 |
| 2. 청주외국인보호소 | 90 |
| 3.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 129 |
| 4.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 146 |
| 5.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 163 |
| 6.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 209 |
| 7.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 223 |
| 8.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 235 |
| 9.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 | 248 |
| 10. 청주여자교도소 | 290 |

화성외국인보호소

I. 조사개요

1. 조사일정

- 자료제출 요구 : 2007. 5. 29.
- 방문조사
 - 1차 : 2007. 6. 19.(화)
 - 2차 : 2007. 9. 7.(금)
- ※ 1차 방문조사 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던 외국인은 209명이었다. 법무부가 2007년 6~7월을 미등록 외국인 자진출국 계도기간으로 설정, 미등록 외국인 단속을 중지하고 자진출국을 홍보·교육하는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화성외국인보호소의 보호외국인 규모도 적어져 보호시설과 처우 등에 대한 객관적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 계도기간이 끝난 후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결과에 대한 화성외국인보호소 의견제출 요구 : 2007. 11. 30.(금)

2. 방문조사 참가자

- 1차
 - 외부전문가
 - 양혜우, 김대권, 최현모(이주노동자인권연대)
 - 곽영숙, 박선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김철효 (국제이주기구, IOM)
 - 정현정(유엔난민기구, UNHCR)

장서연, 김경태(공감)
김재원, 김민정(이주여성인권연대)
홍승권(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병렬(한중대학교 사회학과)

- 위원회 : 이석준, 김수산, 문은현, 신병곤, 백미순(이주이권팀)

○ 2차

- 외부전문가

김사강, 이상재, 양혜우, 이영아, 최현모, 김대권(이주노동자인권연대)

박선희, 마수드(MASUD), 신순영(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장서연(공감)

지동석(성도엔지니어링)

- 위원회 : 김수산, 문은현, 신병곤, 백미순

3. 조사방법

- 자료조사
- 설문조사
- 심층면접 조사
- 시설조사

※ 보호외국인에 대한 설문조사는 전수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설문은 조사관이 보호실 각 방을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 1차 조사 시 보호외국인 209명 중 설문에 응한 사람은 총174명이었다. 심층면접 조사는 피조사사자의 자원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총 39명의 보호외국인이 신청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서 미진한 사항에 대한 추가조사를 목적으로 했으며, 특히 2007년 8월부터 실시된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의 결과로 보호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보호소내의 생활이 1차 조사 당시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2차 조사 시 보호외국인 300여명 중에서 총 185명이 설문에 응해 주었으며 총 15명¹⁾의 보호외국인을 심층면접 조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의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시설조사는 조사표를 구성하여 ○, × 또는 수치를 기재하였으며, 조사자의 평가도 기재하였다.

주된 분석은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되, 2차 조사 결과를 통해 보완하였다. 따라서 조사결과 분석 내용상의 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1차 조사 결과이다.

II.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 업무 개관²⁾

1. 보호시설 현황

- 대지 : 7,400평, 건평 : 3,282평(행정동, 보호동)
- 보호동 시설 규모

| 면적(평) | 보호실 수 | | 수용인원 | | 감시실수 |
|--------|-------|-----|------------|---|------|
| 2,733평 | 일반실 | 44실 | 남 473-538명 | 총 610명 ※ 수용인원의 남녀 최소, 최대 폭은 보호동의 탄력적 운영에 의한 것임 | 9실 |
| | 독거실 | 13실 | 여 72-137명 | | |

2. 외국인 보호현황

가. 연도별 현황

| 구 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5월 |
|---------|-------|-------|-------|-------|--------|--------|----------|
| 보호외국인 수 | 3,464 | 2,075 | 2,364 | 8,862 | 19,622 | 10,258 | 4,663 |

1) 실제 심층면접 조사에 응한 사람은 16명이다. 이 중 1명이 1차 조사 시 이미 심층조사에 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심층조사는 실시하였지만 심층면접조사의 총 수에서는 제외를 하여 2차 심층면접의 사례 수는 15개이다.

2) 이 장의 내용은 2007. 6. 19. 화성외국인보호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발췌한 것이다.

나. 국적별 입·퇴소자 현황(2007년 1~5월)

| 구 분 | 계 | 중 국 | 방글라데시 | 몽 골 | 필리핀 | 러시아 | 기 타 |
|-----|-------|-------|-------|-----|-----|-----|-------|
| 입소자 | 4,663 | 1,535 | 549 | 382 | 300 | 106 | 1,791 |
| 퇴소자 | 4,791 | 1,568 | 568 | 392 | 304 | 110 | 1,849 |

다. 보호기간별 퇴소자 현황

| 구 분 | 계 | 15일 이내 | 16일-1개월 | 1개월-2개월 | 2개월 이상 |
|-----------|-----------------|------------------|----------------|---------------|---------------|
| 2006.1~5월 | 3,902 (100%) | 2,886 (74.0%) | 604 (15.0%) | 241 (6.2%) | 171 (4.8%) |
| 2007.1~5월 | 4,791 (100%) | 3,862 (81.0%) | 682 (14.0%) | 169 (3.5%) | 78 (1.5%) |

라. 국비 강제퇴거 집행 내역

| 구 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5. |
|-----|--------|--------|--------|--------|--------|--------|----------|
| 인원 | 104 | 68 | 48 | 106 | 69 | 52 | 26 |
| 금액 | 46,630 | 34,491 | 23,788 | 55,003 | 34,725 | 21,915 | 11,822 |

3. 서류류 보유 현황

| 총계 | 한국 | 중국 | 태국 | 러시아 | 몽골 | 필리핀 | 인도네시아 | 베트남 | 미얀마 | 방글라데시 | 네팔 |
|------|-----|-----|-----|-----|-----|-----|-------|-----|-----|-------|-----|
| 3005 | 150 | 500 | 231 | 95 | 237 | 131 | 251 | 505 | 179 | 480 | 246 |

4. 소방시설 설치 현황

| 소화기 | 소화전 | 스프링쿨러 | 감지기 | 비상방송설비 | 유도등 | 비상조명등 | 방수구 | 완강기 |
|-----|-----|-------|-----|--------|-----|-------|-----|-----|
| 102 | 35 | 0 | 188 | 15회선 | 166 | 257 | 0 | 1 |

III. 조사결과

1. 시설조사 결과 분석

가. 개요

1) 건물개요

대지 7,400평에 건물 면적 3,286평으로 구관과 신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구관은 건물면적 1,966평 3층 건물이며, 구관 뒤편에 연결된 신관은 766평으로 2004년 신축되었다. 구관에는 1감부터 6감까지 28개의 보호실과 11개의 독거실이 있고, 신관에는 16개의 보호실과 2개의 독거실이 있다.

2) 보호시설 개요

화성보호소는 2000년 11월 서울외국인보호소가 화성으로 신축 이전하면서 업무가 개시되었다. 보호가능 인원은 구관 424명, 신관 288명으로 약 700여명이며, 구관에는 남성이 신관에는 남성과 여성이 수용되어 있다.

건물은 □자 모양이며, 건물로 둘러싸인 안쪽의 공간은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자 모양의 건물 바깥 편으로 외벽이 쌓여 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는 입·퇴소 대기실, 신체검사실, 물품 보관실, 의무실, 조리실, 세탁실, 변호사 접견실, 면회대기실, 운동장, 탈의실 등이 있다.

3) 보호업무 직원 및 관련자의 현황과 업무 내용

화성 보호소의 직원 중 보호업무인 경비과 직원은 48명이고, 이중 여성 직원은 8명이다. 용역 직원은 47명이며, 이중 여성 직원이 7명이다. 공익근무요원은 6명이다.

보호 업무는 3교대로 이루어지는데, 경비과 직원은 보호에 관련된 전반의 업무를 수행한다. 용역직원은 관리동 및 보호동 경비, 보호외국인의 경비와 계호, 강제퇴거 집행 등 외국인 외부 호송 시 계호 지원, 청사 내 환경 정리 등을 담당한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경비업체와 1년 단위로 경비용역을 체결하고 있다.

공익요원은 행정 지원과 보호외국인 외부 호송시 계호 지원을 하지만 경비 업무는 수행하지 않는다.

또한 보호 외국인의 강제퇴거(출국), 임금체불 등의 문제 등을 담당하는 심사과의 직원은 10여명으로 1인당 약 30~40여명의 보호 외국인을 담당한다.

상근의사는 2명인데, 이 중 1명은 공중보건의이다. 상근간호사는 1명이 배치되어 있다.

나. 개별시설 현황

1) 입·퇴소자 대기실

화성보호소는 서울, 수원, 의정부 등 수도권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단속·보호되었던 외국인들이 이송되어 온다. 보호외국인은 호송차를 타고 전용출입문으로 들어와 입·퇴소 대기실에서 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다. 입·퇴소 대기실에는 약 30명이 앉을 수 있는 긴 의자가 가운데 있고 양 편으로 업무용 책상 2개가 있다. 이곳에서 보호외국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보호소 직원에게 보관 의뢰하고 보관접수증을 받는다. 보호소 직원은 보호소 내 금고에 이를 보관하였다가, 보호외국인 퇴소시 원하는 외화로 환전하여 돌려준다. 환전은 인근 은행직원이 방문하여 처리한다.

또한 화성외국인보호소에는 여행사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이 여행사를 통해 보호외국인들이 항공권을 구입하고 있다. 항공권 비용은 보호외국인이 여행사 직원에게 직접 지불한다.³⁾

보호소에 도착한 외국인들은 입·퇴소자 대기실에서 생활안내를 받는다. 생활 안내는 주로 보호소에서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한 것으로 구두와 서면안내문 배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구두안내는 한국어로 이루어지며, 서면안내문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제작되었다. 이의신청이나 진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안

3) 환전 시 환율적용과 항공권 판매 여행사 선정과정 및 타 여행사에 비해 항공료 가격의 적당성 유무는 비교는 하지 못했다.

내는 거실 벽에 부착된 안내문으로 대신한다. 벽에 부착된 안내문은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되어 있다.

2) 탈의실

보호외국인들은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에서 입고 있던 보호복을 입은 채로 이송되어 화성보호소에서도 그 보호복을 계속 입기 때문에, 탈의실에서는 따로 옷을 갈아입는 절차 없이 바로 신체검사를 받고 보호소에서 신게 될 슬리퍼를 제공받는다. 슬리퍼는 탈의실 내 바구니 속에 영겨있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의 설명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보호외국인과 동일한 성의 보호소 직원이 담당하는데, 보호외국인이 몸에 상처가 있는지 여부나 담배, 라이터 등의 반입 불허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신체검사는 보호외국인이 옷을 입은 채로 하기 때문에 제3자가 외관상 확인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에 대해서는 보호외국인 본인의 진술에 의거하여 신체검사 용지에 상처 부위가 기록된다. 남성 보호외국인은 옷을 입은 상태에서 몸수색을 받고 다시 검색대를 통과한다. 여성보호외국인도 옷을 입은 상태로 외표검사를 받는데 특히 브래지어 안에 반입불허 물건을 숨겼는지를 자세히 검사받는다.

3) 물품 보관실

화성 보호소에는 물품 보관실이 보호외국인의 성별로 분리되어 있다. 남성보호외국인의 물품 보관소는 행정동에 있고, 여성보호외국인의 물품 보관소는 여성보호실 안에 위치해 있다. 특히 심층면접조사 결과 여성들의 경우 거실과 물품보관소까지의 거리가 가깝고 같은 보호실 내이기 때문에 자신의 보관물품 안에서 필요한 물건을 반입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호직원들도 보호여성들의 물품반입을 호의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 보관함은 조립식 앵글에 나무판자를 얹어 칸을 나눈 형태로, 개폐를 위한 문이 달려있지 않아 물품은 밖에서 볼 수 있는 상태로 각 칸마다 개방되어 있다. 전국의 모든 보호소의 보관함이 동일한 형태이다. 보관함의 수는 보호외국인의 숫자에 충분할 정도로 갖추어져 있지만 그 크기는 여행용가방처럼 크기

가 큰 것들은 보관할 수 없는 상태여서 보관함에 들어가지 못하는 보호외국인의 물품은 보관함 밖에 놓을 수밖에 없다. 물품 보관 시 보호외국인에게 배부되는 보관증에는 물건의 항목과 개수가 기록되며, 그 밖에 보호소에서 배급하는 담요, 의복 등의 항목도 기재된다. 물품보관과 관련한 보호외국인의 불만사항은 제기되지 않았다.

입소자 대기실에서 신체검사를 마치면 각 방으로 배치되며 칫솔, 플라스틱 숟가락, 모포, 베개를 지급받는다.

4) 보호거실

(가) 독거실(특별보호실)

화성외국인보호소 1감, 2감, 3감, 7감, 9감에 총 13개의 독거실이 있다. 독거실 수용은 소장의 결재에 의해 이루어지며, 최장 5일을 넘기지 않고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독거실 출입문 위에는 감시카메라가 1대 있어 방의 모든 내부 상황을 감시할 수 있다. 대부분의 독거실은 9.25㎡(2.8평) 정도의 넓이인데, 두개의 독거실은 21.75㎡(6.58평), 18.50㎡(5.60평)으로 3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넓이다. 보호소 직원의 설명에 의하면 이 독거실을 가족실로 사용한다고 한다.

독거실에는 화장실에 작은 창문이 운동장 쪽으로 하나 나 있으나 독거실 창문이 동향이어서 오후에는 햇볕이 많이 들지 않아 24시간 형광등을 켜 놓아야만 생활할 수 있다. 독거실에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가족실이라고 불리는 독거실은 외부로 나갈 때 세 번이나 차단된 철문을 지나야 할 정도로 하기 때문에 독거실 내부에서 외부에 보호외국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어렵다. 다만, 보호소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독거실 입구에 영역경비근무자가 24시간 근무하고 있어 독거실에서 보호외국인이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CCTV로 독거실 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독거실 내 보호 외국인이 몸짓으로 의사를 표시하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한다.

구관 독거실에는 환풍기, 사물함, 식탁, TV도 없을 뿐 아니라, 집필, 독서 등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다. 오직 침구류만 반입 된다. 화장실에는 좌변기와 수도꼭지가 있고 세면대는 없다. 예전에 철로 된 세면대가 있었으나 수용 외국인들이 세면대를 파손해서 철거하고, 수도꼭지만 설치해 놓았다고 한다.

화장실 문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차폐시설도 낮아서 변기에 앉았을 경우 몸의 2/3이상이 노출되는데 출입문 위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로 화장실을 포함한 방 전체를 볼 수 있다.

(나) 혼거실

구관과 신관의 동쪽과 서쪽 혼거실은 남성외국인을 위한 보호실, 신관의 남쪽 혼거실은 여성외국인을 위한 보호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남성동과 여성동의 출입구는 각기 분리되어 있다. 원래 남성 혼거실은 큰 거실 1개와 침실 2개, 화장실 1개로 지어졌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원이 수용되어 통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보호실을 3개실로 분리하였다. 그러나 동쪽 건물 2~3층은 작은 규모로 분리되지 않아 비교적 규모가 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조사 당시 거실용이 아닌 종교집회와 같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혼거실은 거실, 침실, 화장실로 나뉜다. 거실에는 TV와 공중전화, 테이블과 의자가 설비되어 있으며, 벽면 쪽으로 빨래를 널 수 있는 쇠줄이 장치되어 있다. 침실에는 침구 보관용 선반이 있고, 사물함이 설치되어 있다. 사물함은 문이 없는 개방형으로 2~3명당 1개꼴로 사용할 수 있다. 화장실에는 수세식 좌변기와 세면대,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다.

혼거실의 면적은 대개 50.80㎡(15.37평), 83.40㎡(24.23평), 87㎡(26.32평), 224.75㎡(67.99평)이다. 1인당 2평을 적정 면적으로 했을 때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거실면적은 4,024,60㎡이고 610명 정도 보호가능하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국적이 다른 나라 보호외국인끼리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같은 국적의 사람끼리 모여 모의나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보호외국인들의 진술을 보면, 생활문화가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같은 보호거실에 보호함으로써 갈등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여기에 있는 게 너무 힘들다. 방이 덥고, 환기가 잘 안된다. 한방에 몽골,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사람 12명이 함께 지내는데 파키스탄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때 화장지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닦는다. 나는 그런 사람들과 밥을 같이 먹는 게 너무 힘들다. 불결하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방을 바꿨다.(사례⁴⁾ #14, 몽골, 남자)

여기 생활 하루하루가 힘들다. 무엇보다 친구들과 함께 있지 못해서 힘들다. 우리 사장님이 몇 번이나 돈을 준다고 약속을 하고서 지키지 않고 있다. 친구들에게서 이 사실을 들었다. 친구들과 함께 있지 못하니까 돈 못 받은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너무 답답하다. 보호소 직원들에게 몇 번이나 같이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안 된다고만 했다. ...미처버릴 것 같다. 친구와 같이 있다면 힘든 생활을 좀 더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친구들과 함께 있게 해 달라. (사례 #52, 인도, 남자)

거실 앞쪽은 쇠창살로 뚫려 있어 외부와의 소통, 환기, 내부 감시가 용이하도록 되어 있고, 쇠창살로 된 여닫이문에는 쇠줄을 달아 문이 활짝 열리지 않고 한사람만 나올 수 있도록 개폐정도를 조절하고 있다. 문의 개폐정도를 조절하는 쇠줄 설치하는 외국인들이 직원이 문을 열 때 한꺼번에 밀고 나와 탈주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보호소가 마련한 자구책이라고 한다.

그러나 화재나 긴급 대피등 상황이 발생하여 출입문으로 한꺼번에 사람들이 밀려들 경우 한명이 겨우 드나들 수 있는 이러한 좁은 출구로 인해 인명피해를 크게 할 가능성이 있다.⁵⁾ 또한 보호로 인한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강제 퇴거의 심사나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신병확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4) 아래에서 제시되는 사례는 심층면접사례이다.

5) 화성외국인보호소는 화재나 긴급 대피 등 상황이 발생하면 감시실에 있는 마스터키로 즉시 개방이 가능하며 월 1회 화재발생 대응훈련을 하고 있어서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소한의 주거 혹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그쳐야 하고 보호실 밖의 출입문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등 보호외국인의 탈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출입문의 개폐정도까지 통제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이다.

출입문 옆으로는 배식 창구가 있다. 거실바닥에는 타일이 깔려 있고 보호외국인들은 거실에서 주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TV를 본다.

침실과 거실을 구분하는 벽면은 나무재질이다. 상단부가 창틀 모양인데 유리나 아크릴판 등으로 막혀 있지 않다. 남성들이 보호되어 있는 구관 혼거실의 침실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편에 침상이 배치되어 있다. 반면, 여성들이 보호되어 있는 신관 혼거실의 침실은 침상이 아닌 장판이 깔린 방이다. 침실의 뒤편에 화장실이 있다.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혼거실의 침실과 거실은 직접적으로 외부와 연결되는 창문이 없어 자연환기나 자연채광이 되지 않는다. 거실에 환풍기를 설치하고 있으나 일부 혼거실은 환풍기가 전혀 작동되지 않거나,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도 관찰되었다. 혼거실 조명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편이다. 대부분의 혼거실은 자연채광이 안되어 낮에도 형광등을 켜 놔야한다. 각 혼거실에는 4개의 형광등이 설치되어 있다. 취침 시에는 취침 등을 사용한다.

침실과 화장실 사이벽은 절반 정도 위부터는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서 침실에서 화장실 내부가 들여다보인다. 17~18명이 사용하는 혼거실 화장실에는 수세식 좌변기가 2개, 소변기가 1개 있으며, 세면대가 2개, 간이 세면용 수도꼭지가 2개, 샤워기가 2개 있다.⁶⁾ 화장실 문 쪽에서 보았을 때 왼쪽으로 차폐시설이 있고 차폐시설 안쪽으로 변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호외국인이 용변을 보기 위해 변기에 앉아 있을 때 가슴 윗부분이 보인다. 따라서 세면대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의 모습을 다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화장실에 서서 샤워를 할 경우 침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반신이 노출된다.⁷⁾

6) 화장실의 변기와 세면대 개수는 혼거실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7) 보호외국인들이 화장실 투명 창문에 치약을 발라 속이 보이지 않도록 흐릿하게 가려놓았다.

화장실 외벽 창문의 크기가 크고 내벽창문의 위치와 조용하도록 만들어진 구관은 자연환기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편이다. 그러나 신관의 외벽창문은 크기가 작고 높은 곳에 위치해 내벽창문의 위치와 맞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을 통한 자연환기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⁸⁾

화장실에는 화장지 걸이나, 칫솔, 치약 보관 선반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샤워시 옷을 걸어놓을 수 있는 고리나 선반도 없다. 청소 도구는 화장실에 비치되어 있다. 화장실 변기 등의 청소 상태는 그리 나쁘지 않으나 악취가 배어 있었다.

대체로 구관에 비해 신관 보호거실이 더 어둡고 환기가 잘 안되는 편이다. 보호거실 앞 복도 건너편이 외부와 맞닿아 있는지 건물로 막혀있는지에 따라 환기와 채광상태가 달라지는데, 신관은 중앙복도를 사이에 두고 보호거실과 감시실 등의 사무실이 양편에 마주하고 있어서 보호거실이 건물외부의 대기와 채광을 접할 수 없다. 반면, 구관은 복도 건너편이 운동장이고 복도에 난 창문이 커서 보호거실의 채광과 환기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다.

신·구관 혼거실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10여명 이상의 보호외국인이 한 보호거실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보호거실 내 공기상태가 좋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 보호외국인은 아래와 같이 호소하고 있다.

보호소에 갇힌 후 천식이 심해져서 견디기 힘들다. 방이 환기가 잘 안되고, 공기가 나빠서 천식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특히 밤에 더욱 심하다. 숨이 가빠져서 잠을 자다가도 몇 번씩 깬다. 그럴 때면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화장실 창문으로 쪽에 가서 외부 공기를 들여 마신다. 잠을 자다가 세 네 번은 일어나서 화장실 창문 쪽의 공기를 마셔야 좀 숨을 쉴 수 있다. ... 지금 바람은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거다. 여기에서 오래지내면 몸이 너무 나빠질 것 같아 걱정이다.(사례 #3, 몽골, 남자)

화성외국인보호소는 냉난방을 중앙 공급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온수는 오

8)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은 2007. 11. 자연환풍 방식의 환풍기를 2007. 11. 설치하여 이런 점을 개선하였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 7~8시, 오후 7~8시에 각각 한 시간씩만 공급된다.⁹⁾ 냉방장치로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며 작동은 중앙에서 통제하는데, 온도가 높을 경우 주간과 야간에 도 에어컨을 작동시키고 있다. 각 보호거실 문 앞에 대형 선풍기가 한 대씩 놓여있는데 에어컨을 가동시키지 않을 때 사용하고 있다. 보호외국인들과의 심층 면접에 의하면 에어컨이 충분히 가동되지 않아서 한여름에 매우 더웠다고 한다.

출입문 위에 감시카메라 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 거실과 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화장실 내부는 잘 보이지 않고 사람이 내부에 있다는 정도만 확인할 수 있다.

보호거실 내의 TV 채널은 약 15개¹⁰⁾이며 화성외국인보호소의 보호외국인이 TV채널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 TV시청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고 TV 화질은 양호하다.

IC 공중전화가 거실에 1개씩 설치되어 있는데, 전화사용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10시 이후에는 전원이 꺼져 사용할 수 없다. 공중전화 카드는 매점직원이 보호거실을 순회할 때 구입할 수 있다. 국제전화 카드가 있으면 IC 공중전화 카드 없이도 국제전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화성외국인보호의 설명이다.

청소는 주로 보호외국인들이 하는데, 빗자루, 대 걸레 등의 청소 용품이 각방마다 비치되어 있다. 1차 조사 시에는 휴지통이 없어서 비닐봉지를 거실 창문에 매달아 놓고, 휴지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2차 조사 시에는 거실 밖 복도에 휴지통이 마련되어 있었다.

5) 의복과 침구류

보호외국인은 보호복을 착용하여야한다. 보호복의 종류는 반팔, 반바지의 하복, 긴팔, 긴 바지의 동복이 있고, 춘추복은 없다. 화성외국인보호소 내에서는

9) 화성외국인보호소 관계자는 냉난방기의 연료가 기름이기 때문에 가격부담으로 온수를 제한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10) 1차 조사 시 5개 채널이었는데 2차 조사 시에는 약 10개의 채널이 증가하였다.

하복과 동복을 지급하는 시기를 엄격히 규정하기보다 외부기온과 같은 사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¹¹⁾

보호복의 재질은 100% 합성섬유이다. 남성들의 경우 런닝셔츠를 반입할 수 없기 때문에 땀을 흡수하지 못하는 합성섬유만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에는 몸이 매우 가렵고, 작은 반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보호외국인의 설명이 있었다.

외국인이 약 200명 수용되어 있었던 1차 조사 시에는 남성 보호외국인들이 주 1회 의복을 교환하여 준다고 응답하였으나, 330여명이 수용되어 있던 2차 조사 시에는 의복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¹²⁾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4일에 한번 거의 정기적으로 의복을 교환받고 있었다.

남, 여 보호거실에는 쇠줄로 된 빨래줄이 있어서 보호외국인이 개인용 속옷이나 보호복을 빨아서 널어두고 있다. 특히 2차 조사 시 보호복을 새것으로 교체 받지 못한 보호외국인이 상의를 각자 세탁하여 빨래줄에 널어놓고 옷을 벗은 상태로 있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보호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침구류는 매트리스와 담요 3장이며, 동절기에는 담요가 한 장 추가로 지급된다.

입소 시 배급받은 침구는 퇴소 시까지 사용하고 있다. 1차 조사 시에는 장기 보호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달 혹은 적당한 시기가 되면 새 침구로 교환을 받

11) 2차 방문 시 외부와 환기가 잘되는 방에서는 반팔 반바지인 하복이 너무 추워서 감기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긴팔 옷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추워서 외부 창문을 닫을 경우 방에 냄새가 나서 추위도 바깥 창문을 열어 놓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11호실의 경우 보호외국인 12명중 4명이 감기에 걸려있었다. 반면 외부와 환기가 안 되고 방이 밀폐되어 있는 곳에서는 하복을 착용하는 것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적당하다고 하였다. 방의 송풍, 채광 등에 따라 동복과 하복의 요구가 각기 달랐다.

12) 보호외국인이 보호복을 교체해달라고 네, 다섯 번 사정해야 겨우 교체해주거나 보호복이 충분하지 않으니 그냥 입으라는 답변을 담당직원으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2차 조사 시에는 장기보호자들 대부분이 2~3개월 동안 침구를 한번도 교체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보호외국인들은 의복이나 침구 교환 시기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 요구하면 상황에 따라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반해 화성외국인보호소는 보호기간이 1달 이상인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매트리스와 모포를 교체해주고 있으며 교체 시 매트리스 커버는 세탁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겉에 씌운 커버 이외에는 세탁이 어려운 매트리스는 땀과 분비물들이 스며들어 냄새가 나고 불결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보호외국인들이 의복이나 침구류의 청결상태에 대한 불만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보호소의 옷은 일주일에 한번씩 바꿔주지만 말을 하지 않으면 바꿔 주지 않는다. 보통 내가 직접 얘기해서 새 옷으로 바꾸고 있다. 옷을 바꿀 때 출입국 사람들이 화를 내거나 싫어하지는 않는다. 담요는 여기에 있는 세달 동안 한번도 교환을 하지는 않아서 냄새가 난다. (사례 #13, 방글라데시, 남자)

지금 18개월이 넘게 보호소에 갇혀 있는데, 온 몸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 구토가 나고, 가슴이 항상 답답하다. 지급되는 담요와 침구류는 먼지가 너무 많고, 심지어 피가 묻어 있는 것까지 지급 받기도 했다. 결국 폐에도 문제가 생겼는지 피를 토하기도 했다.(사례 #38, 이란, 남자)

6) 세탁시설

화성 보호소에는 구관과 신관에 각 세탁실이 각기 마련되어 있다. 구관의 세탁실에는 대형세탁기 1대와 건조기 2대가 있으며, 신관 세탁실에는 세탁기 2대, 건조기 2대가 있다. 세탁 담당자는 일용직 직원 1명과 공익요원이다. 이들의 설명에 의하면, 세탁은 매일 실시하고 있다.

7) 의료시설

의무실에 배치된 의료진은 의사 1명, 공중보건의 1명, 간호사 1명이며 모두 상근한다. 입소 시 신체검사는 경비과 담당직원이 먼저 하는데, 육안이나 구두 질문, 보호의뢰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지 등에 의해 질병이 의심되는 외

국민만을 의료진의 진료를 받게 하고 있다.¹³⁾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월, 목요일 주 2회 순회 진료를 하는데, 의사들이 각 보호거실 마다 돌아다니면서 아픈 사람을 문진하고 투약한다. 주말이나 휴일에는 의료진이 근무하지 않아 긴급 환자 발생 시, 의료진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전화로 환자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수시로 진료 요청을 받아 진료를 하지만 외부병원에서 치료 받을 경우는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부담능력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국비를 지원한다.

현행 외국인보호규칙은 한 달 이상 보호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두 달에 한번 이상 의무관이나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¹⁴⁾,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장기 보호 환자에 대해서 월 2회 혈압 체크와 기타 문진과 같은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의무실 의료기구 및 위생재료, 처치세트는 잘 관리 되고 있었다. 14종 약품 종류 및 관리는 양호하였다. 다만, 기도 폐쇄 등 응급상황에 필요한 후두경(Laryngoscope)은 구비되어 있지 않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의무기록 시스템(ICRM)을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과 혼용하고 있었다. 2006년 1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상기 시스템은 ‘사범보호 - 보호명령’ 폴더안의 ‘진료관리(일자별 조회) 및 진료요청자 조회’를 통해 의무기록을 간단히 작성하고 있었다. 로그인시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관리에 주의 요망된다.

2004년 이후 3년간 전체 보호인원 대비 환자 발생인원을 비교하면 2004년 7.6%, 2005년 8.2%, 2006년 13.8%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13) 단기 퇴소자가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입소 시 신체검사를 자세한 건강진단으로 대체 할 수 없다는 것이 담당직원의 설명이다.

14) 외국인 보호 규칙 제18조(건강진단)

< 표 1 > 진료 및 환자발생비율

(단위 : 명, %)

| 연도별 | 계 | 소내진료 | 외부병원 진료 | 일평균 환자수(A) | 일평균 수용인원(B) | 환자 발생 비율(A/B) |
|------|--------|--------|------------|---------------|----------------|------------------|
| 2004 | 8,131 | 8,030 | 101 | 29 | 385 | 7.6% |
| 2005 | 13,616 | 13,507 | 109 | 52 | 635 | 8.2% |
| 2006 | 11,924 | 11,830 | 94 | 48 | 348 | 13.8% |

8) 여가활동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건물 가운데에 운동장이 있는데, 이 운동장은 4개의 작은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다. 이중 3곳만 사용된다. 1차 조사 시에는 보호외국인에게 운동을 주 2회 30분간 허용하고 있었으나 보호외국인 수가 증가된 2차 조사 시에는 남성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주 1회 30분 정도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즉 보호외국인의 규모에 따라 허용되는 운동시간이 달라지는데, 이에 대해 한 보호외국인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현재 운동은 일주일에 한 두 번씩 한다. 밖에서 바람을 쐬 수 있어서 좋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3월과 4월에는 2주일에 한번 밖에 운동을 할 수 없었다. 그때 무척 힘들었다.(사례# , 방글라데시, 남자)

보호거실에서 운동장으로 이동할 때 수갑은 채용하지 않는다. 운동은 각 보호동 별로 50~60여명의 보호외국인이 한꺼번에 하게 된다. 화성외국인보호소 제출자료에 따르면, 구비된 운동기구가 배구공, 축구공, 배드민턴 기구 6세트, 배구 및 족구네트 2개가 있다. 실내 운동을 위해 여성보호거실에는 홀라후프가 제공되는데, 이에 대한 여성보호외국인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운동장에는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감시카메라가 있고 나무나 벤치 등은 없다. 다만, 운동장 2곳에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검은 차양 막이 설치되어 있다.

최근 화성외국인보호소는 보호 외국인에 대해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문화행사는 주로 숫자가 적은 여성보호외국인들을 대상으

로 실시되는데, 여성보호외국인들에게는 매주 월요일에는 한국어세계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어 교육을, 화요일에는 화성 시 전통예절관련 단체 회원이 다도 등 한국 전통예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남녀 보호외국인을 대상으로 목요일은 화성 두레단이 민속공연을 하고, 격주로 몇몇 교회소속 봉사자들이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 매주 주 2회 기독교계 교회에서 보호거실마다 다니면서 기도와 예배를 드리며, 월 1회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종교행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의 설명이다. 이러한 문화서비스 제공여부는 보호외국인 숫자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비스가 비교적 보호인원이 일정한 여성들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화성보호소에는 약 3,000여권의 책이 비치되어 있다. 도서 대출은 방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보호 외국인들은 도서 목록이 적혀있는 파일에서 본인이 보고자 하는 도서의 번호를 적어서 내면 번호를 보고 책을 찾아준다. 현재 정기적인 도서 대출은 여성들에게만 실시되고 있으며, 남성들은 비정규적이다. 여성들의 경우 도서 대출 서비스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다.

필기도구는 매점에서 구매한 볼펜에 한해서 반입 가능하다. 공책은 여성보호외국인에게만 스프링이 달린 것을 제외하고 반입이 허용되며 남성보호외국인에게는 모든 공책의 반입을 허용하지 않고 필요시 직원에게 종이를 요청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는 여성보호외국인이 자신의 중요한 기록이나 일기를 써서 보관하거나 자신이 그린 그림을 그려서 벽에 부쳐놓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집필활동이 보장되고 있었다.¹⁵⁾

9) 식사 및 조리시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시설 내에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보호외국인 1인당 하루예산은 3,900원이다. 영양사 1명, 조리사 14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조리사는 7명씩 교대 근무하고 있다. 급식은 1식 3찬이다. 보호 외국인들은 보호거실의 배식구를 통해 식사를 공급받아 거실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한다. 배

15) 색종이도 반입도 가능해서 여성 보호거실에서는 색종이로 꽃을 만들어 방에 진열하고 있기도 했다.

식은 오전 8시에 조식, 오전 11시 30분에 중식 오후 6시에 석식을 공급한다.

아침식단은 빵과 달걀 우유나 두유이며 점심, 저녁식단은 한식이다. 식사량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외국인들을 위해 여분의 밥을 가지고 더 지급한다. 대부분 보호외국인들은 식사량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으나 건설현장 등에서 일을 하다 보호된 외국인들 중에는 식사량이 적어서 허기를 느낀다고 배고픔을 호소한 경우도 있었다.

식사 양이 너무 부족하다. 우리는 노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밥을 많이 먹는데 여기에서 주는 식사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매일 배가 고프다. 밥을 더 달라고 하면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간다. 돈이 없어서 간식을 사먹지도 못한다. 보호소 사람들에게 이곳에서의 불편한 점들을 얘기하면 ‘넌 왜 이렇게 말이 많아’라고 하면서 독방으로 보낸다고 한다. 그래서 찍히지 않으려고 가만히 있다.(사례 #14, 몽골, 남자)

이슬람인들에 대한 배려로 돼지고기류는 제공되지 않는다. 그러나 각 보호외국인들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식단이나 식사시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일부 보호외국인들은 반찬으로 돼지고기를 제공받기를 원하기도 하는가 하면, 라마단과 같은 종교절기에 이슬람교도들을 위해 식사제공 시간이 변경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호소하기도 하였다.¹⁶⁾

보호소 생활 중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지만, 반찬으로 돼지고기가 나오지 않는 것이 불만이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다른 외국인을 고려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국적별로 식단을 분류해서 돼지고기를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사례 #18, 중국, 남자)

보호소 생활이 많이 힘들다. 음식도 입에 맞지 않고 특히 고기반찬은 먹을 수 없다. 내가 무슬림이기 때문이다. 거의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식사를 못 하고 있다. 9월 중순에 라마단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해가 떠 있는 동안은 금식을 해야 한다. 보호소 식사 시간이 맞지 않아 그나마 밥도 먹지 못할 것 같다.(사례 #39, 파키스탄, 남자)

조리사들은 위생모와 위생 장갑을 착용하고 있으며 뚜껑이 있는 식판에 음식을 배식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음식을 다루는 과정이 위생적이다. 식기구로

16) 화성외국인보호소는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종교인에게는 야간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플라스틱 숟가락만 지급하고, 젓가락이나 포크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숟가락은 보호외국인이 각자 보관하여 사용하고 있다. 컵은 종이컵을 각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컵을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침에 주는 우유나 음료수 병을 씻어서 컵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식수로 정수기 물을 마시고 있는데, 정수기는 실내에 놓여 있지 않고, 거실 밖 복도에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보호외국인이 물을 마시려면 쇠창살 밖으로 손을 뻗어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마셔야 한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보호외국인들이 정수기를 발로 걸어차거나 두들겨 대는 등 훼손 우려가 높기 때문에 정수기를 방 밖에 설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⁷⁾

10) 면회

화성외국인보호소에는 총 10개의 면회실이 있으며 외국인이 면회실을 이동하는 동안에는 수갑을 채용하지 않는다. 면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 사이,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 사이에 가능하며,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가능하다. 하루 면회 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면회 시간은 상식적으로 너무 길지 않게, 보통 2~30분이 넘으면 제재하고 있다고 하였다. 각 면회실마다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고, 면회인과 보호인의 좌석은 투명 아크릴 판으로 분리되어 있다. 3개 면회실은 인터폰을 사용하여 대화하도록 되어 있고, 5개 면회실에는 음성증폭기 사용이 가능하다.

부부나 형제 등 가족이 화성외국인보호소에 함께 수용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도 이들을 위한 정기적인 면회기회는 주어지지 않으며 출국 날짜나 기타 협의할 사항이 있을 때만 상담실에서 만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11) 중앙통제실(CCTV 감시실)

모든 감시카메라는 중앙 통제실에서 관리되지만, 보호동 별로 감시실을 설치하여 감시카메라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다. 녹화내용은 중앙 통제실에서 메모리 카드에 보관한다. 녹화는 보호외국인의 움직임이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데, 녹화

17) 이에 비해 청주외국인보호소에는 정수기가 실내에 설치하고 있으며 훼손사례는 없다고 설명한다.

된 내용의 보관 기간은 1개월 정도이다.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설치된 감시카메라는 총 90개인데, 각 보호거실마다 출입구 위에 1개, 침실입구에 1개씩 설치되어 있다. 여성 보호실의 감시카메라는 여성 직원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12) 진정, 고충처리 상담

각 보호거실에는 중국어, 영어, 한국어로 된 이의신청 및 진정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인권위 진정함은 각 보호동 감시실 문 옆에 비치되어 있다. 안내문은 위 3개 국어로만 쓰여 있어서 기타 국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임금체불이나 전세금 등, 보호외국인의 고충 해결은 매우 어려운 편이다. 임금체불이나 전세금 등, 보호외국인의 고충 해결은 매우 어려운 편이다.

외국인들이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면, 심사과 직원 중 보호외국인의 담당자가 정해진다. 담당자는 보호 외국인의 출국준비 및 고충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직원 한명이 약 40~50명의 외국인을 담당해야 하고, 체불임금도 단속 당시 근무했던 회사가 아니라 1~2년 또는 그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인 경우도 많아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¹⁸⁾ 이 때문에 보호외국인들은 면접 조사 중 담당 직원이 체불임금 등의 문제해결에 무성의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서 보호소를 방문하여 임금체불 상담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외국인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보호외국인들은 상담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임금체불 지역이 관할 지역 내가 아니면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진정의 진행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별다른 고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노동부 직원의 체불임금 상담이 별 실효성 없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18) 심사과 직원들은 보호 외국인의 임금, 기타 금품 문제 해결을 위해 회사에 전화를 하고, 그 래도 해결이 어려우면 노동부 상담을 의뢰한다고 한다.

13) 물품제공

보호소에서는 칫솔, 손가락, 의복, 침구류를 보호외국인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화장지, 비누, 치약은 공용으로 제공한다. 그 외 수건(2,000원), 샴푸, 로션, 면도기는 보호외국인이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

불법어로활동으로 단속된 중국 어선의 선원들은 돈이 없어서 수건을 구입하지 못하고 옆사람에게 얻어 쓰거나 퇴소하는 사람으로부터 얻어서 사용하고 있었다. 샴푸, 로션은 매점에서 판매하는 것들과 플라스틱 용기로 된 것들만 사용이 가능하다.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들은 필요시 면도기를 제공받고 사용 후 반납한다. 면도기는 면도기 전용이 아닌 전기 이발기¹⁹⁾로 대응되는데, 보호외국인들은 이것으로 머리를 깎거나 면도를 한다고 한다. 면도기 5개를 각 감시실 별로 비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면도기로 수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서 위생문제가 염려되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매점에서 만 오천 원 가량의 전기면도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몇몇 보호외국인은 자비로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²⁰⁾ 보호외국인은 보호소 측으로부터 손톱깎이를 주 1회 제공받아 사용한 후 반납하고 있다.

2. 설문 및 심층면접 조사 결과 분석

가. 조사대상자 관련 기초 사항

1차 조사 시 조사대상 보호외국인은 총 174명이었으며, 이 중 중국인이 88명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하였다. 그 밖에 다수 국가가 방글라데시인 14명, 베트남인 13명, 우즈베키스탄인 12명, 몽골인 10명, 파키스탄인 9명이다.²¹⁾

19)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의하면, 외국인의 수염은 내국인과는 달리 역세서 일반 전기면도기를 사용하기 어려워서 전기이발기(일명 바리깡)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20) 보호외국인은 보호소 내 매점에서 파는 물건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데 매점 물건의 가격은 대형 할인매점에 비해 비싼 편이다.

21)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7.6. 7. 현재 보호외국인은 총 216명이고, 이 중 남성은 194명, 여성은 22명이다.

<표 1 국적>

(단위 : %, 명)

| 국 가 | 빈 도 | 비 율 |
|--------|-----|-------|
| 방글라데시 | 14 | 8.0 |
| 중국 | 88 | 50.6 |
| 인도 | 5 | 2.9 |
| 인도네시아 | 1 | 0.6 |
| 가나 | 1 | 0.6 |
| 카자흐스탄 | 2 | 1.1 |
| 몽골 | 10 | 5.7 |
| 미얀마 | 1 | 0.6 |
| 네팔 | 2 | 1.1 |
| 나이지리아 | 1 | 0.6 |
| 파키스탄 | 9 | 5.2 |
| 필리핀 | 1 | 0.6 |
| 러시아 | 3 | 1.7 |
| 스리랑카 | 1 | 0.6 |
| 태국 | 2 | 1.1 |
| 우즈베키스탄 | 12 | 6.9 |
| 베트남 | 13 | 7.5 |
| 기타 | 6 | 3.4 |
| 미응답 | 2 | 1.1 |
| 합계 | 174 | 100.0 |

<표 2>에 따르면, 보호외국인의 연령은 30대가 55명, 31.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대가 37명, 21.3%이다. 20대와 50대는 16명씩이다. 19세 이하의 보호외국인도 2명 있었다.

<표 2> 나 이

(단위 ; %, 명)

| 나 이 | 빈 도 | 비 율 |
|---------|-----|-------|
| 19세이하 | 2 | 1.1 |
| 20세~29세 | 16 | 9.2 |
| 30세~39세 | 55 | 31.6 |
| 40세~49세 | 37 | 21.3 |
| 50세 이상 | 16 | 9.2 |
| 미응답 | 48 | 27.6 |
| 합 계 | 174 | 100.0 |

조사대상 보호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했던 기간은 1년 미만이 50명으로 28.7%이다. 그 다음이 2년에서 3년, 10년 이상 체류한 사람이 동일하게 20명, 11.5%를 차지하였다. 8년에서 9년, 9년에서 10년을 체류한 경우를 빼고 1년 단위로 대부분 10명 이상이 체류해왔다고 응답하였다.

<표 3> 체류기간

(단위 : %, 명)

| 체류기간 | 빈 도 | 비 율 |
|--------|-----|-------|
| 1년 미만 | 50 | 28.7 |
| 1~2년 | 15 | 8.6 |
| 2~3년 | 20 | 11.5 |
| 3~4년 | 10 | 5.7 |
| 4~5년 | 14 | 8.0 |
| 5~6년 | 10 | 5.7 |
| 6~7년 | 12 | 6.9 |
| 7~8년 | 10 | 5.7 |
| 8~9년 | 4 | 2.3 |
| 9~10년 | 3 | 1.7 |
| 10년 이상 | 20 | 11.5 |
| 미응답 | 6 | 3.4 |
| 합 계 | 174 | 100.0 |

이들의 종교를 살펴보면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45명으로 26.0%로 제일 많았으며 종교가 있다고 답변한 보호외국인 중에서 이슬람교도는 32명, 개신교도는 19명, 불교도는 16명이다.

<표 4> 종 교

(단위 : %, 명)

| 종 교 | 빈 도 | 비 율 |
|-------|-----|-------|
| 종교 없음 | 45 | 26.0 |
| 개신교 | 19 | 10.9 |
| 가톨릭 | 6 | 3.4 |
| 불교 | 16 | 9.2 |
| 힌두교 | 2 | 1.1 |
| 이슬람교 | 32 | 18.4 |
| 기타 | 20 | 11.5 |
| 미응답 | 34 | 19.5 |
| 합 계 | 174 | 100.0 |

이들의 입국 시 소지했던 비자의 종류를 보면 C2, C3와 같은 단기비자가 49명으로 28.2%에 해당되며 그 다음이 D3 산업연수비자가 37명으로 21.3%이다. 그 밖에 E9 비전문취업비자, F2 배우자 비자, F1 방문·동거비자가 10여명 대로 각각 8.0%, 6.9%, 6.3%이다.

<표 5> 비 자

(단위 : %, 명)

| 비자종류 | 빈 도 | 비 율 |
|-------------|-----|-------|
| C2, C3 단기비자 | 49 | 28.2 |
| D2 유학비자 | 7 | 4.0 |
| D3 산업연수 | 37 | 21.3 |
| F1 방문, 동거 | 11 | 6.3 |
| F2 배우자 | 12 | 6.9 |
| E9 비전문취업 | 14 | 8.0 |
| E10 내향선원 | 1 | 0.6 |
| 기타 | 26 | 14.9 |
| 미응답 | 17 | 9.8 |
| 합 계 | 174 | 100.0 |

조사대상 보호외국들은 단속되기 전까지 주로 노동에 종사하였다. 91.6%가 노동에 종사하였다고 응답하였는데, 공장노동자가 78명으로 47.0%, 건설노동자가 45명으로 27.1%, 수산업노동자가 23명으로 13.9%, 농림축산업노동자가 6명으로 3.6%이다. 그 밖에 식당에서 일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13명인데, 이중 7명이 여성응답자이다. 즉 대부분의 남성보호외국인은 각 산업현장의 노동자로 일한 것에 비해 여성보호외국인은 공장노동자로서보다 식당에서 주방이나 청소 서빙 등의 일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미등록 이주 노동자 간의 성별에 따라 종사했던 직업이 달랐던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직 업

(단위 : %, 명)

| 직 업 | 전 체 | | 남 자 | | 여 자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공장노동자 | 78 | 47.0 | 64 | 46.7 | 5 | 29.4 |
| 건설노동자 | 45 | 27.1 | 41 | 30.0 | 1 | 5.9 |
| 어부 또는 수산업노동자 | 23 | 13.9 | 21 | 15.3 | 0 | 0.0 |
| 농림축산업노동자 | 6 | 3.6 | 5 | 3.6 | 1 | 5.9 |
| 식당주방, 청소, 서빙 | 13 | 7.8 | 5 | 3.6 | 7 | 41.2 |
| 가정부, 파출부, 간병인 | 2 | 1.2 | 0 | 0.0 | 2 | 11.8 |
| 유흥업소 접대원 | 1 | 0.6 | 1 | 0.73 | 0 | 0.0 |
| 유학생 | 3 | 1.8 | 2 | 1.5 | 0 | 0.0 |
| 기타 | 19 | 11.5 | 15 | 11.0 | 4 | 23.5 |

한국에 남아있는 보호외국인의 가족을 살펴보면 한국인 배우자가 13.9%인 14명으로 제일 많았다. 또한 한국국적이 아닌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5명, 자녀가 남아있는 경우는 8명이고 특히 미성년 자녀가 한국에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5명이다.

<표 7>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

(단위 : %, 명)

| 가 족 | 빈 도 | 비 율 |
|-----------------|-----|------|
| 미성년 자녀 | 5 | 5.0 |
| 성인 자녀 | 3 | 3.0 |
| 한국인 배우자 | 14 | 13.9 |
| 한국인이 아닌 국적의 배우자 | 5 | 5.0 |
| 형제자매 | 13 | 12.9 |
| 부 또는 모 | 2 | 2.0 |
| 없음 | 61 | 60.4 |
| 기타 | 7 | 6.9 |

이번 방문조사를 통하여 한국인 배우자와 사실혼 상태에서 아이까지 출산하였는데도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불법체류 기간에 대한 벌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혼인신고를 못한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집에서 아내와 다투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출입국으로 넘겨졌다. 아내는 한국사람인데 2004년에 결혼하였다. 2006년 1월에 서울 출입국에 가서 결혼비자를 신청하였고 결혼비자를 받기위해 본국에 다녀오라고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 못하였다. 내 아내는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다. 아내와의 사이에 3살된 딸도 있다. 장모와 언니가 있지만 장모는 나이가 많고 언니도 사는 게 힘들어 거의 도와주지 못한다. 지금 아내가 딸아이를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딸아이 가까이에도 오지 못하게 한다. 심지어 나도 못 만지게 한다. 이번에 단속된 것도 딸아이를 다른 사람 집에 데려갔던 문제로 아내와 좀 심하게 다투어서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벌금을 내고 결혼비자를 받을 수도 있지만 경제적인 형편이 안된다. 솔직히 항공권 구입할 형편도 안된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74만원 밖에 없다. ... 나는 빨리 나가서 딸을 돌봐야 한다. 여기서 그냥 살면서 비자를 받을 방법은 없는가? 나가서 돈을 벌어서 조금씩 벌금을 내면 안되는가? 만약 한달 안에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고 항공권도 끊어준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본국에 다녀올 수 없다.(사례#11, 방글라데시, 남자)

약 4년 전부터 한국인 아내와 동거를 하고 있다. ... 지금의 아내는 임신 7개월이 되고 있다. ... 아내는 돈도 없고 차도 없어서 평택에서 화성까지 면회 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부모형제도 없기 때문에 만일 아프기라도 하면 돌보아줄 사람도 없다. 곧 태어날 아이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혼인 신고 같은 것을 하지 않은 것은 잘 몰랐기 때문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하려고 했다. 여기 반장님께 여러 번 사정을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여기서 그냥 돌아가라고 한다. ... 요즘 아내는 가게도 잘 되지 않아 내가 있어야 살 수가 있는데 무조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가면 언제 올 수 있을 지도 모르는데 어쩌면 좋을지 모르다.(사례 #23, 네팔, 남자)

한편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무조건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현행법과 관련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었다.

F-2비자를 가지고 있고 2007년 11월 22일까지 비자기간이 남아 있다. 그런데 지난 2007년 4월 27일에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인천공항에서 구속되었다. 재입국확인서를 위조하는 친구들을 위해 통역과 번역을 도왔기 때문에 공범으로 구속되었던 것이다. ... 재판을 받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 내가 잘못 저지른 것은 사실

이지만, 판사님도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준다고 하였고 한국 사람이랑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사례 #10, 파키스탄, 남자)

미등록외국인들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당한 피해(복수응답)는 우선 임금체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금체불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모두 67명이다. 그 다음은 사기, 폭행, 산업재해인데 각각 20명, 10명, 9명이다.

<표 8> 피해의 형태

(단위 : %, 명)

| 피해의 형태 | 빈 도 | 비 율 |
|--------|-----|------|
| 임금체불 | 67 | 63.2 |
| 폭행 | 10 | 9.4 |
| 사기 | 20 | 18.9 |
| 산재 | 9 | 8.5 |
| 성폭력 | 0 | 0.0 |
| 성매매강요 | 0 | 0.0 |
| 가정폭력 | 1 | 0.94 |
| 기타 | 27 | 25.5 |

보호외국인들이 조사시점까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의 보호된 기간은 1달에서 2달 사이가 20.1%인 35명으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한달 미만 보호된 경우는 93명으로 53.4%이며,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는 14명,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6명이고, 1년 이상도 보호되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3명이나 되었다.

<표 9> 총 기 간

(단위 : %, 명)

| 총기간 | 빈 도 | 비 율 |
|--------|-----|-------|
| 일주일 미만 | 32 | 18.4 |
| 2주일 미만 | 30 | 17.2 |
| 3주 미만 | 19 | 10.9 |
| 4주 미만 | 12 | 6.9 |
| 1달~2달 | 35 | 20.1 |
| 2달~3달 | 17 | 9.8 |
| 3달~6개월 | 14 | 8.0 |
| 6개월~1년 | 6 | 3.4 |
| 1년 이상 | 3 | 1.7 |
| 미응답 | 6 | 3.4 |
| 합 계 | 174 | 100.0 |

장기 보호의 주된 사유는 체불임금이나 전세금 반환 등 금품문제 해결이고 그 밖에 항공권이 없는 경우²²⁾, 진정이나 이의신청, 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난민신청 중인 경우 등이다.

<표 10> 장기보호 사유

(단위 : %, 명)

| 보호이유 | 빈 도 | 비 율 |
|--------------------------------|-----|------|
| 항공권이 없어서 | 19 | 10.9 |
| 전세금, 임금, 체불 등 금품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 41 | 23.6 |
| 진정, 이의신청, 민,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 15 | 8.6 |
| 난민 신청 중이기 때문에 | 11 | 6.3 |
| 가방 등 개인 물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 3 | 1.7 |
| 산재 치료 또는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 1 | 0.6 |
| 기타 | 32 | 18.4 |

22)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자비로 출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호외국인이 항공권 구입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때에는 이 비용을 국비로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보호당시 외국인이 출국비용이 없다고 밝힌 경우에도 보호기간 두세 달 경과 후 보호외국인이 출국비용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된 뒤에야 항공료를 지급해주고 있다.

금품문제로 인해 한 달 이상 장기보호 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심층면접에서 보호외국인들은 금품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많이 피력하였다.

나는 월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집에 가지 못하고 있다. 체불 액수는 총 1천 2백 만원이다. 2005년 9월부터 일하기 시작했고 2006년 8월부터 잡히기 전까지 월급을 받지 못했다. 한 달 월급은 150만원이었다. ... 정말 힘들게 일했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서 월급을 받아 가고 싶다. 그러나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몰라 답답하다.(사례 #13, 방글라데시, 남자)

단속되기 전에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약 990만원 정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 보호소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방법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노동부 직원에게 3개월 전에 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후 아직까지 대답이 없다. 노동부 직원이 정기적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실질적인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는 위 돈을 받을 때까지 한국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위 문제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 위 문제로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고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상황이다.(사례 #18, 중국, 남자)

한편, 산재환자가 단속을 당했으나 보증금이 없어 일시보호해제를 신청하지 못해 장기보호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2006년 10월 11일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다. 한번 수술을 했는데,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했다. 일을 하지 못하는 석달 동안 월급의 70%를 지불했다. 단속된 이후에는 사장님에게서 연락이 없다. 밖에 있는 친구들이 사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치료가 모두 끝날 때 까지 한국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사장님은 출입국 사람들에게 모든 처리가 끝났으니 돌아가라고 했다고 한다. 출입국에서는 보증금이 있으면 보호소에서 나가서 병원에서 치료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300만원이 없어서 일시 보호해제를 하지 못했다. ...아직 퇴직금도 받지 못한 상태이다. 보호소에 이야기를 했으나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일시보호해제로 보호소 밖에서 수술을 하고 보상을 받고 돌아가고 싶다.(사례 #29, 네팔, 남자)

나. 입소 시 신체검사

출입국관리법은 보호시설 입소절차로 피보호자의 신체, 의류 및 휴대품 검사를 규정하고 있다.²³⁾ 이러한 규정에 따라 외국인보호규칙 제6조 제1항은 담당 공무원이 보호외국인의 키와 몸무게, 신체의 특징, 상처와 그 흔적, 질병유무, 그 밖에 신체 이상 유무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차 조사 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입소하여 몸 검사를 받을 때 혼자서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8.4%, 집단으로 받은 경우는 61.6%였다. 이를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자의 경우는 집단으로 몸 검사를 받는 경우가 64.4%로 혼자 받았다는 경우인 35.6%보다 훨씬 높게 나왔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혼자 받은 경우와 집단으로 받은 경우의 비율이 서로 비슷하게 나왔다.

<표 11-1> 몸 검사 방법

(단위 : %, 명)

| | 전 체 | | 남 자 | | 여 자 | |
|------|--------------------|------|-----|------|-----|------|
| | 빈 도 ²⁴⁾ | 비 율 | 빈 도 | 비 율 | 빈 도 | 비 율 |
| 혼자 | 51 | 38.4 | 36 | 35.6 | 7 | 53.9 |
| 집단으로 | 82 | 61.6 | 74 | 64.4 | 6 | 46.1 |

<표 11-2>는 2차 조사의 결과인데 1차 조사의 결과인 <11-1>과 비교하여, 집단으로 몸검사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아졌다. 특히 여성보호외국인의 경우, 집단으로 몸검사를 검사받았다는 비율이 68.2%로, 1차 조사결과인 46.1%에 비해 20% 이상 증가하였다.

23)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5(신체 등의 검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보호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24)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의 빈도와 남성과 여성을 각각 분리한 결과의 빈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설문에 성별을 밝히지 않아 각 성별결과에 빈도에 답변결과를 포함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표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표 11-2> 몸검사 방법

(단위 : %, 명)

| | 전 체 | | 남 자 | | 여 자 | |
|------|--------------------|------|-----|------|-----|------|
| | 빈 도 ²⁵⁾ | 비 율 | 빈 도 | 비 율 | 빈 도 | 비 율 |
| 혼자 | 41 | 32.5 | 32 | 32.6 | 7 | 31.8 |
| 집단으로 | 85 | 67.5 | 66 | 67.3 | 15 | 68.2 |

1차 조사 시 몸 검사를 받을 때의 복장은 남성보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옷을 입은 채 받은 경우가 52.5%, 속옷만 입고 받은 경우가 40.6%로 나왔다. 반면 여성보호외국인의 경우 속옷만 입은 경우와 옷을 입은 채 검사를 받은 경우가 각각 42.9%로 동일하게 나왔다. 알몸상태로 몸검사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도 전체 12명으로 8.4%에 달했다.

<표 12-1> 몸검사 복장

(단위 : %, 명)

| | 전 체 | | 남 자 | | 여 자 | |
|--------|--------------------|------|-----|------|-----|------|
| | 빈 도 ²⁶⁾ | 비 율 | 빈 도 | 비 율 | 빈 도 | 비 율 |
| 알몸 | 12 | 8.4 | 8 | 6.8 | 2 | 14.3 |
| 속옷 | 58 | 40.6 | 48 | 40.7 | 6 | 42.9 |
| 옷 입은 채 | 73 | 51.0 | 62 | 52.5 | 6 | 42.9 |

2차 조사에서는 옷 입은 채 몸검사를 받은 비율이 대체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86.4%가 옷을 입은 채 검사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알몸상태로 몸검사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약간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9명으로 7.4%에 해당한다.

25)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의 빈도와 남성과 여성을 각각 분리한 결과의 빈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설문에 성별을 밝히지 않아 각 성별결과에 빈도에 답변결과를 포함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표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26)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의 빈도와 남성과 여성을 각각 분리한 결과의 빈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설문에 성별을 밝히지 않아 각 성별결과에 빈도에 답변결과를 포함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표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표 12-2> 몸검사 복장

(단위 : %, 명)

| | 전 체 | | 남 자 | | 여 자 | |
|--------|--------------------|------|-----|------|-----|------|
| | 빈 도 ²⁷⁾ | 비 율 | 빈 도 | 비 율 | 빈 도 | 비 율 |
| 알몸 | 9 | 7.4 | 7 | 7.4 | 1 | 4.5 |
| 속옷 | 38 | 31.1 | 36 | 38.3 | 2 | 9.1 |
| 옷 입은 채 | 75 | 61.5 | 51 | 54.3 | 19 | 86.4 |

몸검색을 담당한 직원의 성별을 보면, 여성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같은 여성 직원이 담당하고 있지만, 남성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일부 여성직원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9명의 남성보호외국인이 여성 직원으로부터 몸 검사를 받았다고 답변하였다.²⁸⁾

<표 13> 몸수색을 한 사람의 성별

(단위 : %, 명)

| | 보호외국인 남자 | | 보호외국인 여자 | |
|-----|----------|------|----------|-------|
| | 빈 도 | 비 율 | 빈 도 | 비 율 |
| 남 자 | 106 | 92.2 | 0 | 0.0 |
| 여 자 | 9 | 7.8 | 14 | 100.0 |

몸 검사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응답한 사람이 36.5%, 느끼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63.5%였다. 그리고 이러한 응답의 남녀 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수치심을 국적과 교차분석을 하였을 때 방글라데시인 61.5%, 파키스탄인 88.9%가 수치심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27)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의 빈도와 남성과 여성을 각각 분리한 결과의 빈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설문에 성별을 밝히지 않아 각 성별결과의 빈도에 답변결과를 포함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표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28) 이에 대해서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은 알몸검사나 여성직원에 의한 남성보호외국인에 대한 몸 검사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표 14> 몸 검사에 대한 수치심여부

(단위 : %, 명)

| | 전 체 | | 남 자 | | 여 자 | |
|--------------|-----|------|-----|------|-----|------|
| | 빈 도 | 비 율 | 빈 도 | 비 율 | 빈 도 | 비 율 |
| 수치심을 느꼈다 | 50 | 36.5 | 41 | 36.9 | 5 | 35.7 |
|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 | 87 | 63.5 | 70 | 63.1 | 9 | 64.3 |

몸검사와 관련된 위와 같은 설문 결과는 신체검사는 보호외국인과 동일한 성의 보호소 직원이 담당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보호외국인들은 옷을 입은 상태로 몸수색을 받고 검색대를 통과한다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다. 권리고지 및 권리구제 관련

외국인보호규칙은 보호외국인에게 ‘보호소의 생활규칙²⁹⁾ 및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 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외국인보호규칙 제8조는 보호외국인에게 ‘보호소의 생활규칙 및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 방법 등’을 해당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미리 고지하고, 이 고지사항을 한국어·영어·중국어로 작성하여 보호외국인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⁰⁾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입소 시 생활규칙 및 권리에 대한 고지는 구두안내와 서면안내문 배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때 언어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내용은 또한 각 보호거실에 게시된다.

29)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12조 제1항은 생활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호외국인의 준수사항 및 하루생활 기준, 보안 및 위생상의 지시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30) 제8조 (생활규칙 등 알리기) ①소장은 보호시설의 생활규칙 및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사항은 한국어·영어·중국어(이하 “영어 등”이라 한다)로 작성하여 보호외국인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어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보호외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한 방법으로 게시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한편, <표 15>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보호외국인들 중 입소 시 직원으로부터 보호소 내 생활규칙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를 받았다고 답변한 경우는 52명인 29.9%에 불과하다. 생활규칙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변한 경우는 53명으로 30.5%이며 생활규칙에 대한 안내를 받았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고 답변한 경우가 23명인 13.2%이다. 즉 전체응답자의 43.7%인 76명이 생활규칙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설명을 들었어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15> 보호시설 생활규칙 설명여부

(단위 : %, 명)

| | 빈도 | 비율 |
|---------------------------------|-----|-------|
| 생활규칙에 대해 설명이나 안내 받은 적 없다 | 53 | 30.5 |
| 생활규칙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들었다 | 52 | 29.9 |
| 생활규칙에 관한 설명과 안내를 받았으나 이해할 수 없었다 | 23 | 13.2 |
| 미응답 | 46 | 26.5 |
| 합계 | 174 | 100.0 |

보호외국인들은 피구금자로서의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인 친지나 가족을 면회할 권리, 변호사나 자국의 영사와 면회하고 도움을 받을 권리, 구금된 사실에 대해 이의 신청할 권리, 보호시설 내의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또는 법무부에 청원할 권리, 외부로 편지를 쓰거나 전화할 권리 등에 대해서 알고 있는 빈도는 그리 높지 않다. 즉 보호외국인들이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입소할 때 고지 받은 권리는 주로 ‘외부로 편지를 쓰거나 전화할 권리’로 전체 응답자의 33.3%가 이러한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친지나 가족을 면회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고지 받은 경우는 32.2%이다. ‘변호사나 자국의 영사와 면회하고 도움을 받을 권리’는 22.4%, ‘시설 내의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에 진정 또는 법무부에 청원할 권리’는 11.5% 정도가 고지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구금된 사실에 대해 이의 신청할 권리’에 대해서는 9.8% 정도만 고지를 받은 것으로 나왔다.

<표 16> 권리고지

(단위 : %, 명)

| | 빈도 | 비율 |
|---|----|------|
| 친지나 가족을 면회할 권리 | 56 | 32.2 |
| 변호사나 자국의 영사와 면회하고 도움을 받을 권리 | 39 | 22.4 |
| 구금된 사실에 대해 이의 신청할 권리 | 17 | 9.8 |
| 보호시설 내의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또는 법무부에 청원할 권리 | 20 | 11.5 |
| 외부로 편지를 쓰거나 전화할 권리 | 58 | 33.3 |

이 때문에 보호외국인 중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권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41.0%에 불과하다. 출입국관리법 제55조 제1항이 “보호명령서에 의하여 보호된 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등은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호외국인의 59.0%인 79명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표 17> 이의신청 권리 인지 여부

(단위 : %, 명)

| | 빈도 | 비율 |
|-----|----|------|
| 예 | 55 | 41.0 |
| 아니오 | 79 | 59.0 |

보호외국인들이 권리고지를 받은 방법은 주로 보호소 벽에 붙어있는 안내문을 통해서이다. 안내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47.0%인 55명이며, 구두로 설명을 들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28.2%인 33명이다.

<표 18> 설명방법

(단위 : %, 명)

| | 빈 도 | 비 율 |
|----------------|-----|------|
| 책자 | 7 | 6.0 |
| 보호소에 벽에 붙은 안내문 | 55 | 47.0 |
| 말로 설명 | 33 | 28.2 |
| 기타 | 22 | 18.8 |

보호외국인 중 실제로 법무부에 청원을 했거나 우리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20명이다. 진정이나 청원을 제기한 경우는 대부분 남성보호외국인이며 여성보호외국인은 1명에 불과하다.

<표 19> 진정·청원 여부

(단위 : %, 명)

| | 전 체 | | 남 자 | | 여 자 | |
|----------------|-----|------|-----|------|-----|------|
| | 빈 도 | 비 율 | 빈 도 | 비 율 | 빈 도 | 비 율 |
| 진정·청원을 한 적이 있다 | 20 | 15.8 | 18 | 17.0 | 1 | 7.7 |
| 진정·청원을 한 적이 없다 | 107 | 84.2 | 88 | 83.0 | 12 | 92.3 |

보호외국인들이 진정이나 청원을 하지 않는 것은 주로 ‘출국을 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7.7%인 23명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으며, 20명은 ‘절차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라고 응답하였으며, ‘한국어를 잘못하기 때문에’, ‘받아 들여질 것 같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경우도 각각 18명이다.

보호외국인이 절차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진정이나 청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입소시 진정이나 청원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진정이나 청원제도의 근본 취지나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해당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함으로써 일정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한편,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언어적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각종 권리구제 절차가 아무리 제도화되어 있다고 해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보호실 측이 보호외국인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된 권리구제 신청서와 적절한 통역지원 방식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20> 진정·청원을 하지 않은 이유

(단위 : %, 명)

| | 전 체 | | 남 자 | | 여 자 | |
|------------------|-----|------|-----|------|-----|------|
| | 빈 도 | 비 율 | 빈 도 | 비 율 | 빈 도 | 비 율 |
| 오히려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 4 | 4.8 | 4 | 5.6 | 0 | 0.0 |
| 받아들여 질 것 같지 않아서 | 18 | 21.7 | 14 | 19.7 | 1 | 20.0 |
| 절차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 20 | 24.1 | 18 | 25.4 | 1 | 20.0 |
|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 18 | 21.7 | 16 | 22.5 | 1 | 20.0 |
| 출국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 23 | 27.7 | 19 | 26.8 | 2 | 40.0 |

보호외국인들은 보호시설 내에서 법률문제나 인권침해문제와 관련하여 주로 출입국 직원이나 보호시설 내 다른 보호외국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관리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26명, 보호시설 내 외국인수용자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23명이다. 그 밖에 합법체류 중인 다른 나라 출신 이주노동자나 한국주재 본국 대사관직원, 국제기구 직원, 다른 기관 공무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한다. 한편, 도움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응답자도 25명이었다.

<표 21> 도움 받은 사람

(단위 : %, 명)

| | 빈 도 | 비 율 |
|-------------------------|-----|------|
| 출입국관리국 직원 | 26 | 23.6 |
| 다른 공무원(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 8 | 7.3 |
| 보호시설 내 외국인 수용자 | 23 | 20.9 |
| 합법 체류 중인 다른 나라 출신 이주노동자 | 16 | 14.6 |
| 한국 주재 본국 대사관 직원 | 11 | 10.0 |
| 국제기구(UNHCR, IOM 등) 직원 | 9 | 8.2 |
|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관계자 | 4 | 3.6 |
| 변호사 | 7 | 6.4 |
| 종교인 | 7 | 6.4 |
| 기타 | 6 | 5.5 |
| 아무도 없다 | 25 | 22.3 |

라. 의료 및 운동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 제24조에 의하면 의사는 모든 피구금자에 대하여 입소 후 가능한 신속히, 그 후 필요에 따라 면접하고 진찰하여, 특히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바,

<표 22>에 의하면, 보호소 내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7.5%,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23.6%이다.

<표 22> 보호소 내 진료여부

(단위 : %, 명)

| | 빈 도 | 비 율 |
|----------|-----|-------|
| 받은 적이 있다 | 100 | 57.5 |
| 받은 적이 없다 | 41 | 23.6 |
| 미응답 | 33 | 18.9 |
| 합 계 | 174 | 100.0 |

화성외국인보호소에는 의사를 포함한 상근 의료인력이 3명 배치되어 있고 기

본적 의료기구도 갖추고 있어 문진 외에도 신체계측, 혈압측정, 소변검사, 심전도 검사, 상처 치료 및 봉합사의 발사 등을 처치할 수 있음에도 입소 후 의사에 의한 기본적 면접과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화성외국인보호소 제출자료에 의하면, 1개월 이상 보호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진은 100% 실시하고 있다.

<표 23>에 의하면, 외부진료를 요청하여 외부진료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와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11명이다. 남성보호외국인은 11.5%인 10명이 외부진료를 거절당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보호외국인은 거절당한 경우가 한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외부진료 요청여부

(단위 : %, 명)

| | 전 체 | | 남 자 | | 여 자 | |
|----------------|-----|------|-----|------|-----|------|
| | 빈 도 | 비 율 | 빈 도 | 비 율 | 빈 도 | 비 율 |
|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했다 | 11 | 10.6 | 10 | 11.5 | 0 | 0.0 |
| 요청을 하여 치료를 받았다 | 11 | 10.6 | 9 | 10.3 | 2 | 16.7 |
| 요청한 사실이 없다 | 82 | 78.8 | 68 | 78.2 | 10 | 83.3 |

보호외국인의 외부진료 요청이 거부되는 것은 주로 관계직원이 피병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보호외국인이 진료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조사 시에는 피병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응답한 빈도는 11명,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당했다고 응답한 빈도는 10명이었으며, 2차 조사 시에는 두 경우의 빈도가 각각 10명과 9명이었다. 돈이 없어서 외부진료를 거부당했다고 답변한 경우는 1차 조사 시에는 6명이었으나 2차 조사 시에는 12명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표 24-1> 외부진료요청 거부 이유

(단위 : %, 명)

| | 빈 도 | 비 율 |
|---------------------------|-----|------|
| 돈이 없다고 하자 출입국직원이 거부하였다 | 6 | 20.7 |
| 함께 갈 출입국 직원이 부족하다면서 거부하였다 | 2 | 6.9 |
| 피병이라고 거부하였다 | 11 | 37.9 |
| 특별한 이유를 말하지 않고 거부하였다 | 10 | 34.5 |

<표 24-2> 외부진료요청 거부 이유

(단위 : %, 명)

| | 빈 도 | 비 율 |
|---------------------------|-----|------|
| 돈이 없다고 하자 출입국직원이 거부하였다 | 12 | 34.3 |
| 함께 갈 출입국 직원이 부족하다면서 거부하였다 | 4 | 11.4 |
| 피병이라고 거부하였다 | 10 | 28.6 |
| 특별한 이유를 말하지 않고 거부하였다 | 9 | 25.7 |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제출한 외부진료 현황에 의하면, 2006년 1월 부터 2007년 4월까지 외부진료를 받은 보호외국인은 모두 127명인데 이중 병원을 무료로 이용한 경우 4명, 병원비용을 국비로 부담한 경우 6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17명은 자비로 부담하였다.

실외운동은 모든 피구금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 제21조 제1항은 운동과 관련하여 ‘실외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피구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¹⁾

그러나 운동의 빈도를 묻는 설문에 대해 매일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2차 조사 모두에서 5%에도 미치지 못했다. 1차 조사에서 일주일에 2~3회 운동을 하고 있다는 답변이 51.8%로 가장 많이 나왔고 일주일에 1회 운동을 하고 있다는 25.6%와 합하면, 전체 응답자의 77.4%가 일주일에 1번 내지 두세 번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차 조사에서는 일주일에 1회 운

31) 「국제인권원칙과 한국의 행형」. 116쪽, 서울지방변호사회, 역사비평사, 1993

동을 하고 있다는 답변이 35.2%로 증가하고 일주일에 2~3회 운동을 하고 있다는 답변이 13.1로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일주일에 한번 이상 운동을 하는 경우는 48.3%에 불과했다. 보호외국인의 규모가 증가한 2차 조사 시 보호외국인에 대한 통제와 계호의 어려움 때문에 운동의 빈도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보호외국인의 규모에 따라 운동과 같은 처우가 달라지는 것을 볼 때,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적정보호인원은 보호거실의 규모에 따라 정해질 문제가 아니라 보호외국인의 기본적 생활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인력과 프로그램 등을 종합하여 정해져야 할 문제이다.

<표 25-1> 운동시간

(단위 : %, 명)

| | 전 체 | | 남 자 | | 여 자 | |
|-----------|-----|------|-----|------|-----|------|
| | 빈 도 | 비 율 | 빈 도 | 비 율 | 빈 도 | 비 율 |
| 전혀 없다 | 16 | 11.7 | 12 | 10.6 | 2 | 14.3 |
| 한 달에 한두 번 | 8 | 5.8 | 6 | 5.3 | 0 | 0.0 |
| 일주일에 1회 | 35 | 25.6 | 31 | 27.4 | 2 | 14.3 |
| 일주일에 2~3회 | 71 | 51.8 | 59 | 52.2 | 9 | 64.3 |
| 매일 | 6 | 4.4 | 5 | 4.5 | 1 | 7.1 |

<표 25-2> 운동시간

(단위 : %, 명)

| | 전 체 | | 남 자 | | 여 자 | |
|-----------|-----|------|-----|------|-----|------|
| | 빈 도 | 비 율 | 빈 도 | 비 율 | 빈 도 | 비 율 |
| 전혀 없다 | 43 | 35.2 | 34 | 36.2 | 9 | 39.1 |
| 한 달에 한두 번 | 14 | 11.5 | 8 | 8.5 | 2 | 8.7 |
| 일주일에 1회 | 43 | 35.2 | 33 | 35.1 | 10 | 43.5 |
| 일주일에 2~3회 | 16 | 13.1 | 14 | 14.9 | 2 | 8.7 |
| 매일 | 6 | 4.9 | 5 | 5.3 | 0 | 0.0 |

마. 보호소 내의 인권침해 및 징벌

보호소 내에서 당한 괴롭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 대해 남성보호외국인의 85.7%, 여성보호외국인의 92.3%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 유형은 주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이며, 독거실 수용이나 집에 보내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 구타·폭행을 당했거나 소지품·돈 등을 빼앗겼다는 응답도 있었다.

<표 26> 보호소내의 괴롭힘

(단위 : %, 명)

| | 전 체 | | 남 자 | | 여 자 | |
|--------------|-----|------|-----|------|-----|------|
| | 빈 도 | 비 율 | 빈 도 | 비 율 | 빈 도 | 비 율 |
| 그런적 없다 | 111 | 88.1 | 90 | 85.7 | 12 | 92.3 |
| 구타·폭행 | 5 | 4.0 | 4 | 3.8 | 0 | 0.0 |
| 욕설, 모욕적인 말 | 9 | 7.1 | 8 | 7.6 | 1 | 7.7 |
| 소지품·돈 등을 빼앗김 | 3 | 2.4 | 1 | 1.0 | 0 | 0.0 |
| 성폭력, 성희롱 | 0 | 0.0 | 0 | 0.0 | 0 | 0.0 |
| 협박을 당함 | 7 | 5.6 | 7 | 6.7 | 0 | 0.0 |

특히 보호외국인 중 난민신청 후 관계직원으로부터 협박을 당했거나 불리한 처우를 당한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³²⁾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난민신청을 한 후 불허 판정을 받았다. 난민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동안 출입국직원들은 나에게 끊임없이 ‘너 집으로 되돌아가, You must go back home’ 이라고 말했다. 나처럼 종교를 바꾼 사람은 돌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나에게 돌아가라고 욕박지르고 고함을 지르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다. ... 그러던 중 대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나는 너무나도 놀랐다. ... 난민신청은 신청인의 보호를 위해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나중에 출입국직원이 대사관으로 전화로 연락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사례 #33, 남자)

32)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난민신청자는 29명에 불과하고 이들의 출신국도 매우 한정되어 있고, 심층면접에 응한 보호외국인 중 일부는 아직도 보호 중이어서 심층면접사례의 출신국을 밝힐 경우 신분이 드러날 우려가 있어 출신국을 밝히지 않았다.

잡히고 나서 나는 난민신청서를 요구했으나 6일 동안 신청서를 받지 못했다. 내가 UNHCR에 전화를 하고 나서야 신청서를 받을 수 있었다. 이의 신청까지 모두 불허되었는데, 당시에 출입국 직원이 나에게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나는 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출입국 직원은 그냥 나에게 '돌아가, Go Go' 라고만 했다. ... 관직(official)에 있는 사람이 나같이 갇혀 있는 힘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계속 말하는 것은 고문과 같은 것이다. 당시 나는 너무나도 모욕적이고 비인간적으로 느껴졌다.(사례 #38, 남자)

보호소 내에서 면회나 운동, 종교 활동 등을 위해 이동하는 중 수갑이나 포승을 착용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140명 중 107명이 착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33명이 착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자의 경우는 23.6%, 여자의 경우는 20.0%가 착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을 하여 남녀 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수갑이나 포승 등의 계구는 외국인보호규칙 제43조에서 자살, 자해, 도주 또는 폭행의 염려가 있는 보호외국인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면회나 운동, 종교활동 등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계구가 사용될 수는 없다. 전체 응답자 중 약 24%의 보호외국인이 이동 중 수갑이나 포승을 착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수갑이나 포승의 사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27>이동 중 수갑·포승 착용여부

(단위 : %, 명)

| | 전 체 | | 남 자 | | 여 자 | |
|-----------|-----|------|-----|------|-----|------|
| | 빈 도 | 비 율 | 빈 도 | 비 율 | 빈 도 | 비 율 |
| 착용한 적이 있다 | 33 | 23.6 | 27 | 23.3 | 3 | 20.0 |
| 착용한 적이 없다 | 107 | 76.4 | 89 | 76.7 | 12 | 80.0 |

1차 조사에서 독방에 수용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명이었는데, 2차 조사에서는 7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28-1> 독방 수용 여부

(단위 : %, 명)

| | 전 체 | | 남 자 | | 여 자 | |
|---------------|-----|------|-----|------|-----|-------|
| | 빈 도 | 비 율 | 빈 도 | 비 율 | 빈 도 | 비 율 |
| 독방에 수용된 적이 있다 | 2 | 1.4 | 2 | 1.7 | 0 | 0.0 |
| 독방에 수용된 적이 없다 | 139 | 98.6 | 115 | 98.3 | 13 | 100.0 |

<표 28-2> 독방 수용 여부

(단위 : %, 명)

| | 전 체 | | 남 자 | | 여 자 | |
|---------------|-----|------|-----|------|-----|------|
| | 빈 도 | 비 율 | 빈 도 | 비 율 | 빈 도 | 비 율 |
| 독방에 수용된 적이 있다 | 7 | 5.5 | 5 | 5.1 | 2 | 8.0 |
| 독방에 수용된 적이 없다 | 120 | 93.8 | 92 | 93.9 | 23 | 92.0 |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강제력의 행사와 더불어 보호 외국인을 격리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보호외국인의 자살 또는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도주,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 거부나 방해 등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력을 행사 하거나 해당외국인을 격리보호 할 수 있다.³³⁾

33) 제40조 (격리 보호) ①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무 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독방에 격리 보호할 수 있다.

1. 도주·난동·폭행·시설이나 물품파손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
2.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때
3. 자해 또는 동료외국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물품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할 목적으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물품 외의 물품을 몰래 소지하고 있거나 반입하려 한 때
4. 자살·자해를 꾀하거나 보호외국인을 선동하는 등 보호시설의 질서를 해할 목적으로 단식하는 때
5.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때
6. 정신질환·알콜중독·마약중독 증상이 있거나 그러한 증상이 의심되는 때

②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건경위와 격리보호의 필요성 등을 조사한 후 소장에게 사건발생보고를 하여야 한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제출한 독거실 수용현황을 보면, 2006년 1월 부터 2007년 4월까지의 기간동안 독거실 수용자는 총 46명으로 모두 남성이다. 독거실 수용 기간 별로 보면 2일간 보호된 사람은 7명, 3일간은 18명, 5일간은 21명이다. 독거실 수용사유는 주로 보호질서 문란이나 폭력 및 난동이며, 그 외 흡연, 유해물품 소지 및 반입, 흡연, 전염병, 탈주미수 등으로 독거실을 징벌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은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특별계호 전에 1회 사전 경고장을 발부하고 다시 위반하면 특별계호조치하고 있다고 한다.

격리수용은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 즉각 독거실 수용을 해제해야하는데, 보호질서 문란이나 폭력·난동 등을 사유로 최소 2일에서 최장 5일간 독거실 수용한 것을 보면 화성외국인보호소가 격리수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화성외국인보호소 내에서 직원의 실수로 여권이나 돈, 물건 등을 분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8명이다.

<표 29> 소지품 분실 경험

(단위 : %, 명)

| | 빈 도 | 비 율 |
|-------------|-----|-------|
| 분실한 한 적이 있다 | 8 | 4.6 |
| 분실한 적이 없다 | 127 | 73.0 |
| 미응답 | 38 | 21.8 |
| 합 계 | 174 | 100.0 |

- ③담당공무원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특별계호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한 후 특별계호지시서를 발부받아 격리 보호하고, 중점관리외국인기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격리 보호할 때에는 해당외국인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3. 종합평가

화성외국인보호소는 2000. 11. 신축 이전한 이후로 국내 최대규모의 외국인보호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과는 달리 생활시설로서 대부분의 보호외국인이 이곳에서 1주일 이상 생활하다가 출국하고 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외국인들에게 보호생활 만족도를 묻은 결과인 <표30>를 보면, 만족스럽다는 경우는 10.7%, 지낼만하다는 경우는 45.0%, 다소 고통스럽다는 경우는 21.3%, 매우 고통스럽다는 경우는 23.0%이다. 즉 과반수 이상인 55.7%는 보호소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으나 44.3%는 보호소 생활에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실 생활에 대한 시설에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특히 보호소 생활에 만족하지 않는 여성 응답자가 20%인 것에 비해 남성 응답자는 47.5%에 달해 여성보다는 남성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한 느낌

(단위 : %, 명)

| | 전 체 | | 남 자 | | 여 자 | |
|----------|-----|------|-----|------|-----|------|
| | 빈 도 | 비 율 | 빈 도 | 비 율 | 빈 도 | 비 율 |
| 만족스럽다 | 13 | 10.7 | 10 | 10.1 | 3 | 20.0 |
| 지낼 만하다 | 55 | 45.0 | 42 | 42.4 | 9 | 60.0 |
| 다소 고통스럽다 | 26 | 21.3 | 22 | 22.2 | 3 | 20.0 |
| 매우 고통스럽다 | 28 | 23.0 | 25 | 25.3 | 0 | 0.0 |

화성외국인보호소는 2005년 우리 위원회 실태조사 이후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보호외국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방문조사 결과, 보호외국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가. 시설문제

화성외국인보호소의 보호거실 출입문은 밖에서 겨우 한 사람 정도만 들고 날 수 있도록 개폐정도를 통제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 장치로 인해 화재

등 긴급대피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호외국인이 위협에 처할 가능성이 많다. 또한 무엇보다도 거실 밖 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거실의 출입문에 까지 이러한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은 보호외국인에게 보호가 아닌 구금되어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더할 뿐인 것으로 보호대상자라는 법적 지위에 부합하지 않아 보호외국인의 존엄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독거실에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독거실 안에서 외부와 소통하는데 일정한 제약이 있으며 구관독거실 내 환풍기, 온수 시설, 사물함, 식탁 등 생활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독거실 내 화장실의 차폐시설을 개선하여 몸이 필요최소한도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실 밖 복도에 설치된 정수기는 보호외국인의 인격권 존중과 편의를 고려하여 거실 내부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보호외국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정수기를 거실 밖에 둬으로써 사용 시 마다 보호외국인이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화장실과 샤워실 사용자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도록 차폐시설과 투명 가림막 시설을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나. 처우문제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은 입소 시 몸 검사를 보호외국인과 동일한 성의 보호소 직원이 담당하고, 옷을 입은 채로 실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일부 남성보호외국인은 여성 직원으로부터 몸 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속옷을 입고 검사를 받았거나 심지어 알몸상태로 검사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입소 시 몸 검사의 현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과잉검사라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보호소에 도착한 외국인들에 대한 생활안내, 권리고지 및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안내가 해당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자세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보호외국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적절한 방식이 도입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보호외국인의 운동이 보호외국인의 규모에 따라 일관성 없게 실시되고 있는 바, 그 현황을 점검하여 운동기회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보호복과 침구류의 교환과 세탁 간격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청결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수건이나 샴푸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면회시간과 관련하여 보호외국인에게 출국 준비를 위해 동료 등과의 면회가 필수적임에도, 현행과 같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평일과 토요일 오전의 면회만 허용하고 있는 것은 보호외국인의 외부 교통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공휴일이나 일과 후 저녁 시간에 접견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보호소 내에서 면회나 운동, 종교 활동 등을 위해 이동하는 중 수갑이나 포승을 착용하는 실태를 점검하여, 수갑이나 포승 등의 계구가 외국인보호규칙 제43조에서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징벌적 독거수용은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독거수용 시 보호외국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며 독거수용의 집행을 통제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엄격히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보호와 심사업무 담당자 등은 보호외국인과 직접 대면하여 외국인의 보호생활을 지원하고 고충을 해결해주며, 강제퇴거를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등 보호외국인의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 그런데 화성외국인보호소 내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독거실 수용이나 집에 보내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 등을 당했다는 일부 보호외국인도 있어 보호와 심사업무 담당자의 인권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인권교육 등을 더욱 강화하는 외에 보호외국인 대면업무 수행 시 이름표를 달도록 하는 등의 보완적 조치가 필요하다.

IV. 시정이 필요한 사항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의 시정이 필요하다

1. 보호거실 출입문의 개폐정도를 통제하는 장치 제거
2. 독거실 환풍기, 냉·난방 및 온수시설 설치, 화장실 차폐시설 보완 등 보호환경 개선, 인터폰 설치 등 독거실 안의 외부 소통방식 마련
3. 거실 밖 복도에 설치된 정수기를 거실 내부에 설치
4. 화장실과 샤워실 사용자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도록 차폐시설과 투명 가림막 시설을 보완
5. 입소 시 몸 검사가 보호외국인과 동일한 성의 보호소 직원에 의해 개인별로 이루어지되, 특정한 사유 없이 알몸검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
6. 보호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과 언어로 이루어지는 생활규칙 및 권리 구제 안내
7. 보호외국인의 운동시간과 횟수를 일정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적어도 매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
8. 보호외국인의 속옷이나 양말반입의 적극적 허용, 보호복과 침구류의 청결유지
9. 보호외국인의 의료정보를 보호하고 의료법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의무기록 관리를 개선
10. 수건이나 샴푸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 지급
11. 공휴일이나 일과 후 저녁 시간에 접견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대안 마련
12. 면회나 운동, 종교 활동 등을 위한 보호소 내 이동 시 수갑이나 포승을 착용하는 실태를 점검하여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13. 보호외국인에 대한 징벌적 격리수용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격리수용 시 보호외국인에게 항변기회를 보장하며, 내부적 통제절차를 강화
14. 직원, 용역직원, 공익근무요원 등 보호업무 담당자 및 보호외국인 대면업무 수행자는 보호외국인 접촉 시 이름표 패찰

청주외국인보호소

I. 조사개요

1. 조사일정

- 자료제출 요구 : 2007. 5. 29.
- 방문조사 : 2007. 6. 21.(목)
- 조사결과에 대한 청주외국인보호소 의견제출 요구 : 2007. 11. 30.

2. 방문조사 참가자

- 외부전문가
양혜우, 김민정, 이지연(이주노동자인권연대)
곽영숙(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김철효 (국제이주기구, IOM)
장서연(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김재원(이주여성인권연대)
이병렬(한중대학교 사회학과)
- 위원회 : 이석준, 문은현(이주인권팀), 배윤호(부산지역사무소)

3. 조사방법

- 자료조사
- 설문조사
- 심층면접 조사
- 시설조사

※ 보호외국인에 대한 설문조사는 전수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설문은 조사관이 보호실 각 방을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45부였다

설문지 조사에 응한 여성보호외국인은 2명이었는데,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어 분석에서 남성, 여성을 구분하지 않았다.

회수된 설문지의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시설조사는 조사표를 구성하여 O, X 또는 수치를 기재하였으며, 조사자의 평가도 기재하였다.

II. 청주외국인보호소 보호 업무 개관³⁴⁾

1. 보호시설 현황

- 대지 : 6,400평, 건평 : 1,327평(행정동323평, 보호동1,004평)
- 보호동 시설 규모

| 면적(평) | 보호실 수 | | 수용인원 | | 감시실수 |
|--------|-------|-----|-----------------|--------|------|
| 1,004평 | 일반실 | 16실 | 남 136명 여 76명 | 총 212명 | 3실 |
| | 독거실 | 2실 | 2명 | | |

34) 이 장의 내용은 2007. 6. 21., 11. 20. 청주외국인보호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발췌한 것이다.

2. 외국인 보호현황

가.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6월 |
|---------|-------|-------|----------|
| 보호외국인 수 | 5,068 | 2,030 | 984 |

나. 국적별 현황(개소이후 - 2007. 6.)

(단위 : 명)

| 구분 | 계 | 중 국 | 파키스탄 | 방글라데시 | 몽 골 | 이란 | 필리핀 | 네팔 | 기 타 |
|----------|-------|-------|------|-------|-----|----|-----|----|-------|
| 2005 | 5,068 | 1,418 | 122 | 333 | 193 | 29 | 182 | 39 | 2,752 |
| 2006 | 2,030 | 604 | 50 | 121 | 106 | 17 | 92 | 37 | 1,003 |
| 2007. 6. | 984 | 429 | 10 | 40 | 47 | 5 | 16 | 4 | 433 |

다. 강제퇴거 현황(개소이후 - 2007. 6.)

(단위 : 명)

| 구분 | 계 | 중 국 | 파키스탄 | 방글라데시 | 몽 골 | 이란 | 필리핀 | 네팔 | 기 타 |
|----------|-------|-------|------|-------|-----|----|-----|----|-------|
| 2004 | 751 | 119 | 12 | 71 | 13 | 0 | 31 | 13 | 492 |
| 2005 | 5,122 | 1,418 | 124 | 337 | 195 | 30 | 192 | 41 | 2,785 |
| 2006 | 1,956 | 587 | 49 | 112 | 107 | 16 | 89 | 36 | 960 |
| 2007. 6. | 1,079 | 445 | 11 | 47 | 49 | 6 | 20 | 5 | 496 |

라. 피보호외국인 중 난민신청자 수(개소이후 - 2007. 6.)

(단위 : 명)

| 계 | 중국 | 이란 | 미얀마 | 라이베리아 | 코트디부아르 |
|---|----|----|-----|-------|--------|
| 5 | 1 | 1 | 1 | 1 | 1 |

마. 난민신청 처리결과(개소이후 - 2007. 6.)

(단위 : 명)

| 계 | 인정 | 인도적 체류허가 | 불허 | 철회 |
|---|----|----------|----|----|
| 5 | 0 | 2 | 1 | 2 |

3. 외국인고충처리 현황

| 구분 | 계 | 체불임금해결 인원(금액 : 천원) | 의료구호 | 기타 |
|------|------|-----------------------|------|------|
| 2006 | 874명 | 494명(638,573) | 104명 | 276명 |
| 2007 | 791명 | 302(372,633) | 36명 | 453명 |

4. 도서류 보유 현황

(단위 : 권)

| | 합계 | 베트남 | 방글라데시 | 중국 | 인도네시아 | 네팔 | 태국 | 기타 |
|----|-------|-----|-------|-----|-------|-----|-----|-----|
| 권수 | 3,009 | 504 | 502 | 501 | 253 | 246 | 232 | 771 |

5. 소방시설 설치 현황

(단위 : 개)

| 소화기 | 소화전 | 스프링쿨러 | 감지기 | 비상방송설비 | 유도등 | 비상조명등 | 방수구 | 완강기 |
|-----|-----|-------|-----|--------|-----|-------|-----|-----|
| 42 | 11 | 설치예정 | 0 | 0 | 49 | 25 | 0 | 0 |

6. 국비 강제퇴거 집행내역

| | 2006 | 2007.1-5 |
|----|------------|------------|
| 인원 | 8명 | 6명 |
| 금액 | 8,412,400원 | 2,850,600원 |

Ⅲ. 조사결과

1. 시설조사 결과 분석

가. 개요

1) 건물개요

청주외국인보호소는 청주여자교도소의 작업장을 수용시설로 개조하여 2004년 11월부터 보호업무를 개시하였다. 대지 22,507㎡(6,808평) 행정동 1,067㎡(323평), 보호동 3,321㎡(1,004평)으로, 보호실 16개실과 특별계호실 2개실 등이 있다. 청주외국인보호소의 행정동에서 보호동 사이의 거리는 약 100m 정도인데 두 건물 사이의 공터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2) 보호시설 개요

청주외국인보호소의 행정동 뒤편으로 철문을 지나면 연두색 철망으로 구획을 나누어 놓은 운동장이 있고, 그 뒤로 보호동이 있다. 보호동 건물은 남향으로, 각 보호실 정면 복도에 비교적 넓은 창문이 있어서 채광과 환기 상태가 양호하다. 감시실은 건물 오른쪽에 위치해있다. 보호실 뒤편에는 외벽을 쌓아 내벽과의 사이에 감시용 통로가 만들어졌다.

보호가능 인원은 남성 136명, 여성 76명으로 전체 212명이다. 1~2층에 남성이, 3층에 여성이 보호되어 있다. 개소 이후 일평균 90명 정도 수용되고 있다.

청주외국인보호소에는 외국인대기실, 진료실, 약제실, 기계실, 조리실, 물품보관소, 운동장, 면회실, 세탁실, 변호사 접견실, 운동장 등이 있고, 자체 구급차량과 35인승, 45인승, 승합차 등 3대의 호송 차량 등이 있다.

아동이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거실은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4월까지 청주 보호소에 보호된 17세 미만 아동은 없었다.

3) 보호업무 직원 및 관련자의 현황과 업무 내용

청주외국인보호소의 경비과 직원은 총 28명이며 이중 여성 직원은 4명이다. 경비용역 직원은 남성 17명, 여성 7명으로 총 24명이다. 청소 용역직원 2명으로 모두 여성이다. 공익근무요원은 6명이며, 이중 경비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 요원은 3명이다.

청주외국인보호소 직원의 보호 업무는 3교대로 이루어진다. 경비과 직원은 보호, 외국인 경비 계호, 강제퇴거 집행, 외국인 외부 호송 시 계호 지원 등 보호에 관련된 업무전반을 수행한다. 경비용역직원은 보호동의 경비보조 업무를 담당하며, 청사 내 환경 정리 등도 수행한다. 용역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된다. 공익요원은 경비 보조, 행정 및 계호 보조 업무를 담당한다.

보호 외국인의 강제퇴거, 임금체불 등의 문제 등을 담당하는 심사과의 직원은 10여명이다.

상근의사는 2명으로 외과전문의 1명, 공중보건의 1명이다. 간호사는 배치되어 있지 않다.

나. 개별시설 현황

1) 입·퇴소자 대기실

청주외국인보호소는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이 폐쇄된 이후 충청 이남 지역에서 단속·보호된 외국인들이 이송되고 있다. 보호외국인은 호송차량

을 타고 보호소 옆 출입문을 통해 들어오며, 입소 시 소지하고 있던 물품과 가방을 물품 보관실에 보관한 후 입·퇴소자 대기실에서 입소 안내를 받는다.

청주외국인보호소는 보호동 1층의 1개 보호거실을 남성용 입·퇴소자 대기실로, 3층의 1개 보호거실을 여성용 입·퇴소자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다. 입·퇴소자 대기실에서 보호외국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과 금품을 보호소 직원에게 보관하며, 보호소 직원은 보호외국인에게 보관 접수증을 발급한다. 현금은 보호소 내 금고에 보관되었다가 보호외국인 퇴소 시 반환된다. 환전을 원하는 외국인을 위해 퇴소 당일에 인근 은행직원이 방문해서 외화로 환전해 주고 있으며, 보호외국인은 여행사 직원으로부터 귀국 항공권을 구입한다.

보호외국인은 금품을 보관한 후 보호소 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다. 청주보호소는 보호소 생활에 대한 안내를 영상물로 제작하여 한국어로 설명하고 중국어 자막을 만들어 상영하고 있다. 안내내용은 반입 가능한 물품과 불가능한 물품, 현금 보관 요령 및 방법, 물품 보관 방법, 보호복 지급방법, 기상 취침시간 및 실내 생활 안내, 식사시간 안내 및 방법, 진료 안내, 운동 시간 및 방법, 면회 시간 및 방법, 매점이용방법, 무료이발 지원서비스, 퇴소 준비, 현금 인출 시 서명과 항공권 가격 지불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 영상물은 보호외국인들의 일상적인 생활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한 것이어서 언어가 소통되지 않더라도 영상물을 봄으로써 보호소 생활의 대강을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 영상물에는 보호외국인들의 권리,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 강제퇴거에 대한 이의신청과 절차, 임금체불 등 고충 처리에 대한 안내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러한 내용이 보충되고 여러 언어로 제작 된다면 보호외국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탈의실

보호외국인이 생활안내를 받은 후에는 신체검사를 받는다.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는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서 입고 있던 보호복을 그대로 입기 때문에 별도로 옷을 갈아입는 절차는 없다. 신체검사는 보호외국인과 같은 성의 직원이 담당한다. 신체검사 시 관련 직원은 보호외국인의 몸에 상처가 있는지, 담배, 라이터 등의 반입 불허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보호

외국인이 외관상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다고 주장할 경우 본인의 진술에 의거하여, 신체검사 용지에 상처 부위를 작성한다.

남자 보호외국인은 보호복으로 갈아입은 후 신체검사를 실시하며, 여성의 경우 옷을 입은 채로 외표검사를 실시한다.

신체검사 후 슬리퍼와 플라스틱 물컵, 플라스틱 숟가락, 모포, 베개를 지급받고 보호거실을 배정받는다.

3) 물품 보관실

보호소에는 물품 보관실이 보호외국인의 성별로 분리되어 있다. 남성보호외국인의 물품 보관소는 보호동 부속건물에 있고, 여성보호외국인의 물품 보관소는 보호동 여성보호실과 같은 층에 있다. 심층면접 조사 결과, 여성보호외국인들은 보호거실과 물품보관소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서 자신의 보관물품 안에서 필요한 물건을 반입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호직원들도 보호여성들의 물품반입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 보관함은 다른 보호소처럼 조립식 앵글에 나무판자를 얹어 칸을 나눈 형태로, 개폐를 위한 문이 달려있지 않아 물품은 밖에서 볼 수 있는 상태로 각 칸마다 개방되어 있다. 보관함의 수는 보호외국인의 숫자에 충분한 정도로 갖추어져 있지만 그 크기는 여행용가방처럼 크기가 큰 것들은 보관할 수 없는 상태여서 보관함에 들어가지 못하는 보호외국인의 물품은 보관함 밖에 놓을 수밖에 없다.

물품 보관 시 보호외국인에게 배부되는 보관증에는 물건의 항목과 개수가 기록되며, 그 밖에 보호소에서 배급하는 담요, 의복 등의 항목도 기재된다.

4) 보호거실

(가) 독거실(특별계호실)

청주보호소는 총 2개의 독거실(특별계호실)이 있다. 독거실은 2층에 있으며

문 위에 특별계호실이라는 안내 표지가 있다. 독거실 입구 철문을 열면 두개의 독거실이 나란히 붙어 있다. 독거실 방문은 육중한 철문으로 되어있어서 독거실 방문과 출입문을 닫으면 외부와의 대화 소통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방에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어서 감시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다. 독거실 내부 출입문 위에는 감시카메라가 1대 설치되어 있어 방의 내부는 물론 화장실까지 모든 곳을 감시할 수 있다.

독거실에는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침구류만 반입이 가능하다. 밀폐된 공간에 냉방장치가 되어 있지 않으며, 선풍기, 환풍기도 없다. 독거실의 화장실에는 출입문은 없고, 수세식 변기 앞에 몸을 가릴 수 있는 83cm의 차폐시설이 있다. 변기에 앉았을 경우 몸의 2/3까지 노출된다. 세면대나 샤워기는 없고 수도꼭지가 두개 있다. 보호외국인은 세숫대야를 사용하고 있다. 조명은 중앙에서 통제한다. 온수는 아침, 저녁에 공급된다.³⁵⁾

독거실내 화장실 쪽으로 작은 창문이 하나 있으나 외벽에 막혀있고, 외벽 창문은 화장실 창문보다 높이 설치되어 있어서 자연환기, 통풍, 채광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독거실 내부의 조도는 하루 종일 불을 켜놓아야만 생활이 가능한 정도이다.

(나) 혼거실

청주외국인보호소의 혼거실은 총 16개실로 1층에 5개실, 2층에 6개실, 3층에 5개실이 있다. 1~2층에는 남성이, 3층에는 여성이 보호되어있다. 1층과 3층의 입구로부터 첫 번째 보호거실은 남, 여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고, 각 층의 가장 끝 방은 일반 혼거실보다 작은 크기의 방이 각각 한개 씩 있다. 각각의 혼거실은 거실, 침실, 화장실을 갖추고 있다.

거실 앞 쪽은 쇠창살로 뚫려 있어 외부와 소통, 환기, 내부 감시가 용이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보호거실 앞면은 복도이다. 복도 바깥쪽은 바로 외부와 연

35) 청주외국인보호소 측에 의하면 난방이 지원 된다고 한다.

결되어 있고 복도 벽에 대형 창문이 있는데, 시야를 막는 건물이 전혀 없어 자연환기와 채광이 좋은 편이다.

보호거실의 출입문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쇠창살로 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두, 세 명이 서 있을 수 있는 현관 모양의 네모난 공간이 있고, 이 공간 안에 설치된 쇠창살의 왼편에 있는 출입문을 다시 열어야 보호거실에 들어갈 수 있다.³⁶⁾ 출입문 옆쪽으로 배식 창구가 있다.

거실 바닥은 인조석으로 되어있으며, 거실 내부에 전화기, 텔레비전, 정수기, 고정식 나무 식탁이 놓여있다. 보호외국인들은 낮에는 주로 거실에서 생활하며 텔레비전을 보거나 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침실과 거실을 구분하는 벽면은 절반이상부터 나무재질의 틀에 투명 아크릴 벽이다. 거실에서 침실 안이 들여다보인다. 침실은 침상이 없이 장판이 깔린 방으로 슬리퍼를 벗고 들어가야 한다. 침실에는 침구보관용 선반이 있고,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은 없다. 침구 보관함 아래쪽으로 벽을 가로질러 스테인레스 파이프 두줄을 설치해 개인용 빨래를 널 수 있도록 하였다. 심층면접 시 한 외국인은 침실상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잠자는 바닥이 너무 차갑고 냄새도 심하다. 그래서 허리가 많이 아프고 잠을 잘 못 잔다. (사례# 중국, 남자)

침실 안쪽에 화장실이 있다. 출입문은 유리로 되어 있고 화장실 벽은 바닥에서부터 85cm 위쪽으로 투명한 아크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 안이 들여다보인다. 화장실 문을 열면 오른쪽에 설치된 변기를 가리느라 106cm의 1미터 정도의 차폐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화장실 변기 차폐시설이 낮아서 옆의 세면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용변을 보고 있는 사람의 몸이 거의 다 노출된다. 또한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상반신이 침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출된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아크릴 유리창문에 검은색 셀로판테이프를 붙

36) 청주외국인보호소는 보호거실 출입문을 이중으로 설치하여 보호외국인들이 한꺼번에 나오지 못하게 통제하고 있다.

여 놓았지만 몸을 충분히 가리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보호거실에는 양변기 2개, 소변기 2개, 세면대 2개, 고정식 샤워기 2개가 설치되어 있다.

화장실에는 환풍기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창문이 있으나, 창문이 외부로 바로 통하지 않고 외벽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자연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보호거실에 보통 20여명이 생활하기 때문에 화장실의 악취가 쉽게 빠지기 어렵다.

화장실에는 휴지통이 없고, 휴지걸이도 없다. 휴지는 변기 위에 놓거나 조립식 칸막이 위에 놓고 사용하고 있으며, 샤워 시 옷을 걸어놓을 수 있는 고정식 고리나 선반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침실 천정에는 냉방과 환기를 겸하는 냉풍기가 있다. 난방은 온돌장치이다. 조명은 형광등이고, 취침 등은 백열등을 사용하고 있다. TV 채널은 수용자가 직접 통제할 수 있으며, 76개의 케이블방송 채널이 제공된다. TV시청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공중전화기는 IC 전화로 거실에 1개씩 있고, 사용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사용시간 이후에는 전원이 꺼진다. 공중전화 카드는 감시실에 구비되어 있어서 보호외국인이 원할 때 돈을 내고 구입할 수 있다.

보호거실 출입문 벽 위에 감시카메라가 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카메라로 거실과 침실의 전체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화장실은 사람이 있는지 정도만 확인 할 수 있다. 남성보호거실의 감시카메라 모니터링은 2층 감시실의 남성 직원에 의해 이루어지며, 여성보호거실 감시카메라 모니터링은 3층 감시실 여성 직원에 의해 이뤄진다.

청소는 매일저녁 인원점검시 대걸레를 지급하여 보호외국인이 실시하도록 하

며, 빗자루, 쓰레받기, 손걸레는 수시로 청소할 수 있도록 보호실내에 상시 비치되어 있다. 청소도구 중에서 변기 청소 도구는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 보호소 직원에 의하면, 실내소독은 보호 외국인들이 운동을 할 때 비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한다.

훈거 실은 남향이고, 보호거실 앞쪽이 트여있어서 환기와 채광이 양호한 편이다. 화장실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 환기의 문제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이다.

한편, 청주외국인보호소에는 보호거실 통로에 철장과 철문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 예를 들어 3호실, 4호실, 5호실의 경우 복도에 설치된 철문을 2개 통과하고, 다시 출입 철문 두 번을 지나야 보호거실에 들어갈 수 있다.

청주외국인보호소는 다른 보호소와 달리 정수기를 거실 안에 설치해 놓았는데 외국인에 의한 훼손 여부는 거의 없다는 것이 보호소 직원의 설명이다.

5) 의복과 침구류

보호소 내에서는 보호복을 착용해야한다. 보호외국인들에게는 하복으로 반팔과 반바지의 관복이, 동복으로 긴팔과 긴바지의 관복이 지급되며 춘추복은 지급되지 않는다. 청주외국인보호소는 하복과 동복을 지급하는 시기를 특별히 정하지 않고 기후나 외국인의 상태 등에 맞추어 지급한다. 보호복의 세탁은 보호 외국인 개인이 하지 않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 새것으로 교환할 수 있다.³⁷⁾

옷의 재질은 100% 합성섬유이어서 보호복만으로는 통풍이나 땀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여성의 경우 속옷, 양말 등 자신의 물건이 모두 반입 가능하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속옷 한 벌만 반입이 허용되고 있다. 보호소에서 지급되는 보호복이 보호외국인의 신체조건에 맞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37) 방문조사 당시에는 보호외국인이 100명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복 교환에 문제가 없었으나, 보호 외국인의 수가 많을 때에도 의복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보호소에서 지급된 옷은 너무 작고(체구가 큰 편이어서 옷이 꼭 끼어 있는 상태), 침구는 너무 덩다.(사례# ,스리랑카, 남자)

침구류는 기본적으로 매트리스 1개와 담요 3장이 지급되는데, 추울 때는 담요 1장이 추가로 지급된다. 매트리스 속에는 스펀지가 들어있고 매트리스 걸 커버를 벗기기가 매우 불편해서 침구류 세탁을 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보호소 직원에 의하면, 보호외국인의 운동시간에 매트리스를 햇빛에 널어서 소독을 하고 있다고 한다.

6) 세탁시설

세탁실은 2층에 있는데, 대형 세탁기 1대, 건조기가 1대 있다. 세탁은 청소 용역직원 2명이 담당하고 있다. 세탁실 청결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7) 의료시설

의료진으로는 외과 전문의 1명, 공중보건외과 1명이 있다. 간호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없다. 진료는 매주 월요일, 목요일 2회 진료실에서 실시하고 그 외 요일은 환자가 발생하는 대로 진료한다.

보호소에 비치되어 있는 의료기구는 혈압계, 청진기, 심전도, 비상 산소호흡기, 이경, 의료용자외선 소독기, 고압멸균기, 링거, 혈압기, 주사기이며, 일반 개인의원 수준의 1차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청주외국인보호소 측의 설명이다.

청주외국인보호소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보호소 인근 하나병원과 충북대학교 부속 병원에 의뢰하고 있으며, 병원비는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외부진료는 치과치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산부인과 진료이다. 청주외국인보호소가 제출한 개소 이후 2007. 6.까지의 외부진료 현황을 보면, 총 54명이 외부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진료를 위해 지급된 국비는 4,457,960원이다. 보호외국인 응급상황 발생시 담당의사와 연락하여 응급진료를 시행하며,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하나병원이나 충북대학교부속병원으로 이송한다.

진료는 담당 주치의와 공중보건과의가 함께 담당하고 있으며, 진료 내용을 각자 엑셀파일로 저장하고 있다. 청주보호소는 자체 제작한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료 당일 날 진료차트를 출력하여 의사서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진료 후 투약이 필요한 환자는 출입국 직원이나 공익 요원이 처방된 약을 보호외국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정기진료 시 처치를 받는 환자 대부분은 계절질병 환자로 감기, 땀띠, 피부발진, 소화기 환자이다. 야간이나 휴일에는 의사의 처방 안내문에 따라 직원들이 상비약(일반의약품)을 지급하며, 간단한 증상이 아닌 경우는 담당의사에게 연락을 취한다.

1개월 이상 보호자 건강검진 실시여부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청주외국인보호소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 달 이상 보호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두 달에 한번 이상 의무관이나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현행 외국인보호규칙의 규정³⁸⁾에 따라 청주외국인보호소는 1개월 이상 보호된 자에 대해 전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 검진은 주로 문진으로 이루어지며, 검진 내용은 혈압, 맥박, 내과 등의 1차 검진이다.

8) 여가활동

청주외국인보호소는 운동장을 3구역으로 나누어 각 경계에 철조망을 설치해 놓았다. 한꺼번에 여러 보호거실 외국인들이 섞이지 않고 운동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동장을 분리해 놓았다는 것이 보호소 측의 설명이다.

운동은 매일 30분간 실시하고 있으며³⁹⁾ 운동 기구로는 축구공, 배구공, 배드민턴, 훌라후프가 있다. 운동장 바닥은 흙이고, 그늘을 피할 수 있는 나무나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와 같은 휴식시설은 없다.⁴⁰⁾

38) 외국인 보호 규칙 제 18조(건강진단)

39) 청주외국인보호소의 공식답변은 운동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보호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일주일에 2, 3회 한다는 것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매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1명이었다.

40) 지난 2005년 우리 위원회의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시에도 청주외국인보

청주보호소에는 2층 세탁실 맞은 편 벽면에 책장을 설치하여 도서를 비치하고 있다. 보유도서는 총 3,009권으로 각 언어별 도서의 권수는 베트남어 504, 방글라데시어 502, 중국어 501, 인도네시아어 253, 네팔어 246, 태국어 232, 기타어 771권이다. 많은 도서를 기아대책본부, 사랑의열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으로부터 기증받았다.

도서 대출은 외국인이 책을 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책장에서 보호소 직원이 임의로 책을 선택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보호외국인이 어떤 책이 비치되어 있는지 도서 목록을 확인 할 수 없고, 도서를 대출 할 수 있는 요일이나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도서 대출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보유도서 목록은 없으나, 도서 반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출일지는 작성되고 있었다. 신문 구독을 하고 있는 외국인은 없다.⁴¹⁾

보호외국인이 원할 경우 집필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필기도구는 필요시 보호외국인이 직원들에게 요청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노트 등 종이류 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화기 옆에 메모지와 볼펜이 구비되어 있고, 각 보호거실별로 볼펜 2~3개가 비치되어 있다.

오락이나 놀이 기구는 특별히 비치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보호거실에서는 식탁 테이블을 파서 장기 모양을 만들어 오락 대상으로 즐기고 있었다.

UN 피구금지 처우 최저기준규칙은 도서와 관련하여 모든 시설은 모든 범주의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오락적, 교육적인 도서를 충분히 비치한 도서실을 갖추어야 하며 수용자들이 이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²⁾ 그러나 생활시설인 청주외국인보호소 내에 여가 활용 프로그램이나 방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보호 외국인들이 출국 전까지 TV나

호소 보호외국인들은 한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운동을 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화성외국인보호소처럼 차양막을 설치하는 등 보호외국인들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1) 수요가 없다는 것이 보호소측의 설명이다.

42) UN 피구금지 처우 최저기준규칙 제40조

보면서 자유시간을 무료하게 보내고 있다. 게다가 보호외국인이 보호거실 내에서 소수에 속하는 국가 출신인 경우 TV 프로그램 채널도 선택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한 보호외국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스리랑카말로 씌어진 책이 없기 때문에 책도 못 읽고, 같은 방에 중국인들이 많아서 중국인들이 TV 채널을 선택하기 때문에 TV도 못 본다. 같은 방에 다른 스리랑카 사람이 아무도 없다. 무척 심심하다(사례#, 스리랑카, 남자)

청주보호소에서는 낮에 담요나 매트리스를 깔고 눕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낮에 잠을 자면 밤에 잠을 자지 않아서 옆 사람의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 금지이유인데 담요를 펴고 누울 수 없기 때문에 맨바닥에 비스듬히 기대서 낮잠을 자고 있는 외국인도 관찰되었다. 특히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제출한 독거실 수용현황에는 낮에 무단으로 모포를 내려 덮는 등 직원의 정당한 명령거부와 보호질서 문란을 이유로 1일간 독거실에 수용된 사례가 있다. 또한 청주외국인보호소의 경비근무세부시행지침인 사안별 특별보호 기간은 보호방 내에서 큰 소리로 보호외국인의 휴식 또는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2일간 특별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9) 식사 및 조리시설

식사는 보호소 내에서 자체 조리가 가능하다. 1인당 하루 예산은 3,900원이다. 영양사 1명이 배치되어 있고, 10명의 조리사가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조리사들은 조리 시에 위생모와 위생 장갑을 착용하고 식판에 뚜껑을 단아서 배식하고 있어서 조리과정이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편이었다.

급식은 1식 3찬이며 식사는 식판에 담겨져 배식구를 통해 배급되고, 보호외국인들은 거실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한다. 식기구로는 플라스틱 숟가락만 지급되고, 젓가락이나 포크는 허용되지 않는다. 숟가락과 개인용 플라스틱 컵을 보호외국인이 각자 보관하며 사용한다. 식수로는 정수기 물을 사용한다.

아침식단으로 빵과 달걀, 우유나 두유가 제공되고, 점심과 저녁식단으로 한식이 제공된다. 음식의 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보호외국인들에게는 밥이 추가로

제공된다. 그러나 보호외국인들 중에는 식사량이 충분하지 않아 배고픔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고, 특히 돈이 없는 보호외국인은 간식을 구입할 수도 없어 이를 해소할 방법도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배가 고프다는 것이다. 보호소의 식사는 그리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보호소에서 제공되는 세끼 식사만으로는 견디기 힘들다. 특히 밤에 잠이 잘 들지 않기 때문에 늦은 밤이 되면 무척 배가 고프다. 그래서 아침에 주는 빵, 계란, 우유 중 빵과 우유를 남겨 두었다가 밤에 먹기도 한다. 매점이 있지만 돈이 없다. 여기 들어온 지 한 달 쯤 지나면 누구든지 돈이 다 떨어지지만 돈을 부쳐 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배가 고파도 참는 수 밖에 없다.(사례# , 키르기스스탄, 남자)

특정 종교인에 대한 배려로 돼지고기와 소고기류는 제공되지 않는다. 아침은 8시, 점심은 11시 30분, 저녁은 6시에 배식된다.

10) 면회

면회실은 총 3개실이 있으며, 보외국인이 면회실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수갑을 채용하지 않는다. 면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평일에만 가능하다. 하루 면회 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면회 시간은 30분이다. 면회 시간외 방문한 일반인에게 접견은 허용되지 않고 물품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면회실은 면회자와 피면회자 좌석 사이에 투명 아크릴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부분의 아크릴판에 구멍이 뚫려있다. 면회 시 직원이 내용을 감시하지는 않고 있다. 특별 면회는 변호사, 보호외국인의 자국 영사 등의 방문에 해당되며, 소장의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다.

부부나 가족이 함께 수용되어 있을 때는 보호소안에서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주 1회 만남을 주선하고, 면회 시 녹차를 제공한다고 한다.

11) 중앙통제실(CCTV 감시실)

청주외국인보호소에는 총 35대의 감시카메라가 각 보호거실의 출입문 위, 복도, 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다. 감시카메라는 24시간 녹화되는데, 녹화내용은 컴퓨터에 자동 저장되며 20일내지 30일 정도 보존되다가 순차적으로 삭제된다. 보호동의 각 층마다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실에서 감시카메라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여성 보호거실에 대한 모니터링은 여성 직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12) 진정 및 고충처리 상담

각 보호거실에는 중국어, 영어, 한국어로 된 이의신청 및 진정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고 각국 대사관의 전화번호와 통역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인권위 진정함은 복도 출입문 입구에 비치되어 있다.

보호실 벽에 부착된 권리고지 안내문도 위 3개 국어로만 쓰여 있고, 입소 시 생활안내도 권리내용 및 구제 절차에 내용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청주외국인보호소는 2006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청주외국인보호소 내에서 청원자나 강제퇴거 이의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으며 난민신청자는 개소 이후 5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보호외국인에게는 담당 심사과 직원이 정해지는데 심사과 직원과 보호외국인 간에 고충 처리를 위한 개별상담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심사과 직원은 보호 외국인의 출국, 여권 발급, 임금 체불, 전세금 반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청주외국인보호소에는 충청권은 물론 대구, 부산, 영남, 호남권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거주하다 온 외국인들이 보호되기 때문에 관할 지역을 넘어서는 금품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형편이다. 금품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귀국비용이 없는 보호외국인은 장기보호로 이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소 내에는 5명의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권익증진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권익증진협의회는 구체적인 고충을 해결해주는 기관은 아니며, 회의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된다.

13) 물품제공

보호소에서 보호외국인 개인별로 지급되는 물품은 칫솔, 플라스틱 숟가락, 플라스틱 컵, 의복, 침구류이며, 화장지, 비누, 치약은 보호거실에서 공동으로 사용한다. 수건, 샴푸, 로션, 면도기는 보호외국인이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한다. 개인 전기면도기는 인근 청주교도소의 교정협회로부터 구매하며, 수건, 샴푸, 로션은 보호소 경비과 행정계에 구매 신청을 하여 구입한다.

손톱깎이는 보호소에서 주 1회 정기적으로 제공하며, 공동 면도기는 보호소 측이 희망자에 한해 비정기적으로 제공하는데, 보호외국인이 사용한 후 회수하고 있다.

2. 설문 및 심층면접 조사 결과 분석

가. 조사대상자 관련 기초 사항

보호외국인의 국적은 중국이 29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64.4%이다. 그 밖에 러시아 3명,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이 각 각 2명이며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등이 1명씩 있었다. 조사 당시 중국 국적자 보호외국인의 대부분은 유학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산업체에 취업하다 단속을 당한 경우였다.

<표 1> 국 적

(단위 : %, 명)

| | 전 체 | 퍼센트 |
|--------|-----|--------|
| 방글라데시 | 1 | 2.2 |
| 중국 | 29 | 64.4 |
| 인도네시아 | 1 | 2.2 |
| 키르기스스탄 | 1 | 2.2 |
| 몽골 | 2 | 4.5 |
| 미얀마 | 1 | 2.2 |
| 러시아 | 3 | 6.7 |
| 스리랑카 | 1 | 2.2 |
| 태국 | 1 | 2.2 |
| 우즈베키스탄 | 2 | 4.5 |
| 기타 | 3 | 6.7 |
| 합 계 | 45 | 100.0% |

<표 2>에 따르면, 보호외국인의 연령은 20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11명, 40대가 7명이다. 50대 이상이 3명이고 19세 이하가 1명 있었다.

<표 2> 나 이

(단위 : %, 명)

| | 전 체 | 백분율 |
|--------|-----|--------|
| 19세이하 | 1 | 2.8 |
| 20~29세 | 14 | 38.9 |
| 30~39세 | 11 | 30.6 |
| 40~49세 | 7 | 19.4 |
| 50세이상 | 3 | 8.3 |
| 합 계 | 36 | 100.0% |

조사대상 보호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했던 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6명, 1년에서 2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0명, 2년에서 3년이라는 응답자는 8명, 4년에서 5년이라는 응답자는 5명이다. 10년 이상 체류해온 사람도 1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체류기간

(단위 : %, 명)

| | 전 체 | 백분율 |
|--------|-----|--------|
| 1년 미만 | 16 | 36.3 |
| 1년-2년 | 10 | 22.7 |
| 2년-3년 | 8 | 18.2 |
| 3년-4년 | 1 | 2.3 |
| 4년-5년 | 5 | 11.4 |
| 5년-6년 | 1 | 2.3 |
| 6년-7년 | 2 | 4.5 |
| 10년 이상 | 1 | 2.3 |
| 계 | 44 | 100.0% |

이들의 종교를 살펴보면 불교가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가 없거나 개신교인 경우가 각각 9명이다. 또한 이슬람교가 6명, 힌두교가 1명 있었다.

<표 4> 종교

(단위 : %, 명)

| | 전체 | 백분율 |
|------|----|--------|
| 종교없음 | 9 | 23.7 |
| 개신교 | 9 | 23.7 |
| 불교 | 11 | 28.9 |
| 힌두교 | 1 | 2.6 |
| 이슬람교 | 6 | 15.8 |
| 기타 | 2 | 5.3 |
| 계 | 38 | 100.0% |

이들이 입국하면서 소지하였던 비자의 종류를 보면 D2 유학비자가 11명으로 28.2%를 차지하였고, C2, C3 단기비자 7명, D3 산업연수비자가 6명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E10 내향선원 3명, F1방문·동거비자가 2명, F2 국민 등의 배우자와 E9 비자도 1명씩 있었다.

<표 5> 비자

(단위 : %, 명)

| | 전체 | 백분율 |
|----------------------------------|----|--------|
| C2, C3 단기비자 | 7 | 17.9 |
| D2 유학 | 11 | 28.2 |
| D3 산업연수 | 6 | 15.4 |
| F1 방문, 동거 | 2 | 5.1 |
| F2 거주 국민 또는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 1 | 2.6 |
| E9 비전문 취업 | 1 | 2.6 |
| E10 내향선원 | 3 | 7.7 |
| 기타 | 8 | 20.5 |
| 합계 | 39 | 100.0% |

대부분의 보호외국인은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6>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72.8%인 16명이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한국국적이 아닌 배우자나 형제자매가 남아있다고 답변한 경우가 2명씩이다.

<표 6>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

(단위 : %, 명)

| | 전 체 | 백분율 |
|-----------------|-----|--------|
| 한국인이 아닌 국적의 배우자 | 2 | 9.1 |
| 형제자매 | 2 | 9.1 |
| 부 또는 모 | 1 | 4.5 |
| 없음 | 16 | 72.8 |
| 기타 | 1 | 4.5 |
| 합 계 | 22 | 100.0% |

미등록외국인들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당한 피해(복수응답)는 임금체불, 폭행, 사기가 각각 6명으로 같은 빈도수를 나타냈다. 그 밖의 답변된 피해내용은 산업재해인데, 2명이 해당된다고 응답하였다.

<표 7> 피해의 형태

(단위 : %, 명)

| | 전체 | 백분율 |
|------|----|--------|
| 임금체불 | 6 | 25.0 |
| 폭행 | 6 | 25.0 |
| 사기 | 6 | 25.0 |
| 산재 | 2 | 8.3 |
| 기타 | 4 | 16.7 |
| 합 계 | 24 | 100.0% |

보호외국인들이 조사시점까지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의 보호된 기간은 대부분 1개월 미만이었는데, 전체 응답자의 73.4%에 해당하는 33명이 4주 미만의 기간

동안 보호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2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보호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10명이나 되었지만, 청주외국인보호소는 다른 보호소와 비교할 때 장기 보호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8> 총기간

(단위 : %, 명)

| | 전 체 | 백분율 |
|--------|-----|--------|
| 일주일 미만 | 17 | 37.8 |
| 2주일 미만 | 3 | 6.7 |
| 3주 미만 | 12 | 26.7 |
| 4주 미만 | 1 | 2.2 |
| 1달~2달 | 10 | 22.2 |
| 2달~3달 | 2 | 4.4 |
| 합 계 | 45 | 100.0% |

장기 보호되고 있는 주요 이유로 출국비용이 없다고 답변한 보호외국인은 4명이다. 체불입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진정 혹은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산재치료와 보상을 받고자 해서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 각각 2명씩이었다.

법무부는 미등록외국인의 출국 비용은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출국비용을 국비로 집행하는 경우는 ‘항공권 비용 조달이 불가능한 1개월 이상 장기 보호외국인’에 한정하고 있다. 청주외국인보호소는 2006년 8명, 2007년 5월까지 6명의 보호외국인에 대해 11,263,000원의 항공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장기보호 사유

(단위 : %, 명)

| | 전 체 | 백분율 |
|-------------------------------|-----|-------|
| 항공권이 없어서 | 4 | 20.0 |
| 전세금, 임금체불 등 금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 2 | 10.0 |
| 진정, 이의신청,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 2 | 10.0 |
| 난민 신청 중이기 때문에 | 1 | 5.0 |
| 가방 등 개인 물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 1 | 5.0 |
| 산재 치료 또는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 2 | 10.0 |
| 기타 | 8 | 40.0 |
| 합 계 | 20 | 100.0 |

나. 입소 시 신체검사

출입국관리법은 보호시설 입소절차로 피보호자의 신체, 의류 및 휴대품 검사를 규정하고 있다.⁴³⁾ 이러한 규정에 따라 외국인보호규칙 제6조 제1항은 담당 공무원이 보호외국인의 키와 몸무게, 신체의 특징, 상처와 그 흔적, 질병유무, 그 밖에 신체 이상 유무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보호규칙시행세칙에서는 몸 검사 시 출입제한 규정을 두어 몸 검사 시 근무자 이외는 탈의실 안으로 들어 올 수 없으며, 탈의실 안 입소절차는 원칙적으로 보호외국인 1명씩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⁴⁴⁾ 이는 몸 검사 시 보호외국인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청주외국인보호소의 경우 <표 10> 에서 나타나듯이 규정에 따라 탈의실 안에서 혼자 몸 검사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3명으로 37.1%에 지나지 않았다. 과반수이상은 집단으로 몸검사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43)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5(신체 등의 검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보호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44) 외국인보호규칙시행세칙 제9조 제1항, 제2항

<표 10> 몸 검사 방법

(단위 : %, 명)

| | 전 체 | 백분율 |
|------|-----|--------|
| 혼자 | 13 | 37.1 |
| 집단으로 | 22 | 62.9 |
| 합 계 | 35 | 100.0% |

몸검사를 받을 때의 복장은 대부분이 옷을 입은 채로 하지만, 일부는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검사를 받고 있으며 알몸으로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도 1명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청주외국인보호소는 남자의 경우 보호복을 입은 상태로 신체 검사를 실시하며, 여성의 경우 옷을 입은 채로 외표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표 11> 몸검사 복장

(단위 : %, 명)

| | 전체 | 백분율 |
|--------|----|--------|
| 알몸 | 1 | 2.9 |
| 속옷 | 8 | 23.5 |
| 옷 입은 채 | 25 | 73.5 |
| 합 계 | 34 | 100.0% |

여성에 의해 몸검사를 받았다고 답변한 경우는 2명인데 설문조사에 응한 여성보호외국인이 2명이었던 점에 비추어 몸검색은 같은 성의 직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몸수색을 한 사람의 성별

(단위 : %, 명)

| | 전체 | 백분율 |
|-----|----|--------|
| 남 | 30 | 93.7 |
| 여 | 2 | 6.3 |
| 합 계 | 32 | 100.0% |

몸 검사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답변한 경우는 4명이다.

<표 13> 몸 검사에 대한 수치심여부

(단위 : %, 명)

| | 전체 | 백분율 |
|-----|----|--------|
| 예 | 4 | 11.4 |
| 아니오 | 31 | 88.6 |
| 합 계 | 35 | 100.0% |

다. 권리고지 및 권리구제 관련

외국인보호규칙 제8조는 보호외국인에게 ‘보호소의 생활규칙 및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 방법 등’을 해당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미리 고지하고, 이 고지사항을 한국어·영어·중국어(이하 “영어 등”이라 한다)로 작성하여 보호외국인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⁵⁾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주외국인보호소는 입소 시 생활규칙에 대한 안내는 자체 제작한 영상물 상영으로 이루어지고 생활규칙 및 권리에 대한 고지는 별도로

45) 제8조 (생활규칙 등 알리기) ①소장은 보호시설의 생활규칙 및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사항은 한국어·영어·중국어(이하 “영어 등”이라 한다)로 작성하여 보호외국인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어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보호외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한 방법으로 게시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각 보호거실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표 14>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보호외국인들 중 입소 시 직원으로부터 보호소 내 생활규칙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를 받았다고 답변한 경우는 11명으로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39.3%에 불과하다. 생활규칙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변한 경우는 12명이며, 안내를 받았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답변한 경우가 5명이다. 즉 전체응답자의 60% 정도가 생활규칙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설명을 들었어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14> 보호시설 생활규칙 설명여부

(단위 : %, 명)

| | 전체 | 백분율 |
|-------------------------------|----|--------|
| 어떤 설명이나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 | 12 | 42.8 |
| 안내와 설명을 들었다 | 11 | 39.3 |
| 설명과 안내를 받았으나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 5 | 17.9 |
| 합 계 | 28 | 100.0% |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청주외국인보호소가 생활안내 영상물을 제작하여 입소 시 보호외국인에게 상영하는 등 다른 보호소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생활안내가 한국어와 중국어로만 진행되고 있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보호외국인이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보호소의 권리고지에 대한 설명은 보호소 벽에 붙은 안내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보호외국인의 답변이 16명이며, 책자나 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답변이 각각 2명씩이었다.

<표 15> 설명방법

(단위 : %, 명)

| | 전체 | 백분율 |
|---------------|----|--------|
| 책자 | 2 | 8 |
| 보호소 벽에 붙은 안내문 | 16 | 64 |
| 말로 설명 | 2 | 8 |
| 기타 | 5 | 20 |
| 합 계 | 25 | 100.0% |

청주보호소 내 보호외국인들이 피구금자로서의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인 친지나 가족을 면회할 권리, 변호사나 자국의 영사와 면회하고 도움을 받을 권리, 구금된 사실에 대해 이의 신청할 권리, 보호시설 내의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또는 법무부에 청원할 권리, 외부로 편지를 쓰거나 전화할 권리 등에 대해서 알고 있는 빈도는 복수응답임에도 불구하고 그리 높지 않다. 특히 다른 권리보다 시설 내의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에 진정 또는 법무부에 청원할 권리나 구금된 사실에 대해 이의 신청할 권리의 인지정도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권리고지

(단위 : %, 명)

| | 전체 | 백분율 |
|---|----|-------|
| 친지나 가족과 면회할 권리 | 17 | 19.8 |
| 변호사나 자국의 영사와 면회하고 도움을 받을 권리 | 18 | 20.9 |
| 구금된 사실에 대해 이의 신청할 권리 | 10 | 11.6 |
| 외국인 보호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법무부에 청원할 권리 | 14 | 16.3 |
| 외부로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할 권리 | 27 | 31.4 |
| 합 계 | 86 | 100.0 |

보호외국인 중 실제로 법무부에 청원을 했거나 우리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8명이다.

<표 17> 진정·청원 여부

(단위 : %, 명)

| | 전체 | 백분율 |
|----|----|--------|
| 있다 | 8 | 32 |
| 없다 | 17 | 68 |
| 계 | 25 | 100.0% |

보호외국인들이 진정이나 청원을 하지 않는 것은 절차와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5명이고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라는 이유가 3명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주외국인보호소의 경우 단속되어 온 보호외국인에 대해 별도의 권리구제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고 있고, 보호실 벽면에 게시한 한국어·중문·영문의 안내문만으로 고지하고 있는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주외국인보호소 내에 영어나 일본어 소통가능 직원은 다수가 있고, 중국어와 러시아어 외의 다른 언어 구사 직원은 없으며, 보호소 직원에 의한 고충상담도 같은 보호외국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어서 다양한 언어로 된 권리구제 신청서와 적절한 통역지원 방식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신청 후 피해를 두려워하거나, 진정이나 청원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거나, 출국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기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경우가 모두 2명씩이다.

<표 18> 진정·청원을 하지 않은 이유

(단위 : %, 명)

| | 전체 | 백분율 |
|--------------------|----|------|
| 신청 후 피해가 두려워서 | 2 | 14.3 |
| 별로 받아들여 질 것 같지 않아서 | 2 | 14.3 |

| | 전체 | 백분율 |
|-----------------|----|-------|
| 절차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 5 | 35.7 |
| 한국어를 잘 못하게 때문에 | 3 | 21.4 |
| 출국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 2 | 14.3 |
| | 14 | 100.0 |

보호외국인들은 보호시설 내에서 법률문제나 인권침해문제와 관련하여 보호시설 내 다른 보호외국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답변한 경우가 9명, 합법 체류 중인 같은 나라 출신 이주 노동자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답변한 경우가 7명이며, 출입국관리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5명, 한국 주재 본국 대사관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우는 4명이다.

<표 19> 도움 받은 사람

(단위 : %, 명)

| | 전체 | 백분율 |
|--------------------------|----|-------|
| 출입국관리국 직원 | 5 | 17.3 |
| 다른 공무원(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 1 | 3.4 |
| 보호시설 내 외국인 수용자 | 9 | 31.1 |
| 합법 체류 중인 같은 나라 출신 이주 노동자 | 7 | 24.2 |
| 한국 주재 본국 대사관 직원 | 4 | 13.8 |
| 변호사 | 1 | 3.4 |
| 기타 | 1 | 3.4 |
| 아무도 없다 | 1 | 3.4 |
| | 29 | 100.0 |

라. 의료 및 운동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 제24조에 의하면 의사는 모든 피구금자에 대하여 입소 후 가능한 신속히, 그 후 필요에 따라 면접하고 진찰하여, 특히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바, <표20>에 의하면, 보호소 내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82.9%로 대부분의 보호외국인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0> 보호소 내 진료여부

(단위 : %, 명)

| | 전체 | 백분율 |
|-----|----|-------|
| 있다 | 29 | 82.9 |
| 없다 | 6 | 17.1 |
| 합 계 | 35 | 100.0 |

이러한 설문결과는 청주보호소 내 배치 의사가 2명이고 일평균 보호외국인이 90여명이어서 다른 보호시설에 비해 보호인원대비 상근 의료인력의 배치가 적절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표 21>에 의하면, 외부진료를 요청하여 외부진료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2명이고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3명이다.

<표 21> 외부진료 요청여부

(단위 : %, 명)

| | 전체 | 백분율 |
|----------------|----|-------|
| 요청하였으나, 거절 | 3 | 13.0 |
| 요청하여 외부 진료를 받음 | 2 | 8.7 |
| 요청한 사실이 없다 | 18 | 78.3 |
| 합 계 | 23 | 100.0 |

보호외국인의 외부진료 요청은 계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나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거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보호외국인이 진료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거나 피병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 청주외국인보호소는 보호외국인의 외부진료는 담당의사가 필요 여부를 검토 후 시행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외부진료를 요청하는 경우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표 22> 외부진료요청 거부 이유

(단위 : %, 명)

| | 전체 | 백분율 |
|------------------------------|----|--------|
| 돈이 없다고 하자 출입국 직원이 외부 진료를 거부 | 1 | 16.7 |
| 함께 갈 출입국 직원이 부족하다면서 외부진료를 거부 | 2 | 33.3 |
| 피병이라며 거부 | 1 | 16.7 |
|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외부 진료 거부 | 2 | 33.3 |
| 합 계 | 6 | 100.0% |

청주외국인보호소가 제출한 외부진료 현황에 의하면, 개소 이후 2007년 6월 까지 총 54건의 외부진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2007년의 10건은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사건으로 당시 관계 외국인에 대해 종합검진을 실시한 것이다.⁴⁶⁾

실외운동은 모든 피구금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 제21조 제1항은 운동과 관련하여 ‘실외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피구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⁷⁾

46) 한편 우리 위원회는 청주외국인보호소가 지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사고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외국인보호소는 해당자들에 대해 외부진료 등 적절한 정신과 치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설명도 없이 자진출국에 대한 자필 서명만 받고 출국시킨 사실을 인정하여 2007. 4월 시정권고 한 바 있다.

47) 「국제인권원칙과 한국의 행형」. 116쪽, 서울지방변호사회, 역사비평사, 1993

운동의 빈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매일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1명이고, 일주일에 2~3회 운동을 하고 있다는 답변은 16명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84.4%가 매일, 혹은 일주일에 2~3회 운동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여 피구금지처우 최저기준규칙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비교적 다른 보호소에 비해 운동의 기회가 자주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3> 운동시간

(단위 : %, 명)

| | 전체 | 백분율 |
|-----------|----|-------|
| 전혀 없다 | 3 | 9.4 |
| 한달에 한두 번 | 1 | 3.1 |
| 일주일에 1회 | 1 | 3.1 |
| 일주일에 2-3회 | 16 | 50.0 |
| 매일 | 11 | 34.4 |
| | 32 | 100.0 |

마. 보호소 내의 인권침해 및 징벌

보호소 내에서 당한 괴롭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경우는 25명으로 69.4%이다. 괴롭힘을 당한 주요 유형은 구타나 폭행, 협박 등인데, 특히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한 보호외국인이 5명이나 되고 이러한 빈도수는 전체 응답자의 13.9%인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4%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24> 보호소내의 괴롭힘

(단위 : %, 명)

| | 전체 | 백분율 |
|-------------------------------|----|-------|
| 그런 적 없다 | 25 | 69.4 |
| 구타, 폭행 | 5 | 13.9 |
| 욕설, 모욕적인 말 | 2 | 5.6 |
| 독거실에 수용하겠다, 집에 보내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 | 4 | 11.1 |
| | 36 | 100.0 |

수갑이나 포승 등의 계구는 외국인보호규칙 제43조에서 자살, 자해, 도주 또는 폭행의 염려가 있는 보호외국인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면회나 운동, 종교활동 등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계구가 사용될 수는 없다. <표 25>에 의하면, 보호소 내에서 면회나 운동, 종교 활동 등을 위해 이동하는 중 수갑이나 포승을 착용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30명 중 3명이 착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25> 이동 중 수갑·포승 착용여부

(단위 : %, 명)

| | 전체 | 백분율 |
|----|----|-------|
| 있다 | 3 | 10.0 |
| 없다 | 27 | 90.0 |
| | 30 | 100.0 |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독방에 수용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보호외국인은 5명이다.

<표 26> 독방 수용 여부

(단위 : %, 명)

| | 전체 | 백분율 |
|----|----|-------|
| 있다 | 5 | 14.7 |
| 없다 | 29 | 85.3 |
| | 34 | 100.0 |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강제력의 행사와 더불어 보호외국인을 격리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보호외국인의 자살 또는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도주,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 거부나 방해 등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해당외국인을 격리보호 할 수 있다.⁴⁸⁾ 외국인보호규칙시행세칙 제72조

48) 제40조 (격리 보호) ①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범무

는 격리 수용과 함께 특별계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계호를 수반한 격리보호는, 그 내용상 행형법상 가장 중한 징벌인 금지와 유사한 것으로,⁴⁹⁾ 격리보호와 특별계호의 내용을 보면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제출한 독거실 수용현황을 보면, 2006년에 10명이 1일 내지 5일간 독거실에 보호되었으며, 2007년은 8명이 1일 내지 4일간 독거실에 보호되었다. 모두 남성보호외국인인데, 그 사유가 주로 보호실 내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질서문란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그 외 자살이나 자해시도, 알콜중독으로 인한 정신질환 등도 있는데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격리보호보다 정신적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징벌적 성격의 격리보호가 적절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청주외국인보호소는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 4의 기준에 의거 격리수용을 하고 있었고, 격리수용기간에 대해서는 경비근무세부시행지침에 사안별로 특별보

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독방에 격리 보호할 수 있다.

1. 도주·난동·폭행·시설이나 물품파손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
2.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때
3. 자해 또는 동료외국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물품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할 목적으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물품 외의 물품을 몰래 소지하고 있거나 반입하려 한 때
4. 자살·자해를 피하거나 보호외국인을 선동하는 등 보호시설의 질서를 해할 목적으로 단식하는 때
5.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때
6. 정신질환·알콜중독·마약중독 증상이 있거나 그러한 증상이 의심되는 때
 - ②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건경위와 격리보호의 필요성 등을 조사한 후 소장에게 사건발생보고를 하여야 한다.
 - ③담당공무원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특별계호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한 후 특별계호지시서를 발부받아 격리 보호하고, 중점관리외국인기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④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격리 보호할 때에는 해당외국인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49) 행형법 제46조(징벌) ①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1. 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의 형법규정에 저촉되는 행위. 2. 자해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 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4. 흥기, 주류 등 허가되지 아니하는 물건을 제작, 소지, 사용, 수수 또는 은닉하는 행위. 5. 2월 이내의 금지.

호기간⁵⁰⁾을 정해놓고 있었다. 하지만 격리수용기간 연장 규정에 반성 등 개선점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격리수용 기간에 대한 한도일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보호소의 독방수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은 행형법이 보장하고 있는 비례성의 원칙, 의무관의 건강 진단 실시 등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3. 종합평가

청주외국인보호소 내 외국인들에게 보호생활 만족도를 묻은 결과인 <표 27>를 보면, 만족스럽다는 경우는 5명, 지낼만하다는 경우는 15명, 다소 고통스럽다는 경우는 7명, 매우 고통스럽다는 경우는 1명이다. 즉 전체 응답자의 68.0%가 보호소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고 32.0%는 보호소 생활에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

<표 27>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한 느낌

(단위 : %, 명)

| | 전 체 | 백분율 |
|----------|-----|-------|
| 만족스럽다 | 5 | 20.0 |
| 지낼만 하다 | 12 | 48.0 |
| 다소 고통스럽다 | 7 | 28.0 |
| 매우 고통스럽다 | 1 | 4.0 |
| | 25 | 100.0 |

청주외국인보호소는 보호동 시설 자체가 낡기는 했지만 보호거실의 자연환기와 채광이 양호한 편이다. 또한 보호소 생활 안내를 위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50) 2일 : 무지에 따른 위험물품 반입 및 휴대, 라이타 등 화기 휴대 등
 3일 : 정당한 이유없는 단식 또는 식사거부, 음식물 투기
 4일 : 이성에 대한 성적 접근, 직원, 경비대원에 대한 욕설 또는 모욕
 5일 : 보호외국인간 구타, 협박에 의한 금품수수, 절도 등 형사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위험물질 소지하거나 반입, 제작 등
 연장 : 위 기간의 특별보호에도 불구하고 반성 등 개선점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호 외국인 입소 시에 상영하여 보호외국인들의 보호소 생활 적응을 돕고 있으며 다른 보호시설과 달리 정수기를 보호거실 밖이 아닌 거실 내에 설치하여 보호외국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편의도 도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다른 보호 시설에 비해 시설이나 처우 면에서 보호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방문조사 결과, 보호외국인의 기본권을 더욱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가. 시설문제

보호동 각 복도 중간에 설치된 이중 쇠창살은 화재나 비상사태 시 보호외국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또한 강제출국을 위한 신병확보의 필요에서 보호되고 있는 보호외국인에게 과도한 통제적 환경이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

징벌적 독거는 원칙적으로 지양되어야 한다. 부득이 독거수용을 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시설환경을 갖추어야 함에도 독거실 내에 환풍기, 냉·난방, 사물함, 식탁 등 생활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독거실 내 화장실의 차폐시설을 개선하여 몸이 필요최소한도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혼거실의 화장실과 샤워실 사용자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도록 차폐시설과 투명 가림막 시설을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나. 처우문제

생활안내 영상물을 보호외국인의 출신국적을 고려하여 다양한 언어로 보급하고 그 내용에 보호외국인의 권리 내용과 구제절차 및 방법, 보호 및 강제출국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보충하며, 특히 보호외국인이 필요시 그러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문 또는 책자를 비치하여야 한다.

신체검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속옷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다른 보호외국인이 사용하던 슬리퍼는 소독하여 사용하고 수건이나 샴푸 등

과 같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보호외국인의 속옷이나 양말반입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보호복과 침구류의 교환과 세탁 간격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청결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도서 목록표를 작성하여, 보호외국인이 읽기를 희망하는 책을 대출해 주도록 대출방식을 개선하고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어도 매일 운동을 할 있도록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면회시간과 관련하여 보호외국인에게 출국 준비를 위해 동료 등과의 면회가 필수적임에도, 현행과 같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평일 오전과 오후 시간대의 면회만 허용하고 있는 것은 보호외국인의 외부 교통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공휴일이나 일과 후 저녁 시간에 접견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청주외국인보호소는 밤에 다른 사람의 수면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보호외국인이 낮에 담요나 매트리스를 깔고 눕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수면방해와 같은 문제는 실제로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 외국인을 일정하게 제지하거나 다양한 여가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보호외국인이 지나치게 낮잠을 자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낮에 담요나 매트리스를 깔고 눕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독거실에 보호하는 것은 보호외국인의 자유로운 행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격리수용은 필요최소한도에 그칠 수 있도록 격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호와 심사업무 담당자 등은 보호외국인과 직접 대면하여 외국인의 보호생활을 지원하고 고충을 해결해주며, 강제퇴거를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등 보호외국인의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 그런데 화성외국인보호소 내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독거실 수용이나 집에 보내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 등을 당했다는 일부 보호외국인도 있어 보호와 심사업무 담당자의 인

권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인권교육 등을 더욱 강화하는 외에 보호외국인 대면 업무 수행 시 이름표를 달도록 하는 등의 보완적 조치가 필요하다.

IV. 시정이 필요한 사항

청주외국인보호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의 시정이 필요하다.

1. 보호동 각 복도 중간에 설치된 이중 쇠창살의 제거
2. 독거실 내에 환풍기, 냉·난방, 사물함, 식탁 등 생활설비 보완과 화장실의 차폐시설 개선
3. 혼거실 화장실과 샤워실의 차폐시설과 투명 가림막 시설 보완
4. 보호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과 언어로 이루어지는 생활규칙 및 권리 구제 안내
5. 개별적인 몸검사 실시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옷 입은체로 외표검사 실시
6. 다른 보호외국인이 사용하던 슬리퍼는 소독하여 사용하고 수건이나 샴푸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 지급
7. 보호외국인의 보호복과 침구류의 교환과 세탁 간격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청결한 상태 유지
8. 도서대출 방식의 개선과 보호외국인의 여가 활용프로그램 개발
9. 매일 운동 실시
10. 공휴일이나 일과 후 저녁 시간 접견기회 보장 등의 대안 마련
11. 보호외국인에 대한 징벌적 격리수용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격리수용 시 보호외국인에게 항변기회를 보장하며, 내부적 통제절차 강화
12. 직원, 용역직원, 공익근무요원 등 보호업무 담당자 및 보호외국인 대면업무 수행자는 보호외국인 접촉 시 이름표 패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

I. 조사개요

1. 조사일정

- 자료제출 요구 : 2007. 5. 29.
- 방문조사 : 2007. 6. 12.(화)
- 조사결과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의견제출 요구 : 2007. 11. 30.(금)

2. 방문조사 참가자

- 외부전문가
 - 양혜우(이주노동자인권연대)
 - 박선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김재원(이주여성인권연대)
 - 장서연, 김경태(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위 원 회 : 이석준, 김수산, 신병곤, 백미순(이주이권팀)
배운호(부산지역사무소)

3. 조사방법

- 자료조사
- 시설조사
- 설문조사
- 심층면접조사
 - ※ 방문조사 당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에는 6명의 보호외

국인이 보호된 상태였다.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들 보호외국인은 보호된 지 1일 내지 2일에 불과하고 일 평균 보호인원이 70여명을 상회하던 보호시설에서 6명이 보호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호실의 시설과 처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었다. 따라서 설문조사나 심층면접조사 결과는 따로 분석하지 않고 시설조사 내용에 포함시켜 정리하였다.

시설조사는 조사표를 구성하여 ○, × 또는 수치와 조사자의 평가의견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II.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 업무 개관⁵¹⁾

1. 보호시설 현황

| 구 분 | | 면적(평) | 남성보호거실 | 여성보호거실 |
|-----|--------|-------|--------|--------|
| 5층 | 면적(평) | 54.3 | 29.3 | 25 |
| | 보호실 개수 | 7개 | 4개 | 3개 |
| | 화장실 | 9개 | 6개 | 3개 |
| | 적정수용인원 | 45명 | 25명 | 20명 |

2. 외국인 연도별 보호현황

| 구 분 | 2004 | 2005 | 2006 | 2007. 5. |
|-------------|--------|--------|--------|----------|
| 연 보호인원(명) | 23,294 | 44,678 | 25,654 | 6,809 |
| 일평균 보호인원(명) | 64 | 122 | 70 | 45 |
| 일평균 보호기간(명) | 3.4 | 2.8 | 3.2 | 2.2 |

51) 이 장의 내용은 2007. 6. 1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제출한 자료를 발췌한 것이다.

3. 2006년 단속현황

가. 단속사유 현황

| 구 분 | 계 | 불법취업 | 불법체류 등 |
|----------|--------|--------|--------|
| 전국(명) | 23,777 | 16,710 | 7,061 |
| 서울사무소(명) | 10,992 | 7,300 | 1,236 |
| 비율(%) | 13.7 | 43.7 | 17.5 |

나. 국적별 현황

| 구 분 | 계 | 중 국 (한국계 중국) | 방글라데시 | 인도네시아 | 몽골 | 파키스탄 | 필리핀 | 태국 | 베트남 | 기타 |
|------|-------|--------------------|-------|-------|-----|------|-----|-----|-----|-------|
| 2006 | 8,536 | 4,750 (3,529) | 356 | 78 | 802 | 192 | 524 | 299 | 506 | 1,029 |

다. 성별 현황

| 구 분 | 계 | 남성 | 여성 |
|------|-------|-------|-------|
| 2006 | 8,536 | 5,378 | 3,158 |

4. 일시 보호해제 현황

| 구 분 | 계 | 산업재해 | 신병치료 | 신변정리 | 소송수행 | 체불임금 | 채권 | 전세금 반환 | 기타 |
|----------|-----|------|------|------|------|------|----|-----------|----|
| 2006 | 178 | 4 | 34 | 26 | 28 | 19 | 13 | 38 | 16 |
| 2007. 4. | 23 | 0 | 3 | 6 | 2 | 1 | 1 | 7 | 3 |

3. 외국인 고충처리 현황

| 구 분 | 체불임금해결 | | 의료구호(명) |
|----------|--------|------------|---------|
| | 인 원 | 금액 | |
| 2005 | 7,041 | 61억원 | 142 |
| 2006 | 6,665 | 30억 4백만원 | 206 |
| 2007. 5. | 937 | 7억 5천 7백만원 | 90 |

4. 도서류 보유 현황

| 계 | 한국 | 중국 | 태국 | 러시아 | 몽골 | 필리핀 | 인도네시아 | 베트남 | 미얀마 | 방글라데시 | 네팔 |
|-----|-----|----|----|-----|----|-----|-------|-----|-----|-------|----|
| 499 | 204 | 39 | 25 | 9 | 22 | 16 | 29 | 67 | 21 | 45 | 22 |

5. 소방시설 설치 현황

| 소화기 | 방화복 | 소화전 | 소방화 | 스프링쿨러 | 방화장갑 | 비상방송설비 | 방수구 |
|-----|-----|-----|-----|-------|------|--------|-----|
| 9 | 2 | 2 | 2 | 0 | 2 | 0 | 0 |

Ⅲ. 조사결과

1. 개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1963년 12월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 관할구역은 서울 특별시와 과천시, 광명시, 안양시, 성남시, 하남시의 경기남부 5개시이다. 도봉, 강북, 노원, 은평, 종로, 성북, 중랑, 동대문, 중구를 관할하는 세종로출장소가 있다.

가. 건물개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7층이며, 5층에 외국인보호실이 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본래 사무실 용도로 지어진 건물의 한개 층을 개조하여 보호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나. 보호시설 개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은 남성 혼거실 3개, 독거실 1개, 여성혼거실 2개, 가족실이 1개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면회실, 탈의실, 물품보관함이 있다. 운동시설이나 조리시설, 의료실 등은 없다.

보호실은 5층 사무실 건물 외벽 안쪽에 사람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감시통로를 남겨 두고 다시 내벽을 쌓아 그 안쪽에 만들었다. 건물의 외벽에는 쇠창살이 설치된 창문이 있고 이 창문의 개폐가 가능하다. 그러나 내벽으로 이어진 보호거실에는 창문이 없거나 위 아래로 열 수 있는 작은 창문만 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1층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5층에 내리면 정면에 사무실 문이 있고 왼쪽으로 보호외국인면회실이 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보호실 입구에 서면, 오른쪽에 남성 보호실이, 왼쪽에 여성 보호실이 있다.

다. 보호업무 직원 및 관련자의 현황과 업무 내용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남성 직원 17명, 여성 직원이 4명, 공익요원은 13명이다. 여성직원 3명은 교대로 근무를 하며 1명은 면회업무를 담당한다. 보호용역직원은 없다. 근무형태는 3개 팀 교대근무인데, 1개 팀은 주간 2개 팀은 야간에 교대근무를 한다. 야간에는 여직원 1명과 보호근무 명령을 받은 여직원 1명이 교대로 CCTV 모니터링을 한다.

보호업무담당 직원들은 외국인보호자에 대한 보호·경비, 출국 집행, 출소자 신병인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공익요원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⁵²⁾

서울출입국관리사무는 태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아랍어 통역이 가

능한 직원을 각 한명씩 특별 채용하여 근무시키고 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보호외국인에 대한 관리 전반과 보호거실 감시카메라 내용 모니터링을 여성직원이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담당 여직원이 1명에 불과하다.

2. 개별시설 현황

가. 입소 및 신체검사

보호실에 외국인의 신병이 인계되면 담당직원은 먼저 사무실에서 보호외국인의 신분과 소지품을 확인하고, 귀중품을 보관시킨다.

그 후 검신실(신체검사실)에서 외국인이 보호복으로 갈아입도록 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신체검사도 함께 실시한다. 신체검사는 직원이나 공익 요원이 담당하며, 외국인의 진술이 있을 경우에는 신체검사용지에 상처 부위를 체크하는데, 직접 보호외국인의 몸을 확인하지는 않는다. 외국인이 보호복으로 갈아입은 후에는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옷을 입은 채로 외표 검사를 실시한다. 남녀 검신실이 분리되어 있다. 남자검신실은 10명 정도가 함께 들어갈 수 있고, 여자는 5명 정도 들어갈 수 있다. 여성 검신실 출입구에는 검사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직원 등은 보호복으로 갈아입은 보호외국인의 사진을 촬영하고 지문을 채취한다. 신체검사실안에는 아무런 설비가 없고, 5명 정도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이다.

보호외국인은 신체검사를 받은 후 방으로 배치된다. 생활안내, 권리 및 권리구제절차를 구두로 안내받으며, 보호거실 벽에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보호외국인 준수사항과 하루 생활 시간표, 진정 및 이의신청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52) 그러나 방문조사 시 관찰한 바에 의하면 공익요원들은 단순한 보조업무에 그치지 않고 감시카메라 내용 모니터링을 비롯하여 보호외국인을 위한 일상적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나. 물품 보관소

물품보관소에는 보호가능 외국인 수만큼 사물함이 비치되어 있다. 보관함은 조립식 앵글에 나무판자를 얹어 칸막이를 나누어 놓은 형태로 문은 달려있지 않고 개방되어 있다. 보호외국인은 아무런 준비 없는 상태에서 단속되기 때문에 소지물품도 거의 없다.

보호외국인이 입고 있었던 사복과 소지품은 보호외국인이 비닐봉지에 담아 겉표면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바구니에 다시 담아 물품보관실에 보관한다. 이 과정은 모두 직원의 계호 하에 보호외국인이 직접한다. 이때 물품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 다만, 여권, 돈, 휴대폰 유무를 직원이 확인하고 보호기록표에 기록해둔다. 돈이나 귀중품은 보호외국인이 직원에게 보관을 요청한다. 직원에게 맡겨지는 귀중품에 대해서 직원이 물품대장에 항목을 기록하고 보호 외국인으로 부터 확인서명을 받는다. 보호외국인이 귀중물품을 되찾을 경우 직원은 해당 외국인에게 목록을 확인하게 한 후 이를 물품대장에 기록하고 반환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는다.

보호외국인이 보호된 이후에 외부로부터 짐이 반입되면 직원은 물품 종류를 기입한 물품 반입용지를 2장 작성하여 물건을 반입한 외부인과 보호외국인에게 각 각 한 장씩을 교부하고 서명을 받는다. 관계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이러한 짐들은 보통 출국을 위한 짐이기 때문에 가방이 크고 내용물이 많아 가방 안에 든 물건을 일일이 확인을 할 수는 없고 가방의 개수만 확인한 후 보관한다고 한다. 다만, 보호외국인은 출국할 때 가방에 든 내용물을 체크할 수 있다고 한다. 물품보관함은 여행용 가방이 들어갈 정도로 크지 않아, 큰 가방들이 보관함 밖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물품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품 보관실에는 CCTV가 2대 설치되어 있다.

다. 보호거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의 적정 수용인원은 총 45명이다. 1명당 1.2평 기준으로 남성 25명, 여성 20명이다.

방문 조사 시에는 보호실에 7명이 보호되어 있었으나 1명이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6명만 보호되어 있었다. 한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2004년 일평균 보호인원은 64명, 2005년은 122명, 2006년은 70명이었는데, 2007년에는 45명으로 감소하였다.

1) 독거실 (특별 계호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남성보호실에 1개의 독거실이 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2006년에는 4명이, 2007년 4월까지에는 2명이 독거실에 보호되었는데, 보호기간은 모두 하루 이내이고 만취로 인한 기물파손 등이 이유였다.

독거실에는 텔레비전이나 에어컨, 식탁, 보관함 등의 일체 설치물이 없고, 116cm×81cm의 창문이 있다. 감시카메라는 출입문 안쪽 천정 위에 설치되어 있어서 방 전체를 파악할 수 있고, 조명은 형광등이다. 취침등은 없다. 화장실에는 출입문이 달려있고 수세식 변기가 설치되어 있다. 세면대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다. 온수는 난방이 공급되는 기간에만 24시간 공급된다.

화장실 이외에 창문이 없고 거실 내에 환풍기가 없어서 환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실 안에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어서 보호외국인은 이를 통해 직원과 소통한다.

2) 혼거실

감시카메라 감시실을 지나서 쇠창살문을 통과하면 남성보호실이다. 남성보호실 가운데 홀이 있고, 왼쪽에 가장 큰 방인 1호실, 오른쪽에 독거실인 2호실이 있다. 보호실 내부에 또 다른 철문이 있는데 이 철문을 통과하면 양 쪽으로 3~4호 혼거실이 있다. 사무실 왼편에는 여성보호실 3개가 있다. 보호거실은 침실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침대는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보호외국인은 매트리스를 깔고 잔다.

홀에는 책이 약간 비치되어 있고, 정수기가 있으며, 텔레비전이 한대 있다. 이곳에서 배식을 한다. 관계직원은 평소 보호거실 출입문을 열어놓아 보호외국인이 언제든지 홀에 나올 수 있도록 개방해 놓는다고 설명했다지만, 심층면접에 응한 보호외국인은 식사시간에만 출입문이 개방된다고 진술하였다.

남성 혼거실에는 텔레비전과 공중전화,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다. 식탁이나, 사물함, 침구 보관함은 없다. 1호 혼거실은 다른 남성 혼거실에 비해 방의 크기가 가장 크고 밝다. 외벽 안쪽에 쌓은 내벽에 큰 아크릴 창문을 만들어서 채광이 비교적 양호하며, 방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 방 안에 화장실이 1개 딸려 있다. 철문 안쪽에는 3~4호실이 있고 각각 화장실이 내부에 배치되어 있다. 서울출입국관리소 측은 3호실과 4호실 복도 가운데 설치된 대형 에어컨으로 냉방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3~4호실 외벽 안쪽에 쌓은 내벽은 조립식 판넬로 되어 있는데 창문이 작아서 자연 채광과 환기가 어렵다.

여성보호실에는 로비가 없다. 여성 보호실의 전체 출입문을 열면 작은 현관 모양의 공간이 있고, 이 현관에서 서서 볼 때 오른쪽, 왼쪽, 정면에 한개씩 3개의 거실이 있다. 여성보호거실 출입문과 방문은 모두 철문이고 잠금쇠가 되어있다.

여성 혼거실의 크기는 모두 다르다. 제일 작은 보호거실은 가족실로 사용한다고 한다. 가족실에는 침구 수납용 작은 선반 하나와 텔레비전, 공중전화와 있고, 화장실이 딸려 있다. 그러나 방에 창문이 없다. 나머지 두개의 보호거실은 가족실보다 큰데, 방안에 침구 보관함, 텔레비전, 공중전화기, 정수기가 갖추어져 있다. 설치되어 있다. 여성혼거 2호실에는 외벽 쪽으로 가로 98cm, 세로 50cm, 3호실에는 가로 160cm, 세로 100cm 크기의 앞으로 당겨서 여는 창문이 있다. 복도 쪽으로도 작은 창문이 하나씩 있으나 이 창문으로는 외부와 환기가 되지 않는다. 여성혼거실은 중앙 조절 냉방 장치가 작동한다.

남녀 혼거실의 난방시설은 온돌이며, 중앙에서 조절한다. 남성 보호실 복도에는 온풍기가 설치되어 있다. 혼거실 마다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일반 가정용 환풍기여서 보호실의 환기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화장실이나 보호

거실의 환풍기 표면에 먼지가 많이 끼어 있는 상태이다.

텔레비전은 각 방마다 비치되어 있으며, 텔레비전 채널은 수용자가 직접 통제할 수 있다.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인데, 대개 보호외국인이 취침에 들기 전인 11까지 시청을 허용하고 있다.

공중전화는 카드식 전화기이다. 보호거실마다 서너 대의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다. 전화 사용시간에 대한 규정과 관행은 텔레비전의 경우와 동일하다.

화장실과 거실은 벽으로 구분되어 있고, 출입문을 통하여 출입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은 화장실이 외벽 쪽이 아니라 복도 쪽으로 설치되어 있어 화장실의 자연환기가 안되는데, 화장실 내 환풍기는 용량이 작고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

화장실에는 휴지통이 있으나 화장지 걸이가 없고, 세면용 선반이 없어 보호외국인은 치약이나 칫솔을 창틀에 올려서 보관하고 있었다. 샤워 시 옷을 걸어 놓을 수 있는 고리나 선반도 없다. 화장실용 슬리퍼는 공급되고 있다.

UN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에서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 보호거실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보면, 수용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설비, 특히 모든 수면 시설은 기후상태와 특히 공기의 양, 최소 공간, 조명, 난방 및 환기의 조건을 고려함으로써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⁵³⁾ 특히 수용자가 기거하거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모든 장소의 창문은 수용자가 자연광선으로 독서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넓어야 하며, 인공적인 통풍설비의 유무와 관계없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⁵⁴⁾

이러한 UN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에 비취볼 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의 환경은 공기의 양, 조명, 환기의 조건이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단속이 강화되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53) UN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 제10조

54) UN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 제11조

정하고 있는 적정 보호규모의 외국인이 보호될 경우 보호외국인이 생활하기에 더욱 어려울 것으로 추측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은 장기생활보호시설은 아니지만 2007년에만 해도 보호외국인의 평균보호기간이 2.2일⁵⁵⁾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거실 환경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각 거실의 청소는 보호외국인이 담당하는데, 청소 도구가 여성보호거실에는 비치되어 있는 반면, 남성보호거실에는 비치되어 있지 않다.

라. 의복과 침구류

보호외국인에게 대여하는 의류 및 침구의 종류는 외국인보호규칙 및 보호외국인의의류및침구의제식등에관한규칙에서 규율하고 있다. 남·여 구분에 따른 겨울옷과 여름옷으로 구분하고 겨울옷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여름옷은 6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 착용하도록 되어 있고, 소장 등은 기후, 외국인의 신체조건 기타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착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⁵⁶⁾

보호외국인에게 지급되는 보호복은 다른 보호시설과 동일한 것이고 이 보호실의 보호외국인들은 주로 단기수용자들이기 때문에 일정한 의복 교환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보호실에는 전용 세탁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대신에 사무실에 드럼세탁기(10kg) 1대가 있어 이 세탁기로 공익요원이 보호복을 세탁하고 있다. 퇴실자가 많아 세탁량이 많을 경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의뢰하여 한다.

침구류는 매트리스 1장과 담요 2장이 지급되며 동절기에는 담요 한 장이 추가로 지급된다. 보호외국인이 반납한 침구는 반드시 세탁되는 것이 아니어서 세탁안한 상태로 다시 다른 보호외국인에게 지급되기도 하기 때문에 위생상 적절하지 않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하면, 담요는 2주일에 한번씩 외부 용

55) 이와 관련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호실에 입소하면 당일 하루부터 다음날 하루가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루 보호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56) 보호외국인의의류및침구의제식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3조

역업체인 블루클린에 의뢰하여 세탁하고 있으며 대장은 관리과 물품에서 관리한다. 보호외국인들이 침구를 단기간 사용하다 보호소로 대부분 이송되기 때문에 매번 세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주일에 한 번씩만 세탁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실 평균 보호기간을 고려할 때, 2주일 동안 보통 5~6명은 같은 침구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행은 보호외국인의 건강과 위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의복과 침구의 세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한 중국인 피보호자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나는 중국에서 왔는데 현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온지 5일 되었다. 같은 옷을 5일 동안 입고 있는데 날씨가 더워서 기분이 좋지 않다. 옷도 내 치수보다 작아서 불편하다.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아 새 옷을 요구하지도 못했다. 베게는 모양이 네모나서 쓰기에 불편하고, 이불에서도 냄새가 난다. 5일 동안 수영도 못 껴고 밤에는 모기들 때문에 잠들기가 힘들다.

마. 의료

보호실에는 전문 의료인이 배치되어 있지 않으나 매주 수요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의사 1명과 간호사 2~3인이 보호실을 방문하여 무료 진료를 실시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자료를 보면, 2006년에 21회 방문으로 139명의 보호외국인이 진료를 받았고, 2007년 4월 현재 14회 방문에 57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방문진료가 없는 날에는 간단한 상비약을 비치하여 통증을 호소하는 외국인에게 직원이 약품을 지급하고 있다. 외부 진료는 2006년 63건, 2007년 14건이다.

바. 여가 및 종교활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에는 보호외국인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이 없어서 보호외국인은 보호기간 동안 운동을 하지 못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어 서적 204권을 비롯한 10개국 언어 서적 499권은 남성보호실 홀에 비치되어 있다. 도서 대출은 남성 보호외국인이 식사를 위해서 홀에 나왔다가 원하는 책을 가지고 고르기도 하고, 직원이 부탁받은 외국인에게 임의로 골라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보호 거실 입구에는 도서 대출 목록이 있다.

집필 기구는 보호외국인이 필요시 직원에게 요청하여 사용하는데, 볼펜은 사용 직후 반납하도록 하며, 싸인펜은 보호외국인이 원할 경우 소지를 허용하기도 한다. 메모지는 필요 시 보호외국인에게 지급한다.

보호실 내에서 보호외국인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취미, 오락, 문화, 종교 활동은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 직원은 보호외국인의 평균보호기간이 3일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가 및 종교활동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사. 식사공급

보호실에는 조리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식용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보호외국인에게 공급하고 있다. 한 끼 식사비용은 3,300원이며 세끼 모두 한식이 제공되며, 외국인이 희망하면 빵과 우유를 지급한다.

용역업체는 밥, 반찬, 식판을 가지고 와서 남성 보호실 홀에서 직접 배식을 한다. 특정종교의 금기음식은 제공되지 않는다. 남성보호외국인은 홀에 있는 정수기를 사용하고, 여성보호외국인은 거실 내 정수기를 사용한다. 여성거실에는 따로 개인용 컵이 지급되지 않고 정수기 위에 있는 그릇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아. 면회실

면회실은 보호실과 같은 층에 있으며, 3명의 보호외국인이 한꺼번에 면회할 수 있다. 면회실마다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 3개의 의자가 놓여 있어서 3사람이 각각 면회를 할 수 있다. 면회자와 피면회자 사이에는 아크릴판이 설치되어

있고 이 판에 구멍이 뚫려있어서 서로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했다.

변호인 등 자국영사 등 특별면회실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호외국인에게 변호인과의 특별면회를 2005년 11회, 2006년 28회, 2007년 5회 허용했고, 자국영사와의 특별면회를 2005년 14회, 2006년 8회, 2007년 2회 허용한 바 있다.

자. 중앙통제실 / 감시카메라 감시실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7, 외국인보호규칙 제37조는 보호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 및 폐쇄회로영상장치 등 감시장비는 보호외국인의 사생활, 초상권 등의 침해가 없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 또는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총 32개의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각 보호거실마다 2내지 3개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다른 보호소의 경우 각 보호거실 출입문 안 위쪽에 1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비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거실은 크기도 작은 데 비해 훨씬 많은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서울 출입국 보호실은 7개실에 총 32개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녹화는 자동으로 저장되며 순차적으로 삭제된다. 자동저장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다. 감시카메라 조작과 모니터 감시는 공익요원들이 담당하고 있다. 여성방의 감시카메라 관리 통제 및 모니터 감시자는 여성직원이 담당한다.

차. 진정, 고충 처리 상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심사과, 보호 집행과의 직원 각 1인을 인권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보호외국인의 고충처리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상담소장인 수녀 1인과 천주교 프라도 사제 소속 목동성당의 신부 1인을 명예 외국인 고충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보호외국인의 고충상담과 애

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명예 외국인 고충상담관은 매주 목요일 방문하는데, 2006년에는 39회를 방문하여 227명이 상담을 받았고, 2007년에는 21회 방문하여 58명이 상담을 받았다.

카. 미성년 아동보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에는 아동을 위한 별도의 시설은 구비되어 있지 않다. 다만, 보호외국인이 아동을 동반할 경우 여성보호거실의 가장 작은 방을 가족실로 사용하고 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 자료에는 2006년부터 2007년 4월까지 21명의 아동(남자아동이 14명, 여자아동이 7명)이 보호된 것으로 나타난다. 보호사유가 불법체류8명, 불법 취업 5명,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4명, 기타 형사범 4명인 것을 보면 이들이 보호외국인 부모와 동반한 경우라기보다 아동에 대한 단속이나 경찰로부터의 통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타. 물품지급

보호소에서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물품은 칫솔과 수건이며 화장지, 비누, 치약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샴푸나 로션은 보호외국인이 본인이 사용하던 것을 반입하거나 구매할 수 있다. 여성에게는 생리대가 지급된다.

3. 종합평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은 일시 보호시설이지만 일평균 보호기간이 3일 안팎이고 더 장기간 보호되는 외국인도 있어 보호외국인의 최소한의 생활조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가. 시설문제

보호거실의 환기와 채광 상태는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데, 특히 남성보호실 내 독거실과 여성보호실 내 가족실은 신속한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남성훈

거실 3호와 4호의 출입은 보호실의 내부에서 또 하나의 철문을 통해야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보호외국인에게 심리적인 위축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므로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보호외국인은 남성 보호거실의 출입문을 식사시간에만 개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러한 현황을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홀은 정수기와 에어컨, 온풍기, 도서가 구비되어 있어 남성보호외국인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3호와 4호 거실은 냉·난방이 부족할 우려가 있어 홀에의 자유로운 출입이 더욱 필요하다.

보호거실에 감시카메라가 과도하게 설치되어 있어 보호외국인의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보호외국인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적당한 운동시간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우문제

단속되자마자 외국인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되어 보호되기 때문에 보호외국인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보호실의 생활에 대한 안내, 보호 및 강제퇴거에 대한 이의신청, 보호 중의 권리와 권리구제 절차, 그리고 보호예정기간과 출국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설명은 보호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보호외국인에게 구두안내를 하고 보호거실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지만, 보호외국인이 그 내용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을 특채하여 근무시키고 있으므로 이들을 통하여 보호외국인에게 필요한 내용이 설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호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보호실 시설 경비 및 계호활동에 대한 직원 보조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지만 공익근무요원들이

보호실의 경비업무를 하면서 보호외국인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도 출입국 직원에 준하는 인권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미 주 1회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그 프로그램 내에 보호외국인의 법적인 권리를 비롯하여 보호되어야 할 인권에 대한 교육내용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번 사용된 보호복과 침구류는 반드시 세탁한 후 보호외국인에게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보호외국인의 위생과 청결을 보장해야 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이 집필을 원할 경우에만 필기도구를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필기구는 자유로운 집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보호외국인이 필기구를 언제든지 소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IV. 시정이 필요한 사항

서울출입국관리사무의 외국인보호실은 아래와 같은 사항의 시정이 필요하다.

1. 보호거실의 환기와 채광 상태의 전반적인 개선과 남성혼거실 3호와 4호의 출입을 위한 이중 철문체계의 제거
2. 한번 사용된 보호복과 침구류는 반드시 세탁한 후 지급
3. 보호거실의 감시카메라의 적절한 설치
4. 운동 시설의 확보와 적당한 운동기회의 허용
5. 보호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과 언어로 이루어지는 생활규칙 및 권리구제 안내
6.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권교육의 강화
7. 자유로운 집필을 위해 보호외국인의 필기구 소지 허용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

I. 조사개요

1. 조사일정

- 자료제출 요구 : 2007. 5. 29, 6. 14, 6. 28.
- 방문조사
 - 1차 : 2007. 6. 13.(수)
 - 2차 : 2007. 6. 28(목)
 - 3차 : 2007. 8. 16(목)
 - 4차 : 2007. 9. 7(금)
- 조사결과에 대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의견제출 요구 : 2007. 12. 3(월)

2. 방문조사 참가자

- 외부전문가
 - 1차
 - 김민정(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 김형진(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 이지연(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 이한숙(이주와인권연구소)
 - 전병호(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 3차
 - 김민정(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 전병호(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 4차
권혁근(부산지방변호사회)
김민정(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한숙(이주와인권연구소)
- 위 원 회
 - 1차 : 이광영, 강석권, 배윤호(부산지역사무소), 신병곤(이주인권팀)
 - 2차 : 강석권, 배윤호(부산지역사무소)
 - 3차 : 이광영, 배윤호(부산지역사무소)
 - 4차 : 이광영, 배윤호(부산지역사무소)

3. 조사방법

- 자료조사
- 시설조사
- 설문조사
- 심층면접조사

※ 1차 방문조사 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에는 보호외국인이 3명(러시아 2명, 중국교포 1명) 있었고, 2차 방문조사 시에도 3명의 보호외국인이 있었다.⁵⁷⁾ 이에 유의미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얻을 수 없어 4차에 걸친 추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시설조사나 자료조사를 보다 정밀하게 실시하여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심층면접 내용은 시설조사 내용 분석 시 일부 인용하였다.

시설조사는 조사표를 구성하여 ○, × 또는 수치와 조사자의 평가의견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57) 당시 평균적 수용인원은 최소 10~20명인데,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조사관들의 도착 전에 보호외국인을 출국시키거나 이송시켰다.

II.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 업무 개관⁵⁸⁾

1. 보호시설 현황

| 구 분 | 면적(평) | 방수 | 적정보호인원 | 최대보호인원 |
|---------|-------|------|--------|--------|
| 보호1실(남) | 10.9 | 1 | 6명 | 9명 |
| 보호1실(남) | 9.9 | 1 | 5명 | 8명 |
| 보호1실(남) | 9.5 | 1 | 5명 | 8명 |
| 보호1실(여) | 9.8 | 1 | 5명 | 8명 |
| 보호5실 | 3.2 | 1 | 1명 | 1명 |
| 계 | 42.3 | 총 5실 | 22명 | 34명 |

2. 단속현황

가. 국적별 현황(2006. ~ 2007. 4. 40.)

| 계 | 중 국 | 러시아 | 필리핀 | 베트남 | 기타 |
|-------|-------|-----|-----|-----|------|
| 5,411 | 2,059 | 448 | 243 | 737 | 1924 |

다. 성별 현황(2006. ~ 2007. 4. 40.)

| 구 분 | 계 | 중국 | 베트남 | 러시아 | 필리핀 | 기타 |
|-----|-------|-------|-----|-----|-----|-------|
| 남자 | 4,139 | 1,450 | 611 | 286 | 173 | 1,619 |
| 여자 | 1,272 | 609 | 126 | 162 | 70 | 305 |

58) 이 장의 내용은 2007. 6. 13.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발췌한 것이다.

3. 일시 보호해제 현황

| 구 분 | 계 | 신병치료 | 소송수행 | 국민배우자와 혼인신고 | 전세금반환 |
|----------|---|------|------|-------------|-------|
| 2006. | 7 | 3 | 1 | 1 | 2 |
| 2007. 4. | 5 | 1 | 0 | 2 | 2 |

4. 도서류 보유 현황

| 계 | 한국 | 중국 | 태국 | 러시아 | 몽골 | 필리핀 | 인도네시아 | 베트남 | 미얀마 | 방글라데시 | 네팔 |
|-----|----|-----|----|-----|----|-----|-------|-----|-----|-------|----|
| 583 | 26 | 104 | 45 | 19 | 47 | 26 | 49 | 88 | 35 | 94 | 50 |

5. 소방시설 설치 현황

| 화재경보기 | 소화기 | 소화전 | 스프링쿨러 | 방독면 | 손전등 | 완강기 |
|-------|-----|-----|-------|-----|-----|-----|
| 7 | 6 | 1 | 0 | 9 | 2 | 1 |

Ⅲ. 시설 조사결과

1. 개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1961년 10월 2일 설립되었다. 관할 구역은 김해국제공항을 제외한 부산광역시 전체와 경상남도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울산광역시이다. 울산출장소와 감천출장소가 있다.

가. 건물개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상 6층의 건물로, 1층부터 5층까지는 사무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5층은 보호실로 사용하고 있다.

나. 보호시설 개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는 총 5개의 보호거실이 있다. 구체적으로 독거실 1개, 남자 혼거실 3개, 여자 혼거실 1개이며 적정보호인원은 22명이며, 최대보호인원은 34명이다.⁵⁹⁾

보호거실 외에 감시실(중앙통제실), 물품보관실,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계구 등이 보관된 캐비닛, 관복보관 사물함, 직원사물함 등이 있는 사무실, 면접대기자를 위한 소파, 조사실, 면회실 등이 있다. 조사실은 외국인들의 지문채취 및 사진촬영 및 조사를 위한 장소로 여성탈의실로도 사용되며, 물품보관 사무실은 남성 탈의실로 사용된다.

운동시설, 종교활동을 위한 공간은 없고, 의료시설이나 의료진도 없다. 단 약간의 비상약품이 구비되어 있다.

다. 보호업무 직원 및 관련자의 현황과 업무 내용

보호업무 전담직원은 3명이며 공익근무요원은 2명이다.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여성직원은 없는데 여성외국인이 보호되면, 다른 부서의 여성직원이 신체검사를 담당한다는 것이 관계직원의 설명이다.

2. 개별시설 현황

가. 조사실과 물품보관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소자 대기실을 위한 전용공간이 따로 없어, 조사실과 물품보관실이 그러한 용도로 사용된다. 외국인이 보호실에서 처음 머무는 곳이 이곳이다. 이곳에서 직원은 보호외국인의 수갑을 풀어주고, 소지품을 따로 보관하게 하고, 보호복을 지급한다. 그리고 나서 보호외국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⁵⁹⁾ 적정보호인원은 법무부시설기준 2평이고, 최대보호인원은 1.2평이다.

입소 시 보호외국인에 대한 생활안내 및 권리고지는 구두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심층면접 시 보호외국인의 진술에 따르면 언제까지 보호되는지, 체불금 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보호실 생활규칙은 무엇인지, 보호 및 강제출국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입소 시 무슨 말을 했는데 알아들을 수 없었으며, 거실에 있는 안내문은 베트남어로 되어 있는게 없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사례 #1)

입소절차 후 보호실에서의 생활규칙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었고, 벽에 붙은 포스터를 보고 대강 알게 되었다.(사례 #2)

물품보관실에는 조립식 앵글에 나무판자를 얹어 칸막이를 나누어 놓은 형태의 물품보관선반이 있으며, 각 칸막이에는 문이 달려있지 않다. 보호외국인 물품은 바구니에 담겨 이 선반에 올려져 보관된다. 이 밖에 보호복, 위생물품 등의 물품보관을 위한 수납장, 계구보관을 위한 캐비닛, 출입국직원들의 사물함이 있다. 물품보관실은 남자탈의실로도 이용된다.

여성탈의실로 이용하는 조사실은 책상과 의자, 컴퓨터, 지문판독기, 금고 등이 있는 사무공간이다. 남녀 탈의실로 각각 이용되는 물품보관실과 조사실에는 탈의를 위한 커튼이나 칸막이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

보호외국인의 물품 보관 시 직원에게 보관을 요청한 귀중품이나 현금에 대해서만 목록에 적어 본인 서명을 받고 보관한다.

나. 보호거실 현황

모든 보호실은 거실과 화장실 겸 샤워실로 구성되어 있다.

1) 독거실 (특별 계호실)

보호 5실이 독거실인데, 넓이가 3.2평이다. 다른 혼거실과 마찬가지로 독거실에는 식탁, 사물함 등의 시설은 전혀 없고 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감시카메

라는 2대 설치되어 있다. 외벽방향으로 이중쇠창살이 쳐진 아크릴창문이 있는데, 이 창문으로 자연 채광이나 통풍이 되지 않는다. 거실 내에 환풍기가 1대가 있다. 그 밖의 화장실 등 시설은 다른 혼거실과 거의 동일하다.

2) 혼거실

혼거실인 보호 1, 2, 3실은 남성보호실로 각 각 10.9평, 9.9평, 9.5평이다. 혼거실인 보호4실은 여성보호실로 9.8평이다. 2호실과 3호실의 경우 방과 방 사이에 벽이 없고 쇠창살만 설치되어 있어서 두 거실의 보호외국인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가 가능하다. 남성거실인 3호실과 여성거실인 4호실은 방과 방사이에 시멘트벽으로 가로막혀져 있다.

거실과 화장실 사이에 벽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폐시설만 있고 차폐시설 한쪽에 문이 달려 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세면대, 좌변기, 샤워기가 1대씩 순서대로 설치되어 있다. 다만, 보호1실은 가장 넓은 보호거실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내에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화장실 면적도 가장 좁다.

화장실용 휴지통이 있었으나 화장지 걸이나 선반이 없어서 보호외국인은 치약, 칫솔, 수건, 화장지 등을 차폐시설 위에 올려 보관하고 있었다. 화장실에는 창문이 없어서 환풍기 외에는 환기가 불가능하다. 화장실마다 작은 환풍기가 천장에 한 개씩 설치되어 있었으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는데, 환풍기 스위치를 켜었을 때에도 환풍기가 작동하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화장실의 차폐시설은 보호외국인이 변기에 앉아있을 때 상반신이 드러날 정도의 높이여서 보호외국인의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보호거실에는 복도 쪽으로 유리창이 달리지 않은 쇠창살 창문이 설치되어 있다. 외벽에 난 창문에는 이중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창문이 아크릴로 덮여 있어 자연채광이나 통풍, 환기가 거의 되지 않는다.

UN 피구금지 처우 최저기준규칙에서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 보호거실과 관련

하여 제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보면, 수용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설비, 특히 모든 수면 시설은 기후상태와 특히 공기의 양, 최소 공간, 조명, 난방 및 환기의 조건을 고려함으로써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⁶⁰⁾ 특히 수용자가 기거하거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모든 장소의 창문은 수용자가 자연광선으로 독서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넓어야 하며, 인공적인 통풍설비의 유무와 관계없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⁶¹⁾

그러나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보호실의 거실은 외벽창문을 통한 자연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풍기의 원활한 작동이 필수적인데도, 방문조사 당시 대부분의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여서 환기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문을 통한 자연채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감시카메라는 각 보호거실에 두 대씩 대각선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하나는 거실을 비추고 다른 하나는 샤워실을 비추고 있다. 차폐시설이 낮아서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게 되면 상반신이 드러나고 감시카메라에도 그 모습이 그대로 비춰진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는 각 거실별로 선풍기나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복도에 냉난방 겸용기기가 3대 있다. 보호1실과 2실 사이 복도에 1대, 보호3실 앞쪽 복도에 1대, 보호4호실 앞쪽 복도에 1대 있다. 기기의 통제는 직원이 한다.

난방은 복도에 설치된 냉난방겸용기와 거실 바닥을 덥혀주는 축열식 온수 난방기를 사용한다. 샤워실 온수는 심야전력을 이용한 축열식 온수보일러로 이루어지는데, 1차 방문조사 시 심층면접을 했던 한 보호외국인은 보호3실 냉수는 나오지 않고 온수만 나와서 샤워를 할 수 없다고 진술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보호외국인은 온수는 나오지 않고 냉수만 나온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60) UN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 제10조

61) UN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 제11조

각 보호거실에는 2개의 전구가 달린 형광등이 2개씩 설치되어 있다. 보호1실은 가장 공간이 큰 보호실이기에 3개가 설치되어 있다. 자연채광이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외국인이 형광등을 끄고 생활하기는 어렵다.

독거실을 제외한 모든 보호거실에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고 채널의 선택은 보호외국인이 한다.

공중전화는 IC카드 전화기로 각 보호거실 출입문 바로 앞의 복도에 설치되어 있다. 전화를 걸기 위해서는 보호외국인이 철창 밖으로 손을 뻗어 수화기를 들고 전화를 해야 한다. 철창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번호를 누르기가 쉽지 않으며 수화기 선도 짧아서 수용자가 철창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통화해야 한다.

보호거실 청소는 보호외국인이 한다. 청소도구(빗자루, 쓰레받기)가 비치되어 있는 거실은 보호외국인에 의해 매일 청소가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은 거실은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아침마다 방 사람들과 함께 청소한다. 빗자루, 쓰레받기는 있으며, 청소용세제는 없고, 실내소독은 모르겠다. 청소담당자 있는지 모르겠으나 직원이나 공익도 청소하는 것을 본적은 없다.(사례 #3)

실내소독 하는 것은 본 적이 없고, 방바닥이 지저분해서 걸어 다니면 끈적거린다.(사례 #2)

청소용기는 비치되어 있지 않다. 5일 동안 빗자루 청소 한 번 했다. 걸레는 없어서 화장지로 방바닥과 변기를 닦았다. 변기가 너무 지저분하다. 청소용 세제를 지급한 적 없고, 소독을 할 적도 없다.(사례 #4)

다. 의복과 침구류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은 보호외국인에게 보호복 한 벌을 지급한다. 보호복은 다른 보호시설과 동일한 것으로 초록색의 합성섬유 재질로 하복은 반팔, 반바지, 동복은 긴팔, 긴바지이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속옷의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반해 심층면접에 응한 한 보호외국인은 가방속의 속옷을 반입하지 못하여 저녁에 속옷을 빨아 아침에 갈아입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가방에 속옷 여벌이 있으나 속옷을 한 벌만 소지하고 있다. 보통 저녁에 속옷을 빨아서 아침에 갈아입는다.(사례 #1)

보호복이 보호외국인의 체격에 맞도록 사이즈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한 수용자는 맞는 보호복이 없어서 몇일 동안 런닝과 팬티만 입은 채 지내야 했으며 친구가 방문했을 때도 속옷차림으로 면회했다고 진술했다.

몸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는 수치심을 느꼈다. 왜냐하면 내가 덩치가 커서 맞는 보호복이 없어서 몇 일동안 속옷만 입고 있어야 했다. 여자방을 지나갈 때 너무 창피했다.(사례 #3)

보호외국인에게 침구는 모포 3장만 지급되고 베개와 매트리스는 지급되지 않는다. 거실은 침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딱딱한 바닥인데, 베개와 매트리스 없이 바닥에서 자고 있는 보호외국인은 불만을 아래와 호소하였다.

지급받은 담요 3장 중 한 장은 베개로 사용하는데, 바닥이 딱딱하고 추워서 담요 1장을 깔고 1장을 덮고 지내기가 불편하다.(사례 #2)

보호실 내에는 자체 세탁시설이 없고 외부 용역업체에 세탁을 의뢰하고 있다. 각 보호거실에는 빨래비누나 빨래용 세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또한 빨래걸이가 없어서 보호외국인이 속옷과 수건 등을 세탁하더라도 건조시키기도 어렵다.

저녁에 화장실에서 속옷을 세탁해서 거실 또는 목욕탕에서 세탁물을 말린다.(사례 #1)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 따르면, 보통 보호외국인의 평균 보호기간은 5일 이어서 침구는 수용자가 퇴소할 때 세탁하여 교환하는데, 보호복과 모포 등의 세탁은 외부 업체에 위탁한다고 한다.

라. 의료

의료실공간은 확보되어 있지 않고, 의료기구나 의료진이 없어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영도병원’을 지정병원으로 정하고 있다. 보호외국인의 외부병원 진료는 자비 부담이 원칙이다. 소화제, 두통약, 감기약과 같은 비상약품을 비치하고 있다.

한 보호외국인은 직원들이 약을 요구해도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곳 안 공기가 안 좋아서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어지럽고 멍하다. 약품이 별로 없다. 오토바이 타다 다리 다친 사람이 있었는데 약 달라고 했지만 약 없다며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사례 #3)

마. 여가활동

TV시청 외에 여가활동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운동장과 운동 할 수 있는 기구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자료에 따르면, 도서는 한국어를 비롯한 11개국 언어로 된 서적 583권을 보유하고 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다양한 언어와 분야의 서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도서대출 방식은 책을 읽고자 하는 수용자들은 복사된 책의 표지를 보고 직원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직원은 컴퓨터에 도서대출 장부를 기록한다. 신문이나 잡지 열람은 불가능하다.

바. 식사 및 조리시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내에는 자체 조리시설이 없어서 외부 식당 3곳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보호외국인에게 공급한다. 1인당 하루예산은 3,500원이다. 아침은 토스트와 우유, 점심과 저녁은 식당의 메뉴 범위 내에서 보호외국인이 원하는 것을 주문할 수 있다. 특정종교에서 금기하는 고기류는 제공되지 않는다.

식사를 할 식탁이나 밥상이 없어 보호외국인들은 거실 바닥에 음식을 놓고 먹는다. 정수기는 각 보호거실 철창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어서 물을 마시려면 쇠창살 밖으로 손을 뻗어 마셔야 한다. 관계직원은 보호외국인이 요구하면 종이컵

을 지급한다고 설명하였지만 1, 2차 방문 시 하나의 컵으로 여러 외국인들이 사용하거나 컵이 없어서 밥그릇으로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심층면접에 응한 보호외국인들은 아래와 같이 밥과 반찬의 양이 적다는 불만을 제기하였다.

밥과 반찬의 양이 조금 적으며 맛이 없다.(사례 #1)

식사량이 너무 적다. 그리고 반찬이 적다. 아침은 우유와 빵. 점심은 볶음밥, 만두, 백반, 짬뽕국물+밥 중에 선택한다. 추가하려면 개인 돈을 부담해야 한다. 컵을 지급하지 않아서 밥그릇으로 정수기 물을 마신다. 정수기에 담긴 물은 수돗물인 것 같다. 통에 물이 없으면 직원이 통을 가져가서 금새 채워오는데, 껍찬 물통이 아니라 반쯤 채워서 가지고 온다. 또한 밤 10시가 되면 전원을 다 꺼버려서 한여름 물맛이 이상했다.(사례 #3)

식단결정은 본인이 다섯 가지 메뉴 중에서 선택하는데, 중국집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아 다른 종류의 음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급식량이 부족했다.(사례 #2)

사. 면회

면회실은 5층 감시실 옆에 1곳이 있다. 면회하는 동안 보호외국인에게 수갑은 채우지 않는다. 면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평일에만 가능하다. 하루 면회 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1회 면회가능 시간은 30분이다.

면회자와 피면회자 사이는 아크릴 판으로 가로막혀 있고, 스피커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만 음질은 좋지 않다. 특별 접견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필요시 조사실을 특별면회실로 사용한다.

아. 중앙통제실(CCTV 감시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총 11대의 감시카메라 있으며 각 보호거실에 두 대씩 설치되어 있다. 직원에 의해 감시실에서 통제·관리되는데, 녹화내용이 컴퓨터 하드에 3개월 저장된 후 자동 삭제된다. 감시카메라의 조작과 내용모니터링은 모두 남성직원에게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화장실 차폐시설이 낮아 여성이 샤워를 할 경우 상반신이 드러나는 상황이고 이러한 것이 여성보호거실의 감시카메라에도 비춰지는데, 감시카메라에 대한 모니터링은 남녀보호거실 구분 없이 남성직원에게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자. 진정, 고충 처리 상담

보호실 벽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⁶²⁾로 된 보호외국인 하루생활표와 인권위 진정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그리고 각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가 코팅상태로 부착되어 있다.

국가인권위 진정함은 면회실 앞에 설치되어 있는데 진정함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았으며, 면회를 하지 않는 보호외국인은 진정함이 있는지도 모를 수 있고 인권위 진정 등에 대한 구두고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정함의 기능에 대해 보호외국인이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진정함이 있는지 몰랐다.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는 방법, 출입국소장이나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할 수 있다는 사실 모두 몰랐다. 얼마 전 한달치 임금을 못받은 것에 대해 직원에게 이야기하였으나 별로 도움을 받지 못했고, 직원은 내일 출국하라고만 이야기하였다.(사례 #1)

게시된 통역 이용하라는 전화번호(면접자가 손으로 가리키며 물어보니) 안내문에는 한글과 영어로만 표기되어 있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중국어로 적힌

62) 중국어로 씌어진 안내문에 대해 보호 중인 중국인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고지문의 경우 일반 중국인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번체자로 적혀있을 뿐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되어있다.(사례 #3)

진정함이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른다. 직원들이 안내해 준 적 없다.(사례 #2)

한편,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영어를 제외하고 중국어, 러시아어, 인니·말레이어, 베트남어 통역이 가능한 직원이 각 각 1명씩 있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 국적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통역도우미로 활용하거나 외국인근로자통역지원센터를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호외국인 중 조사를 받을 때조차도 언어소통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는 호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보호소생활 중 가장 어려운 것은 의사소통 문제인데 처음 조사받을 때는 옆방의 조선족 여성이 통역을 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출국한 후에는 언어소통이 전혀 안된다. 직원들은 단지 “밥먹어, 잠자라” 정도의 간단한 중국어만 할 줄 안다. 급할 때는 내 친구에게 전화해서 전화로 통역하기도 하였다.(사례 #3)

따라서 다양한 통역시스템을 활용하여 고충처리 상담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차. 물품

보호소에서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물품은 칫솔, 타올, 모포, 보호복이고 화장지, 비누, 치약은 보호외국인이 공동으로 사용한다. 샴푸는 여성보호실의 경우에만 비치되어 있었고 남성보호실에는 없었다. 로션은 반입이 되지 않았고 면도기는 보호외국인이 요청할 때에만 지급한다.

입소시 개인 칫솔을 지급받았다. 면도기는 지급받지 못했고, 로션이 없다.(사례 #1)
샴푸가 있었으면 좋겠다. 수건 1장으로 몇 일 동안 계속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사례 #4)

여성보호외국인에게 필요시 생리대가 지급된다. 그러나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여성직원이 없어서 여성보호외국인은 남성직원에게 요청하여 생리대를 지급받고 있다.⁶³⁾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보호실에 수용될 때 신체검사 시에 여직원 1명을 보았으나 보호실에 수용된 이후로 여성 직원을 만난 적은 없다. 신체검사는 조사실에서 옷 갈아입을 때 여직원 1명이 입회하여 속옷 입은 상태에서 신체 외부를 손으로 만져서 검사하였다. 생리대는 남자 직원이 가져다주었다.(사례 #4)

3. 종합평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보호소로 이송하기 전이나 출국 전까지 단속된 미등록외국인을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기관이지만 보호외국인의 평균보호기간이 5일이나 되고, 2006년과 2007년 4월 사이 보호되었던 외국인만해도 5,400명이 넘는 보호시설이다. 따라서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가. 시설문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은 자연 채광과 환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창문의 크기 등을 개선하고 공기 청정상태에 대한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7, 외국인보호규칙 제37조는 보호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 및 폐쇄회로영상장치 등 감시장비는 보호외국인의 사생활, 초상권 등의 침해가 없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 또는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보호소의 경우 각 보호거실 출입문 안 위쪽에 1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비해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거실은 2개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과도하게 보호외국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63) 1차 방문 시에 여성보호실 화장실내에 생리대를 비치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2차 방문 조사 시에 확인해본 결과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화장실의 차폐시설이 낮아서 샤워나 화장실 사용 시 보호외국인의 모습도 노출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높이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식탁 등 보호외국인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집기를 구비하고, 거실 밖 복도에 설치된 정수기는 보호외국인의 인격권 존중과 편의를 고려하여 거실 내부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보호외국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정수기를 거실 밖에 두으로써 사용 시 마다 보호외국인이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나. 처우문제

면회시간과 관련하여 보호외국인에게 출국 준비를 위해 동료 등과의 면회가 필수적임에도, 현행과 같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평일 오전과 오후 시간대의 면회만 허용하고 있는 것은 보호외국인의 외부 교통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공휴일이나 일과 후 저녁 시간에 접견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⁶⁴⁾

출입국 보호 외국인중 생활규칙 및 권리구제 안내에 대하여 구두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보호외국인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과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호외국인에 대한 여벌의 속옷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보호외국인의 주장이 있으므로 이의 실태를 점검하고 보호외국인에게 적절한 크기의 의복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여름과 같은 시기에는 여벌의 보호복을 지급하거나 세탁의 간격을 줄이는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여성방의 CCTV 모니터링이나 여성용품 지급 등을 위해 보호담당 여성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여성외국인이 보호될 경우, 다른 부서의 여직원이 신체검사 등을 담당한다고 하지만 보호여성을 지원하는

64) 우리 위원회는 05진인2125, 2188병합사건과 관련하여 전국 구금시설에서 일요일등 공휴일에도 접견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데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IV. 시정이 필요한 사항

부산출입국관리사무 외국인보호실은 아래와 같은 사항의 시정이 필요하다.

1. 자연채광과 환풍이 가능하도록 창문의 개선과 공기 청정상태의 점검
2. 보호거실 내 감시카메라 수의 적절한 개선
3. 화장실의 차폐시설 높이의 적절한 개선
4. 식탁 등 보호외국인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집기의 구비와 거실 밖 복도에 설치된 정수기의 거실 내부 설치
5. 공휴일이나 일과 후 저녁 시간에 접견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대안 마련
6. 보호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과 언어로 이루어지는 생활규칙 및 권리 구제 안내
7. 보호외국인의 부자유스러운 공중전화 사용을 보완하기 위해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는 등의 대안 마련
8. 보호담당 여성직원의 배치
9. 보호외국인이 적절한 신체상태를 유지하도록 속옷의 반입 허용, 보호복 지급과 세탁 관행 개선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

I. 조사개요

1. 조사일정

- 자료제출 요구 : 2007. 5. 29.
- 방문조사
 - 1차 : 2007. 6. 15.(금)
 - 2차 : 2007. 9. 3.(월)
- ※ 1차 방문조사 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에 보호되어 있던 외국인은 31명이었다. 법무부가 2007년 6~7월을 미등록 외국인 자진출국 계도기간으로 설정하여 미등록 외국인 단속을 중지하고 자진출국을 홍보·교육하는 업무에 집중하였던 바, 1차 방문조사 당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에 미등록외국인으로 단속·보호된 자가 거의 없고 대부분의 보호외국인이 불법어로활동을 하다 나포된 외국선박 선원이었다. 이들은 방문조사 전날 보호되어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위원회는 2007. 9. 3.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조사를 위한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결과에 대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의견제출 요구 : 2007. 11. 30.(금)

2. 방문조사 참가자

- 1차
 - 외부전문가
양혜우, 김대권(이주노동자인권연대)
곽영숙(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김철효(국제이주기구, IOM)
정현정, Mr. Balde (유엔난민기구, UNHCR)
 - 위 원 회 : 이석준, 문은현(이주인권팀)
- 2차
 - 외부전문가 : 김기돈, 이상재, 양혜우, 최현모(이주노동자인권연대)
박선희, 곽영숙(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위 원 회 : 김수산, 문은현, 신병곤, 백미순(이주인권팀)

3. 조사방법

- 자료조사
 - 설문조사
 - 심층면접 조사
 - 시설조사
- ※ 보호외국인에 대한 설문조사는 전수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설문은 조사관이 보호실 각 방을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45부였다. 회수된 설문지의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심층면접 조사는 보호외국인의 자원을 받아 실시하였다.
- 시설조사는 조사표를 구성하여 ○, × 또는 수치와 조사자의 평가의견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II.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 업무 개관⁶⁵⁾

1. 보호시설 현황

| 구분 | 보호시설 | | 면적(평) | | 보호인원 | 비고 |
|----|----------|-----|---------|----------------------|------|---------------|
| | 특별실(1인) | 3실 | 27㎡ | 266.3㎡ (80.7평) | | |
| 5층 | 특별실(1인) | 3실 | 27㎡ | 266.3㎡ (80.7평) | 40명 | 미사용 (여성전용) |
| | 보호실(10인) | 4실 | 292.3㎡ | | | |
| 6층 | 특별실(1인) | 3실 | 27㎡ | 481.17㎡ (145.8평) | 73명 | 사용 중 |
| | 보호실(10인) | 8실 | 454.17㎡ | | | |
| 7층 | 특별실(1인) | 3실 | 27㎡ | 481.17㎡ (145.8평) | 73명 | 미사용 |
| | 보호실(10인) | 8실 | 454.17㎡ | | | |
| 계 | | 29실 | | 1,228.6㎡ (372.3평) | 186명 | |

2. 외국인 보호현황

가. 연도별 현황

| 구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8월 |
|---------|-------|-------|--------|--------|--------|---------|
| 보호외국인 수 | 9,111 | 9,715 | 14,641 | 25,278 | 12,645 | 10,713 |

65) 이 장의 내용은 2007. 6. 15.과 2007. 10. 24.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발췌한 것이다.

나. 국적별 현황

| 구 분 | 계 | 중 국 | 방글라데시 | 몽 골 | 인도네시아 | 필리핀 | 파키스탄 | 기 타 |
|------------|--------|-------|-------|-----|-------|-----|------|-------|
| 2006.12.31 | 12,645 | 5,689 | 1,464 | 577 | 535 | 431 | 580 | 3,369 |
| 2007. 8.31 | 10,713 | 5,334 | 753 | 781 | 455 | 247 | 236 | 2,907 |
| 전년동기 | 7,653 | 3,962 | 695 | 360 | 311 | 141 | 374 | 1,810 |

다. 강제퇴거 현황

| 구 분 | 계 | 중 국 | 방글라데시 | 몽 골 | 인도네시아 | 필리핀 | 파키스탄 | 기 타 |
|------------|-------|-------|-------|-----|-------|-----|------|-----|
| 2006.12.31 | 3,082 | 1,392 | 341 | 157 | 125 | 118 | 138 | 811 |
| 2007. 8.31 | 2,037 | 1,119 | 134 | 133 | 91 | 48 | 42 | 470 |

라. 단속 기관별 현황

| 구 분 | 계 | 자체단속 | 경찰등 신병인계 | 구치소 등 출소자 | EZZ위반 | 기타 (재입소등) |
|------------|-----|------|-------------|--------------|-------|--------------|
| 2007. 8.31 | 409 | 140 | 203 | 22 | 44 | 0 |
| 전월동기 | 97 | 4 | 82 | 11 | 0 | 0 |

마. 일시 보호해제 현황

| 구 분 | 계 | 중 국 | 방글라데시 | 몽 골 | 인도네시아 | 필리핀 | 파키스탄 | 기 타 |
|------------|----|-----|-------|-----|-------|-----|------|-----|
| 2006.12.31 | 21 | 16 | 0 | 1 | 0 | 0 | 0 | 4 |
| 2007. 8.31 | 32 | 21 | 1 | 0 | 4 | 0 | 0 | 6 |

※ 2006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보호일시 해제 대상자 수와 사유

- 소송 : 6명
- 신병치료 : 5명
- 임대보증금 및 채무 : 5명
- 체불임금 : 2명
- 가족부양 및 가사정리 : 2명

3. 외국인 고충처리 현황

| 구 분 | 계 | 체불임금해결 | | 의 료 구 호 | 출입국 관리법상 처분 | 보호 일시해제 | 기타 (절차 안내등) |
|------------|-------|--------|---------|---------|-------------|---------|-------------|
| | | 인 원 | 금액(천원) | | | | |
| 2006.12.31 | 420 | 166 | 200,558 | 12 | 19 | 12 | 202 |
| 2007. 8.31 | 1,312 | 341 | 364,114 | 16 | 18 | 32 | 905 |

4. 서류류 보유 현황

| | 중국 | 태국 | 러시아 | 몽골 | 필리핀 | 인도네시아 | 베트남 | 미얀마 | 방글라데시 | 네팔 |
|-----|-----|----|-----|----|-----|-------|-----|-----|-------|----|
| 530 | 110 | 45 | 20 | 45 | 25 | 50 | 50 | 35 | 100 | 50 |

5. 소방시설 설치 현황

| | 소화기 | 소화전 | 스프링 쿨러 | 화재 탐지기 | 비상 방송설비 | 유도등 (피난구) | 유도등 (통로) | 비상 조명등 | 방수구 |
|----|-----|-----|--------|--------|---------|-----------|----------|--------|-----|
| 5층 | 7 | 2 | 0 | 32 | 29 | 14 | 8 | 141 | 1 |
| 6층 | 14 | 2 | 202 | 12 | 40 | 13 | 11 | 175 | 2 |
| 7층 | 9 | 2 | 198 | 14 | 40 | 12 | 11 | 173 | 2 |
| 계 | 30 | 6 | 400 | 58 | 109 | 39 | 30 | 489 | 5 |

Ⅲ. 조사결과

1. 시설조사 결과 분석

가. 개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1946년 외무부 인천출장소로 출발하여 1961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칭되었다. 관할구역은 인천광역시 전체와 경기도 안산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이다.

1) 건물개요

인천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2006년 11월에 신축되었다. 사무소 건물은 총 7층인데, 1층부터 4층까지는 사무업무 용도이며 5층부터 7층까지는 외국인 보호 용도이다.

2) 보호시설 개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보호실에 수용 가능한 인원은 전체 186명이지만 현재 5층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 의하면, 5층에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설이 보수 될 때까지 폐쇄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6~7층의 보호 가능한 인원은 146명이다.

인천 출입국 관리 사무소 보호실은 5, 6, 7층 모두 건물 외벽 안쪽에 다시 내벽을 쌓아 2중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지어졌다. 건물의 외벽에는 창문이 나있고 이 외벽창에는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다. 1~2차 조사 시의 관찰에 의하면, 일부 외벽창문은 열려있는 상태였고 화재 예방을 위한 배연 창은 닫혀 있었다. 화장실은 외부벽 쪽으로 설치되었다.

보호실 각 층 중앙에는 통제실이 있다. 통제실을 중심으로 복도 왼편과 복도 오른편 양쪽에 철문이 있고, 철문 안쪽 양편의 공간에는 모두 가운데 홀을 중심으로 거실이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오른 편에는 혼거실 2개, 그 맞은편에 혼거실 1개와 독거실이 3개가 있으며, 왼편에는 혼거실 2개가 양

쪽에 있다. 화장실은 각 방에 딸려있다.

보호실 5층은 여성용이고 6층과 7층은 남성용으로 지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1차 조사 시에는 6층에 여성과 남성이 통제실을 기준으로 오른편과 왼편 공간에 각각 보호되어 있었으며 5층과 7층은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5층이 여성보호외국인 전용보호실이나 소방법에 의한 스프링클러 문제 및 보호실을 운영할 수 있는 인원부족으로 잠정적으로 시설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향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고 인원이 충원되면 여성전용보호실을 운영할 예정임을 밝혔다.

1차 방문시에는 남성거실은 오른편, 여성 거실은 왼편으로 비록 같은 층을 사용하고 있으나, 여성과 남성의 생활이 분리되어 있었으나 2차 방문시에는 여성거실이 있는 왼쪽 방을 남성보호외국인이 사용하고 있어서 여성들과 남성들의 생활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여성 방 철문 앞에 가림 막을 설치해 놓았으나 두 공간이 거의 붙어 있고 남성 방에서 면회 등을 위해 밖으로 나갈 때 여성 거실 안쪽이 들여다보이는 등 여성의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고 있었다.

외국인보호규칙 제9조는 보호시설의 방배정은 남자전용방과 여자전용방으로 구분하여, 보호외국인 중 남자는 남자전용방을, 여자는 여자전용방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UN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8조는 남자와 여자는 가능한 한 분리된 시설에 구금하여야 하고, 남자와 여자를 함께 수용하는 시설에서는 여자용으로 할당된 설비의 전체를 완전히 분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보호실에는 거실 외에 조리실, 세탁실, 면회실, 변호사 접견실, 탈의실, 물품 보관실, 성별 고충처리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다. 운동장이나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종교 활동을 위한 공간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진료실은 설치되어 있으나 의료기구나 설비는 갖추어져 있지 않고, 외상 치료약, 감기약, 진통제, 지사제 등의 비상약품을 구비하고 있다.

3) 보호업무 직원 및 관련자의 현황과 업무 내용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3명이며, 용역직원은 22명(남성 16명, 여성 6명), 공익근무요원 7명이었다. 2차 조사 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호집행과가 신설되어 직원이 16명, 용역직원이 24명, 공익근무요원이 2명으로 증원되었다.

보호업무 종사자들은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조는 직원 2인과 용역직원 8명, 공익근무요원 2명씩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직원은 외국인의 입소, 신체검사, 방 배정, 고충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용역 직원은 보호시설 경비, 입·퇴소 시 계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공익근무요원은 보호실 직원 업무를 보조한다.

여성 직원은 1명이고, 6명의 여성 용역직원이 여성의 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상근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 관련 종사자는 배치되어 있지 않다.

나. 개별시설 현황

1) 입소자 대기실

가) 입소절차

보호된 외국인은 가장 먼저 5층에 있는 입소자 대기실로 가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귀중품을 출입국관리 직원에게 보관한다. 이 때 보호복(관복)과 슬리퍼, 비닐봉지가 든 바구니를 지급받아 같은 장소에서 지급받은 보호복(관복)과 슬리퍼로 갈아 신은 후 입고 왔던 사복과 소지품을 비닐봉지에 넣어 번호표를 부착하고 다시 바구니에 넣어 보관시킨다.

담당직원은 입소자 대기실 안에서 보호외국인이 옷을 갈아입는 것을 확인하고, 보호외국인에게 몸에 난 상처나 아픈 곳이 있는지를 물어, 보호외국인이 진술할 경우에만 상처 부위를 확인하여 검사지에 기록하고, 의료조치가 필요한 외국인에게는 적당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담당 직원이 보호외국인에 대한 몸수색을 한 후 보호실 생활에 대한 설명을 한다.⁶⁶⁾

나) 시설 현황

입소자 대기실은 9명이 앉을 수 있는 대기 의자가 있으며, 신병인도서, 긴급보호서를 작성하기 위한 사무용 책상이 있고, 지급용 관복과 슬리퍼 보관함이 있다. 1차 조사 시에는 관복과 슬리퍼가 바구니 안에 뒤엉켜 불결하게 담겨져 있었으나 2차 조사 시에는 관물함이 제작·설치되어 그 안에 성별, 크기별로 보호복이 구분 보관되어 있었으며 그 상태도 청결하였다.

입소자 대기실에서는 신병인도서, 긴급보호서 작성, 현금이나 귀중품 보관의뢰, 탈의, 신체검사, 간단한 입실 오리엔테이션이 이뤄지고 있다. 여러 명의 보호 외국인이 한꺼번에 옷을 갈아입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개인용 칸막이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2) 물품 보관소

가) 기능

소장은 보호외국인의 소지품 중 보호시설 안에서 소지하고 사용하도록 허가한 소지품 외의 물품은 보호기간 동안 보관하였다가 보호시설 퇴소할 때에 반환하여야 하며, 귀중품과 현금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⁶⁷⁾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43조는 시설의 규칙에 의하여 피구금자가 소지하는 것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물건으로서 그의 소유에 속하는 모든 금전, 유가물, 의류 및 기타의 물건은 입소할 당시에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보관물에 관하여는 명세서를 작성하고 피구금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보관물을 양호한 상태에 두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실 입소 시 보호 외국인들은 대부분 긴급하게 단속되어 보호실로 이동되기 때문에 소지품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귀중품을 제외하고는 보관 물품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 보호외국인이 보관 물품을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을 의

66) 그러나 보호외국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보호기간과 향후 일정, 이의신청이나 인권 위 진정 등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7) 외국인보호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되하면, 직원은 이를 묶어서 번호표를 달고, 같은 번호가 적힌 종이를 보호외국인에게 나누어 준다.

현금 등의 귀중품은 따로 직원에게 맡겨 보관한다. 귀중품을 직원에게 맡길 경우 직원은 물품대장에 항목을 기록하고 보호 외국인의 확인 서명을 받는다. 보호 외국인이 직원으로부터 귀중물품을 되찾을 경우, 직원은 물품대장 목록에 그 내역을 기록하고 보호외국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확인서명 받는다.

외부에서 제3자가 보호외국인에게 반입하고자 하는 물건들, 주로 출국을 위한 짐이 들어있는 여행용 트렁크에 대해서는 직원이 물품 종류를 기입한 물품 반입 용지를 2장 작성하여 한 장은 외부 반입 의뢰자에게 주고, 다른 한 장은 보호외국인에게 물품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을 받고 전달한다.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가방이 크고 내용물이 많기 때문에 안에 든 물건을 일일이 확인을 하지는 못하고 가방의 개수만 확인하여 보관한다고 한다.

나) 시설현황

물품 보관소에는 246개의 물품 보관함이 있다. 보관함은 조립식 앵글에 나무 판자를 칸칸이 엮고 각 칸을 78cm, 세로 60cm, 높이 63cm 간격으로 나눈 형태이다. 각 보관함에 문이 달려있지 않아 개인물품은 개방된 채 보관되어 있다.

물품보관실에는 물품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5-6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반입된 물건이 분실된 일이 없다는 것이 직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물품보관함이 작아서 보관함에 큰 가방이 들어가지 않아 큰 여행용 트렁크 등은 보관함 밖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3) 보호거실

입소자 대기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에는 6층 보호거실로 이동한다. 보호거실로 들어가기 전 보호외국인은 검색대를 통과하여야 하고, 검색대 통과 후 다시 몸수색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수건, 칫솔, 담요 2장을 지급받는다. 아동, 가

족을 위한 보호 거실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아동의 경우 구금보다는 보호일시 해제를 통해 자발적인 출국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별도의 시설을 갖출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 독거실 (특별 계호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는 총 9개의 독거실(특별실)이 있다. 독거실은 주로 격리보호대상 외국인을 보호하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독거실의 면적은 27㎡이다. TV, 에어컨, 식탁, 사물함, 정수기, 침구 보관 선반 등 생활시설이 아무것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어 상황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다. 화장실에는 좌변기와 세면대만 있고 샤워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화장실에는 출입문이 없이 개방된 상태인데, 변기에 앉았을 경우 몸의 1/3 정도를 가려주는 차폐시설만 있다. 문 위쪽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로 방 전체와 화장실 전체를 볼 수 있다.

방에는 창문이 없어서 자연환기가 전혀 안되며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다. 창문이 없기 때문에 자연채광이 안되어 방의 조도는 낮에도 불을 켜놓아야 하는 상태이다.⁶⁸⁾

나) 혼거실

혼거실의 면적은 292.3㎡이고, 한개 혼거실에 10명 정도 보호된다. 직원진술에 의하면 모의나 소란 방지 등을 피하기 위해 보호 외국인들은 주로 국적이 다른 나라 사람끼리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호외국인들은 언어와 문화가 같은 사람과 방을 함께 사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UN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에서 보호외국인 생활하는 보호거실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보면, 수용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68) 난방은 가능하다고 하나 방문 기간이 여름이라서 난방이 어느 정도 공급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온수는 공급된다.

설비, 특히 모든 수면 시설은 기후상태와 특히 공기의 양, 최소 공간, 조명, 난방 및 환기의 조건을 고려함으로써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⁶⁹⁾ 특히 수용자가 기거하거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모든 장소의 창문은 수용자가 자연광선으로 독서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넓어야 하며, 인공적인 통풍설비의 유무와 관계없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인공조명은 수용자 시력을 해치지 아니하고 독서하거나 작업하기에 충분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⁷⁰⁾

인천출입국 보호실은 2006년에 신축되었기 때문에 건물전체가 청결한 편이다. 또한 외국인 보호실의 6층과 7층의 중앙 천정 일부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실내 자체의 느낌이 밝고 환하다. 가운데 홀에 면한 혼거실의 거실벽면이 쇠창살로만 이루어져 거실의 채광상태도 양호하다. 반면, 침실은 거실의 아크릴 창으로 들어오는 빛과 화장실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전부기 때문에 낮에도 어두컴컴한 편이다. 환기는 주로 환풍기를 통해 이뤄진다.

혼거실의 공간은 거실, 침실, 화장실로 나뉜다. 거실 앞면은 벽이 아니라 쇠창살로 막혀져 있고 쇠창살 가운데에 출입문이 있다. 출입문은 밖에서 문이 48cm 정도만 열리도록 장치를 해놓아서 한명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만 열린다. 화재와 같은 긴급 대피 시에 출입문의 개폐정도를 통제하는 장치를 절단하지 않으면 보호외국인이 위험에 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호실 내에서 집단난동 및 소동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방지하고 조치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각 보호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어 화재가 날 염려가 없고 중부소방소에서 출입문협소에 의한 대피어려움에 대해 지적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출입문 옆 편에는 배식 창구가 있다. 배식은 출입문이 아니라 이 창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거실에는 공중전화와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고, 나무재질의 10인용 고정 테이블과 의자가 있다. 거실 바닥은 인조석으로 되어 있어 화재

69) UN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 제10조

70) UN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 제11조

등에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 보호외국인은 슬리퍼를 신고 생활한다.

UN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은 식수 공급과 관련하여 모든 수용자는 필요할 때 언제나 음료수를 마실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출입국 보호실은 보호거실마다 정수기가 거실 밖 복도에 설치되어 있다. 보호외국인은 쇠창살 밖으로 손을 뻗어 정수기에서 물을 따라 마신다. 정수기는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회사로부터 필터교체 등 정기적인 정수기 관리를 받고 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발로 걷어차는 등의 보호외국인에 의한 훼손행위를 막고 정수기 관리사가 업무수행 시 보호실 내부로 들어가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정수기를 거실 밖 쇠창살 옆에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정수기 관리는 한달에 한번 정도 이루어지지만 보호외국인은 일상적으로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고 정수기 훼손사례도 이례적인 사건에 불과하다.

침실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편에 침상이 배치되어 있다. 바닥은 장판이 깔려있고 벽면에는 침구류를 넣을 수 있는 선반이 있다. 사물함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 선반에 침구류와 개인사물을 함께 보관하고 있다.

침실에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환기는 환풍기에만 의존하고 있다. 환기는 중앙 공조기를 통해 아침 점심 저녁 각 2시간씩 작동되며, 화장실 환풍기는 50분 작동 후 10분 정지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보호실 방문 당시에는 160명 수용 정원인 보호실에 60여명 정도가 보호되어 있어서 환기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보호 외국인의 수가 많아지면 자연환기가 안되기 때문에 환풍기만으로 충분한 공기 청정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내·외부 창문을 낮시간에 개방함은 물론 각 층마다 충분한 환풍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혼거실에는 6개의 형광등과 취침용 백열등 1개가 설치되어 있다. 자연채광이 되지 않아 낮에도 형광등을 켜 놓는다.

방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며 작동은 중앙에서 통제한다. 에어컨 가동 시간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보호된 외국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여름에도 전혀 더위를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난방은 온돌 장치이고 온수는 여름에도 공급되고 있다.

감시카메라는 출입문 벽 위에 1개가 설치되어 있다. 거실과 방의 움직임이 모두 파악되지만 화장실 내부의 모습은 볼 수 없고 단지 사람이 내부에 있는지 정도만 확인할 수 있다.

TV시청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TV 화질은 양호하다. TV 채널은 수용자가 직접 통제할 수 있으며, 유선방송을 모두 시청할 수 있다. 보호외국인들 중 일부는 오후 10시 이후 계속되는 연속극 등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저녁시청 시간을 더 늘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각 거실의 공중전화는 전화카드용이다. 사용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그 외 시간에는 전원이 꺼진다. 공중전화 카드는 매점 직원을 통해 구입한다.

화장실 문을 기준으로 오른 쪽에는 세면시설이, 왼쪽에는 변기가 설치되어 있다. 오른쪽 맞은 편 벽면에는 세면대 2개, 세면대 없는 2개의 수도꼭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벽면에 맞닿은 끝 쪽 벽면에는 고정식 샤워기가 2개 설치되어 있다. 왼쪽으로는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변기가 하나 있다. 방 쪽에서 보이는 화장실 벽면은 반은 시멘트벽이고 그 위쪽은 플라스틱 재질의 투명한 벽이어서 안쪽이 들여다보인다. 보호외국인이 변기 위에 앉으면 밖에서 가슴 위쪽이 보이고 샤워기 쪽에서 있으면 엉덩이부분까지 보인다. 1차 조사 시에는 보호외국인들이 매트리스로 투명벽 일부를 가려서 외부에 몸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는데, 2차 조사 시에는 샤워하는 쪽의 창문에 불투명 테이프를 붙여서 몸이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그러나 화장실에 샤워기, 세면대, 변기가 한꺼번에 붙어있는데 샤워시설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생활 보호는 미흡하다.

화장실에는 가로 107cm, 세로 75cm의 창문이 있으나 외벽으로 막혀 있어서 외부와 직접적으로 환기가 되지 않는다. 화장실 환기는 환풍기에 의존하고 있다.

화장실용 휴지통은 없고, 화장지 걸이도 없어서 화장지를 창문 위에 놓고 사용하고 있었다. 세면대에 치약 등을 올려놓는 선반이 없어서 보호외국인들은 치약이나 칫솔을 창틀에 올려놓고 사용한다. 샤워 시 옷을 걸어놓을 수 있는 장치도 없다. 화장실용 슬리퍼는 따로 제공되지 않는다.

청소는 주로 보호 외국인들이 하는데, 청소 시 청소 도구로 빗자루와 걸레를 지급했다가 청소가 끝난 후 회수한다. 화장실 청소 도구와 화장실 청소용 세제는 주 1회 지급한다. 거실 밖 정수기 옆에 휴지통이 설치되어 있다.⁷¹⁾ 실내 소독은 매달 1회씩 방역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다.

4) 의복과 침구류

보호외국인에게 대여하는 의류 및 침구의 종류는 「외국인보호규칙」 및 「보호외국인의의류및침구의제식등에관한규칙」에서 규율하고 있다. 남·여 구분에 따른 겨울옷과 여름옷으로 구분하고 겨울옷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여름옷은 6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 착용하도록 되어 있고, 소장 등은 기후, 외국인의 신체조건 기타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착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⁷²⁾

보호 외국인들에게는 하복으로 반팔과 반바지의 관복이, 동복으로 긴팔과 긴바지가 지급되며 춘추복은 지급되지 않는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의 경우 하복과 동복을 지급하는 시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외부기온에 따라 지급한다. 간절기인 2차 조사 시에 보호외국인의 의사에 따라 여성은 동복을, 남성은 하복을 입고 있었다.

보호복은 한 벌만 지급된다. 속옷과 양말을 제외한 다른 옷들은 외부반입이 불가능하며, 사복 착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속옷 등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반입을 허용하고 있고 보호외국인의 의복교체 요구가 있을

71) 1차 조사 시에는 휴지통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비닐봉투를 거실 철장에 걸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72) 보호외국인의의류및침구의제식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3조

경우 즉시 교체하여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 외국인 중 여벌의 속옷을 반입시켜 주지 않아 보호 당시 입었던 속옷 하나로 출국 시까지 입고 있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경우가 많았다.

UN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은 보호외국인의 의복과 관련하여 모든 의복은 깨끗하며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야 하고, 특히 내의는 위생관리에 필요한 만큼 자주 교체되고 세탁하도록 하고 있다.⁷³⁾ 속옷 등 반입은 수용질서의 유지 등 관리의 편의성이 아닌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전면금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되어야 한다.⁷⁴⁾

침구류로 매트리스와 담요 2장이 지급되는데, 동절기에는 담요가 한 장 더 지급된다. 침구류는 보호 외국인이 출소할 때 마다 세탁하고 있고, 담요의 청결도에 대한 보호외국인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5) 세탁 시설

인천 출입국 외국인보호실 내 세탁실에는 1대의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다. 세탁을 전담하는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세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⁷⁵⁾ 세탁 전담자가 배치되어 의복과 침구 교환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6) 의료

진료실은 공간만 있고 진료장비나 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처방전이 필요 없는 간단한 약품만 제공되고 있다. 상비약은 소화제, 두통약, 외상용 소독제 등이며, 보호외국인이 직원에게 증상을 얘기하고 약을 제공받는다. 이때 반출된 약품은 장부에 기입된다. 개인 질병이 있을 경우 외부로부터 반입된 약을 복용

73) UN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 제17조

74) 외국인보호규칙 제10조는 보호시설 안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의류 등은 보호외국인이 보호시설 안에서 소지하고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도록 소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75) 1차 방문 시에는 세탁 담당자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청소용역 아주머니가 세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필요시 세탁하였다.

할 수 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0월부터 길병원의 의료진이 방문하여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는데,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 오후에 한다. 또한 인하대 병원과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월 2회 보호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방문진료를 12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외래 진료 시 보호외국인의 자비 부담이 원칙이지만 응급 진료가 필요할 경우 국비가 지원된다. 2006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외부진료 이용은 총 18건인데 이중 진료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2명이다.

7) 여가활동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은 단기 수용시설이라는 이유로 운동장과 운동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의 1인당 평균보호기간은 5일이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한 달 정도 수용되는 경우도 있다. 심층면접에 응한 보호외국인 중에는 외부공기를 쐬지 못하고 장기간 실내에 갇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며 두통이 생기는 것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특히 2주 이상 보호된 외국인들은 실외 운동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UN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은 도서와 관련하여 모든 시설은 모든 범주의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오락적, 교육적인 도서를 충분히 비치한 도서실을 갖추어야 하며 수용자들이 이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⁷⁶⁾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는 5~6개국 언어로 된 300여권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다. 그러나 도서의 분야가 다양하지 않아서 독서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책은 양쪽 중앙 홀 벽에 비치되어 있는데, 도서 목록이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 독서를 원하는 사람에게 직원이 보호외국인의 모국어에 해당되는 적당한 책을 골라서 지급하고 있다.

76) UN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 제40조

희망자에 한해서 보호실 내 필기구 반입이 허용되나 집필 후 필기구는 바로 회수된다. 종이는 지급되지 않는데, 보호외국인들은 메모지가 없어 전화를 걸때 벽이나 종이컵 등에 기록하기도 한다. 집필기구를 금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출입국관리소 직원은 보호 외국인들이 펜으로 낙서를 하거나 무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외국인보호규칙」 제10조는, 소장은 필기구와 종이 등을 소지하고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기구는 보호외국인의 자유로운 서신작성과 집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서 필기구의 소지를 소장의 재량사항이 아닌 보호외국인의 권리로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구금시설 내에서 조차 수용자의 자유로운 집필을 보장하기 위해 보안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필기구의 종류를 제한할 뿐, 필기구의 소지자체는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필기구의 소지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 내에서 종교 활동이나 기타 취미, 오락을 위한 시설과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다만, 매주 한두 차례 기독교와 가톨릭 관계자의 방문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 제공되는 간식의 반입이 허용되고 있다.

8) 식사 및 조리 시설

소장은 보호외국인에게 하루 세 차례의 주식·부식 및 음료 등의 음식물을 급여하여야 한다. 음식물 급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호외국인 국적국의 관습을 고려하여야 한다.⁷⁷⁾

식사는 자체 내 조리가 가능하며 1인당 하루예산은 3,900원이다. 영양사 1명, 조리사 3명이 배치되어 있다. 이들은 직원 식사준비도 담당한다. 식사는 배식구를 통해 배급되며, 보호 외국인들은 식판을 가지고 거실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한다. 식사로 아침에는 빵과 달걀 우유나 두유가 제공되고, 점심 저녁은 한식으로 1식 3찬이 나온다. 밥은 190g 제공되며,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지급 된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슬람인에 대한 배려로 이슬람인이 보호되어 있

77) 외국인보호규칙 제16조

는 경우 돼지고기류를 식단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조리사들은 조리 시 위생모와 위생 장갑을 착용하고, 배식 시 1회용 장갑을 사용한다. 식기 세척기가 구비되어 있다. 식판에 뚜껑이 있어서 위생적이다. 외부에서 빵 음료수 과자 등의 음식은 반입할 수 없다.

9) 면회실

면회실은 4층에 있으며, 총 4개실이 있다. 보호외국인이 면회실을 이동하는 동안이나 면회를 하는 동안 수갑은 착용하지 않는다.

면회실마다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고, 전화기나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양쪽의 대화 내용은 잘 전달되고 있다. 면회내용을 감시하는 직원은 없다. 일반 면회실외에 변호사 접견실이 2층에 1개 있다. 변호사 접견실로 이동할 경우에는 경호를 받아 이동하고 수갑을 채우지 않는다.

면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평일에만 가능하다. 보호외국인의 면회자는 평일 늦게이거나 일요일이 아니면 면회 오기가 어려운 형편인 사람이 대부분이다. 보호외국인들이 출국을 위해 동료들에게 짐을 챙기는 등의 부탁을 할 필요가 있지만 이와 같은 면회시간대와 요일의 제한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심층면접에 응한 한 보호외국인은 평일 면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나는 지금 매우 불안하다. 주말 면회가 안 되어 누구한테 부탁해야 할지 난감하다. 평일도 오후 4시까지만 면회가 된다고 하는데 동료들이 모두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므로 평일 낮에 짐을 챙겨 이 먼 곳까지 시간을 맞춰 온다는 것이 힘든 상황이다(#5-1)⁷⁸⁾

한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평일 이외에 주말에도 부득이한 경우 보호실

78)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심층면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면접에 응한 외국인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적이나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

직원들로 하여금 보호외국인의 현금 및 짐들을 전달하고 있다.

1일 면회 횟수는 제한하지 않지만 면회신청자의 수에 따라 1회 면회시간은 10분 내지 20분 정도의 면회시간을 허용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6은 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다른 사람과 면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령인 「외국인보호규칙」에서 보호외국인의 면회가능시간을 평일 근무시간으로 제한하고, 일일면회횟수 및 면회시간을 지나치게 짧게 보장하고 있다.

부부나 성별이 다른 가족이 보호된 경우 직원재량에 의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허용되기도 하는데, 대부분 메모를 통해 필요한 용건을 전달하게 하고 있다.

10) 중앙통제실 / 감시카메라 감시실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7, 「외국인보호규칙」 제37조는 보호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 및 폐쇄회로영상장치 등 감시장비는 보호외국인의 사생활, 초상권 등의 침해가 없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 또는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감시카메라는 5층에 11개, 6층에 20개, 7층에 20개 등 총 29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24시간 작동된다. 녹화는 메모리 카드에 자동으로 보관되고, 기억용량이 다 차면 순차적으로 녹화내용이 삭제되면서 그 위에 다시 녹화 된다.

CCTV 모니터는 중앙 관리실에서 직원이 감시하고 있다. 현재 남성동과 여성동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남성 직원들이 여성방의 감시카메라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11) 진정, 고충 처리 상담

각 거실의 벽면에는 생활 수칙 안내문과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다.⁷⁹⁾ 또한 중앙 홀의 한쪽 끝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이 비치되어 있다.⁸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2개월 이상 장기보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 외국인을 화성이나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이동시키지 않고 인천 출입국 보호실에서 직접 출국을 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보호 기간이 다른 사무소의 보호실에 비해 긴 편이지만 보호 외국인의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한 후 출국시키고 있기 때문에 보호외국인의 전체 보호기간은 매우 짧은 편이다. 특히 담당 조사관은 보호외국인 조사 시 임금 체불 문제를 접수하고, 사업주 위반 조사와 함께 금품 문제 해결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 처리가 늦어질 경우 보호실 직원이 2차로 지원하고 있어서, 여권재발급, 예금 인출, 임금체불, 전세금 반환 등이 비교적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12) 기타 물품

보호실에서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물품은 칫솔과 수건이며 화장지, 비누, 치약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칫솔은 일회용이기 때문에 질이 낮지만 개인적으로 칫솔을 구입할 수 없다. 여성에게는 생리대와 샴푸가 지급된다.

샴푸, 로션 등의 생활용품 반입은 여성에게 한하여 허용되고 있다. 남성들에게 퇴소 시에만 일회용 면도기를 공급하고, 바로 회수하여 폐기한다. UN피구금자처우 최저기준규칙에 의하면, 수용자에게는 신체를 청결히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건강 및 청결 유지에 필요한 만큼의 물과 세면용품을 지급하여야 하고⁸¹⁾ 수용자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용모를 갖추기 위해서 머리와 수염을 충분히 관리하도록 설비가 제공되어야 하며 남자 수용자는 정기적으로 면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⁸²⁾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보호규칙 또한 위생관련 일용품 및 기타 물품으로 수건, 칫솔, 치약, 비누, 화장지, 위생용품, 빗, 손톱깎이 등을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샴푸나 로션 등은 구금시설에서도 반입을 허용하고 있는 물품으로 보호외국인이 자신의 용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보호실의 예산으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반입이라도 허용해야 할 것이다.

79) 1차 조사 시에는 방 벽면에는 생활 수칙 안내문만 부착되어 있었다.

80) 1차 조사 시에는 인권위 진정함이 없었다.

81) UN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 제15조

82) UN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 제16조

2. 설문 및 심층면접 조사 결과 분석

가. 조사대상자 관련 기초 사항

보호외국인의 국적은 중국이 27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60.0%이다. 베트남인이 8명, 우즈베키스탄인이 5명이고 그 밖에 인도, 키르기스스탄, 몽골, 러시아 국적 소지자가 각각 1명씩이다. 남성 보호외국인은 38명이고 여성은 6명이다.

<표 1> 국 적

(단위 : %, 명)

| 국가 | 빈도 | 비율 |
|--------|----|-------|
| 중국 | 27 | 60.0 |
| 인도 | 1 | 2.2 |
| 키르기스스탄 | 1 | 2.2 |
| 몽골 | 1 | 2.2 |
| 러시아 | 1 | 2.2 |
| 우즈베키스탄 | 5 | 11.1 |
| 베트남 | 8 | 17.8 |
| 결측 | 1 | 2.2 |
| 합계 | 45 | 100.0 |

<표 2>에 따르면, 보호외국인의 연령은 20대가 12명, 30대가 11명으로 대부분이 2, 30대이다.

<표 2> 나 이

(단위 : %, 명)

| 나 이 | 빈 도 | 비 율 |
|--------|-----|-------|
| 19세이하 | - | - |
| 20~29세 | 12 | 26.7 |
| 30~39세 | 11 | 24.4 |
| 40~49세 | 7 | 15.6 |
| 50세 이상 | 1 | 2.2 |
| 미응답 | 14 | 31.1 |
| 합계 | 45 | 100.0 |

보호외국인의 체류기간은 1년 미만인 11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나머지 외국인들은 1년 이상부터 7년 미만까지 체류기간의 분포가 고른 편이다.

<표 3> 체류기간

(단위 : %, 명)

| 체류기간 | 빈 도 | 비 율 |
|--------|-----|-------|
| 1년 미만 | 11 | 24.4 |
| 1~2년 | 5 | 11.1 |
| 2~3년 | 4 | 8.9 |
| 3~4년 | 8 | 17.8 |
| 4~5년 | 5 | 11.1 |
| 5~6년 | 3 | 6.7 |
| 6~7년 | 5 | 11.1 |
| 7~8년 | - | - |
| 8~9년 | 1 | 2.2 |
| 9~10년 | - | - |
| 10년 이상 | 1 | 2.2 |
| 미응답 | 2 | 4.4 |
| 합계 | 45 | 100.0 |

보호외국인의 종교를 보면, 무교라고 응답한 사람은 18명, 불교가 11명, 이슬람교가 5명이며, 그 밖에 개신교나 기타 종교에 응답한 사람이 7명이다.

<표 4> 종 교

(단위 : %, 명)

| 종 교 | 빈 도 | 비 율 |
|-------|-----|-------|
| 종교 없음 | 18 | 40.0 |
| 개신교 | 3 | 6.7 |
| 불교 | 11 | 24.4 |
| 이슬람교 | 5 | 11.1 |
| 기타 | 4 | 8.9 |
| 미응답 | 4 | 8.9 |
| 합계 | 45 | 100.0 |

보호외국인들이 입국하면서 소지하였던 비자의 종류를 보면 산업연수비자가 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기비자와 비전문취업비자 각각 6명 이었다. 이는 외국인이 산업연수비자를 받고 입국한 뒤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단기비자, 비전문취업비자를 받고 계속 체류함으로써 미등록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유학비자, 방문·동거비자 소지자도 각각 4명 있었다.

<표 5> 비 자

(단위 : %, 명)

| 비자종류 | 빈 도 | 비 율 |
|-------------|-----|-------|
| C2, C3 단기비자 | 6 | 13.3 |
| D2 유학비자 | 4 | 8.9 |
| D3 산업연수 | 12 | 26.7 |
| F1 방문, 동거 | 4 | 8.9 |
| F2 배우자 | 1 | 2.2 |
| E9 비전문취업 | 6 | 13.3 |
| 기타 | 9 | 20.0 |
| 미응답 | 3 | 6.7 |
| 합계 | 45 | 100.0 |

미등록외국인이 단속되어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호되기 전까지 종사한 직업은 주로 단순노동이다. 이중 공장노동자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노동자가 5명, 수산업노동자가 3명, 농림축산업노동자가 2명이다. 그 밖에 서비스업 종사자, 유학생도 각각 4명으로 나타났다.

<표 6> 직 업

(단위 : %, 명)

| 직 업 | 빈 도 | 비 율 |
|--------------|-----|-------|
| 공장노동자 | 20 | 44.4 |
| 건설노동자 | 5 | 11.1 |
| 수산업노동자 | 3 | 6.7 |
| 농림·축산업노동자 | 2 | 4.4 |
| 식당주방, 청소, 서빙 | 4 | 8.9 |
| 유학생 | 4 | 8.9 |
| 기타 | 5 | 11.1 |
| 미응답 | 2 | 4.4 |
| 합계 | 45 | 100.0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에 보호된 외국인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배우자가 남아있는 경우가 2명 있었는데, 이들의 국적은 모두 외국국적이었다. 자녀가 남아 있다고 응답한 외국인이 2명인데, 이 중 1명은 미성년 자녀이다. 그 밖에 형제자매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2명 있었다.

<표 7>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

(단위 : %, 명)

| 가 족 | 빈 도 | 비 율 |
|-----------------|-----|-------|
| 미성년 자녀 | 1 | 2.2 |
| 성인 자녀 | 1 | 2.2 |
| 한국인이 아닌 국적의 배우자 | 2 | 4.4 |
| 형제자매 | 2 | 4.4 |
| 없음 | 21 | 46.7 |
| 미응답 | 18 | 40.0 |
| 합 계 | 45 | 100.0 |

보호외국인들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주로 당하는 피해는 임금체불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보호외국인은 모두 14명으로 사기 4명, 폭행과 산재 각 각 1명에 비해 빈도수가 매우 높다.

<표 8> 피해의 형태

(단위 : %, 명)

| 피해의 형태 | 빈 도 | 비 율 |
|--------|-----|-------|
| 임금체불 | 14 | 31.1 |
| 폭행 | 1 | 2.2 |
| 사기 | 4 | 8.9 |
| 산재 | 1 | 2.2 |
| 기타 | 9 | 20.0 |
| 미응답 | 16 | 35.6 |
| 합계 | 45 | 100.0 |

<표 9>에 따르면,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 외국인은 주로 일주일 미만의 기간동안 보호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62.2%인 28명의 보호외국인이 보호기간이 일주일 미만이라고 답변하였으며, 10명은 2주일 미만이라고 답변하였다. 4주 미만이라고 답변한 경우는 3명이다.

<표 9> 총기간

(단위 : %, 명)

| 총 기 간 | 빈 도 | 비 율 |
|--------|-----|-------|
| 일주일 미만 | 28 | 62.2 |
| 2주일 미만 | 10 | 22.2 |
| 4주 미만 | 3 | 6.7 |
| 미응답 | 4 | 8.9 |
| 합계 | 45 | 100.0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2개월 이상 장기보호를 요하는 외국인을 화성외국인 보호소로 이송하고 있어, 외국인 평균보호기간이 5일이다. 그러나 위 <표 9>와

같이 종종 보호된 외국인 중 2주 이상 보호되기도 하고 심지어 한달 이내 보호되는 경우도 있는데, 시설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은 운동시설이나 기타 여가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자연환기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등 장기보호시설로서는 부적합하다.

장기 보호의 주된 사유는 체불입금 문제 해결, 여권발급 지연, 출국비용⁸³⁾ 마련 등이다.

나. 입소 시 신체검사

「출입국관리법」은 보호시설 입소절차로 피보호자의 신체, 의류 및 휴대품 검사를 규정하고 있다.⁸⁴⁾ 이러한 규정에 따라 외국인보호규칙 제6조 제1항은 담당공무원이 보호외국인의 키와 몸무게, 신체의 특징, 상처와 그 흔적, 질병유무, 그 밖에 신체 이상 유무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보호규칙시행세칙에서는 몸 검사 시 출입제한 규정을 두어 몸 검사 시 근무자 이외는 탈의실 안으로 들어 올 수 없으며, 탈의실 안 입소절차는 원칙적으로 보호외국인 1명씩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⁸⁵⁾

그러나 <표 10>에 의하면 보호시설에 들어와 몸 검사를 받을 때 혼자서 받은 경우는 17명에 지나지 않았고, 다른 보호자들과 함께 집단으로 몸검사를 받은 경우가 14명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성별로 구분해볼 때, 여성은 응답자 모두 개별적으로 몸검사를 받았다고 응답하였지만 남성은 집단으로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혼자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더 많다. 즉 남성의 경우 혼자 몸검사를 받았다는 응답자는 11명인데, 집단으로 받았다는 응답자는 14명이다.

83)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자비로 출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호외국인이 항공권 구입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때에는 이 비용을 국비로 지급하고 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출국비용 예산이 별도로 없어 필요시 마다 법무부 또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예산전용을 요청하기 때문에 이 처리기간만큼 보호 기간도 더 길어진다는 것이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설명이다.

84)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5(신체 등의 검사)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보호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85) 외국인보호규칙시행세칙 제9조 제1항, 제2항

<표 10> 몸 검사

(단위 : %, 명)

| | 전체 | | 남자 | | 여자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혼자 | 17 | 37.8 | 11 | 11.0 | 6 | 100.0 |
| 집단으로 | 14 | 31.1 | 14 | 56.0 | - | - |
| 미응답 | 14 | 31.1 | | | | |
| 합계 | 45 | 100.0 | | | | |

<표 11> 에 따르면,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에서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직원에게 몸 검사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4명이며, 옷을 입은 채로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6명이다. 알몸으로 검사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도 1명 있었다. 그러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속옷차림 및 알몸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주장은 보호외국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표 11> 몸검사 복장

(단위 : %, 명)

| | 전체 | | 남자 | | 여자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알몸 | 1 | 2.2 | 1 | 3.8 | - | - |
| 속옷 | 14 | 31.1 | 13 | 50.0 | 1 | 7.1 |
| 옷 입은 채 | 16 | 35.6 | 12 | 46.2 | 4 | 25.0 |
| 미응답 | 31 | 31.1 | | | | |
| 합계 | 45 | 100.0 | | | | |

외국인에 대한 몸수색은 해당 보호외국인과 같은 성의 담당 직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몸수색을 한 사람의 성별

(단위 : %, 명)

| | 전체 | | 보호외국인 남자 | | 보호외국인 남자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남자 | 27 | 60.0 | 27 | 100.0 | - | |
| 여자 | 6 | 13.0 | | | 6 | 100.0 |
| 미응답 | 12 | 26.7 | | | | |
| 합계 | 45 | 100.0 | | | | |

몸검사를 받으면서 수치심을 느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응답자 30명 중 11명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답변하였으며,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9명이었다. 옷을 입은 상태에서 외표검사를 받은 보호외국인보다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몸검사를 받은 보호외국인이 상대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답변한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13> 몸 검사에 대한 수치심여부

(단위 : %, 명)

| | 전체 | | 남자 | | 여자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수치심을 느꼈다 | 11 | 24.4 | 10 | 40.0 | 1 | 20.0 |
|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 | 19 | 42.2 | 15 | 60.0 | 4 | 80.0 |
| 미응답 | 15 | 33.3 | | | | |
| 합계 | 100.0 | 100.0 | | | | |

다. 권리고지 및 권리구제 관련

「외국인보호규칙」은 보호외국인에게 ‘보호소의 생활규칙⁸⁶⁾ 및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 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외국인보호규칙」 제8조는 보호외국인에게 ‘보호소의 생활규칙 및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 방법 등’을 해당

86)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12조 제1항은 생활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호외국인의 준수사항 및 하루생활 기준, 보안 및 위생상의 지시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미리 고지하고, 이 고지사항을 한국어·영어·중국어어로 작성하여 보호외국인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⁸⁷⁾

그러나 보호외국인이 구두로 이러한 내용을 설명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4명에 불과하다.⁸⁸⁾ 보호외국인은 주로 보호실 벽에 붙은 안내문이나 책자를 통해서 안내받았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14> 설명방법

(단위 : %, 명)

| | 빈 도 | 비 율 |
|----------------|-----|-------|
| 책자 | 4 | 8.9 |
| 보호소에 벽에 붙은 안내문 | 9 | 20.0 |
| 말로 설명 | 4 | 8.9 |
| 기타 | 6 | 13.3 |
| 미응답 | 22 | 48.9 |
| 합계 | 45 | 100.0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설명에 의하면, 보호외국인 입소 시 구두 설명 없이 생활규칙을 담은 유인물 ‘보호외국인 준수사항’을 나누어 주고 보호외국인에게 이를 직접 읽어 보게 한 후 서류에 이를 확인하는 사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생활규칙’, ‘이의신청’, ‘인권위 진정 등 권리구제 방법’의 유인물을 각각 벽에 게시해 놓고 있다.

87) 제8조 (생활규칙 등 알리기) ①소장은 보호시설의 생활규칙 및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사항은 한국어·영어·중국어(이하 “영어 등”이라 한다)로 작성하여 보호외국인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어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보호외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한 방법으로 게시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88)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통역자는 중국어 2명, 러시아어 1명, 몽골어 1명, 태국어 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배포된 ‘보호외국인 준수사항’ 및 벽에 게시된 ‘생활규칙’, ‘이의신청’, ‘인권위 진정 등 권리구제 방법’은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되어 있어 그 외 국가출신인 경우는 해당언어로 생활규칙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인권위 진정이나 법무부 청원에 대한 절차를 주요언어로 자세히 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호시설에 들어올 때 생활규칙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생활규칙에 대해 설명이나 안내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가 14명, 생활규칙에 대한 안내를 받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3명으로, 총 17명이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설명을 들었지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서 보호실의 생활규칙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생활규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고 답변한 경우는 12명이다.

<표 15> 보호시설 생활규칙 설명여부

(단위 : %, 명)

| | 빈도 | 비율 |
|---------------------------------|----|-------|
| 생활규칙에 대해 설명이나 안내 받은 적 없다 | 14 | 31.1 |
| 생활규칙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들었다 | 12 | 26.7 |
| 생활규칙에 관한 설명과 안내를 받았으나 이해할 수 없었다 | 3 | 6.7 |
| 미응답 | 16 | 35.6 |
| 합 계 | 45 | 100.0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에 입소할 때 외국인이 고지 받은 권리는 주로 외부로 편지를 쓰거나 전화할 권리, 친지나 가족을 면회할 권리인데, 각각 9명이 이러한 권리를 고지 받았다고 답변했다. 변호사나 자국의 영사와 면회하고 도움을 받을 권리를 고지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명이고 보호된 사실에 대해 이의 신청할 권리를 고지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명이다. 보호시설 내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법무부에 청원할 권리를 고지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명도 없다.

<표 16> 권리고지

(단위 : %, 명)

| | 빈도 | 비율 |
|--|----|-------|
| 친지나 가족을 면회할 권리 | 9 | 20.0 |
| 변호사나 자국의 영사와 면회하고 도움을 받을 권리 | 3 | 6.7 |
| 구금된 사실에 대해 이의 신청할 권리 | 1 | 2.2 |
| 보호시설 내의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또는 법무부에 청원할 권리 | - | - |
| 외부로 편지를 쓰거나 전화할 권리 | 9 | 20.0 |
| 미응답 | 23 | 51.1 |
| 합 계 | 45 | 100.0 |

이 때문에 <표 17>를 보면, 보호외국인 중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권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9명에 불과하다. 「출입국관리법」 제55조 제1항이 ‘보호명령서에 의하여 보호된 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등은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호외국인의 절반 이상인 26명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표 17> 이의신청 권리 인지 여부

(단위 : %, 명)

| | 빈도 | 비율 |
|-----|----|-------|
| 예 | 9 | 20.0 |
| 아니오 | 26 | 57.8 |
| 미응답 | 10 | 22.2 |
| 합계 | 45 | 100.0 |

보호외국인 중 실제로 법무부에 청원을 했거나 우리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5명이다.

<표 18> 진정·청원 여부

(단위 : %, 명)

| | 전체 | | 남자 | | 여자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진정·청원을 한 적이 있다 | 5 | 11.1 | 5 | 20.8 | - | - |
| 진정·청원을 한 적이 없다 | 23 | 51.1 | 19 | 79.2 | | 4 |
| 미응답 | 28 | 37.8 | | | | |
| 합계 | 45 | 100.0 | | | | |

보호외국인들은 진정이나 청원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로 8명이 ‘받아들여 질 것 같지 않아서’, 5명이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4명이 ‘출국하면 그만이기 때문에’라고 응답하였다. 그 밖에 ‘제기했을 경우 오히려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와 ‘절차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라고 답변한 경우도 각 2명이었다.

진정이나 청원을 통한 문제해결을 기대하지 않거나 진정이나 청원을 한 후 겪게 될 피해를 우려하는 것은 보호외국인이 진정이나 청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절차와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이유와 함께 입소 시 진정이나 청원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진정이나 청원제도의 근본 취지나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정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한편,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언어적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각종 권리구제 절차가 아무리 제도화되어 있다고 해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보호실 측이 보호외국인을 위한 적절한 통역지원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19> 진정·청원을 하지 않은 이유

(단위 : %, 명)

| | 전체 | | 남자 | | 여자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오히려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 2 | 4.4 | 2 | 12.5 | - | - |
| 받아들여 질 것 같지 않아서 | 8 | 17.8 | 6 | 37.5 | 2 | 40.0 |
| 절차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 2 | 4.4 | - | - | 2 | 40.0 |
|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 5 | 11.1 | 5 | 31.3 | - | - |
| 출국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 4 | 8.9 | 3 | 18.8 | 1 | 20.0 |
| 미응답 | 24 | 53.3 | | | | |
| 합계 | 45 | 100.0 | | | | |

<표 20>을 보면 보호외국인은 보호시설 내에서 법률문제나 인권침해문제와 관련하여 주로 출입국 직원이나 다른 나라 출신의 등록 이주노동자를 통하여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움을 받을 아무도 없었다는 응답자도 8명이었다.

<표 20> 도움 받은 사람

(단위 : %, 명)

| | 빈도 | 비율 |
|-------------------------|----|-------|
| 출입국관리국 직원 | 6 | 13.3 |
| 보호시설 내 외국인 수용자 | 1 | 2.2 |
| 합법 체류 중인 다른 나라 출신 이주노동자 | 5 | 11.1 |
|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관계자 | 1 | 2.2 |
| 변호사 | 1 | 2.2 |
| 종교인 | 3 | 6.7 |
| 아무도 없다 | 8 | 17.8 |
| 미응답 | 20 | 44.4 |
| 합 계 | 45 | 100.0 |

한편, 「외국인보호규칙」에서는 고충접수 및 처리절차를 신설하여 소장은 소속공무원 중 고충상담관을 지정, ‘청원대상이 아닌’ 보호외국인의 고충사항에 대하여 외국인고충상담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⁸⁹⁾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수용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고충상담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충상담관제도를 통하여 보호외국인의 체불임금 상담, 의료구호, 보호일시해제 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⁹⁰⁾

라. 의료 및 운동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 제24조에 의하면 의사는 모든 피구금자에 대하여 입소 후 가능한 신속히, 그 후 필요에 따라 면접하고 진찰하여, 특히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전염성 또는 접촉성 질환의 의심이 있는 피구금자를 격리하고, 사회복지에 지장을 주는 신체적·정신적 결함을 기록하고 작업에 대한 피구금자의 신체적 능력을 판정하여야 한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에는 의료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입소한 보호외국인 중 보호실 내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4명에 불과하다. 24명은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89) 제30조 (고충상담) ①소장은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 사유가 아닌 보호외국인의 고충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고충상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고충상담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90) 구체적으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7년, 286명에 대한 체불임금 해결, 의료구호 14건, 출입국관리법상 처분 17건, 보호일시해제 17건, 기타(절차안내 등) 664건을 수행했다고 답변했다.

< 표 21 > 보호실 내 진료여부

(단위 : %, 명)

| | 빈도 | 비율 |
|----------|----|-------|
| 받은 적이 있다 | 4 | 8.9 |
| 받은 적이 없다 | 24 | 53.3 |
| 미응답 | 17 | 37.8 |
| 합계 | 45 | 100.0 |

위에서 언급했듯이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별도의 진료실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응급이 아닌 환자는 인천기독병원, 인천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고, 응급환자는 인하대학병원으로 후송하고 있다. 특히 야간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을 하고 있다. 2007. 10. 6.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가천길병원과 협약을 맺어 보호외국인 전체 수용인원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관계직원의 설명에 의하면 현재까지 총 26명이 정기검사를 받았다고 한다.⁹¹⁾

그러나 보호실 내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4명이라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소 시 건강 상태에 대한 신속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신체의 자유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보호의 경우, 보호외국인들의 건강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 즉각 이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은 보호시설 당국의 매우 중요한 의무이다.⁹²⁾

91)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의료진 확보를 위하여 직제개정 요청을 한 상태이며, 07.10.06.일부터 매월 2회씩 정기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인하대병원과는 12월부터 월 2회 순회진료를 실시하기로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92) 외국인보호규칙 제21조 (환자진료)

①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병을 앓거나 상처를 입은 때에는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보호시설 안의 의료설비·의약품 및 인력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을 가진 보호외국인이 자비로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병이나 상처의 정도와 도주 우려 등을 판단한 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그 보호외국인을 지체없이 외부의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받게 한 후에 그 사실을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표 22>에 의하면,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에서 외부진료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을 당한 외국인 5명으로 나타났다.

<표 22> 외부진료 요청여부

(단위 : %, 명)

| | 전 체 | | 남 자 | | 여 자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했다 | 5 | 11.1 | 5 | 33.3 | - | - |
| 요청을 하여 치료를 받았다 | - | - | - | - | - | - |
| 요청한 사실이 없다 | 14 | 31.1 | 10 | 66.7 | 4 | 100.0 |
| 미응답 | 26 | 57.8 | | | | |
| 합계 | 45 | 100.0 | | | | |

또한 외부진료 요청에 대한 직원의 거절사유는 병원진료비를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이 보호외국인이 피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들을 계호할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표 23> 외부진료요청 거부 이유

(단위 : %, 명)

| | 빈도 | 비율 |
|---------------------------|----|-------|
| 돈이 없다고 하자 출입국직원이 거부하였다 | 1 | 2.2 |
| 함께 갈 출입국 직원이 부족하다면서 거부하였다 | 1 | 2.2 |
| 피병이라고 거부하였다 | 2 | 4.4 |
| 특별한 이유를 말하지 않고 거부하였다 | 2 | 4.4 |
| 미응답 | 39 | 86.7 |
| 합 계 | 45 | 100.0 |

따라서 보호외국인은 매우 긴급한 의료상황이 아니면 의사의 진료를 받기 어

③소장은 진료시설이나 담당의사가 없는 보호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외부의사를 불러 환자를 치료하게 하거나 환자를 외부의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받게 하여야 한다.

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은 보호가능 인원 면에서 외국인보호소에 준하는 규모이며, 실제 평균적 보호인원도 다른 외국인 보호실에 비해서 매우 많은 편이므로 의료인력의 상주나, 평균 보호일 수 이상 보호되는 외국인에 대한 건강상태 점검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호외국인은 외국인보호시설의 장이 정하는 하루 생활시간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하지만⁹³⁾, 원칙적으로 자유시간을 누릴 기회를 가지고 있다.⁹⁴⁾ 또한 이러한 자유시간을 이용하여 보호외국인들은 운동의 기회를 갖을 수 있어야만 한다. 실외운동은 모든 피구금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 제21조 제1항은 운동과 관련하여 '실외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피구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⁹⁵⁾

보호외국인에게 실외운동의 기회가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별도의 운동장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 다만, 관계직원의 설명에 의하면 실내에서 가능한 맨손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표 24>에 의하면,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외국인의 경우 운동시간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22명으로 가장 많이 나왔다. 남자의 경우는 19명, 여자의 경우는 3명이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매일 운동을 한다고 답변한 경우는 7명이었다. 실제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보호실의 보호외국인 생활시간표에 따르면, 식사시간과 취침시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간이 자유시간이고 특별히 운동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93) 외국인보호규칙 제24조 (하루생활)

- ①보호외국인은 소장이 정하는 하루생활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루생활표에는 식사시간·자유시간·운동시간 및 취침시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94) 외국인보호규칙 제25조 (자유시간) ①보호외국인은 자유시간을 누릴 기회를 가진다.

- ②보호외국인은 자유시간에 휴게실이나 방 등에서 스스로의 시간을 가지거나 다른 보호외국인과 어울릴 수 있으며,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 등을 읽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종교의식을 행할 수 있다.
- ③소장은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 또는 보호외국인의 안전이나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95) 「국제인권원칙과 한국의 행형」. 116쪽, 서울지방변호사회, 역사비평사, 1993

<표 24> 운동시간

(단위 : %, 명)

| | 전 체 | | 남 자 | | 여 자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전혀 없다 | 22 | 48.9 | 19 | 70.4 | 3 | 100.0 |
| 일주일에 2~3회 | 1 | 2.2 | 1 | 3.7 | - | - |
| 매일 | 7 | 15.6 | 7 | 25.9 | - | - |
| 미응답 | 15 | 33.3 | | | | |
| 합계 | 45 | 100.0 | | | | |

마. 보호실 내의 인권침해 및 진정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외국인 중 보호실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7명인데, 그 유형은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협박, 구타나 폭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많은 경우인 5명이 출입국관리국 직원이나 공익 근무 요원 등 한국인 관리자로부터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응답했다.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24명이다.

<표 25> 보호실 내의 괴롭힘

(단위 : %, 명)

| | 전체 | | 남자 | | 여자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그런적 없다 | 24 | 53.3 | 18 | 72.0 | 6 | 100.0 |
| 구타·폭행 | 1 | 2.2 | 1 | 4.0 | - | - |
| 욕설, 모욕적인 말 | 5 | 11.1 | 5 | 20.0 | - | - |
| 협박을 당함 | 1 | 2.2 | 1 | 4.0 | - | - |
| 미응답 | 14 | 31.1 | | | | |
| 합계 | 45 | 100.0 | | | | |

보호실 내에서 면회나 운동, 종교 활동 등을 위해 이동하는 중 수갑이나 포

승을 착용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30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착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수갑이나 포승 등의 계구는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 제4항, 「외국인보호규칙」 제43조에서 자살, 자해, 도주 또는 폭행의 염려가 있는 보호외국인에게만 사용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소장의 명령에 의해서만 사용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면회나 운동, 종교활동 등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계구가 사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부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에서는 이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보호외국인 1명이 계구를 착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26> 이동 중 수갑·포승 착용여부

(단위 : %, 명)

| | 전체 | | 남자 | | 여자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착용한 적이 있다 | 1 | 2.2 | 1 | 20.7 | - | - |
| 착용한 적이 없다 | 29 | 64.4 | 23 | 79.3 | 6 | 100.0 |
| 미응답 | 15 | 33.3 | | | | |
| 합계 | 45 | 100.0 | | | | |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강제력의 행사와 더불어 보호외국인을 격리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보호외국인의 자살 또는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도주,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 거부나 방해 등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해당외국인을 격리보호 할 수 있다. 격리보호절차는 「외국인보호규칙」 제40조에 의하여 담당공무원은 사건경위와 격리보호의 필요성 등을 조사한 후 소장에게 사건발생보고를 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특별계호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한 후 특별계호지시서를 발부받아 격리 보호하고, 중점관리외국인기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격리 보호할 때에는 해당외국인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제출한 자료 및 직원 진술에 의하면, 2006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독거실에 보호외국인을 수용한 경우는 공식적으로 한 건도 없다. 그러나 보호외국인은 소리를 지르거나, 소란을 피운 사람이 단기간 독거실에 수용된 사례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설문조사 결과 4명이 독거실에 수용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표 27>에 따르면,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에서 독방에 수용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명이다.

<표 27> 독방 수용 여부

(단위 : %, 명)

| | 전체 | | 남자 | | 여자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독방에 수용된 적이 있다 | 4 | 8.9 | 4 | 14.3 | - | - |
| 독방에 수용된 적이 없다 | 30 | 66.7 | 24 | 85.7 | 6 | 100.0 |
| 미응답 | 11 | 24.4 | | | | |
| 합계 | 45 | 100.0 | | | | |

격리수용(독방수용)은 보호외국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극대화시키는 징벌적 성격을 띠는 강제처분인바,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의하여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비공식적이고 자의적으로 보호외국인을 격리수용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므로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

3. 종합평가

외국인보호실로 이송하기 전까지 단속된 미등록외국인을 한시적으로 보호하는데 그치는 다른 외국인보호실과는 달리,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은 대상외국인을 출국 전까지 보호하는 장기보호시설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증축 이후 보호외국인은 하루 평균 43.3명으로, 같은 기간의 전국 보호인원 137,411명의 6.7%를 보호해 왔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보호실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들에게 보호생활 만족도를 묻은 결과인 <표 28>를 보면, ‘만족스럽다’ 혹은 ‘지낼만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모두 15명이고, ‘다소 고통스럽다’ 혹은 ‘매우 고통스럽다’고 응답한 사람은 모두 21명으로, 보호실 생활에 대한 시설에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특히 보호실 생활이 만족스럽다고 답변한 사람이 4명인 것에 비해 매우 고통스럽다고 응답한 사람은 9명이며, 여성 응답자는 6명 전원이 보호시설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한 느낌

(단위 : %, 명)

| | 전체 | | 남자 | | 여자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만족스럽다 | 4 | 8.9 | 4 | 13.3 | - | - |
| 지낼 만하다 | 11 | 24.4 | 11 | 36.7 | - | - |
| 다소 고통스럽다 | 12 | 26.7 | 7 | 23.3 | 5 | 83.3 |
| 매우 고통스럽다 | 9 | 20.0 | 8 | 26.7 | 1 | 16.7 |
| 미응답 | 9 | 20.0 | | | | |
| 합계 | 45 | 100.0 | | | | |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은 건물내부가 청결하고 거실 면적이나 시설 등을 볼 때, 다른 보호실에 비해 보호여건이 좋은 편이다. 그러나 운동시설이 미비하고 자연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장기보호를 위한 시설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고, 보호외국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가. 시설문제

무엇보다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은 남녀의 분리수용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보호외국인의 규모와 계호 인력

등의 조건에 비추어 일시적으로 6층에 여성과 남성을 동시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거실과 여성거실 공간이 거의 붙어 있고, 면회 등을 위하여 이동할 때 각자의 생활공간이 들여다보이는 상태여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보호외국인은 남성보호외국인의 보호공간과 완전히 분리된 여성전용실에서 보호되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방의 CCTV를 남성 직원이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출입문 벽 위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 거실과 방의 움직임이 모두 파악된다는 점에서 보호 외국인 여성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보호실 출입문은 밖에서 겨우 한 사람 정도만 들을 수 있도록 개폐정도를 통제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 장치로 인해 화재 등 긴급대피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호외국인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많다. 또한 무엇보다도 거실 밖 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거실의 출입문에 까지 이러한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은 보호외국인에게 보호가 아닌 구금되어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더할 뿐인 것으로 보호대상자라는 법적 지위에 부합하지 않아 보호외국인의 존엄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거실 밖 복도에 설치된 정수기는 보호외국인의 인격권 존중과 편의를 고려하여 거실 내부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보호외국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정수기를 거실 밖에 둬으로써 사용 시 마다 보호외국인이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은 자연환풍이 되고 있지 않아 공기 청정상태에 대한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가 거실 내 샤워실 쪽 유리벽에 불투명 테이프를 붙이는 보완장치를 하기는 했지만, 현재상태로는 보호외국인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인격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화장실 이용 시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현행의 투명 가림막 차폐시설을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나. 처우문제

원칙적으로 입소 절차 중 신체검사 시 근무자 이외에 탈의실에 들어올 수 없고 탈의실 안 입소절차는 보호외국인 1명씩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 결과 혼자서 아닌 집단으로 신체검사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4명이었던 점에 비추어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에서는 신체검사와 관련한 원칙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은 평균보호기간인 5일 이상을 보호하는 경우도 있어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호외국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보호실 방들이 외부로부터의 자연환기가 어려워 보호외국인에게 외부의 신선한 공기 속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간단한 운동 기구들도 구비해야 한다.

또한 현재로서는 자유시간에 책을 보거나 TV를 보는 이외에 다른 여가프로그램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구비된 도서도 분야가 다양하지 않고 도서 목록 등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이 도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여가활동을 위한 다른 기구 혹은 장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남성보호외국인에게는 샴푸나 로션 등의 생활용품이 지급되지 않으며 반입 또한 허용되고 있지 않다. 보호외국인이 신체를 청결히 하고 단정한 용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므로, 샴푸나 로션 등의 반입을 허용하고 정기적으로 면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더욱이 현재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호외국인의 평균 보호기간이 5일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여벌의 속옷 반입을 금지하고 있어 많은 보호외국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이 집필을 원할 경우에만 필기도구를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필기구는 자유로운 집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로 보호외국인이 필기구를 언제든지 소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면회시간과 관련하여 보호외국인에게 출국 준비를 위해 동료 등과의 면회가 필수적임에도, 현행과 같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평일 오전과 오후 시간대의 면회만 허용하고 있는 것은 보호외국인의 외부 교통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공휴일이나 일과 후 저녁 시간에 접견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96) 또한 1일 면회 횟수는 제한하지 않지만 1회 면회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여 면회시간을 지나치게 짧게 보장하고 있다.⁹⁷⁾

96) 우리 위원회는 05진인2125, 2188병합사건과 관련하여 전국 구금시설에서 일요일등 공휴일에도 접견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97) 외국인보호규칙 제33조는 일반면회의 시간을 30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호외국인의 접견권의 중요성 및 통역시간을 고려하여 최소 30분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인천출입국 보호실의 현행 면회제한 시간은 지나치게 짧다.

IV. 시정이 필요한 사항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은 아래와 같은 사항의 시정이 필요하다.

1. 보호외국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더욱 철저한 남녀의 분리수용과 여성거실의 감시카메라 모니터링은 여성직원이 담당
2. 보호실 출입문의 개폐정도를 통제하는 장치 제거
3. 거실 밖 복도에 설치된 정수기를 거실 내부에 설치
4. 거실 내 공기청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5. 거실 내 욕실 및 화장실 가림막 시설을 보완
6. 보호외국인 1명씩 입소 신체검사 실시
7. 보호외국인들의 운동 공간 확보와 운동 기구 구비
8. 외국인이 구비 도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과 보호외국인의 여가활동을 위한 다른 기구 혹은 장비의 마련
9. 보호외국인이 신체를 청결히 하고 단정한 용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남성보호외국인에게 샴푸나 로션 등의 반입 허용과 정기적으로 면도를 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
10. 보호외국인의 여벌 속옷의 반입 허용
11. 자유로운 집필을 위해 보호외국인의 필기구 소지 허용
12. 공휴일이나 일과 후 저녁 시간에 접견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대안 마련과 1회 면회 시간 개선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

I. 조사개요

1. 조사일정

- 자료제출 요구 : 2007. 5. 29.
- 방문조사 : 2007. 6. 14.(목)
- 조사결과에 대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의견제출 요구 : 2007. 11. 30.(금)

2. 방문조사 참가자

- 외부전문가 : 양혜우(이주노동자인권연대)
김재원(이주여성인권연대)
- 위 원 회 : 김수산, 백미순(이주이권팀)

3. 조사방법

- 자료조사
- 시설조사
- ※ 방문조사 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에는 보호외국인이 없었다. 방문조사 기간인 6월과 7월이 미등록 외국인 자진출국 계도기간이어서 미등록 외국인이 단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경찰서 등을 통하여 신병이 인계된 외국인들이 있는 경우 곧바로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보호외국인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은 임시보호시설이고 시설조사나 자료조사만으로도 보호시설과 보

호외국인에 대한 처우 현황을 대강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방문조사를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였다.

시설조사는 조사표를 구성하여 ○, × 또는 수치와 조사자의 평가의견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II.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 업무 개관⁹⁸⁾

1. 보호시설 현황

| 구 분 | | 면적(평) | 남성보호거실 | 여성보호거실 |
|---------------|--------|-------|----------------------------|------------|
| 6층 (55.2㎡) | 면적(평) | 16.7평 | 13.3평 | 3.4평 |
| | 보호실 개수 | 4개 | 2개실 : 각 3.4평 1개실 : 6.5평 | 1개실 : 3.4평 |
| | 화장실 | 4개 | 3명 | 1개 |
| | 적정수용인원 | 13명 | 10명 | 3명 |

2. 외국인 연도별 보호현황

| 구 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5월 |
|----------|-------|--------|-------|----------|
| 연 보호인원 | 6,617 | 16,905 | 7,556 | 2,444 |
| 일평균 보호인원 | 20.6 | 34.8 | 21.3 | 9.8 |
| 일평균 보호기간 | 1.7 | 2.3 | 2.0 | 1.4 |

98) 이 장의 내용은 2007. 6. 14.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발췌한 것이다.

3. 2006년 단속현황

가. 단속사유 현황

| 구 분 | 계 | 불법취업 | 불법체류 등 |
|----------|--------|--------|--------|
| 전국(명) | 23,777 | 16,710 | 7,061 |
| 수원사무소(명) | 3,274 | 2,335 | 939 |
| 비율(%) | 13.7 | 13.9 | 13.2 |

나. 국적별 현황

| 구분 | 계 | 중 국 (한국계 중국) | 방글라데시 | 인도네시아 | 몽골 | 파키스탄 | 필리핀 | 태국 | 베트남 | 기타 |
|------|-------|--------------------|-------|-------|-----|------|-----|-----|-----|-----|
| 2006 | 3,274 | 1,045 (510) | 370 | 121 | 177 | 92 | 248 | 462 | 229 | 530 |

다. 성별 현황

| 구 분 | 계 | 남성 | 여성 |
|------|-------|-------|-----|
| 2006 | 3,274 | 2,301 | 973 |

4. 일시 보호해제 현황

| 구 분 | 계 | 산업재해 | 신병치료 | 자녀부양 | 소송수행 | 체불임금 | 채권 | 전세금 반환 | 기타 |
|----------|----|------|------|------|------|------|----|-----------|----|
| 2006 | 34 | 1 | 7 | 1 | 4 | 3 | 0 | 9 | 9 |
| 2007. 4. | 8 | 0 | 1 | 0 | 3 | 0 | 1 | 1 | 2 |

3. 외국인 고충처리 현황

| 구 분 | 계 | 체불임금해결 | | 의 료 구 호 | 출입국 관리법상 처분 | 보호 일시해제 | 기타 (절차 안내등) |
|----------|-------|--------|---------|------------|-------------------|------------|----------------|
| | | 인 원 | 금액(천원) | | | | |
| 2006 | 411 | 166 | 200,558 | 12 | 19 | 12 | 202 |
| 2007. 8. | 1,312 | 341 | 364,114 | 16 | 18 | 32 | 905 |

4. 서류류 보유 현황

| 계 | 한국 | 중국 | 태국 | 러시아 | 몽골 | 필리핀 | 인도네시아 | 베트남 | 미얀마 | 방글라데시 | 네팔 |
|-----|-----|-----|----|-----|----|-----|-------|-----|-----|-------|----|
| 772 | 233 | 120 | 60 | 30 | 46 | 26 | 45 | 81 | 37 | 61 | 33 |

5. 소방시설 설치 현황

| 구 분 | 사무소전체 | 보호실(6층) | 비 고 |
|---------|--|--------------|-------------------------|
| 수동식소화기 | 분말(3.3kg) 21개 | 분말(3.3kg) 8개 | 2007. 4. 5개 추가비치 |
| 자동확산소화기 | 분말(3kg) 8개 | 분말(3kg) 8개 | |
| 완강기 | 5개 | 1개 | |
| 화재수신기 | P형 1급 수신기 2개 | P형 1급 부수신기 | 2007. 4. 당직실 부수신기 설치 |
| 기타 | 열/연기 감지기 31개, 유도등 16개, 경종 7개, 비상조명등 1개 | | |

III. 시설 조사결과

1. 개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4년 1월 1일 신설되었다. 관할 구역은 수원, 군포, 의왕, 용인, 오산, 이천, 평택, 안성, 화성, 광주 10개시와 양평군, 여주군 2개군이다. 평택항에 평택출장소가, 오산군용비행장에 오산출장소가 있다.

가. 건물개요

수원사무소는 지상 6층의 건물로, 1층부터 5층까지는 사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6층은 보호실로 사용하고 있다.

나. 보호시설 개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보호실 규모는 55.2㎡이며 4개의 보호거실이 있다. 적정보호인원은 13명이다. 보호실은 외벽 안쪽에 판넬을 쌓아 내벽을 만들어 거실은 배치하였으며, 외벽과 내벽 사이의 통로는 없다.

보호실 출입구는 방화문으로 되어 있고, 왼편에 면회창구가 있다. 출입문에서 안쪽을 볼 때 복도 오른쪽에 보호거실 있고, 왼편에 면회실, 통제실과 물품보관실이 있다. 독거실은 없으며 혼거실 4개만 있고 그 중 여성용으로 1개실을 사용하고 있다. 보호거실은 거실 겸 침실과 화장실 1개로 구성된다.

수원출입국 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에는 조리실, 세탁실, 운동공간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다. 보호업무 직원 및 관련자의 현황과 업무 내용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심사과에서 외국인보호실의 전담 근무자는 직원 4명, 공익요원 5명이며, 용역 직원은 없다. 보호업무 종사자는 주간조와 야간조 2교

대로 2명씩 근무하고 있다.

직원은 외국인의 입소, 신체검사, 방 배정, 고충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공익요원은 보호 업무를 보조한다. 여성 직원은 없고 필요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여성직원이 역할을 보조하고 있다.

2. 개별시설 현황

가. 물품보관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에는 입소자 대기실이 없다. 보호된 외국인은 물품보관실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옷을 갈아입는다. 귀중품은 직원에게 보관하고, 입고 있던 옷 등의 간단한 물품은 물품 보관함에 넣어둔다. 옷을 갈아입은 후 검색대를 통과하여 보호거실에 배치된다.

신체검사 시 담당직원은 보호외국인에게 몸에 난 상처나 아픈 곳이 있는지를 물어, 보호외국인이 진술할 경우 상처 부위를 확인하여 검사지에 기록하고, 의료조치가 필요한 외국인에게는 적당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생활안내, 권리 및 권리구제절차를 안내문 제시와 함께 구두로 안내하고 있으며, 보호거실 벽에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보호외국인 준수사항과 하루 생활 시간표, 진정 및 이의신청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보호실 입소 시 보호 외국인들은 갑자기 단속되어 보호실로 이송되기 때문에 소지품이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귀중품을 제외하고는 보관 물품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 보호외국인이 소지품을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을 의뢰하면, 직원은 비닐 봉지위에 해당 외국인의 이름을 쓴 후 입구를 봉합하여 보관소에 넣어둔다.

직원에게 맡겨지는 귀중품에 대해서만 직원이 물품대장에 항목을 기록하고 보호 외국인으로부터 확인서명을 받는다.

물품 보관함은 조립식 앵글에 나무판자를 칸칸이 엮은 모양이며, 보호 외국

인들이 소지하고 있었던 물품만이 아니라 보호외국인들에게 지급되는 관복 등도 함께 보관된다.

나. 보호거실 현황

혼거실의 면적은 3개실이 3평, 1개실이 6평이다. 거실면적에 차이가 있을 뿐 다른 환경은 동일하다. 거실 출입문은 쇠로 되어 있고 중간쯤에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어 이 곳을 통해 외부와 소통한다. 출입문에는 걸음쇠가 장치되어 있어 한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만 열린다. 보호거실 중 1개실이 여성용 혼거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 공간이 특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

각 혼거실에는 텔레비전이 하나씩 비치되어 있고, 이불보관함이나 탁자 등의 부대시설은 전혀 없다. 바닥은 비닐 장판으로 되어 있으며, 벽의 재질은 안예스치로폼으로 감싼 철제판넬이다. 거실 벽면에 보호생활 수칙 등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보호거실의 창문은 열리지 않고 크기가 작아 자연채광이 되지 않아서 낮에도 불을 켜야만 하며, 형광등과 백열등이 각 한 개씩 있으나 천정이 높아 실내가 어두운 편이다.

각 보호거실에 환풍기가 하나씩 있으나 보호거실 크기에 비해 용량이 작아 충분한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⁹⁹⁾

UN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에서 보호외국인 생활하는 보호거실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보면, 수용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설비, 특히 모든 수면 시설은 기후상태와 특히 공기의 양, 최소 공간, 조명, 난방 및 환기의 조건을 고려함으로써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¹⁰⁰⁾ 특히 수용자가 기거하거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모든 장소의 창문은

99) 이번 방문 조사 당시에는 보호된 외국인이 없어서 환기에 별 문제를 느낄 수 없었으나, 다양한 국적의 보호외국인이 보호 중이던 2005년 우리 위원회의 방문 조사 당시에는 방안의 냄새가 심한 편이었다.

수용자가 자연광선으로 독서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넓어야 하며, 인공적인 통풍설비의 유무와 관계없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인공조명은 수용자 시력을 해치지 아니하고 독서하거나 작업하기에 충분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¹⁰¹⁾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은 인공적인 통풍설비도 충분치 않을뿐더러¹⁰²⁾ 거실 내 창문이 너무 작아 자연채광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임대시설로 건물구조상 채광 및 통풍시설이 부족할 수 있지만 보호외국인의 안전 및 생명의 보전을 위해 외부 개방형 창을 대형으로 설치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호시설의 환경이 열악하여 보호외국인을 평균 2일 이상 보호하지 않고 입소한 다음 날에는 인근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보호 의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2004년 이래 입소 외국인이 적어도 하루 이상은 보호실에서 생활하고 있고,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연보호 인원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각 각 6,617명, 16,905명, 7,556명에 달하고 있어 이러한 많은 외국인이 머물다 가는 시설로서 자연채광이나 환기 등 최소한의 시설요건은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화장실은 바닥에서부터 133cm의 높이까지는 벽으로 되어 있고 그 위부터는 내부가 들여다보이도록 유리로 되어 있으며, 그 윗부분부터 천장까지는 뚫려있다.

화장실 천장 쪽으로 방과 화장실의 공기가 서로 순환하고 있는데 화장실에는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창문이 너무 작아 자연환기를 기대하기 어려워 방안의

100) UN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 제10조

101) UN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 제11조

102)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에 대해 통풍설비는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지만 수시로 복도문을 개방하여 환기를 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기를 더욱 혼탁하게 한다. 화장실에는 가로 60cm 세로 17cm 크기의 창문 3개가 있는데, 지난 2006년 한 보호외국인이 탈출하기 위해 이 창문으로 뛰어 내렸다가 추락사한 사건 이후 창문에 쇠창살을 설치하고 개폐가 되지 않도록 했다.

보호외국인이 변기에 앉았을 때 전체적으로 머리 위 부분만 보일 정도여서 벽의 높이는 적당한 편이다. 화장실에는 수세식 변기와 세면대가 1개 설치되어 있으며 샤워시설은 없다.

거실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복도에 대형 에어컨 2대가 있다. 에어컨이 복도 양쪽 끝에 설치되어 있지만, 항상 거실 출입문을 닫아놓기 때문에 냉기가 철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거실 출입문 바로 맞은편 복도에 대형 선풍기를 한 대씩 설치해 놓았다.

난방은 전기 판넬이며 겨울철에만 공급되고, 온수는 전기온수기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

감시카메라는 보호거실 출입문 안쪽 벽 위에 1개가 설치되어 있고 방의 움직임이 모두 파악된다.

TV시청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TV 채널은 수용자가 직접 통제할 수 있으며, 유선방송을 모두 시청할 수 있다.

보호거실의 청소는 직원과 건물 건물의 전체청소를 담당하는 미화원이 하기 때문에 보호외국인에게 청소 용품은 지급하고 않는다.

공중전화는 복도에 1대가 있으며, 담당직원이나 공익요원이 방문을 열어주어야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전화기가 1대 뿐이고 사용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와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 때문에 보호외국인의 개인 휴대폰 사용을 허락하기도 한다.

다. 의복과 침구류

보호 외국인들에게는 하복으로 반팔과 반바지가, 동복으로 긴팔과 긴바지가 지급되며 춘추복은 지급되지 않는다. 보호외국인들이 출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될 때에는 보호복을 입은 채로 이송되기 때문에 한 번 입었던 보호복이 그대로 다시 지급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침구류는 매트리스 없이 담요만 3장 지급되고 베게 대신 방석이 지급된다. 보호거실 내에 침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매트리스는 지급되지 않아서 보호외국인이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호실 바닥은 전기를 이용한 판넬을 설치하여 온도조절이 자유롭고 대형에 어킨 2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여름과 겨울에도 담요 3장으로 생활하기 불편함이 없지만 보호외국인이 요구할 때는 탄력적으로 모포를 지급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냉·온방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외국인이 매트리스 없이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자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잠을 자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매트리스 제공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침구 교환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자체 내에서 10일 간격으로 세탁한 후 사용하고 있는데, 보호외국인의 보호실 평균 보호 기간을 2일이라고 할 때 같은 담요로 적어도 5명 이상이 사용하는 셈이어서 위생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의료

보호실의 상비약으로 두통약, 붕대, 파스, 감기약, 소독약, 연고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보호외국인이 증상을 호소하면 그에 적당한 약을 제공한다. 인근 중앙병원과 현대병원을 협력의료기관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보호외국인의 외부병원 진료비는 자비부담이 원칙이며,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과의 연계 시스템은 없다.

마. 여가활동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는 한국어 외에도 10개국의 언어로 된 서적 772권이 비치되어 있다. 보호실의 규모를 고려할 때 비교적 많은 수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도서의 분야도 비교적 다양하고 언어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다. 보호외국인이 도서이용을 원하면 독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도서목록이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서적이 면회실 입구와 복도에 비치되어 있어 보호거실 밖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보호외국인이 자유롭게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희망자에 한해서 보호실 내 필기구 반입이 허용되나 집필 후 필기구는 바로 회수된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에서는 취침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TV시청이 가능하며, 운동 또는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이나 물품이 없다.

바. 식사 및 조리 시설

보호외국인에 대한 식사는 외부에 용역을 주어 공급하고 있으며 한끼 당 3,900원을 지불하고 있다. 아침식사는 빵과 우유를 점심과 저녁은 한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슬람권 사람들을 위하여 특정 금기 음식은 공급하지 않고 있다.

식수는 직원들이 물통에 복도 정수기의 물을 채워 보호거실 마다 공급하며, 종이컵을 제공하고 있다. 빵이나 음료수를 비롯해 외부 음식은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사. 중앙통제실 / 감시카메라 감시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거실에는 총 4대의 감시카메라가 있으며, 24시간 작동되지만 녹화 기능은 없어 거실내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용도로 이용된다. 보호거실의 감시카메라 내용 모니터는 담당직원과 공익요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따로 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보호거실의 내용도 남성 직원이 하고 있다.

아. 면회실

면회실은 통제실 옆에 1개실이 있다. 면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평일에만 가능하다. 1회 면회시간은 30분이다.

보호외국인의 면회자는 평일 늦게이거나 일요일이 아니면 면회 오기가 어려운 형편인 사람이 대부분이다. 보호외국인들이 출국을 위해 동료들에게 짐을 챙기는 등의 부탁을 할 필요가 있지만 이와 같은 면회시간대와 요일의 제한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자. 진정, 고충 처리 상담

각 거실의 벽면에는 한국어와 중국어로 된 생활수칙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면회실과 복도 벽에는 소액임금체불 등 처리 절차 안내문과 법무부 인권침해센터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으나 다른 언어 사용자는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한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중국어와 러시아어, 인도어, 베트남어 통역이 가능한 직원 4명이 이미 근무하고 있는데, 고충을 호소하는 외국인에게는 이러한 직원에게 연계하여 임금체불 해소, 산재치료, 소송처리 기간 부여 등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차. 기타 물품

보호소에서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물품은 칫솔과 수건이며 화장지, 비누, 치약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여성에게는 생리대가 지급된다. 샴푸나 면도기 등은 지급되지 않는다.

3. 종합평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보호소로 이송하기 전까지 단속된 미등록외국

인을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기관이지만 대부분의 보호외국인이 하루 이상 보호되어 있는데다, 이 보호실을 거쳐 가는 보호외국인도 일년에 수천 명에 달해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가. 시설문제

현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은 자연 채광과 환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창문의 크기 등을 개선하고 공기 청정상태에 대한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출입문은 겨우 한 사람 정도만 드나들 수 있도록 개폐정도를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장치로 인해 화재 등 긴급대피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호외국인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많다. 또한 무엇보다도 거실 밖 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거실의 출입문에 까지 이러한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은 보호외국인에게 보호가 아닌 구금되어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더할 뿐인 것으로 보호대상자라는 법적 지위에 부합하지 않아 보호외국인의 존엄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호실 출입문 개폐정도를 통제하는 출입문의 잠금쇠 장치를 제거하는 등의 개선조치가 필요하다.

나. 처우문제

면회시간과 관련하여 보호외국인에게 출국 준비를 위해 동료 등과의 면회가 필수적임에도, 현행과 같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평일 오전과 오후 시간대의 면회만 허용하고 있는 것은 보호외국인의 외부 교통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공휴일이나 일과 후 저녁 시간에 접견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¹⁰³⁾

보호외국인의 공중전화 사용이 자유스럽지 못하므로 보호거실의 출입문을 열어놓거나 자유로운 휴대폰 사용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103) 우리 위원회는 05진인2125, 2188병합사건과 관련하여 전국 구금시설에서 일요일등 공휴일에도 접견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여성방의 CCTV 모니터링을 위해 보호담당 여성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여성외국인이 보호될 경우, 심사과의 여직원이 와서 고충처리 등을 담당한다고 하지만 이는 보호를 전담하는 직원이 아니므로 보호여성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호외국인의 성비를 고려한 적절한 직원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시정이 필요한 사항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은 아래와 같은 사항의 시정이 필요하다.

1. 자연채광과 환풍이 가능하도록 창문의 개선과 공기 청정상태의 점검
2. 보호거실 출입문 잠금쇠 장치의 제거
3. 공휴일이나 일과 후 저녁 시간에 접견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대안 마련
4. 보호외국인의 부자유스러운 공중전화 사용을 보완하기 위해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는 등의 대안 마련
5. 보호담당 여성직원의 배치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

I. 조사개요

1. 조사일정

- 자료제출 요구 : 2007. 5. 29.(화)
- 방문조사 : 2007. 6. 19.(화)
- 조사결과에 대한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의견제출 요구 : 2007. 11. 30.(금)

2. 방문조사 참가자

- 외부전문가 : 조상균(전남대학교 법학과)
정병진(여수외국인선교회)
이지훈(아시아노동인권센터)
- 위 원 회 : 고애순, 고희석, 김현순(광주지역사무소), 문은현(이주이권팀)

3. 조사방법

- 자료조사
 - 시설조사
 - 설문조사
 - 심층면접조사
- ※ 방문조사 시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에는 2명의 보호외국인이 보호되어 있었다. 방문조사 기간인 6월과 7월이 미등록 외국인 자진출국 계도기간이어서 미등록 외국인이 단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경찰서 등을 통하여 신병이 인계된 외국인들이 있는 경우 곧바로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이송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호외국인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제대로 실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은 임시보호시설이고 시설조사나 자료조사만으로도 보호시설과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 현황을 대강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방문조사를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였다. 시설조사는 조사표를 구성하여 ○, × 또는 수치와 조사자의 평가의견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II.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 업무 개관¹⁰⁴⁾

1. 보호시설 현황

| 구 분 | | 면적(㎡) | 남성보호거실 | 여성보호거실 |
|-----|--------|-------|--------|--------|
| 4층 | 면적(㎡) | 85.47 | 56.98 | 28.49 |
| | 보호실 개수 | 3 | 2 | 1 |
| | 화장실 | 3 | 2 | 1 |
| | 적정수용인원 | 21 | 14 | 7 |

2. 외국인 연도별 보호현황

| 구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5월 |
|----------|-------|-------|-------|----------|
| 연 보호인원 | 422 | 477 | 332 | 135 |
| 일평균 보호인원 | 1.15 | 1.30 | 0.9 | 0.9 |
| 일평균 보호기간 | 4 | 3 | 3 | 3 |

104) 이 장의 내용은 2007. 6. 14.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발췌한 것이다.

3. 2006년 단속현황

가. 단속사유 현황

| 구 분 | 계 | 불법취업 | 불법체류 등 |
|----------|--------|--------|--------|
| 전국(명) | 23,777 | 16,710 | 7,061 |
| 광주사무소(명) | 493 | 281 | 212 |
| 비율(%) | 0.02 | 0.01 | 0.03 |

나. 국적별 현황

| 구 분 | 계 | 중 국 (한국계 중국) | 방글라데시 | 인도네시아 | 몽골 | 파키스탄 | 필리핀 | 태국 | 베트남 | 기타 |
|------|-----|--------------------|-------|-------|----|------|-----|----|-----|----|
| 2006 | 493 | 280 (107) | 3 | 16 | 18 | 5 | 31 | 28 | 41 | 71 |

다. 성별 현황

| 구 분 | 계 | 남성 | 여성 |
|------|-----|-----|-----|
| 2006 | 493 | 362 | 131 |

4. 일시 보호해제 현황

| 구 분 | 계 | 산업재해 | 신병치료 | 자녀부양 | 소송수행 | 체불임금 | 채권 | 전세금 반환 | 기타 |
|----------|---|------|------|------|------|------|----|-----------|----|
| 2006.12. | 5 | | 1 | | 1 | 3 | | | |
| 2007. 4. | 4 | | 4 | | | | | | |

5. 외국인 고충처리 현황

| 구 분 | 계 | 체불임금해결 | | 의 료 구 호 | 출입국 관리법상처분 | 보호 일시해제 | 기타 (절차 안내등) |
|------------|-----|--------|---------|------------|---------------|------------|----------------|
| | | 인 원 | 금액(천원) | | | | |
| 2006.12.31 | 176 | 135 | 279,982 | 1 | 18 | | 22 |
| 2007. 8.31 | 79 | 53 | 76,357 | | 3 | | 23 |

6. 서류류 보유 현황

| 계 | 한국 | 중국 | 러시아 | 베트남 | 기타 |
|----|----|----|-----|-----|----|
| 76 | 46 | 20 | 4 | 2 | 4 |

7. 소방시설 설치 현황(4층보호실)

| 소화기 | 소화전 | 스프링 쿨러 | 화재 탐지기 | 비상 방송설 비 | 유도등 (피난 구) | 유도등 (통로) | 비상 조명등 | 방수구 |
|------------------|--------------------|-----------|--|----------------|------------------|-------------|-----------|-----|
| 4대 비취되 어있음 | 보호실 외부복 도 있음 | 없음 | 각보호실에 온도감지기가 설치되어있고, 보호실통로에 연기감지기가 설치되어있음 | 있음 | 있음 | 있음 | 없음 | 있음 |

※ ‘스프링 쿨러’ 2009년도 예산에 편성

III. 시설 조사결과

1. 개요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1963년 3월 5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목포출장소로 신설되어 1967년 7월 26일 여수출입구관리사무소 광주출장소로 신설되었으나 1989년 12월 14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되었다.

관할 구역은 광주광역시 전체와 여주시, 순천시, 광양시를 제외한 전라남도 전체이다. 목포출장소가 있다.

가. 보호시설 개요

사무실 지하 1층에 설치되었던 보호실은 2002년 5월 7일부터 4층으로 이전되었다. 보호실 문을 통해 들어가면 정면에 중앙통제실이 하나 있고 우측벽면에는 비상약품이 비치된 보관상자가 부착되어 있다. 왼쪽에 면회실이 하나 있으며 면회실 옆 철문을 열고 복도로 들어가면 3개의 혼거실이 있다.

3개의 혼거실은 28.49㎡의 동일한 넓이로 한 거실 당 7명을 수용할 수 있다. 면회실은 넓이가 6.74㎡이며 중앙통제실은 7㎡이다. 각 보호거실 입구마다 탁자와 고정식 의자 7개가 설치되어 있는 거실이 있다.

운동시설이나 조리시설, 의료실 등은 없다.

나. 보호업무 직원 및 관련자의 현황과 업무 내용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은 총 27명으로 남성직원 17명, 여성직원 10명이 있다. 용역직원은 없고 공익근무요원은 7명이다.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은 없다. 외국인이 보호되면 직원 1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이 한조가 되어 근무하는데, 보호외국인의 수에 따라 더 많은 직원이

배치하기도 한다. 주간 및 야간에 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순번제로 근무하고 있다. 사무소 직원들은 외국인 등록, 출입국 심사, 출입국사범 조사 및 보호, 난민인정, 강제퇴거 등 업무를 담당하고 공익근무요원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직원 2명, 중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직원 1명이 있다. 다른 외국어는 외국어 근로자 통역서비스 등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 통역을 실시한다.

2. 개별시설 현황

가. 입소 및 신체검사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 입소자를 위한 대기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외국인의 신병이 인계되면 직원은 보호외국인을 보호실에 수용하기 전에 2층 조사과에서 보호외국인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고 보호실 입구 좌측 물품을 보관하는 사무실에서 소지품 확인 및 귀중품 보관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신체검사실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사무실 한편에 이동식 칸막이를 설치하고 본인의 옷을 입은 상태인 보호외국인에 대해 직원이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그 후 외국인을 보호복으로 갈아입도록 하고 보호외국인의 옷과 소지품을 물품보관함에 보관한다.

나. 생활안내 등

보호외국인에 대한 권리 및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고지는 2층 조사과에서 보호외국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보호에 대한 안내문 고지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보호실 벽에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된 보호외국인 준수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이의신청 안내문, 한국어 및 영어로 된 보호외국인생활시간표가 게시되어 있다.

다. 물품보관

물품보관소에서는 보호외국인의 물품만이 아니라 보호외국인에게 지급되는 모포 등도 함께 보관된다. 보관함은 철재로 되어 있으며 모두 12개가 있다. 또한 조립식 앵글로 설치된 보관함이 있는데, 여기에는 보호외국인의 물품보다는 평소 보호소에서 사용되는 물품을 주로 보관하고 있다.

대부분의 보호외국인들은 아무런 준비 없는 상태에서 단속되기 때문에 소지물품도 거의 없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서는 보호외국인 물품 및 현금보관대장을 비치하여 보호외국인의 현금, 귀중품, 물품에 대해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다.

라. 보호거실 현황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에는 특별계호를 위한 독거실은 없고 혼거실만 3개 있다. 여성이 보호되면 3개의 보호거실 중 한곳을 지정하여 여성거실로 운영한다. 감호실에서 쇠창살로 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복도가 있는데, 복도입구에서 볼 때 오른 편은 외부에 연결된 벽이고 왼쪽은 보호거실이다. 복도에서 다시 쇠창살로 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보호거실이다.

모든 보호거실은 거실, 침실, 화장실, 세면실로 구성된다. 복도에서 쇠창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각 거실에 의자가 달린 7인용 식탁이 설치되어 있다. 휴게공간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실이 나오고 정면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배치되어 있다. 침실에는 외부와 이어진 창문이 없고, 화장실과 세면실의 벽 건너편은 물품보관실과 상담실 등이다.

거실과 침실 사이에는 3.34㎡(2.3m×1.4m) 크기의 창문이 설치되어 있고 이 창문을 통해 자연 채광과 환기가 이루어진다. 거실 내에 사물함 및 침구보관용 선반이 없어 담요 등이 거실 구석에 놓여 있었으며 거실벽면은 낙서 등으로 매우 지저분하다.

화장실과 세면실이 분리 배치되어 있다. 화장실의 넓이는 1.9㎡이다. 출입문은 설치되어 있고 출입문은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 보호외국인의 신체가 노출되지 않는다. 화장실에는 뚜껑과 커버가 없는 양변기¹⁰⁵⁾가 1개 설치되어 있

으며 휴지통 1개, 화장실용 슬리퍼 1벌이 비치되어 있다.

화장실에는 화장지걸이나 선반이 없어 휴지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각 거실의 화장실마다 가정용 환풍기가 천장에 한 개씩 설치되어 있다.

세면실은 1.3㎡으로 한 사람이 들어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이이다. 세면실에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외부에 보호외국인의 신체가 노출되지 않는다. 샤워기는 없고¹⁰⁶⁾ 수도꼭지가 2개 있으며 세수대야가 1개 있다. 보호외국인들이 샤워 시 옷을 걸어 놓을 수 있는 고리나 선반이 없다. 온수는 난방이 공급되는 시기에 맞춰 공급된다.

보호외국인들에게 수건과 칫솔 등을 개별 지급하고 비누, 치약 등은 공동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샴푸, 로션은 개인이 요청할 경우 플라스틱 용기에 한해 반입하도록 허용하고 있고, 면도기는 필요시 지급하고 사용후 회수하고 있다.

침실에 텔레비전이 한대씩 있다. 텔레비전을 통해 케이블TV가 방송되지만 텔레비전 리모컨을 직원이 중앙통제실에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외국인들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볼 수 없다. 보호외국인들이 요구할 경우에 직원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들어주지만, 보호외국인들이 직원들에 채널변경을 빈번하게 요구할 수 없는 형편이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하면 텔레비전 시청 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자유롭게 시청하도록 한다고 한다.

각 보호거실마다 형광등이 5개씩 설치되어 있다. 침실실 내에는 거실과 연결된 창문 외에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보호거실에 선풍기나 에어컨 등 냉방시설이 따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보호거실 밖 3호실과 감시실 복도 양 끝에 대형에어컨이 2대 있다. 이 에어컨의 작동은 직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보호거실의 난방은 중앙에서 통제되는 온돌시스템이다.

105)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양변기 커버를 가지고 보호외국인끼리 싸움을 해서 제거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106)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본래는 샤워기를 설치해 두었는데 보호외국인들이 샤워기를 이용해 자살을 시도하여 이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공중전화는 복도에 1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전화국에서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수익이 없다는 이유로 전화를 끊어 놓은 상태였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2007. 2. 전화국에 공중전화를 재개통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1차 방문조사 시에는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호외국인들의 요청이 있을 때 사무실내 전화를 이용하도록 하였으나 2차 방문조사 시에는 보호외국인에게 핸드폰 소지를 허용하고 있었다.

보호거실청소는 보호외국인이 실시하고 있는데, 거실 내에 청소도구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복도 및 기타 시설물 청소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및 공익근무요원이 담당한다.

마. 의복과 침구류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호외국인들에게 보호복 1벌을 지급하는데, 보호외국인이 다른 보호시설로 이송되거나 출국할 때까지 한 벌로 생활한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의 평균 보호기간이 3~4일 정도여서 여분의 보호복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나 보호외국인이 요구할 경우 추가지급 하기도 한다. 하복은 반팔, 반바지이며 동복은 긴팔, 긴바지인데, 보호복의 재질과 색깔은 다른 모든 보호시설과 동일하다. 갈아입을 속옷의 반입은 허용하고 있다.

보호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침구류는 외국인 한사람 당 모포 3개와 베개 1개이며, 매트리스는 지급되지 않는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호실 전용 세탁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보호외국인들이 출소하거나 다른 보호시설로 이송 갈 때 모포와 보호복의 세탁을 외부 세탁소에 의뢰한다. 세면실에 빨래비누가 공동지급되고 있고 세탁세제, 빨래걸이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보호외국인이 속옷과 수건 등의 세탁이 어려워 보였다.¹⁰⁷⁾

107)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12월 15일 경에 보호실 도색작업과 선반 빨래걸이 설치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바. 면회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면회실(1.2m×1.4m)은 보호실 입구 좌측에 1개실이 있다. 면회자와 피면회자 사이에는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다. 1회 면회 허용시간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필요한 시간만큼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면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평일에만 가능하다.

사. 중앙통제실

보호실에는 감시카메라가 총 8개 있는데, 각 거실과 침실에 각각 1개씩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이 감시카메라는 24시간 가동되며 중앙통제실에서 직원이 내용을 모니터링한다. 녹화된 내용은 컴퓨터 하드에 저장되어 3개월간 저장되었다가 자동 삭제된다. 외국인이 보호되면 직원 1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으로 구성된 근무조가 주야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감시카메라를 관리한다.

아. 식사 및 조리시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은 보호외국인을 위한 조리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인근식당에서 주문하여 보호외국인에게 제공한다. 한 끼 식사 비용은 3,500원이고, 보호외국인이 먹고 싶은 음식을 말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인근 식당에 전화하여 배달을 시킨다.

자. 의료

보호실에는 의료인력이나 의료공간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 다만, 비상약품을 보호실 입구에 비치하고 있으며 인근 한국병원이나 상무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긴급환자가 발생하면 두 병원에 진료를 의뢰한다.

차. 여가활동

보호실 입구에 약 80여권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으나 서적의 언어가 분야가 다양하지 않아 보호외국인들의 활발한 이용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였다.

집필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호외국인의 요구 시 집필에 필요한 필기구 및 종이를 제공한다.

보호외국인이 원할 경우 신문열람이 허용되며 운동공간과 운동기구는 갖추어져 있지 않다.

카. 진정함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호실 복도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진정서 양식 및 필기구 등이 비치되어 있고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3. 종합평가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7. 1. 1부터 2007. 9. 15.까지 미등록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30회 실시하여 남자 189명, 여자 35명 총 224명을 보호했다가 청주 외국인보호소 등으로 이송조치하였다. 보호외국인의 평균 보호일수는 2.37일이며 최장기간 보호일수는 6일이다. 6일 동안 보호되었던 보호외국인은 8명이다.

일시적으로 외국인을 보호하는 시설이지만, 수백 명의 보호외국인들이 평균 이틀 이상은 머물다가는 시설이므로 보호외국인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가. 시설문제

보호실 내 화장실에 좌변기 덮개가 없어서 사용이 매우 불편한 것을 비롯하여 등 보호외국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거실 내부를 깨끗하게 쾌적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은 보호실 입구에 있는 사무실공간을 물품보관실 과 신체검사실로 이용하고 있다. 신체검사실은 이동식 벽으로 가려서 만든 임시 공간인데, 이 장소에서 보호외국인이 옷을 갈아입고 신체검사를 받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특히 이동식 벽 바로 옆에서 사람들이 물품을 보관하는

등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신체검사 및 탈의를 하게 될 경우 불안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우려도 있다. 따라서 안정된 신체검사실을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호외국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한다

나. 처우문제

현재로서는 보호외국인이 자유시간에 책을 보거나 TV를 보는 이외에 다른 여가프로그램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TV 리모컨을 직원들이 통제하고 있어 보호외국인들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볼 수 없는 형편이다. 보호외국인들이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구비된 도서도 분야가 다양하지 않고 도서 목록 등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이 도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여가활동을 위한 다른 기구 혹은 장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호외국인의 공중전화 사용이 자유스럽지 못하므로 보호거실의 출입문을 열어 놓거나 자유로운 휴대폰 사용을 현행과 같이 허용하고, 비용을 고려하여 휴대전화 이외에 보호외국인이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IV. 시정이 필요한 사항

광주출입국관리사무 외국인보호실은 아래와 같은 사항의 시정이 필요하다.

1. 화장실 개선
2. 안정된 신체검사실 설치
3. 보호외국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4. 보호외국인들이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여가활동을 위한 대책 마련
5. 보호외국인의 자유스러운 전화사용을 위한 대책 마련
6. 공휴일이나 일과 후 저녁 시간에 접견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대안 마련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

I. 조사개요

1. 조사일정

- 자료제출 요구 : 2007. 5. 29, 6. 17, 6. 25.
- 방문조사 : 2007. 6. 20(수)
- 조사결과에 대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의견제출 요구 : 2007. 12. 3(월)

2. 방문조사 참가자

- 외부전문가
 - 김민정(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 김형진(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 이한숙(이주와인권연구소)
 - 전병호(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 위 원 회 : 원형은(위원), 이광영, 강석권, 배윤호(부산지역사무소), 신병곤(이주인권팀)

3. 조사방법

- 자료조사
- 시설조사
- 설문조사
- 심층면접조사
 - ※ 방문조사 기간 중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에는 보호외국인

이 2명이 있었다. 따라서 면접조사 보다는 시설조사나 자료조사를 정밀하게 실시하여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심층면접 내용은 시설조사 내용 분석 시 일부 인용하였다.

시설조사는 조사표를 구성하여 ○, × 또는 수치와 조사자의 평가의견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II.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 업무 개관¹⁰⁸⁾

1. 보호시설 현황

| 구분 | 면적(평) | 적정보호인원 | 최대보호인원 |
|-----|---------------|--------|--------|
| 1호실 | 21.06㎡(6.67평) | 6 | - |
| 2호실 | 18.18㎡(5.5평) | 5 | - |
| 3호실 | 18.18㎡(5.5평) | 5 | - |
| 면회실 | 19.83㎡(6평) | - | - |

2. 국적별 외국인 피보호현황

| 구분 | 총계 | 중국 | 베트남 | 인도네시아 | 러시아 | 기타 |
|----------|-----|-----|-----|-------|-----|----|
| 2006 | 183 | 115 | 19 | 12 | 6 | 31 |
| 2007. 4. | 46 | 36 | 5 | 1 | 0 | 4 |

108) 이 장의 내용은 2007. 6. 20.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발췌한 것이다.

3. 단속 사유현황

| 구 분 | 계 | 불법취업 | 불법체류 등 |
|----------|--------|---------|--------|
| 전국(명) | 20694명 | 12,332명 | 8,362명 |
| 마산사무소(명) | 460명 | 222명 | 238명 |
| 비율(%) | 2.2% | 1.8% | 2.8% |

4. 일시 보호해제 현황

- 인원 : 4명
- 사유 : 소송처리

3. 외국인 고충처리 현황

| 구 분 | 계 | 체불임금해결 | | 의 료 구 호 | 체류허가 | 범칙금 감면 | 기타 |
|----------|------|--------|---------|------------|------|-----------|----|
| | | 인 원 | 금액(천원) | | | | |
| 2006. | 116건 | 87건 | 104,174 | 1 | 11 | 3 | 14 |
| 2007. 3. | 49건 | 28 | 46,437 | 1 | 6 | 3 | 11 |

4. 도서류 보유 현황

- 코란(아랍어), 성경(영어, 중국어), 영자잡지, 베트남어 회화집 등 20권

5. 소방시설 설치 현황

- 보호실에 분말 소화기 2대

Ⅲ. 시설 조사결과

1. 개요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1970년 2월 27일 설립되었다. 관할 구역은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를 제외한 경상남도 전체이다. 통영출장소, 사천출장소, 거제출장소가 있다.

가. 건물개요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상 2층 건물로, 사무실 2층의 일부를 개조하여 보호실로 사용하고 있다.

나. 보호시설 개요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은 남자혼거실 두 개, 여자혼거실 한 개가 있으며 독거실은 없다. 외국인보호실은 당직실과 면회실을 포함하여 총 19평이고, 보호실 전용면적은 13평이다. 적정보호인원은 16명이다.

보호거실 외에 감시실(중앙통제실), 당직실, 물품보관실, 면회실, 세탁실 등이 있다. 물품보관실은 신체검사실로도 사용된다.

운동시설, 종교활동을 위한 공간은 없고, 의료시설이나 의료진도 없다. 단 약간의 비상약품이 구비되어 있다.

다. 보호업무 직원 및 관련자의 현황과 업무 내용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호업무 전담 직원은 배치되어 있지 않고 직원 6명이 위반조사, 동향조사, 불법체류자 단속, 선박검색 등의 업무와 겸임하면서 보호업무도 처리하고 있다. 보호실 주간근무는 직원 2명과 공익근무요원 2명이 담당하고, 야간근무는 피보호자가 5인 이하인 경우 직원 1명, 피보호자가 5명 이상일 때는 직원 2명, 수용자가 10명 이상일 때는 직원 3명에 의해 이루어진

다. 공익근무요원은 평일 주간에만 근무한다.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호업무 전담부서 없이 다른 업무와 겸임하는 직원들에 의해 보호업무가 처리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공익요원도 축소되어 계호인력이 부족한 점을 보호시설 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여성직원은 없으며, 여성외국인이 보호될 경우 여직원이 신체검사 등을 담당한다.

2. 개별시설 현황

가. 면회실과 물품보관실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면회실을 입소자 대기 공간으로, 물품보관실을 탈의 및 신체검사실로 겸하여 사용한다.

단속된 외국인들은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2층 면회실로 이송되며, 이들이 면회실 소파에 앉으면 직원이 한명씩 수갑을 풀어준다. 직원은 한 사람씩 간단히 조사를 하고, 이들의 소지품을 보관하도록 하며, 보호복을 지급한다. 그리고 나서 신체검사를 한다.

보관함은 조립식 앵글에 나무판자를 얹어 칸막이를 나누어 놓은 형태로 문은 달려있지 않고 개방되어 있다. 보호외국인의 소지품은 바구니에 넣어서 보관된다. 물품보관함에는 보호외국인의 소지품뿐만 아니라 보호외국인에게 지급되는 모포와 베개 등의 물품, 서류 등도 함께 보관되고 있다.

보호외국인의 보관물품 목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고 특별히 직원에게 보관을 요청하는 귀중품이나 현금 등에 대해서만 그 내용물을 밀봉하여 보관확인서를 작성한 뒤 본인서명을 받고 있다.

면회실에는 면회자와 피면회자 사이에 칸막이나 쇠파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같은 공간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면회가 가능하다. 직원은 ‘면회 시 피면회자에게 거의 수갑을 채우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비해 공익근무요원은 ‘면회할 때 덩치가 크거나 말쑥을 일으키는 보호외국인들에게는 수갑을 채운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보호거실 현황

모든 보호실은 거실과 화장실 겸 샤워실로 구성되어 있다. 방문당시 거실과 화장실의 청결상태는 양호하였다. 거실청소는 공익요원과 보호외국인이 한다.

1호실과 2호실은 남성혼거실이고, 3호실은 여성혼거실이다. 모든 보호거실 및 화장실에는 외부와 연결된 창문이 없어서 자연채광과 환기가 어렵다. 복도로 통하는 쇠파널 출입문조차 아크릴로 막혀 있는데, 아크릴판에 구멍이 뚫려있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통풍과 환기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환풍기가 거실에 한 개, 화장실에 한 개 설치되어 있다. 방문조사 당시 1~2호실 거실의 환풍기가 작동하지 않았다.

UN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에서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 보호거실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보면, 수용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설비, 특히 모든 수면 시설은 기후상태와 특히 공기의 양, 최소 공간, 조명, 난방 및 환기의 조건을 고려함으로써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¹⁰⁹⁾ 특히 수용자가 기거하거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모든 장소의 창문은 수용자가 자연광선으로 독서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넓어야 하며, 인공적인 통풍설비의 유무와 관계없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¹¹⁰⁾

그러나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보호실은 거실은 외벽창문을 통한 자연환기

109) UN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 제10조

110) UN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 제11조

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풍기의 원활한 작동이 필수적인데도, 방문조사 당시 대부분의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여서 환기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문을 통한 자연채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화장실 면적은 2.84×2.35m이다. 거실과 화장실 간에는 벽이 없이 차폐시설만 있고 문은 달려있지 않다. 남성 혼거실인 1~2호실의 차폐시설 높이는 200×87cm, 200×108cm이다 여성혼거실인 3호실은 남성 혼거실에 비해 화장실 차폐시설이 높는데, 200×138cm, 278×135cm이다.

화장실 안에는 세면대 1개가 있고, 수세식 변기와 샤워기가 1대씩 설치되어 있다. 그 밖에 선반이나 옷을 거는 고리 등은 없다. 차폐시설이 낮아 남정보호외국인들이 변기 위에 앉으면 상반신이 다 드러나는 상황이다. 방문조사 당시 남정보호외국인들은 플라스틱 물통을 변기 부분의 차폐시설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난방은 전기판넬 장판이며, 보호실 바로 앞 복도에 난방을 위한 전원과 온도 조절장치 있다. 각 거실마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며 피보호자가 이를 통제하고 있지만 11시 이후에는 전원이 차단된다. 온수의 사용은 24시간 가능하다. 방문조사 당시 3호실의 온수기가 고장난 상태였다.¹¹¹⁾

각 보호거실에는 형광등이 2개씩 설치되어 있고, 취침등은 따로 없다. 보호외국인 취침 시 거실 내 형광등은 소등하고 복도 불만 켜둔다. 방문 당시 1호실과 2호실 형광등은 2개 중 1개만이 작동하였다.

거실에는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고, 피보호자가 텔레비전의 작동과 채널을 통제한다. TV시청 가능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다.

감시카메라는 각 방마다 3대씩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실과 화장실을 비추고 있다.

111) 보호실 근무일지에는 5월 12일자로 3호실 온수기가 고장 났다는 기록이 있었다

다. 전화기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한달 전까지는 면회실에 공중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 달 전 한국통신에서 철거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필요할 때 마다 피보호자의 휴대폰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직원이 보호외국인의 휴대전화기를 거실로 넣어주지 않으면 외부로의 전화통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라. 의복과 침구류

보호외국인에게 대여하는 의류 및 침구의 종류는 「외국인보호규칙」 및 「보호외국인의의류및침구의제식등에관한규칙」에서 규율하고 있다. 남·여 구분에 따른 겨울옷과 여름옷으로 구분하고 겨울옷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여름옷은 6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 착용하도록 되어 있고, 소장 등은 기후, 외국인의 신체조건 기타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착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¹¹²⁾

보호외국인에게는 보호복이 지급된다. 보호복은 긴팔, 긴바지의 동복과 반팔, 반바지의 하복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조사일인 6월 20일은 날씨가 매우 무더웠음에도 수용자들은 동복을 입고 있었다. 개인의복의 반입은 속옷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침구류로 지급되는 것은 베개 1개, 모포 2장이다.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직원은 ‘세탁을 용역 아주머니가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반해 공익근무요원은 ‘세탁에 관한 업무는 공익이 담당하는데, 빨래를 너는 등의 작업을 용역 아주머니가 담당하기도 한다’고 진술하였다. 세탁실에는 7.5L의 세탁기가 한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세탁시기에 대해서도 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의 진술이 엇갈리는데, 직원은 세탁을 외국인이 이송되거나 출국한 경우에 한하여 기 사용된 모포나 보호복을 모아서 대체로 일주일에 한번 꼴로 한다고 설명한 반면, 공익근무요원은 외국인이 퇴소하면 이불 등의 침구는 세

112) 보호외국인의의류및침구의제식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3조

탁을 하지 않고 그냥 옥상에 널었다가 다시 사용한다고 설명하였다.

마. 의료

의료실공간은 확보되어 있지 않고, 의료기구나 의료진이 없어서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마산연세병원’을 지정병원으로 정하고 있다. 보호외국인의 외부병원 진료는 자비 부담이 원칙이다. 소화제, 두통약, 감기약과 같은 비상약품을 비치하고 있다. 외부진료는 자비부담이 원칙이다.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수용자의 외부진료는 총 3건이다.

바. 여가활동

TV시청 외에 여가활동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운동장과 운동 할 수 있는 기구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도서는 각 언어별로 약 30여권 비치하고 있는데, 아랍어로 된 코란, 영어와 중국어로 된 성경, 영자잡지와 베트남어 회화집 등이다.

사. 식사 및 조리시설

식사는 자체조리하지 않으며, 외부식당에 주문하여 보호외국인에게 공급한다. 1인당 한 끼 예산은 3,000원이다. 식단표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호외국인 중 특정종교로 인해 금기음식이 있는 경우 식당에 그 재료는 사용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다.

정수기 시설은 따로 없고, 직원이 식수통(5L)에 물을 받아서 각 거실에 한통씩 넣어준다.

아. 중앙통제실(CCTV 감시실)

중앙통제실은 긴 소파와 탁자, CCTV화면 및 조작을 위한 컴퓨터, 정수기가 설비되어 있다. 이곳에서 CCTV감시가 이루어지며 동시에 보호외국인의 면회도

이루어진다. 그리고 중앙통제실 한쪽 공간에는 방이 있는데, 이를 당직실로 운영하고 있으며 당직실안에는 거실상황을 볼 수 있는 CCTV화면과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다.

감시카메라는 총 9대로 각방마다 3대씩 거실복도에 설치되어 있고 거실과 화장실을 비추고 있으며 24시간 작동한다.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7, 「외국인보호규칙」 제37조는 보호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 및 폐쇄회로영상장치 등 감시장비는 보호외국인의 사생활, 초상권 등의 침해가 없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 또는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보호소의 경우 각 보호거실 출입문 안 위쪽에 1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비해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거실은 크기도 작은 데 비해 훨씬 많은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감시카메라 녹화내용은 1개월간 저장된다.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주, 야간 감시카메라 조작요원은 남자직원이라고 했지만, 공익근무요원들에 의하면, 실제로는 대부분 공익근무요원들이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여성보호거실의 감시카메라 모니터링도 남성직원 혹은 공익근무요원들이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¹¹³⁾

감시카메라 조작은 관리직원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익요원이 대부분을 조작하고 있었으며 관리직원은 오히려 감시카메라 작동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

자. 진정 및 고충처리 상담

면회실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이 설치되어 있는 것 외에, 보호거실 내에는 진정안내문이나 권리구제절차 등에 대한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지 않다. 진정처리는 고충처리 상담으로 대체한다는 것이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의 설명이다.

113) 여성혼거실 화장실에 비해 차폐시설이 낮은 남성 혼거실의 경우 화장실을 사용하는 모습이 CCTV로 다 비춰진다. 감시카메라 모니터링이 남성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 방문조사 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5월 여성 외국인들을 차폐시설이 매우 낮은 2호실에 보호하기도 했다.

특히 직원은 물론 공익근무요원들이 보호외국인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공익요원들은 ‘보호실안 사람들은 할말이 있거나 요구사항 있을 때 “아저씨”하고 부르거나 문을 두드린다. 보호실에 수용된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을 때에는 1층 민원실 방문 민원자들 중 중국어가 가능한 한국사람 또는 한국어가 가능한 중국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받는다’ 진술하였다.

12) 물품

보호소에서 보호외국인에게 지급되는 물품은 수건, 비누, 칫솔이고, 면도기는 요청 시에 지급한다. 여성보호외국인에게는 샴푸와 린스의 반입을 허용하고, 생리대는 요구가 있을 경우 지급한다.

3. 종합평가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보호소로 이송하기 전이나 출국 전까지 단속된 미등록외국인을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기관이지만 2006년 한 해 동안 180여 명에 이르는 외국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한 바 있다. 그러나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호외국인 전담인력도 배치되어 있지 않고, 현 보호거실도 사무실의 일부를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보호시설을 운영하기 적절하지 않다.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가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래와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가. 시설문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은 자연 채광과 환풍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창문의 크기 등을 개선하고 공기 청정상태에 대한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화장실의 차폐시설이 낮아서 샤워나 화장실 사용 시 보호외국인의 모습도 노출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높이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거실은 규모에 비해 많은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

는 상황이므로 보호외국인의 사행할 보호를 위해 적절한 정도로 개선이 필요하다.

나. 처우문제

면회시간과 관련하여 보호외국인에게 출국 준비를 위해 동료 등과의 면회가 필수적임에도, 현행과 같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평일 오전과 오후 시간대의 면회만 허용하고 있는 것은 보호외국인의 외부 교통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공휴일이나 일과 후 저녁 시간에 접견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¹¹⁴⁾

출입국 보호 외국인중 생활규칙 및 권리구제 안내에 대하여 구두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보호외국인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과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번 사용된 보호복과 침구류는 반드시 세탁한 후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용역을 의뢰하여 세탁하는 담요 등의 세탁 일지를 작성하여 정기적인 세탁이 이루어지는 지 점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름과 같은 시기에 는 여벌의 보호복을 지급하거나 세탁의 간격을 줄이는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여성보호거실의 CCTV 모니터링이나 여성용품 지급 등을 위해 보호담당 여성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여성외국인이 보호될 경우, 다른 부서의 여직원이 신체검사 등을 담당한다고 하지만 보호여성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114) 우리 위원회는 05진인2125, 2188병합사건과 관련하여 전국 구금시설에서 일요일등 공휴일에도 접견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IV. 시정이 필요한 사항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은 아래와 같은 사항의 시정이 필요하다.

1. 자연채광과 환풍이 가능하도록 창문의 개선과 공기 청정상태의 점검
2. 보호거실 내 감시카메라 수의 적절한 개선
3. 화장실의 차폐시설 높이의 적절한 개선
4. 보호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과 언어로 이루어지는 생활규칙 및 권리 구제 안내
5. 보호담당 여성직원의 배치
6. 보호외국인이 적절한 신체상태를 유지하도록 속옷의 반입 허용, 보호복 지급 과 세탁 관행 개선할 것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

I. 조사개요

1. 조사일정

- 자료제출 요구 : 2007. 5. 29.
- 방문조사
- 2007. 6. 20.(수)
- 조사결과에 대한 천안지소 의견제출 요구 : 2007. 11. 30(금)

2. 방문조사 참가자

- 외부전문가
최현모(이주노동자인권연대)
박선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김철효 (국제이주기구, IOM)
김재원, 김민정(이주여성인권연대)
김경태(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이병렬(한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위 원 회 : 김호준(상임위원), 문은현, 백미순(이주이권팀)

3. 조사방법

- 자료조사
- 설문조사
- 심층면접 조사

○ 시설조사

※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전수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설문지는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영어, 방글라데시어, 몽골어로 번역되어 제공되었다.

조사방법은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 제1공장과 제2공장에서 각각 그룹화된 피조사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총 79부였다. 설문지의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심층조사는 피조사자의 자원을 받아 일대일 면접조사로 실시했다. 시설조사는 조사표를 작성하여 그에 대한 객관적 수치와 현황을 기록하고 그 결과에 대한 조사자의 평가를 기재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II. 천안지소 외국인 수용 업무 개관¹¹⁵⁾

1. 연혁

-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는 1989. 10. 16. 대전교도소 천안구치지소로 개칭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0. 11. 8. 천안소년교도소 천안구치지소, 2006. 6. 12.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로 개칭되었다.
- 소년수형자 수용시설인 천안소년교도소의 소년범이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 수형자는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2007. 1. 22.부터 미결수용자를 천안소년교도소 시설에 수용하고 외국인수형자를 수용하는 외국인 수용전문교도소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전국교정시설 수용구분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 제774호)에 따라 현재 초범인 외국인 남자 수형자와 일부 내국인 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다.
- 천안지소는 대전교도소로부터 행형 우수 외국인 수형자를 이송받고 있으며, 내국인 초범수형자는 관용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14명이다.

115) 이 장의 내용은 2007. 6. 20. 천안지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발췌한 것이다.

2. 시설현황

| | 동수 | 면적 (㎡) | 평수 | 비고 |
|------|----|----------|--------|----------|
| 수용사동 | 2 | 619.44 | 187.38 | 3층(6개사동) |
| 작업장 | 2 | 2,197.03 | 664.6 | 구내2/구외3 |

3. 외국인 수용현황

가. 2007. 현황

(단위 : 명)

| 정원 | 현원(남성) | | |
|-----|--------|-----|-----|
| | 계 | 외국인 | 내국인 |
| 250 | 94 | 80 | 14 |

나. 국적별 현황

(단위 : 명)

| 구 분 | 계 | 중국 | 방글라데시 | 몽골 | 말레이시아 | 필리핀 | 러시아 | 대만 | 우즈베키스탄 | 베트남 |
|----------|----|----|-------|----|-------|-----|-----|----|--------|-----|
| 2007. 5. | 80 | 55 | 1 | 3 | 4 | 1 | 4 | 1 | 5 | 6 |

다. 거실수용현황 및 형태

| 1사 중 | 1실 | 2실 | 3실 | 4실 | 9실 | 10실 | 11실 | 12실 | 계 |
|-------------|-------------|---------------------|--------------|-------------|-----|---------------------------|--------------|--------------|----|
| 거실형태 | 혼거 | 혼거 | 혼거 | 혼거 | 혼거 | 혼거 | 혼거 | 혼거 | 40 |
| 거실인원 (명) | 6 | 6 | 6 | 2 | 2 | 6 | 6 | 6 | |
| 국적 | 중국5 베트남1 | 중국3 베트남1 필리핀1 | 중국5 우즈베크1 | 중국1 러시아1 | 중국2 | 중국3 베트남1 몽골1 대만1 | 중국5 우즈베크1 | 중국5 우즈베크1 | |

| 1사 중 | 1실 | 2실 | 3실 | 4실 | 9실 | 10실 | 11실 | 12실 | 계 |
|-------------|---------------------|------------------------------------|----------------------------|-----|-----|---------------------|---------------------|-------------|----|
| 거실형태 | 혼거 | 혼거 | 혼거 | 혼거 | 혼거 | 혼거 | 혼거 | 혼거 | 40 |
| 거실인원 (명) | 6 | 6 | 6 | 2 | 2 | 6 | 6 | 6 | |
| 국적 | 중국4 우즈벡1 말레이1 | 중국2 우즈벡1 베트남1 방글라1 몽골1 | 중국3 베트남1 방글라1 몽골1 | 중국2 | 중국2 | 중국4 베트남1 러시아1 | 중국4 말레이1 러시아1 | 중국5 베트남1 | |

라. 범죄유형별 현황

(단위 : 명)

| 구 분 | 계 | 재산범 | 강력범 | 과실범 | 마약범 | 공안범 | 기타 |
|-----|----|-----|-----|-----|-----|-----|----|
| 계 | 94 | 17 | 57 | 0 | 0 | 0 | 20 |
| 기결 | 94 | 17 | 57 | 0 | 0 | 0 | 20 |

4. 도서류 보유 현황(한글서적)

(단위 : 권)

| 계 | 총류 | 철학 | 종교 | 사회과학 | 순수과학 | 기술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
| 5,631 | 187 | 38 | 345 | 376 | 16 | 766 | 67 | 14 | 3,729 | 93 |

5. 보안장비 현황

(단위 : 개)

| 구분 | 총기 | 수갑 | 포승 | 검신기 | 무전기 | CCTV | 비디오카메라 |
|----|----|----------------|-----|-----|-----|------|--------|
| 수량 | 55 | 526 (혁수갑10) | 152 | 29 | 18 | 17 | 3 |

6. 소방시설 설치 현황

(단위 : 개)

| 소형분말 소화기 | 대형분말 소화기 | 옥내 소화전 | 옥외 소화전 | 스프링 쿨러 | 화재 탐지기 | 비상 방송설비 | 유도등 | 비상 조명등 | 방수구 |
|----------|----------|--------|--------|--------|--------|---------|-----|--------|-----|
| 61 | 4 | 3 | 6 | 0 | 0 | 0 | 0 | 0 | 0 |

Ⅲ. 조사결과

1. 시설조사 결과 분석

가. 개요

1) 건물개요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는 1989년 10월 개청하였으며 행정동 외에 2개의 수용사동(3층, 6개사동)과 5개의 작업장(구내 2, 구외 3)이 있다. 2006. 원예부지를 활용하여 외국인 전용 운동장을 신설하였으며, 2007. 4.부터 화장실 및 거실 개보수, 거실 및 사동 출입문 등 도색, 거실바닥 보수, 종교집회실 리모델링, 거실 건조대설치 및 구외 건조대 교체, 중문 옆 초소 신축 및 펜스 설치 등, 시설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 보호시설 개요

천안지소 사동의 수용 가능인원은 전체 250명이지만 2007. 6. 20. 현재, 외국인 80명 내국인 14명 수용되어 있다.

천안지소의 건물은 청사, 정문동, 보안청사, 사동, 접견실, 여사가 있다. 현재 여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보안청사 1층에는 진료실과 약품창고, 관용부, 신입실, 보일러실 등이 있고, 2층에는 변호인실, 교화접견실, 수용자교육실, 보안행정실 등이 있다. 사동에는

교회동과 컴퓨터실, 사동관구실이 있으며, 1사동은 1사 상층·중층·하층으로 구분되고, 2사동은 2사 상층·중층, 3사 하층으로 구분된다. 정문동 1층은 정문과 체육실이, 2층에는 관구실과 물품·영치실, 구내 1~2공장이 있다. 접견실 건물에는 접견실과 구매창고, 탈의실 등이 배치되어 있다.

천안지소는 거실 중 1사 중의 8개실, 1사 상의 8개실만을 사용하고 있다.

3) 보호업무 직원 및 관련자의 현황과 업무 내용

천안지소의 직원 정원은 95명인데, 현재 84명이 근무 중이다. 이중 교정직 직원은 77명이며, 일반직은 2명, 기능직은 5명이다. 일반직 중 의무관 1명, 분류사보 1명, 간호서기가 1명 배치되어 있다.

나. 개별시설 현황

1) 거실

천안지소에는 총 75개의 거실이 있으며 이중 40개는 독거실, 35개는 혼거실이다. 거실은 침실겸용 생활거실과 화장실로 구성된다. 거실에는 침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 수용자는 거실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잔다.

가) 독거실

독거실은 4.33㎡(1.31평)의 크기의 방으로 거실, 화장실이 있으며 화장실에 외부와 통하는 창문이 있다. 천안지소는 40개의 독거실 중 현재는 일부만 사용하고 있다. 4개실은 거실로 사용하고 2개실은 조사실과 징벌방으로 사용하고, 1개실은 보호실로 사용한다.

독거실은 원칙적으로 수형자 1명이 사용하는 것이지만, 천안지소는 각 독거실에 2명 씩 배정하고 있다. 징벌방으로 사용하는 독거실은 일반 독거실과 같은 면적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다만 TV 등은 설치하고 있지 않다. 수용 외국인에게 징벌사유가 발생하면 천안지소는 해당 외국인을 대전교도소 등으로 이송하기 때문에 일반교도소처럼 징벌방으로 사용되는 독거실은 1개실 외에는 없다.

징벌방이나 보호실이 아닌 일반 독거실에는 TV, 선풍기, 식탁, 사물함, 침구 보관용선반이 갖추어져 있다. 거실 내 TV는 수용자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선택된 방송프로그램을 녹화하여 방영해주고 있으며, 월드컵 등 국가대항전 스포츠 중계에 한하여 생방송을 방영해주고 있다. 감시카메라는 복도에 설치되어 있어 방 내부 시설 중 일부만 비추도록 되어 있었다.

조명은 형광등과 취침등이 설치되어 있고 취침시간에는 조도가 70~80룩스로 유지된다. 복도 쪽에 난 거실의 창문은 낮에도 자연채광이 충분하지 않아서 불을 켜놓지 않은 상태에서 독서나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거실에 환기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거실마다 1개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화장실에는 수세식 변기 1개, 수도꼭지 1개가 있다. 변기의 차폐시설은 170cm의 높이이고, 별도의 샤워시설이 없어 보호외국인은 화장실 내 수도꼭지를 통해 간단한 빨래와 세면을 하고 있다. 화장실의 창문은 가로 90cm, 세로 120cm의 크기로 외부와 연결되어 이 창문을 통해 자연채광이 이루어진다.

동절기 난방은 복도에서 스팀식으로 공급되며 냉방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사동 1층에 장애인용 독거실이 1개 설치되어 있고, 이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1층에는 계단에 장애인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다. 점자블록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장애인용 거실의 화장실에 장애인용 욕실 손잡이와 비상호출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거실 바닥은 마루바닥인 일반거실과 달리 전기판넬이 깔려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의시설에도 불구하고 거실의 출입문 문턱은 30cm의 높이이고, 거실 내 화장실 문턱은 20cm의 높이이어서 휠체어 장애인이 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나) 혼거실

혼거실 1개실의 면적은 4.69평(15.504㎡)이고, 현재 1개 거실 당 6명이 혼거하고 있다. 혼거실은 거실과 화장실로 구성된다. 혼거실의 출입문은 첩문이고, 그

옆쪽으로 창문이 있으며, 창문 아래 벽에 배식구가 나있다. 복도 쪽으로 난 창문 외에, 거실에는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거실에는 TV와 선풍기, 식탁, 사물함이 있었으며 독거실과는 달리 침구보관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수용자들은 한쪽 벽면에 설치된 개인사물함 위에 침구를 보관하고 있다.

거실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면 벽에 사물함이 설치되어 있고 사물함 한쪽 끝에 화장실 문이 있다. 거실과 화장실은 벽으로 구분되어 있고 화장실 출입은 미닫이 문을 통해서 하고 있다. 화장실 문쪽의 한쪽 거실벽에는 썩크대가 설치되어 있다. 수용자들은 이 썩크대에서 식사 후 설거지를 한다.

화장실에는 수세식 변기 1개와 수도꼭지가 1개 있다. 화장실은 한사람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을만한 크기여서 변기 옆에 별도의 차폐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수용자들은 수도꼭지 아래에 세숫대야를 놓고 사용한다. 수용자들은 이 수도시설로 간단히 세면을 한다. 샤워시설이 거실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 화장실 수도를 통해서는 온수 또한 공급되지 않는다.

화장실의 창문 크기는 독거실과 마찬가지로 가로 90cm, 세로 120cm의 크기이며, 이 창으로 화장실 내 자연채광이나 환기는 가능하지만, 화장실이 벽과 출입문으로 거실과 분리되어 있어 거실 내에까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창문 밖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어서 수용자가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창문 밖으로 손은 내밀어 누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방문조사 기간은 여름철이어서 창문에 모기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실 안에서 수용자가 손쉽게 비상벨을 누르기는 어려워 보였다.

2) 목욕관련

천안지소의 공동목욕실은 구내 공장에 2개, 사동에 각 층별로 1개씩 배치되어 있다.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목욕시설은 샤워시설이고, 사동의 목욕시설에는 입욕이 가능한 대형 욕조가 설치되어 있다.

6월부터 9월까지의 수용자에게 작업을 종료한 후 매일 20분 이내의 목욕이 허용되며, 10월부터 5월 사이의 일요일에는 사동목욕탕에서의 20분 이내 목욕이 허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행형법시행령 제95조는 목욕횟수를 작업의 종류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당해 소장이 정하도록 하면서도 6월부터 9월까지의 5일에 1회 이상, 10월부터 5월까지는 7일에 1일 이상의 목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회 목욕시간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다. 온수는 10월부터 5월 사이에 사동의 목욕시설에만 공급된다.

심층면접 시 일부 수용자는 대전교도소에 비해 샤워시간이 부족해서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전에서는 한국인과 같이 일했는데 오전 8:30에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일하고 4시부터 5시까지는 자유시간이어서 빨래나 샤워를 편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8시부터 일해서 4시 50분까지 일하고 5시까지 샤워를 하게 합니다. 받는 급여는 같은데 일도 길고 샤워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대로 씻을 수도 없어요. 문제를 삼으면 교도관이 방에 가서 하라고 하거나 여기는 대전이 아니고 천안이라고 하면서 무시합니다.(#9-3)¹¹⁶⁾

목욕시설에는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고 전부 작동이 가능한 상태이다. 천안지소는 한달에 한번씩 수용자에게 수건, 비누, 칫솔을 지급하고 있는데, 관급만으로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수용자는 자비로 구매할 수 있다. 전기면도기는 수용자가 구입해서 사용한다.

3) 의복과 침구류

교도소에서는 관급으로 수용자 1인당 매트리스 1개, 모포 3장, 베개 1개의 침구를 지급한다. 관복은 하복, 춘추복, 동복이 계절별로 각 2벌씩 지급된다. 하복과 춘추복은 옷의 재질은 같은데, 하복은 반팔, 반바지이고, 춘추복은 긴팔, 긴바지이다. 겨울에는 조끼가 추가로 지급된다. 속옷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

116) 천안지소의 수용자들은 외국인보호시설에 비해 비교적 장기간 수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심층면접자의 출신국을 밝힐 경우 해당 수용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날 우려도 있어서 심층면접 내용 인용 시 출신국을 밝히지 않는다.

다.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에 관한 지침 제7조에 의하면 동복, 춘추복, 하복이 12월, 3월, 6월에 지급되어야 하고 의류의 사용기간은 대개 2년이다.

수용자들은 소에서 지급되는 침구와 관복 외에 자비로 사제 침구와 내복, 속옷 등을 구입하거나 반입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어 방문조사 시 거실에서 사제 담요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모포와 운동화는 한달에 1회 정기적으로 세탁을 하고 있고, 수용자의 양말, 수건은 3개월에 1회 교환된다. 의복은 하절기는 1주일 1회, 동절기는 2주일에 1회 세탁을 하고 있다.

4) 세탁 시설

천안지소 내 세탁실은 사동 1층에 있으며, 50kg짜리 대형 세탁기 2개가 설치되어 있다. 세탁실은 수용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세탁을 담당하는 수용자가 따로 정해져서 다른 수용자의 세탁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동의 각 층에는 직원화장실 내에 가정용 세탁기 1대씩이 비치되어 있다.

5) 의료

진료실은 보안청사 1층에 있다. 의료진은 직제에 의무관이 배치되어 있지만 방문조사 당시 결원인 상태였으며, 공중보건과의 상주간호사가 각각 1명씩 근무하고 있었다. 평일에 의료진이 공장별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추가의 진료가 필요한 수용자에 대해서만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

천안지소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2007. 4. 전체 수용자 94명에 대해 혈액검사의 21개 항목에 대해 천안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매년 수용자의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1차 검진자 중 13명은 2차 검진을 실시한 바 있다.

천안지소는 천안의료원과 의료협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외에도 협력의료기관으로 순천향병원과 단국대학병원을 지정하고 수용자에 대한 일반진료는 순천

향병원에, 응급환자 진료는 단국대학병원에 의뢰하고 있다. 수용자가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대부분 국비로 그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천안지소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상반기 동안 진료비를 지원받은 수용자는 모두 17명이다. 수용자의 치과진료는 천안소년교도소에 배치된 치과의를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천안지소에는 모두 6개의 환자용 거실이 마련되어 있다. 이 중 노약자·장애인용 거실이 3개이며 1개가 독거실, 2개가 혼거실이다.

6) 여가활동

천안지소에는 5,600여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다. 철학에서부터 역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책을 보유하고 있는데 외국어사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어로 된 책이다. 이는 천안지소가 본래 내국인을 위한 구치지소의 역할을 담당했던 기관이었다가 올해부터 외국인 남자 수형자를 수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해석되는데, 천안지소가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전용구금시설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용외국인의 출신국 언어를 고려하여 도서를 보유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도서의 이용도 수용자가 교도관에게 도서 대여를 요청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UN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 제40조는 구금시설이 모든 범주의 피구금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오락적, 교육적인 도서를 충분히 비치한 도서실을 갖추어야 하며 피구금자들이 이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천안지소의 현행과 같은 도서의 보유와 이용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

수용자는 국내신문을 자비로 구독할 수 있는데, 2007년 6월 현재 수용자중 6명이 국내신문을, 1명이 코리아헤럴드를 구독하고 있다.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천안지소는 기독교 성직자의 방문을 허용하고 이들에 의한 종교집회를 지원하고 있다. 천안지소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소수이기는 하지만 불교나 천주교의 예배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보인다.

7) 중앙통제실 / 감시카메라 감시실

천안지소 내에는 감시카메라가 사동 입구에 1개씩, 복도 상, 중, 하에 2개씩 설치되어 있고, 환자용 1개 거실에 1개가 설치되어 있다. 보안청사 내의 중앙관리실에서 이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감시카메라는 24시간 작동되며, 녹화 내용은 메모리 카드에 자동으로 보관되고, 기억용량이 다 차면 순차적으로 녹화내용이 삭제되면서 그 위에 다시 녹화된다.

2. 설문 및 심층면접 조사 결과 분석

가. 조사대상자 관련 기초 사항

천안지소에 수감 중인 외국인 수용자는 중국인이 5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9.6%였다. 베트남인이 6명, 우즈베키스탄인과 러시아인이 각각 4명, 몽골인이 3명이며, 그 외 방글라데시,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인 등이다.

<표 1> 국 적

| | 빈도(명) | 백분율(%) |
|--------|-------|--------|
| 중국 | 55 | 69.6 |
| 방글라데시 | 1 | 1.3 |
| 몽골 | 3 | 3.8 |
| 베트남 | 6 | 7.5 |
| 우즈베키스탄 | 4 | 5.1 |
| 러시아 | 4 | 5.1 |
| 필리핀 | 1 | 1.3 |
| 기타 | 5 | 6.3 |
| 계 | 79 | 100.0 |

천안지소의 외국인수용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가 24명(30.4%), 30대가 21명(26.5%), 40대는 16명(20.3%), 50대는 2명(2.5%)이다. 전체적으로 수용자의

연령은 20대, 30대, 40대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연령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수용자가 16명이다.

<표 2> 연 령

| | 빈도(명) | 백분율(%) |
|--------|-------|--------|
| 20~29세 | 24 | 30.4 |
| 30~39세 | 21 | 26.5 |
| 40~49세 | 16 | 20.3 |
| 50이상 | 2 | 2.5 |
| 무응답 | 16 | 20.3 |
| 계 | 79 | 100.0 |

이들의 한국 체류기간은 1년 미만에서부터 10년 이상까지 매우 다양하다. 전체적으로 한국체류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가 39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49.4%이고, 5년 이상인 경우가 37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46.8%이다. 한국에 10년 이상 체류해온 수용자도 7명이 있다.

<표 3> 한국체류기간

| | 빈도(명) | 백분율(%) |
|-----------|-------|--------|
| 1년 미만 | 3 | 3.8 |
| 1년이상~2년미만 | 7 | 8.9 |
| 2년이상~3년미만 | 9 | 11.4 |
| 3년이상~4년미만 | 9 | 11.4 |
| 4년이상~5년미만 | 11 | 13.9 |
| 5년이상~6년미만 | 6 | 7.6 |
| 6년이상~7년미만 | 9 | 11.4 |
| 7년이상~8년미만 | 8 | 10.1 |
| 8년이상~9년미만 | 5 | 6.3 |

| | 빈도(명) | 백분율(%) |
|------------|-------|--------|
| 9년이상~10년미만 | 2 | 2.5 |
| 10년 이상 | 7 | 8.9 |
| 무응답 | 3 | 3.8 |
| 계 | 79 | 100.0 |

천안지소의 외국인수용자의 종교는 개신교가 43명으로 전체응답자 75명의 57.3%에 달한다. 가톨릭 13명(17.3%), 이슬람교 5명(6.7%), 불교 2명(2.7%)이다.

<표 4> 종교

| | 빈도(명) | 백분율(%) |
|------|-------|--------|
| 종교없음 | 7 | 9.3 |
| 개신교 | 43 | 57.3 |
| 가톨릭 | 13 | 17.3 |
| 불교 | 2 | 2.7 |
| 이슬람교 | 5 | 6.7 |
| 기타 | 5 | 6.7 |
| 계 | 75 | 100.0 |

천안지소 외국인 수용자의 입소 전 직업은 노동이 가장 많은데, 공장, 건설, 수산업, 농·축산업 등에서 단순노동에 종사했던 수용자가 58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73.5%이다. 식당 등의 서비스업에 종사했던 수용자가 6명이고 유학생 신분이었던 수용자는 5명이며, 그 밖에 사업을 했다고 응답한 수용자는 2명이다.

<표 5> 직업

| | 빈도(명) | 백분율(%) |
|-------------------------|-------|--------|
| 노동(공장, 건설, 수산업, 농·축산) | 58 | 73.5 |
| 서비스업(식당, 가정부, 파출부, 간병인) | 6 | 7.6 |
| 유학생 | 5 | 6.3 |

| | 빈도(명) | 백분율(%) |
|-----|-------|--------|
| 사업 | 2 | 2.5 |
| 기타 | 3 | 3.8 |
| 무응답 | 5 | 6.3 |
| 계 | 79 | 100.0 |

조사대상자 중에서 자녀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모두 31명으로 전체응답자 75명의 41.4%이다. 이중 자녀가 체류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명(4.0%), 배우자가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7명(9.4%), 부모나 형제자매가 체류 중인 경우는 21명(28.%)이다. 한국에 체류가족이 아무도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41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4.6%인데, 장기간 수용되는 구금시설에서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없거나 면회자가 없을 경우 수용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 외국인 수용자의 특성을 배려한 교도소 측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표 6>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

| | 빈도(명) | 백분율(%) |
|-----------------|-------|--------|
| 미성년자 자녀 | 1 | 1.3 |
| 성년자녀 | 2 | 2.7 |
| 한국인 배우자 | 2 | 2.7 |
| 한국인이 아닌 국적의 배우자 | 5 | 6.7 |
| 형제자매 | 14 | 18.7 |
| 부 또는 모 | 7 | 9.3 |
| 없음 | 41 | 54.6 |
| 기타 | 3 | 4.0 |
| | 75 | 100.0 |

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의 정도

<표 7>에 의하면, 수사기관의 심문과정에서 전체 응답자 중 52명인 72.2%가 본인이 직접 한국말로 하거나 통역인의 도움을 받아서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19명은 통역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았다고 답변하였으며 1명은 통역인이 없어서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응답했다.

<표 7> 심문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정도

| | 빈도(명) | 백분율(%) |
|--------------------------|-------|--------|
| 한국말로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 27 | 37.5 |
| 통역인의 도움으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다 | 25 | 34.7 |
| 통역인이 있었으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았다 | 19 | 26.4 |
| 통역인이 없어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다 | 1 | 1.4 |
| 계 | 72 | 100.0 |

재판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의 정도는 수사과정에서보다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에 따르면, 본인이 혹은 통역인의 도움으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73명 중에서 43명으로 58.9%이다. 38.4%인 28명은 통역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통역인이 없어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고 수용자도 2명이 있었다.

<표 8> 재판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정도

| | 빈도(명) | 백분율(%) |
|--------------------------|-------|--------|
| 한국말로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 26 | 35.6 |
| 통역인의 도움으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다 | 17 | 23.3 |
| 통역인이 있었으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았다 | 28 | 38.4 |
| 통역인이 없어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다 | 2 | 2.7 |
| 계 | 73 | 100.0 |

수사·재판과정에서의 그 진행 과정과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피의자가 방어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일 경우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수사기관과 대법원은 각 기관의 훈령으로 외국인에 대한 통역 지침을 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주어야 하며 외국인인 피의자는 진술조서를 통역인을 통해 읽어줄 것을 요구하고 진술의 뜻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법무부훈령 「인권보호수사준칙」 제56조) 재판과정에서도 재판장과 소송관계인은 정확한 통역이 되도록 간결한 문장과 번역가능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외국인 피고인은 통역의 정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재판예규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처리 예규」)¹¹⁷⁾

그러나 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사과정에서는 약 30%의 수용자가, 재판과정에서는 약 40%의 수용자가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되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역인에게서 들은 공소내용과 한글로 된 공소내용이 다른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도 있었으며, 수용자 출신국의 언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 국적의 통역인이 엉터리 통역을 받았다고 사례도 있었다.

경찰과 검찰 재판 받을 때 통역인이 잘못 통역을 해서, 살인을 한 것으로 됐다. ... 공소 내용은 재판 중에는 통역인에게 들은 내용대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교도소에 들어와서 한글로 된 공소 내용이 통역한 것과 다른 것을 알게 되었다. 칼도 들고 있지 않았는데, 칼을 들고 있었다고 되어서 살인 미수가 되었다. 칼을 들고 있었던 다른 사람은 도망가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9-2)

당시 나는 한국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조사를 받으면서 나는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았다. 통역을 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대사관 사람도 없었다. 그러던 중 통역을 하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몽골 사람이었다. 우리나라 말은 물론이고 러시아말도 잘 못해서 제대로 통역이 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나는 내용도 전혀 모르는 문서에 지장을 찍어야 했다. ... 재판을 받았지만, 재판 중 통역 아가씨는 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9-25)

117) 「이주노동자지원활동가를 위한 법률메뉴얼」, 188쪽-189쪽,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2007

수사·재판과정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된 상태가 되는데다 일상적이지 않은 용어와 표현이 사용될 경우 의사소통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통역자가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통역자가 있었음에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았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30~40%나 되고 있어 현재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제공되는 통역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를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교도소 내 처우문제

1) 교도소에서의 의사소통의 정도와 생활안내 고지

<표 9>에 의하면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 내 수용자 중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는 38명이다. 동료 수용자 등 통역자의 도움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17명까지 합하면 전체 응답자 70명의 78.6%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이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거나 불가능한 경우는 전체응답자의 21.4%인 15명이다.

<표 9> 교도관과의 의사소통 정도

| | 빈도(명) | 백분율(%) |
|-------------------------|-------|--------|
| 한국말로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다 | 38 | 54.3 |
| 통역인의 도움으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 | 17 | 24.3 |
| 통역인이 있었으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다 | 8 | 11.4 |
| 통역인이 없어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다 | 7 | 10.0 |
| 계 | 70 | 100.0 |

「외국인수용자처우지침」 제5조 제1항은 외국인수용자를 수용하는 교도소 등의 장은 외국어의 해독이 가능한 1명 이상의 교화직공무원 등을 교화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일상적인 개별면담, 고충해소, 종교관계자와의 접촉주선, 통역, 번역, 영사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가 교도소 내에서 원만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충해소 등을 정기적이고 개별적인 상담기회를 제공받아야 하고, 이 때 수용자는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자신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한다. 천안지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원을 통해 통역 가능한 언어는 영어 밖에 없다. 이들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통역과 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외국인 수용자 중에서 15명 정도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다고 응답한 결과에 비추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외부의 통역자를 초빙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천안지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천안지소는 전 신입수용자를 대상으로 신입수용 후 익일 교육에 입교토록 하여 2일 동안 수용생활 안내, 거실생활 내용, 위생관리, 영치 및 구매물 신청절차, 작업관련 안내,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표 10>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22.9%인 16명이 천안지소 입소 시 생활안내를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며, 21.4%인 15명은 설명을 들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안내를 받았던 내용도 형기 및 종료일, 접견 및 서신에 관한 사항, 규율, 징벌에 관한 사항을 주를 이루고 있고, 인권위 진정이나 법무부 청원에 관해서는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10> 수용생활 안내

| | 빈도(명) | 백분율(%) |
|-------------------|-------|--------|
| 있다 | 39 | 55.7 |
| 없다 | 16 | 22.9 |
| 설명을 했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 | 15 | 21.4 |
| 계 | 70 | 100.0 |

<표 11>를 보면, 입소 시 형기 및 종료일, 접견 및 서신에 관한 사항, 규율, 징벌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빈도의 70.4%에 이르지만 인권위 진정이나 법무부 청원에 관해서 안내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24.1%에 그치고 있다.

<표 11> 수용생활 안내내용

| | 빈도(명) | 백분율(%) |
|-----------------|-------|--------|
| 형기 및 종료일 | 40 | 22.0 |
| 접견 및 서신에 관한 사항 | 44 | 24.2 |
| 규율, 징벌에 관한 사항 | 44 | 24.2 |
| 청원에 관한 사항 | 21 | 11.5 |
| 인권위원회 진정에 관한 사항 | 23 | 12.6 |
| 기타 | 10 | 5.5 |
| | 182 | 100.0 |

그 안내방식도 <표 12>와 같이 책자나 교도소 벽에 붙은 안내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답변이 55명인 78.6%이고 구두로 설명을 들었다는 응답자는 21.4%에 불과하다.

<표 12> 수용생활 안내방식

| | 빈도(명) | 백분율(%) |
|---------------|-------|--------|
| 책자 | 39 | 55.7 |
| 교도소 벽에 붙은 안내문 | 16 | 22.9 |
| 말로 설명 | 15 | 21.4 |
| | 70 | 100.0 |

위와 같은 응답결과를 볼 때 천안지소에서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생활안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생활안내는 한국어 이해도가 낮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내용상에 있어서 수용자의 고충해결 절차와 권리구제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행형법」 제8조의 2는 소장이 신입자에게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고지하고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지되어야 할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으로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접견 및 서신에 관한 사항, 규율·징벌 및 청원에 관한 사항, 기타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자체 제작한 수용생활 안내서를 각 사동 거실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수용자가 한국말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라고 해도 일상용어를 벗어난 경우 그 의미를 해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수용생활에 대한 안내서는 외국인수용자의 출신국어로 제작될 필요가 있다. 천안지소도 인권위 진정 등 수용생활에 필요한 안내문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제작하여 각 거실에 파일로 비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천안지소 내 수용자의 출신국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한정된 언어의 안내서는 그 기능을 다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해당국의 언어로 수용생활안내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서의 번역 언어를 확대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2) 청원권과 진정권 등 보호

79명의 응답자 중 70.8%인 56명의 수용자가 교도소 안에서 교도관이나 한국인 관리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교도소 내 직원으로부터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한 수용자가 2명이고,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경우가 7명으로 나타났다.

<표 13> 교도소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

| | 빈도(명) | 백분율(%) |
|------------|-------|--------|
| 그런 적 없다 | 56 | 70.8 |
| 구타,폭행 | 2 | 2.5 |
| 욕설, 모욕적인 말 | 7 | 8.9 |
| 기타 | 1 | 1.3 |
| 무응답 | 13 | 16.5 |
| | 79 | 100.0 |

수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심한 욕이나 모욕적인 말을 사용하는 일부 교도관이 있고, 나이에 관계없이 반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있는 교도관 몇 명은 너무 심한 말을 많이 한다. 개새끼, 좃같은 새끼 같은 욕이나 니들이 사람이냐 라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여기에 있는 것이 정말 힘들다(#9-23)

사소한 말만 해도 ‘말하는 것이 싸가지가 없다’고 하고 ... 말의 톤이 높다고 교도관들이 방에 와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다. 그리고 교도관들이 머리를 자주 툭툭 친다. 우리나라에서는 머리를 건드리는 것은 너무도 나쁜 행위이다. 그리고 어떤 부당한 일이 있어 말을 하면 그 사유를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너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고 협박을 한다. 그리고 ‘너 그러면 교외공장에 보내주지 않겠다’라거나 ‘급수를 따기 위한 점수를 주지 않겠다’ 또는 ‘급수를 내리겠다’고 협박을 한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재소자의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아무에게나 막말을 한다.(# 9-18)

교도관이나 경비근무자가 외국인 수용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례한 행동하거나 폭언을 하는 것, 나아가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리 일부 교도관의 문제라고 해도 시정하기 위한 교도소 측의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법무부에 청원을 한 적이 있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4명이다.

<표 14> 법무부 청원 유무

| | 빈도(명) | 백분율(%) |
|-----|-------|--------|
| 예 | 4 | 5.7 |
| 아니오 | 66 | 94.3 |
| 계 | 70 | 100.0 |

<표 15> 인권위에 진정 여부

| | 빈도(명) | 백분율(%) |
|-----|-------|--------|
| 예 | 4 | 5.7 |
| 아니오 | 66 | 94.3 |
| 계 | 70 | 100.0 |

<표 16>에 따르면 진정이나 청원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가 진정을 제기하면 오히려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10명이고 해보았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포기한 경우가 14명이다. 청원이나 진정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수용자도 5명이고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진정이나 청원을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10명이나 된다.

<표 16> 진정이나 청원을 하지 않은 이유

| | 빈도(명) | 백분율(%) |
|----------------------------|-------|--------|
| 청원이나 진정 후 오히려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 10 | 18.9 |
| 해 보았자 별로 받아들여 질 것 같지 않아서 | 14 | 26.4 |
| 절차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 5 | 9.4 |
|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 10 | 18.9 |
| 기 타 | 14 | 26.4 |
| 합 계 | 53 | 100.0 |

교도소 수용자들이 흔히 진정이나 청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교도소 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어떤 피해를 당해도 권리구제 절차에 호소하지 못한다. 또한 수용자의 출신국 사정에 따라서는 교도소의 상급기관인 법무부나 다른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청원이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제도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수용자에게 청원이나 진정이 권리로서 보장된 것이라는 점과 제기 절차와 방법이 어떠하다는 점에 대해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것이다.

「모든형태의억류·구금하에있는사람들을보호하기위한원칙」 제33조는 ‘구금되거나 억류된 자 또는 그 변호인은 그에 대한 처우에 관해 특히 고문이나 그 밖의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가 있었던 경우에는 구금시설의 관리를 책임진 당국이나 상위의 당국에 불복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형법」 제6조도 ‘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구금시설의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이나 순회점검 공무원에 대하여 부당처우에 대하여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¹¹⁸⁾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1항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시설수용자를 최초로 보호·수용하는 때에는 시설수용자에게 인권침해사실을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하여야 하고 그 안내서를 시설수용자가 상시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천안지소 수용자들은 세탁문제나 화장실 수리 등 일상적인 문제에 부딪히거나 부당한 일을 겪기도 하는데, 외국인만의 전용교도소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해결이나 권리구제에 소극적이 될 수도 있다. 언어소통에도 못하고 비

118)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구금시설 평가지침서 개발연구」, 395쪽, 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교적 권리구제에도 적극적인 한국인과 함께 수용되어 있을 경우 이들로부터 외국인수용자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외국인들끼리만 수용되어 있을 경우 부당한 일에 나서기가 더 힘들 수 있다.

의복과 침구류의 세탁도 문제다. 세탁을 신청하였으나 가루비누가 없다고 하였다. 2번이나 신청하였는데 아직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 화장실이 계속 막혀 내려가지 않아서 수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수리를 하고 나서도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를 다시 요청하면 교도관은 '아무데나 싸라'고 한다. 좁은 방에 냄새까지 심하게 나면 정말 있기 힘들다.(#9-19)

대전교도소에서는 이러지는 않았다. 그곳에서는 부당한 일을 당하면 한국인 재소자들이 나서서 도와주었다. 그런데 여기는 외국인만 있다 보니 부당한 일이 있더라도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인권위에 진정을 하려고 하면 교도관들은 여러 핑계를 들어 거절하였다. 대전교도소에서는 이러지 않았다고 하면 '거기는 거기고 여기는 여기다'라고 하며 무시하였다.(#9-18)

따라서 수용자에게 청원권이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 절차, 방법에 대한 안내가 수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수용자가 표현하기 편한 언어로 제기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의료

<표 17>와 같이 천안지소 외국인수용자 중 응답자 70명의 75.7%인 53명이 의사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수용자가 원할 경우 교도소 내 진료는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용자들이 단순한 증상에 대한 처방만 이루어지거나 증상이 달라도 처방약이 비슷하다든 등의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진료의 질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도소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자가 많아 의사가 진료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특히 의사를 보조하는 교도소 담당 직원이 의사가 진료하기도 전에 별거 아니니까 그냥 가라고 해서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많다.(#9-12)

수감되기 전에 진단받은 병이 있었지만 수감되면서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

다. 지금도 몸이 좋지 않은 것을 느끼고 있는데 오전에 아프다고 보고하면 의무팀이 와서 보기는 하는데 별로 하는 것은 없다. 진찰을 한다기보다는 대충 말로만 듣고 만다. 잘해야 배 아픈 약, 잠 못자는 약, 감기약 정도 준다. 아픈 것이 심각하다고 하면 ‘여기는 병원이 아니고 교도소’ 라며 무시하는 게 보통이다. 아마도 원하는 거 들어주면 다른 수감자들도 자꾸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9-3)

교도소에서 의사의 진료는 필요할 때마다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를 아침에 제출하면 10시 이후에 그 날 중으로 의사를 만날 수 있다. 거의 말로 물어보고 약을 처방해 주는 정도이다. 병명은 다른데 의사가 주는 약은 거의 비슷하다. 보통 한번에 3~4알 먹는 약을 준다면, 병명은 달라도 2~3알은 전에 먹었던 약과 똑같다. 그래서인지 효과도 없다. (#9-15)

<표 17> 교도소 내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은 경험

| | 빈도(명) | 백분율(%) |
|----|-------|--------|
| 있다 | 53 | 75.7 |
| 없다 | 17 | 24.3 |
| 계 | 70 | 100.0 |

그러나 수용자가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부진료는 자비로 간다 하더라도 신청하고 나서 실제 가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제 가기도 힘들다.(#9-15)’는 수용자의 진술처럼 수용자의 외부진료 시 계호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점이나 자비부담도 만만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이다. 수용자 중에서 외부진료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7명인데, 거절 사유에 대해서는 교도관이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자에게 본인 부담료가 없어서거나 교도관이 피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고 답변하였다.

여기서는 두통약이나 소화제는 주는데 간장약 같은 것은 안 준다. 몸이 안좋아 진료를 요구해도 의사는 오지만 말로만 물어보지, 도대체 해결이 안된다. 외부진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지 알 수가 없어서 해보지 못했는데 요구해도 거의 안될거라고

생각한다.(# 9-5)

의사는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진통제만 줄 뿐이다. 외부에서 진료를 받고 싶지만 교도소에서 허용해주지 않고 있다.(#9-9)

외국인수용자는 국내에 가족이 없거나 외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 부담으로 외부병원 진료를 받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통증과 증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요구된다.

<표 18> 교도소 내 진료 외 외부 병원에서의 치료 요청 경험

| | 빈도(명) | 백분율(%) |
|-----------------------------------|-------|--------|
| 외부 진료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했다 | 7 | 12.3 |
| 외부 진료 요청을 하여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 6 | 10.5 |
| 요청한 사실이 없다 | 44 | 77.2 |
| 계 | 57 | 100.0 |

또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외국인수용자는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의사에게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고 처방이나 진료결과를 자세히 설명받기도 어려워 이에 대한 고충이 매우 클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치료가 끝나고 병에 대해서 묻고 싶었으나, 나는 한국말을 못해서 묻지도 못했다. 같이 온 교도관이 의사에게 설명을 들었으나 나중에 나에게 별도로 해 준 말이 없어서 답답했다.(#9-13)

4) 운동과 종교활동

<표 19>에 따르면 천안지소 내에서 운동시간이 하루에 한번 주어진다고 응답한 경우가 54명으로 전체 응답자 71명의 76.2%이며,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세 번 정도 주어진다고 응답한 경우가 9명으로 12.6%이다.

천안지소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천안지소는 전 수용자가 전일근로 작업에 취업하는 작업전담 교도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주 1회 30분 이내로 운동을 실시하는 것을 내부 지침으로 정하고 있다. 교도소 밖에서 근무하는 구외취업자는 작업이 없는 토요일만 30분 운동이 가능하다.¹¹⁹⁾ 그러나 <표 1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제로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30분 정도 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조사당시에는 구외 취업자가 한명도 없어서 대부분의 외국인수용자들은 매일 운동시간을 갖고 있었다.

<표 19> 운동시간

| | 빈도(명) | 백분율(%) |
|-----------|-------|--------|
| 전혀 없다 | 3 | 4.2 |
| 하루에 한 번 | 54 | 76.2 |
| 일주일에 1회 | 5 | 7.0 |
| 일주일에 2-3회 | 4 | 5.6 |
| 기타 | 5 | 7.0 |
| 계 | 71 | 100.0 |

실외운동은 모든 피구금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 제21조 제1항은 운동과 관련하여 ‘실외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피구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형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도 소장은 매일 1시간 내에서의 실외운동을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안지소가 작업전담 교도소라고 해도 수용자가 실내 작업을 하고 있고 수용자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업과 함께 적당한 운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천안지소가 실제로는 수용자에게 운동을 매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므로 현행과 같이 원칙적으로 일주일에 1회 운동을 허용하는 내부지침은 운영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만 한다.¹²⁰⁾

119) 이에 대해서 천안지소는 2007. 12. 6. 현재는 각 공장별로 매일 30분 이내의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토요일에는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30분 이내의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동과 관련한 천안지소의 가장 큰 문제로 수용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운동장이 작고 운동기구가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운동은 매일 12:10~12:45까지 할 수 있는데 운동장 시설이 아무것도 없고 크기도 작아 할 것이 없다. 대전에서는 크기도 크고 철봉, 축구대, 농구대도 있었고 공도 줬다. 수감되어 있는 사람은 운동 잘해야 하는데 문제 제기하면 대부분 묵살한다. (#9-3)

운동장에는 공터만 있을 뿐 농구, 축구 등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없으며 철봉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걷는 운동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9-8)

식사 후 30분간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시간을 매일 주는데 더 큰 문제는 운동장에 실제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냥 운동장을 뛰거나 걷거나 하는 게 전부이다. 실제 운동을 할 수 있는 철봉이나 공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9-15)

수용자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운동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외운동에 적합하고 필요한 기본적 기구들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¹²⁰⁾

「피구금지처우최저기준규칙」은 종교행위와 관련하여 제6조 제2항에서 ‘피구금자가 속하는 집단의 종교적 신조 및 도덕률을 존중’ 할 것과 제41조에서 ‘종교의 대표자가 구금시설 내에서 정기적인 의례를 행하도록 허가’ 되어야 할 것, 제42조에서 ‘구금자가 시설 내에서 거행되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 되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의 외국인수용자처우지침 제10조도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의 종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도소 등의 안전 및 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성직자와의 접촉추진, 거실 내에서의 예배나 종교행사 참석, 염주 등 종교적 용도에 사용할 성구나 종교서적의 소지 등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천안지소의 외국인수용자의 종교는 개신교가 43명으

120) 「국제인권원칙과 한국의 행형」. 116쪽, 서울지방변호사회, 역사비평사, 1993

121) 이에 대해서 천안지소는 12월 현재는 족구 및 배드민턴장과 부속기구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철봉 및 농구골대 등에 대하여는 순차적으로 예산확보 등을 위해 노력할 예정임을 밝혔다.

로 전체응답자 75명의 57.3%에 달한다. 가톨릭 13명(17.3%), 이슬람교 5명(6.7%), 불교 2명(2.7%)이다. <표 20>에 따르면 천안지소 외국인 수용자 52명 중 1주일에 1회 종교활동을 한다고 답변한 경우는 27명으로 52.0%이고, 매일 혹은 필요할 때마다 종교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11명으로 응답자의 21.1%이상이다.

<표 20> 주어지는 종교 활동 시간

| | 빈도(명) | 백분율(%) |
|-----------|-------|--------|
| 전혀 없다 | 2 | 3.8 |
| 하루에 한번 | 2 | 3.8 |
| 일주일에 1회 | 27 | 52.0 |
| 일주일에 2-3회 | 2 | 3.8 |
| 필요할 때마다 | 9 | 17.3 |
| 기타 | 10 | 19.3 |
| 계 | 52 | 100 |

5) 식사

교도소 내 식단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고 응답한 수용자는 34명이고,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수용자는 28명이다.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경우는 9명에 지나지 않는다.

<표 21> 식단상태

| | 빈도(명) | 백분율(%) |
|----------|-------|--------|
| 만족스럽다 | 9 | 12.5 |
| 그저 그렇다 | 28 | 38.9 |
| 만족스럽지 않다 | 34 | 47.2 |
| 기타 | 1 | 1.4 |
| 계 | 72 | 100.0 |

수용자들이 교도소 식단을 만족스럽지 않게 여기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양이 적다는 것인데, 전체응답자 60명 중 27명인 45%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수용자들은 ‘밥이 적거나’(#9-10, #9-13) ‘반찬이 적다’(#9-8)고 지적한다. 그 밖에 14명이 맛이 없다는 답변을 했으며, 6명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들었다. 또한 음식물의 재료와 조리 상태가 깨끗하지 않다는 지적도 6명이다.

천안교도소의 생활은 힘들다. 우선 식사량이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맛도 없다. 나는 여기서 배식을 담당하고 있는데 나누어주다 보면 배식이 모자라 내 밥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때는 내 돈으로 라면을 사서 끓여 먹기도 하였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늘 배고프다고 말한다.(#9-19)

<표 22> 교도소 식단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는 이유

| | 빈도(명) | 백분율(%) |
|---------------------|-------|--------|
|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 | 6 | 10.0 |
| 맛이 없어서 | 14 | 23.3 |
| 양이 적어서 | 27 | 45.0 |
| 음식물의 재료가 신선하지 않아서 | 3 | 5.0 |
| 음식물의 상태가 깨끗하지 않아서 | 3 | 5.0 |
| 기타 | 7 | 11.7 |
| 계 | 60 | 100.0 |

외국인수용자처우지침 제9조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의 출신자에게는 쌀이나 보리류를, 그 밖의 외국인에게는 빵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천안지소도 비 아시아권 출신들에게는 빵과 양식으로 구성된 외국인용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 서양식 식단은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80명의 수용자 중에서 25명에게만 제공되는데, 아시아권 출신의 수용자라고 해도 담당근무자나 의무관 등의 판단이 있을 때는 서양식 식단이 제공된다. 이 때문에 같은 아시아권 출신이라고 해도 맵거나 짠 한국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도소 식단이 견디기 힘들 수 있다. 한식으로 쌀이나 보리를 주로 한 밥을 제공할 때라도 반찬의 조리 방식을 달리한다면 이런 문제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천안지소는 천안소년교도소와 음식조리를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 특성에 맞게 한식을 만들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수용자는 다음과 같이 불만을 제기하였다.

교도소 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은 식사문제이다. 한쪽은 맵고 짠 한국음식을 잘 먹지 못한다. 양식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한쪽은 조선족과 다르다. 한식 때문인지 피부병이 심하다. 매운 음식을 먹지 않으면 피부병이 사라지지만 다시 매운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다시 발병한다. 양식으로 변경해주었으면 좋겠다.(#9-12)

특히 한식으로 식사를 하면 너무 힘들다. 김치나 깍두기를 먹으면 모두 토해낸다. 나는 매운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래서 양식을 3번이나 신청을 하였으나 묵살하였다. 지금은 같은 방에서 양식을 먹고 있는 사람에게서 조금씩 얻어먹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이 상태를 어디에 호소할 데도 없다.(#9-20)

따라서 같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시아권이라고 하더라도 수용자의 개별적 특성을 존중하여 식단을 구성하고 식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각 거실에는 온수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사동청소부(일명 소지)는 수용자가 컵라면이나 커피¹²²⁾ 등을 먹을 수 있도록 식후 식수통에 온수를 공급하고 있다.

6) 수용형태

천안지소의 외국인 수용자 중 독거실 생활을 한다고 답변한 경우는 11명으로 전체 응답자 69명의 15.9%이며, 2명이 혼거한다고 답변한 경우는 5명으로 7.2%이다. 3명 내지 5명이 혼거하는 경우는 9명, 5명 이상 혼거하는 경우는 43명으로 이를 모두 합하면 75.5이다.

122) 컵라면이나 커피 등은 수용자가 자비로 구입할 수 있다.

<표 23> 수용형태

| | 빈도(명) | 백분율(%) |
|------------------|-------|--------|
| 혼자 지낸다 | 11 | 15.9 |
| 2명이 지낸다 | 5 | 7.2 |
| 3명 내지 5명이 함께 지낸다 | 9 | 13.1 |
| 5명 이상 함께 지낸다 | 43 | 62.4 |
| 기타 | 1 | 1.4 |
| 계 | 69 | 100.0 |

「행형법」 제11조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혼거수용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수용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최소한 전체 수용인원의 30~40%의 인원이 독거수용 되는 것이 보통의 지표로 제시되고 있다.¹²³⁾ 외국인수용자처우지침 제6조 또한 외국인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되 수용거실 부족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혼거수용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혼거수용의 경우라고 해도 종교나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은 상호 분리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말이 통하지 않거나 문화가 다른 외국인들을 혼거시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천안지소에서 혼거생활을 하는 많은 외국인수용자가 문화가 다른 외국인과의 혼거수용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나는 교도소에서 2005년 9월1일부터 2009년 9월 19일까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 천안교도소의 생활이 너무 힘들다. 같은 방에 6명이 있는데 빨래를 널 수가 없으며 기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방을 바꿔달라고 4번이나 요구하였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9-23)

123)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구금시설 평가지침서 개발연구」, 23쪽, 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지금은 중국 사람들과 생활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중국 사람들은 샤워도 잘 안 하고 식사하는데 팬티바람으로 밥상에 앉고, 방귀를 끼고 몸 냄새도 나고, 너무 시끄럽다. 우리 지역출신 사람들과 같은 방에서 생활하고 싶다.(#9-15)

좁은 공간에서 밀착되어 지낼 수밖에 없는 수용자에게 있어 어떤 형태의 거실에 수용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살아온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외국인 수용자의 경우 많은 인원이 혼거하는 형태는 수용생활의 어려움을 배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수용자의 거실배치에 대해 최대한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7) 접견권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거나 있어도 체류자격이 등록외국인이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수용자가 수용생활 내내 접견도 하지 못하고 외부와 단절되어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교도소 내 외국인수용자에게는 접견보다는 전화통화가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외부교통 수단이다.

현재 천안지소의 외국인 전화사용 규정은 내국인의 기준과 동일한데, 수용자의 누진계급별로 1급은 월 5회, 2급은 월 3회를 사용할 수 있고 3~4급은 전화를 할 수가 없다. 다만, 명절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급수에 관계없이 전화 기회가 제공된다. 천안지소의 외국인수용자 중 전화통화가 허용되지 않는 3~4급 해당자가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점이 바로 가족과의 연락문제다.

4급수라 밖으로 전화를 할 수 없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전화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한다.(#9-2)

한국에 어머니와 누나가 있어 한달에 1번 정도는 면회를 오고 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아내와는 전화통화 한번 못했다. 외국인이니까 몇 개월에 단 1번이라도 한국에 없는 가족하고 통화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9-5)

제게는 한국에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고국에만 어머니가 계시다. 어머니는 제가 이런 곳에 수감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계신다. 편지를 써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 건강이 좋지 않으셨는데 걱정이 많이 된다. 한달에 한번은 안되도 전화를 한번씩 할

수 있으면 좋겠다.(#9-6)

대전교도소에서는 급수에 관계없이 신청을 하면 1개월에 한번정도는 전화를 쓸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3급 이하는 아예 전화를 할 수가 없다. ... 편지를 쓰기는 하지만 답장도 없어서 답답하다. 전화를 한번만 하면 좋겠는데 할 수가 없다.(#9-7)

나는 아직 2등급이 되지 않아 외부에 전화를 할 수 없다. 중국 서안에 아들이 있는데 여동생이 돌보고 있고, 처는 사망하였다. 편지로 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지만 약 7개월 전부터 소식을 알 수 없다. 2급이 아니더라도 절실히 외부 전화가 필요한 자에게 허용을 했으면 좋겠다. 얼마 전 같이 수용되어 있던 자의 처가 면회를 와서 그 자와 이혼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교소도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이 자신의 처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2등급이 되기 전까지 전화 연락을 하지 못한다면 위와 같이 이혼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한국에 체류하는 처의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라 일정한 주소가 없어 편지로 안부를 전할 수 없고, 잡힐 우려 때문에 교도소에 면회 오는 것을 꺼려한다.(#9-9)

「행형법」 제18조의 3 제1항은 ‘소장은 수용목적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51조와 수용자전화사용지침 제7조는 제1급의 수형자는 월 5회, 제2급은 월 3회의 범위에서 허가하며 미결수용자의 경우 월 5회의 범위에서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제3급과 제4급에 대한 규정은 없다.

천안지소의 전화사용 규정 또한 이런 규정에 맞추어 정해진 것이지만, 수용자가 외국인일 경우 접견이나 서신의 방법으로 외부교통을 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3급과 4급의 수용자에게도 전화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8) TV시청

천안지소는 각 거실에 TV를 설치하고 TV시청을 허용하고 있다. 천안지소의 설명에 의하면 수용자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녹화한 것을 상영하고 국가대항전 스포츠 중계에 한하여 생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천안지소에 의하면, TV시청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수용자는 ‘TV시청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교도관 자의적으로 꺼버리거나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9-19)’며 교도관에 의해 TV시청 시간이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문제로 제기했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수용자들은 수용자의 출신국 분포를 고려하지 않고 가장 수용인원이 많은 중국인 위주로 하거나 소년원 방송프로그램을 그대로 방영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5:40부터 9:00까지 방송을 틀어주는데 여기서는 어른에게도 소년교도소의 방송을 그대로 틀어줄 뿐이다. 또 저녁에 중국어 교육방송(아마도 한자교육 방송)을 40분정도 틀어주는데 다른 외국인들은 아무 필요가 없는 방송이다. 대전에서는 english cafe를 틀어줬는데 여기서는 없다.(#9-3)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작업을 끝내고 방으로 오면 저녁 5시 반부터 9시까지 TV 시청을 할 수 있다. 5반부터 7시까지는 중국 프로그램, 7시부터 8시까지는 한국 드라마, 8시부터 8시 반까지는 TV를 껐다가 8시 반부터 9시까지 뉴스를 틀어 준다. 그런데 같은 방에 수용된 다수가 중국인이어서 그런지 약 1시간 반 정도 매일 중국 프로그램을 틀어 주는데 다수를 위한 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적어도 2주일에 1번 정도는 다른 국적 외국인을 위해서 미국, 영국 등 영어로 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9-8)

한달에 한번이라도 우리나라 언어 TV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9-14)

천안지소는 국내 유일의 외국인 전담교도소로서 지정되어 외국인 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수용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도소 운영 방식과 지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외국인만을 물리적으로 수용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외국인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교화하는 프로그램을 가진 실질적인 외국인 전담교도소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TV 시청문제도 수용외국인의 국적별, 연령별, 개인별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만 할 것이다.

9) 기타

천안지소 수용자들이 제기한 중요한 문제는 출소 후 출국을 위한 여권 혹은 여행증명서 신청 절차를 위한 도움을 천안지소가 제공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는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출소 후 강제출국을 당하게 되는데, 수용자들이 여권을 분실했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출국을 위해서 여권 혹은 여행증명서를 자국대사관 혹은 영사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이러한 수용자들은 출소 후 곧바로 출국하지 못하고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어 여권 혹은 여행증명서를 발급 신청을 하고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에 따라서는 여권이나 여행증명서가 발급되는데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하므로 수용자들이 신속하게 출국하지 못하고 외국인보호소 등에서 긴 시간을 보호상태로 있게 되는데 이는 외국인 개인에게나 국가 재정적으로나 쓸데없는 비용의 낭비이다. 만약 교도소에서 외국인수용자가 출소 전 여권 및 여행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면, 교도소 측에서는 행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외국인수용자가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된 뒤에 여권 및 여행증명서 발급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 보호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출소한 이후 본국에 가려면 여행자증명서가 필요한데 지금 여기서 만들지 못하면 바로 출국하지 못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보호소에서 1달 동안 또다시 구금되어야 한다. 여행자증명서를 신청하려면 사진이 필요해서 교도관들에게 사진을 찍게 해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다. 여행자증명서는 내가 편지로 대사관에 신청할 수 있으니 제발 사진만이라도 찍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문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수감자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많은 수감자들이 이것 때문에 교도소 출소 이후에도 출입국관리소의 보호소에서 1달 이상 더 수감되다가 출국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교도소에서는 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9-15)

천안지소 외국인수용자들 중 상당수는 임금체불 문제를 갖고 있다. 범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가 임금체불 때문인 경우도 많고, 체불임금에 대한 도움을 받을 곳도 마땅하지 않은 형편이다.

나는 당시 임금을 받지 못하여 괴로워하다가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였다. ... 내가 구속된 후에 처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현재 한국에서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 교도소에 수감된 후 교도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출입국관리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을 뿐 도움을 받지 못했다. ...처의 수술비와 생활비를 위해서 체불된 임금을 받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9-11)

그런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어서 대부분 장기형을 선고 받은 자가 대부분 별다른 방법을 취하지 못하고 3년 이상을 방치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임금채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사실상 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정은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체불문제가 교도소 내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수용자가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도소 측이 적극적으로 조치해줄 필요가 있다.

3. 종합평가

천안지소에 대한 조사는 외국인수용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통역서비스 제공과 만족도, 교도소 내에서의 의사소통의 정도와 입소 시 생활안내 여부, 법무부 청원 및 인권위 진정 제기 정도, 수용거실 형태 및 운동, 종교, 의료, 식단 등 일상생활에서의 처우가 적정한지를 조사하였다.

천안지소 외국인수용자의 수용생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만족스럽거나 지낼만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61명으로 전체 응답자 73명의 83.6%이다. 다소 고통스럽다는 응답자는 9명으로 12.3%이며, 매우 고통스럽다는 응답자는 3명으로 4.1%이다.

<표 24> 생활에 대한 만족도

| | 빈도(명) | 백분율(%) |
|----------|-------|--------|
| 만족스럽다 | 8 | 11.0 |
| 지별 만 하다 | 53 | 72.6 |
| 다소 고통스럽다 | 9 | 12.3 |
| 매우 고통스럽다 | 3 | 4.1 |
| | 73 | 100.0 |

천안지소는 전국의 유일한 외국인교도소 전담기관이자 작업전담 교도소이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천안지소는 외국인 수용자 처우향상을 위해 교정옴부즈만과 징벌위원회 위원도 외국어 구사 가능자로 구성하고 외국어회화에 능통한 직원을 고충처리 전담직원으로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비교적 거실이나 소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그러나 한편, 방문조사 결과 천안지소가 외국인 전담교도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및 운영상의 개선과 보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시설문제

천안지소의 수용거실 형태가 주로 5명 이상 혼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말이 통하지 않거나 문화가 다른 외국인들을 혼거시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실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처우문제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외국인 수용자의 국적은 중국, 방글라데시,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필리핀, 대만 등 매우 다양한데, 천안지소 내 수용자 중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는 38명이다. 32명은 동료 수용자 등

통역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나 교도소 내에서 도움을 받을 만한 통역도 없는 상태이다. 천안지소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수용자에게 정기적으로 원활한 통역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 시 인권위 진정이나 법무부 청원 등 권리구제 절차를 포함한 생활안내가 외국인수용자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책자나 구두로 충실하게 고지되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수용자들의 청원권과 진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천안지소 내에서도 일부 교도관 등에 의한 무례한 행동이나 폭언이 행해지고 있다는 수용자의 진술을 볼 때, 수용자에게 청원이나 진정의 의미, 절차, 방법에 대한 안내를 수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수용자들이 고충해결이나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용 중에 임금체불 문제를 비롯한 개인적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대한 적극적 안내도 필요하다.

천안지소는 수용자가 외국인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으로 외부병원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천안지소가 작업전담 교도소이기는 하지만, 수용자에게 적당한 운동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일주일에 1회 운동을 허용하는 현행의 내부지침은 개선되어야만 하고 운동장에 운동기구를 비치하여 수용자들이 실외운동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식사량을 비롯한 교도소 식사에 대한 수용자들의 불만을 경청하여 식사관련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며, 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시아권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식 음식에 적응하기 힘든 개별 국가적 특성을 존중하여 식단을 구성하고 식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TV시청 시간을 정규화하고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대해서도 수용외국인의 출신국 분포와 개인별 상황을 고려를 고려하여 운영해야만 할 것이다.

천안지소의 현행 전화사용 규정은 접견이나 서신의 방법으로 외부교통을 하기 어려운 외국인 수용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들의 접견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외국인 교도소로서 수용자가 출소 후 신속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소를 앞 둔 일정한 시점에서 수용자가 여권 혹은 여행증명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천안지소의 수용자가 출신국에 관계없이 이용가능 하도록 보유도서의 언어를 다양화하고, 수용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도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방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IV. 시정이 필요한 사항

천안지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의 시정이 필요하다.

1. 언어소통과 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용외국인의 거실배치
2. 외국인수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의 인권위 진정이나 법무부 청원 등 권리구제 절차를 포함한 생활안내, 외국인 수용자들의 청원권과 진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언어지원과 지속적인 안내 실시
3. 내·외부 진료 시 의사소통이 어려운 수용자의 상황 배려
4. 수용자의 운동 횟수 확대와 운동 여건 개선
5. 아시아권 출신의 수용자에 대하여 개별 국가의 식생활 특성을 존중한 식단 공급
6. 수용외국인의 출신국 분포와 개인별 상황을 고려한 TV 프로그램 편성과 보유도서의 언어를 다양화 및 이용방식 개선
7. 외국인 수용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화통화 허용규정 개선

청주 여자 교도소

I. 조사개요

1. 조사일정

- 자료제출 요구 : 2007. 5. 29.
- 방문조사
 - 1차 : 2007. 6. 22.(금)
 - 2차 : 2007. 11. 22.(수)
- 조사결과에 대한 청주여자교도소 의견제출 요구 : 2007. 11. 30.(금)

2. 방문조사 참가자

- 1차
 - 외부전문
양혜우(이주노동자인권연대)
곽선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김재원, 김민정(이주여성인권연대)
소라미, 장서연(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위원회 : 김수산, 백미순(이주이권팀), 강인영(성차별팀)
- 2차
 - 위원회 : 김수산(이주인권팀)

3. 조사방법

- 자료조사

- 설문조사
 - 심층면접 조사
 - 시설조사
- ※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전수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설문지는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영어, 방글라데시어, 몽골어로 번역되어 제공되었다.

조사방법은 청주여자교도소 2층 다도실과 회의실에서 6명의 조사자가 각각 그룹화된 17명의 피조사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총 17부였다.

설문지의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심층조사는 피조사자의 자원을 받아 일대일 면접조사로 실시했으며 총 11명의 보호외국인에 대해 이루어졌다. 시설조사는 조사표를 작성하여 그에 대한 객관적 수치와 현황을 기록하고 그 결과에 대한 조사자의 평가를 기재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II. 청주여자교도소 외국인 수용 업무 개관¹²⁴⁾

1. 연혁

- 청주여자교도소는 1989. 10. 16. 개청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3. 10. 현재의 교도소 건물로 신축 이전하였다.
- 청주여자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여자수형자만을 수용하고 있는데, 내국인만이 아니라 외국인여자 수형자를 전담하고 있다.

124) 이 장의 내용은 2007. 6. 22. 청주여자교도소가 제출한 자료를 발췌한 것이다.

2. 시설현황

| 부지면적(m ²) | 연건평(m ²) | 구내면적(m ²) | 수용사동수 | 작업장수 |
|-----------------------|----------------------|-----------------------|-------|------|
| 48,719 | 26,129 | 10,046 | 9 | 6 |

3. 외국인 수용현황

가. 2007. 6. 15. 현황

| 정원 | 현원(여성) | | |
|-----|--------|-----|-----|
| | 계 | 외국인 | 내국인 |
| 700 | 583 | 17 | 566 |

나. 국적별 현황

| 구 분 | 계 | 중국 | 몽골 | 러시아 | 미국 | 일본 | 네덜란드 |
|---------|----|----|----|-----|----|----|------|
| 2007. 6 | 17 | 9 | 1 | 4 | 1 | 1 | 1 |

다. 거실수용현황 및 형태

| 거실형태 | 독거수용 | 2인혼거 | 3인혼거 | 4인혼거 | 5인혼거 | 6인혼거 | 7인혼거 | 총 17명 |
|------|-----------------|---------------|---------------|------|--------------|------|------|----------|
| 인원 | 3 | 2 | 2 | 1 | 2 | 6 | 1 | |
| 국적 | 러시아 2 네덜란드 1 | 러시아 1 일본 1 | 러시아 1 미국 1 | 중국 1 | 중국 1 몽골 1 | 중국 6 | 중국 1 | |

라. 범죄유형별 현황

| 구 분 | 계 | 재산범 | 강력범 | 과실범 | 마약범 | 공안범 | 기타 |
|-----|----|-----|-----|-----|-----|-----|----|
| 계 | 17 | 3 | 10 | 0 | 3 | 0 | 1 |
| 기결 | 17 | 3 | 10 | 0 | 3 | 0 | 1 |

4. 도서류 보유 현황

가. 한글서적

| 계 | 총류 | 철학 | 종교 | 사회과학 | 순수과학 | 기술과학 | 예술 | 어학 | 문학 | 역사 | 아동도서 |
|-------|----|----|-----|------|------|------|----|----|-------|----|------|
| 4,718 | 70 | 96 | 184 | 528 | 47 | 638 | 9 | 98 | 2,883 | 53 | 112 |

나. 외국어서적

- 러시아어 5권
- 네덜란드어 13권
- ※ 해당 대사관에서 기증

5. 소방시설 설치 현황

| 소형 분말소화기 | 대형 분말소화기 | 옥내소화전 | 옥외소화전 | 스프링쿨러 | 화론소화기 | 삼 |
|-------------|-------------|-------|--------|-------|----------------|---|
| 206 | 1 | 22 | 5 | 0 | 7 | 5 |
| 자동확산 소화기 | 자동경영펌프 | 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방화수통 | 캐비넷형 자동소화기기 | |
| 7 | 2 | 3 | 2 | 20 | 2 | |

6. 양육유아를 위한 특별거실 현황

가. 양육유아 거실 현황

| 현재인원 | 수용현황 | | 거실 내 시설구조 |
|-------------------|-------|--------|--------------------|
| | 거실 | 면적 | |
| 총원 6명 (여3, 남3) | 1사 2실 | 16.64㎡ | 거실 바닥에 전기 온돌 판넬 설치 |
| | 1사 3실 | 16.64㎡ | |

※ 모두 한국인 수용자만 배정되어 있음

나. 양육유아 놀이방

| 구 분 | 시 설 구 조 |
|------|---|
| 시설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 18.71㎡ ○ 벽면 : - 도배 및 벽체하부에 고무안전매트를 설치 - 라지에타에 목재로 된 커버를 설치 - 그림이 있는 커튼을 설치 ○ 바닥 : 바닥 놀이매트 설치 |
| 놀이기구 | 유아용 도서 및 미끄럼틀, 유모차, 스프링차 등 장난감 다수 |

Ⅲ. 조사결과

1. 시설조사 결과 분석

가. 개요

1) 건물 및 시설개요

청주여자교도소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철근콘크리트 현대식 건물인 본관동과 부속건물인 비상대기소, 연무장, 개방처우자 생활관125), 햇살어린이집(직원자녀 보육시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거실 온돌식 난방,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거실별로 싱크대, TV,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다.

청주여자교도소 본관동 1층은 사무실, 취사장, 직원식당, 목욕실, 세탁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2층은 진료실과 병사 등으로, 3~4층은 수용사동과 직업훈련장으로, 5층은 취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관동의 총 거실수는 177개로 혼거실 106개, 독거실 71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혼거실 중에는 양육유아실 2개실, 장애인실 2개실 및 병실 19개실이 포함되어 있다.

125) 현재 한국인 수용자들만 수용되어 있다.

외부에 취업하는 수용자들을 위한 개방처우자 생활관은 총면적 506.43㎡의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혼거실 4개, 20명의 수용자가 생활하고 있는 곳이다. 개방처우자 생활관 1층은 지도보호실, 강의실, 토의실, 접견실, 식당, 미용실, 목욕실로, 2층은 거실 4개(4인실 2개, 6인실 1개, 7인실 1개), 도서실, 휴게실, 상담실로 쓰이고 있다. 지하층은 보일러실이다.

청주여자교도소 수용자 정원은 총 700명이나 2007. 6. 15. 현재 583명만이 수용되어 수용밀도는 0.27%(1인당 3.7m²)이며, 이중 외국인 여성은 총 17명이다.

나. 개별시설 현황

1) 거실

청주여자교도소 본관동에는 9개 사동에 총 106개의 혼거실과 71개의 독거실이 있다. 거실은 침실겸용 생활거실과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다. 본관동의 난방은 온돌난방이며 11월과 4월에는 1시간씩 3차례, 12월에서 3월까지는 1시간씩 5차례 난방을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거실에는 침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매트리스, 모포, 이불 등이 지급된다.

조명은 거실마다 화장실 1개, 거실 2개의 등이 있는데 야간에는 3개 중 거실 등 1개만을 끄고 조도를 조절한다.

가) 독거실

청주여자교도소 독거실은 7.05m²로 본관동에 총 71개실이 있으며 본관동 3~4층에 위치해 있다. 본관동 2층 병사에도 독거실이 9개실이 있으며 면적이 11.73m²로 2인실로도 사용하고 있다. 조사징벌실 또한 독거실로 본관동에 총 6개실이 있다.

독거실은 거실과 화장실이 이어져 있고 높이 77cm의 차폐시설로 화장실이 구분되어 좌변기가 가려져 있다. 거실에는 TV장 겸 개인사물함, TV, 알람판, 좌상, 선풍기 등의 물품이 구비되어 있고 화장실에는 좌변기와 수도꼭지가 한 개씩 있고 슬리퍼, 빨래판, 휴지통 등이 구비되어 있다.¹²⁶⁾

독거실은 한개의 내부창이 있는데 가로 87cm 세로 89cm의 2중창 및 쇠창살로 외부와 공기가 소통되었고 자연채광이 있었다.

126) 시설 조사 시 수용자가 생활하지 않는 빈 독거실을 조사하였으며, 따라서 침구류 등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혼거실' 조사내용에서 서술함.

독거실의 출입문의 재질은 나무로 회색 페인트로 마감처리가 되었고 외부에서 거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창문과 가로 세로 17cm의 배식구가 있다.

조사징벌실은 본관 3층에 모두 6개가 있으며 일부는 조사실(수용자에 대한 조사기간 중 사용)로, 일부는 징벌실(징벌이 확정된 경우 사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조사징벌실 내부는 5.40m²로 일반 독거실(7.05m²)보다도 면적이 작으며 높이 77cm의 가림막이 화장실과 거실을 구분지고 있다. 화장실에는 좌변기와 수도꼭지 1개가 있으며, 창문은 가로 87cm 세로 88cm의 2중창이며 다른 수용거실에 비하여 쇠창살 앞에 망이 하나 더 추가되어있다.

나) 혼거실

청주여자교도소 혼거실은 총 106개실로 양육유아실 2실, 장애인실 2실, 병실 10실이 여기에 포함된다. 청주여자교도소 혼거실은 3인실, 6인실, 8인실 등 인원수와 면적이 다양한 거실들이 혼합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병사를 포함한 거실별 면적은 아래와 같다.

| 거실 형태 | 3인실 | 3인실 | 6인실 | 8인실 | 8인실 | 3인실 (병사) | 6인실 (병사) | 개방혼거실 (총면적) |
|----------------------|-------|------|-------|-------|-------|----------|----------|-------------|
| 면적 (m ²) | 10.11 | 9.42 | 16.64 | 20.67 | 20.82 | 16.94 | 26.25 | 102.78 |

혼거실 내부는 거실과 화장실로 구분될 수 있고 거실에는 침구, 수납장, 책 선반, TV장과 TV, 선풍기, 알림판, 교자상, 싱크대 등의 시설이 있었으며, 대야, 바가지, 휴지통, 거울, 물통, 슬리퍼, 빨래판 및 식기류가 일부 배치되어 있다.

알림판에는 (수용생활)준수사항, 달력, 식단표, 법률구조공단안내문, 수용생활 안내, 약품가격, 구매물품가격 등의 문서가 게시되어 있다.

6인실기준으로 지급되는 거실비품 현황은 아래와 같다.

| 품 명 | 수 량 | 품 명 | 수 량 |
|-------|------|--------|------|
| 담요 | 1인2매 | 숟가락 | 1인1개 |
| 베개 | 1인1개 | 젓가락 | 1인1벌 |
| 국그릇 | 1인1개 | 밥통 | 2 |
| 밥그릇 | 1인1개 | 찬통 | 3 |
| 찬그릇 | 1인1개 | 화장지걸이 | 1 |
| 고무대야 | 2 | 교자상검책상 | 2 |
| 세수대야 | 1 | 거울 | 1 |
| 물바가지 | 1 | 원형소쿠리 | 2 |
| 휴지통 | 3 | 물통 | 1 |
| 화장실솔 | 1 | 슬리퍼 | 2 |
| 반달옷걸이 | 2 | 빨래판 | 1 |
| 파리채 | 1 | 주걱 | 1 |
| 부채 | 3 | 국자 | 1 |

6인실 기준으로 내부장은 가로 87cm, 세로 89cm, 화장실장은 가로 59cm, 세로 89cm의 2중창으로 자연환풍과 채광이 가능하다.

화장실의 입구에는 문이 있고, 화장실벽에 가로 51cm, 세로 171cm의 창이 나 있어 자연환풍과 채광이 가능하다. 바닥에서 총 92cm의 높이까지는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다.

혼거실 출입문에는 시찰구과 배식구가 있다. 출입문 옆에 창문도 있어 복도에서 거실 내부가 보이도록 되어 있다.

장애인용 혼거실은 총 2실이 있는데, 휠체어 사용을 위하여 복도에서 거실로 올라가는 턱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거실 내부와 화장실에는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다. 화장실 입구에는 거실과 구분되는 문이 없었으며 휠체어 사용자의 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화장실 문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교도소 측의 설명이 있었다. 다만 화장실의 악취를 막을 대체적 형태의 문짝은 설치하지 않았다.

2) 목욕관련

청주여자교도소의 공동목욕실은 본관동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탈의실과 목욕실이 있다. 목욕실에는 30개의 수도꼭지 달린 샤워기가 있고 탈의실에는 30명을 위한 옷장이 있다. 수용자들은 5월에서 10월까지 하절기에는 매일 30분 동안 목욕을 할 수 있으며, 11월부터 4월까지의 주1회 30분간의 목욕이 허용된다.

세면도구로 칫솔과 치약, 비누, 수건 등이 지급된다. 수용자의 생활용품 지급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치약 | 치솔 | 세수 비누 | 세탁 비누 | 수건 | 화장지 | 위생대 | 런닝 | 팬티 | 양말 | 운동화 |
|------------|------------|------------|------------|------------|-------------|------------|------------|------------|------------|------------|
| 2월 (1회) | 2월 (1회) | 2월 (1회) | 3월 (1회) | 3월 (1회) | 15일 (1회) | 1월 (1회) | 3월 (1회) | 3월 (1회) | 3월 (1회) | 6월 (1회) |

본관동 2층 병사에 별도의 목욕실이 있고 내부에 5개의 샤워기 겸 수도꼭지가 있으며 탈의실에는 5인을 위한 옷장이 있다.

3) 세탁 시설

본관동 1층에 위치한 세탁실에서는 관급 물품들의 세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수용자 중 당번을 정해 월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2차례 가랑 세탁 및 건조기를 사용한다. 세탁기 및 건조기는 각각 1대씩이 구비되어 있고 용량은 50kg으로 관복 50벌 가랑을 세탁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한다. 그러나 개인 세탁은 세탁기를 사용할 수 없어 수용거실 화장실 수도꼭지를 사용하여 직접 세탁하거나 출력하는 곳에서 시간을 내서 세탁한다.

4) 의료

진료실 및 병사는 본관동 2층에 위치하여 있다. 진료실은 대기실을 거쳐 들어가면 보건의료과장의 진료실과 산부인과 진료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산과진료실이 나온다. 또한 엑스레이실과 치과진료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치과진료실이 있다.

상주하는 의료진으로 보건의료과장, 의무사무관, 공중보건의, 간호사가 각 1명씩 있고, 치과 진료의 경우 외부 병원에서 온 치과의사가 매주 1차례 진료를 한다.

청주여자교도소는 수용자의 외부 진료 시 의료협정을 맺고 있는 청주 효성병원에서 주로 진료를 받으나, 진료 사안이나 병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충북대병원, 청주병원, 하나병원, 성모병원 등도 이용한다는 것이 소측의 설명이다. 진료비는 자비부담 원칙이나 영치금이 없는 수용자들에 대해서는 관비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본관동 2층에는 병사가 위치하여 있는데, 독거실(1~2인실) 9개실과 혼거실(3~6인실) 10개실이 있으며, 미용실, 세탁실, 상담실, 5명이 사용 가능한 목욕실이 설치되어 있다. 병사의 수용거실은 일반 수용거실에 비하여 면적이 넓은 편으로, 예를 들면 일반 독거실의 경우 7.05㎡이나 병사 독거실의 경우 11.73㎡이다.

5) 여가활동

청주여자교도소에는 4,736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다. 철학에서부터 역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책을 보유하고 있는데 외국어서적은 러시아어 5권, 네덜란드어 13권이고, 나머지는 모두 한국어로 된 책이다. 그 밖에 수용자 개인이 외국어서적을 200여권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청주여자교도소 측의 설명이다. 이는 청주여자교도소가 외국인여성 수형자 전담소이기는 하지만, 수용자 대부분이 내국인이고 외국인 여성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해석되는데, 청주여자교도소가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여성 전용구금시설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용외국인의 출신국 언어를 고려하여 도서를 보유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도서의 이용도 수용자가 교도관에게 도서를 대여를 요청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UN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 제40조는 구금시설이 모든 범주의 피구금자

가 이용할 수 있는 오락적, 교육적인 도서를 충분히 비치한 도서실을 갖추어야 하며 피구금지자들이 이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주여자 교도소의 현행과 같은 도서의 보유와 이용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 수용자는 국내신문을 자비로 구독할 수 있다.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청주여자교도소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성직자의 방문을 허용하고 이들에 의한 종교집회를 지원하고 있다.

6) 중앙통제상황실

청주여자교도소는 20여개의 수용거실과 엘리베이터, 복도, 건물 외곽, 작업장 등에 감시카메라를 설치되어 있다. 수용거실에는 자살우려자 및 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만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 독거병사와 조사징벌실 등이다.

7) 작업장

청주여자교도소에는 총 6개의 작업장이 있으며, 제1공장은 1층에 나머지 공장은 본관동 5층에 있다. 제1공장은 도자기 무늬부착 공장, 제2공장, 제4공장은 자동차 부품 가공 공장, 제3, 5, 6공장은 봉제공장이다. 이중 제1공장과 5공장은 전일근로 공장으로 면회 등 개인사정이 있는 경우 근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하여야 하나 월급이 다른 공장에 비하여 높아 수용자들이 전일근로 공장을 선호한다는 교도소 측의 설명이 있었다. 현재, 일부 외국인 여성수용자들이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2. 설문 및 심층면접 조사 결과 분석

가. 조사대상자 관련 기초 사항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외국인 수용자는 중국인이 6명이다.¹²⁷⁾ 러시아인은 4명, 일본, 몽골이 각각 1명씩이다. 기타 국적은 네덜란드, 미국, 대만 등이다.

127) 청주여자교도소 측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수용외국인 중 중국 국적자는 모두 8명이다.

<표 1> 국 적

| 국가 | 빈도(명) | 백분율(%) |
|-----|-------|--------|
| 중국 | 6 | 35.3 |
| 일본 | 1 | 5.9 |
| 몽골 | 1 | 5.9 |
| 러시아 | 4 | 23.5 |
| 기타 | 5 | 29.4 |
| 합 계 | 17 | 100 |

청주여자교도소의 외국인수용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대가 4명, 40대가 2명이다.

<표 2> 연 령

| 나이 | 빈도(명) | 백분율(%) |
|--------|-------|--------|
| 20~29세 | 4 | 26.7 |
| 30~39세 | 8 | 53.3 |
| 40~49세 | 2 | 13.3 |
| 50세 이상 | 1 | 6.7 |
| 미응답 | 2 | 13.3 |
| 합 계 | 17 | 100 |

이들이 한국에 체류한 기간은 3년 미만인 경우가 8명이고 6년 이상인 경우가 9명이다.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3명이며, 2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는 2명이다. 또한 장기체류자라고 분류할 수 있는 6년 이상 7년 미만인 경우가 4명, 9년 이상의 체류자가 3명, 10년 이상 한국에 거주했던 경우는 1명이다.

<표 3> 체류기간

| 체류기간 | 빈도(명) | 백분율(%) |
|------------|-------|--------|
| 1년 미만 | 3 | 17.6 |
| 1년이상-2년미만 | 3 | 17.6 |
| 2년이상-3년미만 | 2 | 11.8 |
| 6년이상-7년미만 | 4 | 23.5 |
| 7년이상-8년미만 | 1 | 5.9 |
| 9년이상-10년미만 | 3 | 17.6 |
| 10년 이상 | 1 | 5.9 |
| 합계 | 17 | 100 |

청주여자교도소의 외국인수용자의 종교는 개신교가 9명으로 52.9%에 달하고 다음으로는 불교 4명, 가톨릭 3명이다.

<표 4> 종 교

| 종 교 | 빈도(명) | 백분율(%) |
|-------|-------|--------|
| 종교 없음 | 1 | 5.9 |
| 개신교 | 9 | 52.9 |
| 가톨릭 | 3 | 17.6 |
| 불 교 | 4 | 23.5 |
| 합 계 | 17 | 100.0 |

조사대상자가 청주여자교도소에 수용되기 전에 가졌던 직업을 보면, 4명이 식당주방, 가정부, 파출부 등 서비스업이나 가내노동에 종사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3명이 유학생이었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 외 2명이 사업, 1명이 노동이다.

<표 5> 직 업

| 종 교 | 빈도(명) | 백분율(%) |
|---------------------------|-------|--------|
| 노동(공장, 건설, 수산업, 농·축산) | 1 | 6.3 |
| 서비스업(식당주방, 가정부, 파출부, 간병인) | 4 | 25.0 |
| 유학생 | 3 | 18.8 |
| 사업 | 2 | 12.5 |
| 기타 | 6 | 37.5 |
| 합 계 | 17 | 100.0 |

조사대상자 중에서 모두 7명이 한국에 체류가족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중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응답자는 2명이며, 성인자녀는 1명, 부모와 형제자매는 각각 3명과 1명이다. 한국에 체류가족이 아무도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8명인데, 구금시설의 수용자는 보호시설보다 대체로 장기간 수용되기 때문에 한국에 체류가족이 없다는 것은 면회자나 수용생활을 지원해줄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의미이므로 수용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교도소 내에서는 전화통화가 제한되기 때문에 면회할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이 거의 없는 외국인수용자로서는 내국인 수용자에 비해 외부와 단절되어 고립된 상태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한 수용자는 ‘교도소에 들어온 후 누구로부터 면회를 한 적은 없다. 단지 집에 전화를 할 수 있을 뿐인데 이것도 명절에나 한번 가능하다’(#10-2)¹²⁸⁾며 외부와의 소통이 제한되어 답답한 심경을 호소하였다.

<표 6>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

| 가 족 | 빈도(명) | 백분율(%) |
|--------|-------|--------|
| 미성년 자녀 | 2 | 12.5 |
| 성년 자녀 | 1 | 6.3 |

128) 청주여자교도소의 외국인수용자는 17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심층면접 결과를 인용할 때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적과 연령 등을 밝히지 않았다.

| 가 족 | 빈도(명) | 백분율(%) |
|--------|-------|--------|
| 형제자매 | 1 | 6.3 |
| 부 또는 모 | 3 | 18.8 |
| 없음 | 8 | 50.0 |
| 기타 | 1 | 6.3 |
| 무응답 | 1 | 6.3 |
| 합 계 | 17 | 100 |

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의 정도

수사기관의 심문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52.9%인 9명이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고 응답했다. 그중 6명은 통역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았다고 답변했으며, 3명은 통역인이 없어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고 응답했다. 한국말로 의사소통 가능했던 경우는 4명이며 통역인의 도움으로 의사소통 가능했던 경우는 1명에 불과하다.

<표 7> 심문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정도

| 의사소통정도 | 빈도(명) | 백분율(%) |
|-----------------------|-------|--------|
| 한국말로 의사소통 가능 | 4 | 23.5 |
| 통역인의 도움으로 의사소통 가능 | 1 | 5.9 |
| 통역인이 있었으나 의사소통에 문제 많음 | 6 | 35.3 |
| 통역인이 없어서 의사소통불가능 | 3 | 17.6 |
| 무응답 | 3 | 17.6 |
| 합 계 | 17 | 100 |

재판과정에서 통역인이 없어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1명이며, 통역인이 있었으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2.9%에 달한다. 수사과정보다 통역인의 배치는 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통역자가 피고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표 8 > 재판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정도

| 의사소통정도 | 빈도(명) | 백분율(%) |
|-----------------------|-------|--------|
| 한국말로 의사소통 가능 | 3 | 17.6 |
| 통역인의 도움으로 의사소통 가능 | 1 | 5.9 |
| 통역인이 있었으나 의사소통에 문제 많음 | 9 | 52.9 |
| 통역인이 없어서 의사소통불가능 | 1 | 5.9 |
| 무응답 | 3 | 17.6 |
| 합계 | 17 | 100 |

수사기관의 조사 혹은 심문과정과 재판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얼마만큼 원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이상인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답변하였다.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정도는 피의자가 방어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한 권리를 보호받고 있는 정도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응답자의 과반수이상인 수사·재판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것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피의사실에 대한 충분한 항변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공정한 수사와 재판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외국인 수용자의 과반수이상인 6년 이상 한국에 장기체류 해왔다고 응답했던 점에 비추어 이들이 한국어로 일상적 의사소통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수사·재판과정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된 상태이며 일상적이지 않은 용어와 표현이 사용될 경우 의사소통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에서 「형사소송법」 제180조는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통역자가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통역자가 있었음에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았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를 넘고 있어서 현재의 수사·재판 과정의 각 단계에서 제공되는 통역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를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교도소 내 처우문제

1) 교도소에서의 의사소통의 정도와 생활안내 고지

<표 9>에 의하면, 청주여자교도소 내에서 수용자들이 한국말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는 8명이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거나 불가능한 경우는 5명인데, 이 중 2명은 통역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에 문제를 느끼고 있으며 3명은 통역인이 없어서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교도관과의 의사소통 정도

| 의사소통정도 | 빈도(명) | 백분율(%) |
|-----------------------|-------|--------|
| 한국말로 의사소통 가능 | 8 | 47.1 |
| 통역인의 도움으로 의사소통 가능 | 1 | 5.9 |
| 통역인이 있었으나 의사소통에 문제 많음 | 2 | 11.8 |
| 통역인이 없어서 의사소통불가능 | 3 | 17.6 |
| 무응답 | 3 | 17.6 |
| 합 계 | 17 | 100 |

교도소 내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겪게 되는 의료문제를 비롯한 각종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기회가 반드시 제공되어야만 한다. 외국인수용자처우지침 제5조 제1항은 외국인수용자를 수용하는 교도소 등의 장은 외국어의 해독이 가능한 1명 이상의 교화직공무원 등을 교화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일상적인 개별면담, 고충해소, 종교관계자와의 접촉 주선, 통역, 번역, 영사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주여자교도소는 통역전담자는 없지만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일어를 통역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 이들 언어를 사용하는 수용자에 대한 통역과 상담이 가능한 상태이다. 이들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통역과 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수용자의 국적이 다양한 청주여자교도소와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수용국가별 외국어전담자를 두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교도소 측은 외국

인 수용자의 한국어 의사소통의 정도를 파악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외부의 통역자를 초빙하는 등의 방법으로라도 고충상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청주여자교도소의 전체 응답자 중 3명은 입소 시 생활안내는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며, 6명은 설명을 들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청주여자교도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생활안내문이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제작되어 각 거실 및 취업장에 배치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외국인 수용자의 교도소 생활안내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못하다.

<표 10> 수용생활 안내

| 생활안내를 받았는지 여부 | 빈도(명) | 백분율(%) |
|-------------------|-------|--------|
| 있다 | 3 | 17.6 |
| 없다 | 3 | 17.6 |
| 설명을 했지만 이해할 수 없었음 | 6 | 35.3 |
| 무응답 | 5 | 29.4 |
| 합 계 | 17 | 100 |

더욱이 교도소측으로부터 형기종료일을 안내받은 경우는 9명에 달하는데 비하여, 법무부 청원이나 인권위 진정 등 권리구제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4명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접견 및 서신에 관한 사항이나 규율, 징벌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명도 없다.

<표 11> 수용생활 안내내용

| 안내내용 | 빈도(명) | 백분율(%) |
|----------------|-------|--------|
| 형기종료일 | 9 | 52.9 |
| 접견 및 서신에 관한 사항 | 0 | 0 |
| 규율, 징벌에 관한 사항 | 0 | 0 |
| 청원에 관한 사항 | 1 | 5.9 |

| 안내내용 | 빈도(명) | 백분율(%) |
|---------------|-------|--------|
| 인권위 진정에 관한 사항 | 3 | 17.6 |
| 무응답 | 4 | 23.5 |
| 합계 | 17 | 100 |

수용생활 안내방식도 책자로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명, 교도소 벽에 붙은 안내문을 보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명, 구두로 설명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명이다.

<표 12> 수용생활 안내방식

| 안내방법 | 빈도(명) | 백분율(%) |
|---------------|-------|--------|
| 책자 | 2 | 11.8 |
| 교도소 벽에 붙은 안내문 | 5 | 29.4 |
| 구두 | 1 | 5.9 |
| 기타 | 4 | 23.5 |
| 무응답 | 5 | 29.4 |
| 합 계 | 17 | 100 |

「행형법」 제8조의 2는 소장이 신입자에게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지되어야 할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으로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접견 및 서신에 관한 사항, 규율·징벌 및 청원에 관한 사항, 기타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자체 제작한 수용생활 안내서를 각 사동 거실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수용생활에 대한 안내서는 외국인 수용자가 한국말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라고 해도 일상용어를 벗어난 경우 그 의미를 해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책자는 외국인 수용자에게 특히 필요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청주여자교도소에서는 수용생활을 함에 있어 반드시 수용자가 알아야 할 필수적 사항에 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거나 적어도 수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과 언어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어와 영어권 출신자가 아닌 경우 일상생활의 의사소통이 더욱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당국의 언어로 수용생활안내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청원권과 진정권 관련

외국인수용자가 교도소 안에서 교도관이나 한국인 관리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64.7%인 11명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고, 구타나 폭행, 성폭력, 성희롱, 소지품이나 돈을 빼앗긴 적이 있다는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을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명 있었다. 물론, 3명이 답변을 거부하고 2명이 기타의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변하여 조사결과만으로는 교도소 내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청주여자교도소는 청원이나 진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고 있으며 안내문을 교부하고 있으나 외국인수용자 중에서 법무부에 청원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명이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한명도 없다.

청원이나 진정제기가 저조한 이유는 청원이나 진정을 제기할만한 처우에 대한 불만과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수용자들이 진정이나 청원제기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조사대상자 중에서 청원이나 진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제기 후 오히려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라고 답변한 경우가 3명, ‘해보았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답변한 경우가 4명이었는데, 교도소 수용자들이 진정이나 청원으로 인해 교도소 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어떤 피해를 당해도 권리구제 절차에 호소하지 못하거나 진정이나 청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진정이나 청원절차와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응답자도 3명이나 되는

데, 이는 청원에 관한 사항 등 수용생활에 필요한 안내가 사전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과 관계가 깊은 문제이다. 이에 대해 한 수용자는 ‘심층 면접을 통해 ‘교도소 내에서 진정이나 청원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제기하는 것인지를)모른다’(#10-6)고 답변하였다.

<표 13> 진정이나 청원을 하지 않은 이유

| 이유 | 빈도(명) | 백분율(%) |
|------------------------|-------|--------|
| 진정 후 오히려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 3 | 17.6 |
| 해보았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서 | 4 | 23.5 |
| 진정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 3 | 17.6 |
|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 0 | 11.8 |
| 기타 | 2 | 29.4 |
| 무응답 | 5 | 0 |
| 합계 | 17 | 100 |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 제33조는 ‘구금되거나 억류된 자 또는 그 변호인은 그에 대한 처우에 관해 특히 고문이나 그 밖의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가 있었던 경우에는 구금시설의 관리를 책임진 당국이나 상위의 당국에 불복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고 규정하고 있다. 행형법 제6조도 ‘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구금시설의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이나 순회점검 공무원에 대하여 부당처우에 대하여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¹²⁹⁾

수용자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권도 법령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1항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

129)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구금시설 평가지침서 개발연구」, 395쪽, 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령 제6조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시설수용자를 최초로 보호·수용하는 때에는 시설수용자에게 인권침해사실을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하여야 하고 그 안내서를 시설수용자가 상시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용자에게 청원권이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한 안내가 입소 시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의료

청주여자교도소 내에서 외국인수용자는 1명을 제외하고 16명이 의사의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교도소 내 진료는 수용자가 원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외국인수용자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의사에게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고, 또 처방이나 진료결과를 설명받기도 어렵다는 진술을 토대로 볼 때, 진료의 질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주여자교도소 측은 외국인 수용자 진료 시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취업장 내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용자를 대동하여 증상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을 하였다.

질환에 대한 치료약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고 진통제만 투여받고 있다(#10-4)

배가 아파서 교도소 내 진료실에 갈 생각인데, 교도소 내 진료실에서도 통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서툰 한국말로 “배 아퍼”, “머리 아퍼”라고 하면 의사가 진통제를 처방해 주는 것이 전부여서 치료가 되지 않는다(#10-6)

외부병원에 진료요청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2명인데, 거절 사유가 수용자가 소지한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 받고 있지만 요청하면 검사가 가능하다. ... 돈이 없어서 외부 진료는 받고 있지 못하고 진통제만 받고 있을 뿐이다. 한 달에 한두 번 생리를 할 때마다 고통이 매우 심하다. 진통제만 복용하기 때문에 호전되는 것은 없다.(#10-1)

외국인수용자는 국내에 가족이 없거나 외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 부담으로 외부병원 진료를 받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통증과 증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용자에 대한 더욱 특별한 배려가 요구된다.

4) 운동과 종교활동

청주여자교도소 내에서 운동시간이 일주일에 2~3회 주어진다고 응답한 경우가 7명이며, 하루에 한번 주어진다고 응답한 경우가 6명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수용자는 ‘운동은 화요일, 수요일 30분씩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나머지 월요일, 목요일은 목욕날이어서 운동시간이 없다.’(#10-5)고 진술하였다.

<표 14> 운동시간

| 횟 수 | 빈도(명) | 백분율(%) |
|-----------|-------|--------|
| 하루에 한번 | 6 | 35.3 |
| 일주일에 1회 | 1 | 5.9 |
| 일주일에 2~3회 | 7 | 41.2 |
| 기타 | 3 | 17.6 |
| 합 계 | 17 | 100 |

이에 대해 청주여자교도소는 평일에는 매일 1회 30분씩 운동을 실시하고 금요일은 집회관계로 운동시간이 단축되며, 격주 토요일에는 20분씩 운동 실시한다고 답변하고 있다.¹³⁰⁾ 즉 적어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운동을 하고 토요일만 격주로 운동이 실시된다는 것인데, 실제로 외국인여성 수용자들의 상당수는 운동시간이 일주일에 2~3회 정도만 주어지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실외운동은 모든 피구금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 제21조 제1항은 운동과 관련하여 ‘실외작업을 하

130) 청주여자교도소는 직원근무 제도가 변경되면서 2007. 8. 27.부터 매주 토요일에 30분씩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 아니하는 모든 피구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³¹⁾ 따라서 실외운동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은 종교행위와 관련하여 제6조 제2항에서 '피구금자가 속하는 집단의 종교적 신조 및 도덕률을 존중'할 것과 제41조에서 '종교의 대표자가 구금시설 내에서 정기적인 의례를 행하도록 허가'되어야 할 것, 제42조에서 '구금자가 시설 내에서 거행되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의 외국인수용자처우지침 제10조도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의 종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도소 등의 안전 및 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성직자와의 접촉주선, 거실 내에서의 예배나 종교행사 참석, 염주 등 종교적 용도에 사용할 성구나 종교서적의 소지 등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주여자교도소 내 외국인수용자의 종교는 대부분 기독교, 천주교, 불교여서 성직자와의 접촉이나 종교활동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짐작되고 종교활동 횟수도 일주일에 1회 주어지는 것으로 전체 조사대상자가 응답하고 있는 등 종교생활에 대한 불만은 특별히 제기되지 않았다.

5) 식사

교도소 내 식단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2.9%이다. 이는 만족스럽다고 답변한 경우(3명)와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4명)를 합친 것보다 높은 비율로, 교도소 내 식단에 대한 불만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131) 「국제인권원칙과 한국의 행형」 116쪽, 서울지방변호사회, 역사비평사, 1993

<표 15> 식단상태

| | 빈도(명) | 백분율(%) |
|----------|-------|--------|
| 만족스럽다 | 3 | 17.6 |
| 그저 그렇다 | 4 | 23.5 |
| 만족스럽지 않다 | 9 | 52.9 |
| 기타 | 1 | 5.9 |
| 합계 | 17 | 100 |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로 3명이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그 외 2명이 음식 맛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고, 1명은 음식물의 상태가 깨끗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 외 심층면접을 통해 지적된 것은 식단에 변화가 없는데, 영치금이 없는 수용자의 경우 간식이나 대체식품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단조로운 메뉴로 인한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저녁보리밥 6개월 동안 똑같다. 외국사람은 돈까스, 너겟, 단무지가 전부이다. 계란 프라이가 있으면, 감자가 없다. 당근 2조각... 식사를 좋게 해 주세요 하면, 더 나쁘게 나온다. 영치금이 없어서 다른 것을 사 먹지 못한다.(#10-4)

청주여자교도소가 외국인용 식단을 제공하고 있지만 수용자들은 외국인용 식단은 서구 국적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 같은 아시아권이라고 해도 매운 음식이나 한국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 잘 배려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교도소 내 한국 식단은 너무 매워서 먹을 수가 없다. 매운 것 먹으면 다 붉게 몸이 일어난다. 약을 먹으면 낫지만 약을 먹지 않으면 다시 붉게 일어난다. 청주여자교도소에서는 외국인용 메뉴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데, 러시아, 미국인은 외국인용 메뉴를 신청할 수 있지만 중국 등 아시아 사람은 신청을 못하게 한다. 나도 매운 한국음식이 아니라 외국인용 메뉴를 신청할 수 있으면 좋겠다.(#10-6)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식사를 들 수 있는데 나는 빵을 주식으로 하며 살아왔다. 한국 식 식사는 내게 너무 적응하기 힘들다. 나는 양식으로 빵과 면류 그리고 우유 과일 커피 등을 먹고 싶다.(#10-2)

청주여자교도소는 매월 수용자의 기호도를 조사하여 급식단가, 조리여건, 조리능력 등을 고려한 식단을 구성하여 외국인 식사를 공급하고 있으며, 쌀을 주식으로 하는 외국인 수용자는 급양관기지침에 의거 내국인 식사를 공급하고 있고, 양식과 한식의 선택은 신청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여자교도소가 제시한 외국인용 식단을 보면, 아침과 저녁은 빵과 돈까스 등 서구적 음식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식단의 변화가 거의 없는 편이고 점심식사는 한국식 식단으로 짜여져 있어서 외국인의 음식문화에 적절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외국인수용자처우지침 제9조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의 출신자에게는 쌀이나 보리류를, 그 밖의 외국인에게는 빵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도 빵과 양식으로 구성된 외국인용 식단은 비 아시아권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시아권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별로 음식문화가 달라 한국음식이 먹기 힘들 수 있으므로 수용자의 개별적 특성을 존중하여 식단을 구성하고 식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6) 수용형태

청주여자교도소의 외국인 수용자 중 독거실 생활을 한다고 답변한 경우는 4명이며, 2명이 혼거한다고 답변한 경우는 6명이다. 5명 이상 함께 혼거하는 경우는 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1.2%이다.

<표 16> 수용형태

| 형 태 | 빈도(명) | 백분율(%) |
|--------------|-------|--------|
| 혼자 지낸다 | 4 | 23.5 |
| 2명이 지낸다 | 6 | 35.3 |
| 5명 이상 함께 지낸다 | 7 | 41.2 |
| 합계 | 17 | 100 |

행형법 제11조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혼

거수용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수용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최소한 전체 수용인원의 30~40%의 인원이 독거수용 되는 것이 보통의 지표로 제시되고 있다.¹³²⁾ 「외국인수용자처우지침」 제6조 또한 외국인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되 수용거실 부족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혼거수용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혼거수용의 경우라고 해도 종교나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은 상호 분리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말이 통하지 않거나 문화가 다른 외국인들을 혼거시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주여자교도소에서 혼거생활을 하는 많은 외국인수용자가 문화가 다른 외국인과의 대규모 혼거수용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독거실에 있고 싶다고 면담을 한 적이 있다. 한방에 6~7명이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들으면 머리가 아프다.(#10-4)

나는 현재 6인이 있는 거실에 있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서 불편하다. 교도소 도서관에서는 우리나라 말로 된 책이 없어서, 하루 종일 거실에 있어 무료하다.(#10-6)

내가 있는 거실은 한방에 6~8명이 있는데 겨울엔 괜찮지만 여름이 되니까 한 방에 하나씩 있는 세면장 겸 화장실에서 다 샤워를 해야 해서, 시간도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은 2~3인용 방이 있는데 조선족은 한국말을 잘한다는 이유로 외국인 수형자 방이 신청이 안 된다고 한다.(#10-5)

교도소의 생활이 너무 힘들다. 한방에 7~8명이 생활하는데 의사소통이 아무하고도 안 된다.(#10-1)

좁은 공간에서 밀착되어 지낼 수밖에 없는 수용자에게 있어 어떤 형태의 거실에 수용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살아온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외국인 수용자의 경우 6~7명이 혼거하는 형태는 수용생활의 어려움을 배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수용자의 거실배치에 대해 최대한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132)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구금시설 평가지침서 개발연구」, 23쪽, 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7) 접견권

청주여자교도소의 외국인수용자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전화통화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면회 시에 한국어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먼저 전화통화와 관련하여 보면, 외국인수용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아 면회보다는 전화통화가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외부교통 수단이다.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의 외국인 전화사용 규정은 내국인의 기준과 동일한데, 수용자의 누진계급별로 1급은 매주 1회, 2급은 월 3회를 사용할 수 있고 3·4급은 원칙적으로 전화를 할 수가 없으나 필요시 보고전에 의해 전화통화를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추석 등 명절 시에는 연2회 무료 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행형법」 제18조의 3 제1항은 ‘소장은 수용목적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51조와 수용자전화사용지침 제7조는 제1급의 수형자는 월 5회, 제2급은 월 3회의 범위에서 허가하며 미결수용자의 경우 월 5회의 범위에서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제3급과 제4급에 대한 규정은 없다.

청주여자교도소의 외국인 전화사용 규정 또한 이런 규정에 맞추어 정해진 것이지만, 수용자가 외국인일 경우 접견이나 서신의 방법으로 외부교통을 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3급과 4급의 수용자에게도 통화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해야 할 것이다.

교도소 내 가장 불편한 사항은 전화통화가 금지되는 것이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곳에서는 말도 통하지 않고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고 싶다. 내 부모님은 글을 모르셔서 편지를 못 읽는데 전화도 하지 못해서 너무 답답하다. 구치소에 있다가 교도소로 갑자기 와서 집에 연락을 하지 못하였다. 접견 오는 사람도 없고 가족들도 외국에서 걱정하고 있을 텐데 전화를 못하게 해서 답답하다.(#10-6)

교도소에 들어온 후 누구로부터 면회를 한 적은 없다. 단지 집에 전화를 할 수 있을 뿐인데 이것도 명절에나 1번 가능하다. 지난번 어린이날이라 하여 집에 계신 어머니와 통화를 했는데 많이 아프시다고 했다. 다른 가족도 없이 혼자 계신데 너무 걱정이 된다...더욱이 전화마저 자유롭게 할 수 없어 너무 답답하다. (#10-2)

청주여자교도소는 수용자 면회 시에 반드시 한국말로만 대화하도록 하고 있다. 수용자가 한국말을 잘 할 수 없는 경우 면회를 통해 상대방과 대화할 수 없고, 설사 수용자가 한국말을 잘 한다고 해도 면회를 온 상대방이 한국말이 서툴거나 하지 못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자국어를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우리나라 말로 대화를 하고 싶다. 면회 때도 한국말로 하라고 한다.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한국말을 하라고 하는가? 외국어를 계속 하면 마이크를 꺼버린다. (#10-4)

수용자는 적절한 방식으로 외부의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접견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수용자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최저기준규칙 제37조는 피구금자가 필요한 감독 하에 일정기간마다 가족 또는 신뢰할 만한 친구와의 통신 및 접견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¹³³⁾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수용자의 접견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외국인에게 한국어로 면회하는 것만을 허용하고 외국인이나 접견 상대방이 한국어로 의사소통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면 접견권 보장은 형식적이 되고 만다. 「행형법시행령」 제60조는 수용자를 접견하는 때에는 외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장이 특히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위에서 제시한 수용자의 사례처럼 외국인은 접견 시 한국어 사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매번 접견시마다 소장의 특별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현재 청주여자교도소는 청주접견실 근무자의 재량에 따라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형편인데,

133)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구금시설 평가지침서 개발연구」, 215쪽, 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현행 「행형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면회 시 외국어사용자에 대한 자의적 제한은 수용자의 접견권을 제한할 우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사용 능력에 상관없이 자국어로 면회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기도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만 통역자 등을 대동하고 면회할 수 있도록 「행형법시행령」 제60조가 개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8) 생리대 지급

여성에게 있어서 생리대는 매달 필요한 필수품이다. 생리대는 1인당 월10개를 관에서 지급하는데 외국인 수용자 중 생리대가 부족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호소를 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돈이 없는 수용자는 생리대를 추가로 구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생리대의 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개인에 따라 생리혈의 양이 다를 수 있어 필요한 생리대의 양도 다를 수 있으므로 관급으로 필요한 만큼 충분히 제공되어야만 한다.

교도소에서 의복 등은 다른 사람들 것을 얻어 입기도 한다. 돈이 없어서 많이 힘들다. 특히, 생리할 때가 가장 힘들다. 나는 ... 생리량이 많아 교도소에서 주는 분량으로는 매우 부족한데 돈이 없어 생리대를 사서 쓸 수가 없다. 그럴 때 옷에 생리가 묻는 때도 있었는데 함께 기거하는 동료들로부터 매우 불결하게 취급되었고 한 친구는 나를 화장실로 떠밀기도 했다.(#10-1)

같은 방의 동료들한테 2번 당했는데, 생리할 때 생리가 바지에 생리가 묻으면 화장실로 밀며 닦으라고 하고, 빨래하려고 바지를 벗어 놓으면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수치스럽고 내가 몸에 병이 있어 더욱 조절이 안 된다고 설명해주고 싶지만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는다. 교도소에서 10개의 생리대를 주지만 너무 부족한데 돈도 없어 개인적으로 더 사서 쓸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이런 사실을 관리자에게 말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특히 한국말을 못하니 설명이 너무 어렵다(#10-1)

3. 전체 평가

청주여자교도소에 대한 조사는 외국인 여성 수용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통역서비스 제

공과 만족도, 교도소 내에서의 의사소통의 정도와 입소 시 생활안내 여부, 법무부 청원 및 인권위 진정 제기 정도, 수용거실 형태 및 운동, 종교, 의료, 식단 등 일상생활에서의 처우를 조사하였다.

청주여자교도소 외국인수용자의 수용생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만족스럽거나 지낼만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3%이다. 다소 고통스럽다는 응답자는 5명으로 29.4%이며, 매우 고통스럽다는 응답자도 3명으로 17.6%이다.

<표 17> 생활에 대한 만족도

| 횟 수 | 빈 도 | 비 율 |
|----------|-----|------|
| 만족스럽다 | 2 | 11.8 |
| 지낼만하다 | 7 | 41.2 |
| 다소 고통스럽다 | 5 | 29.4 |
| 매우 고통스럽다 | 3 | 17.6 |
| 합계 | 17 | 100 |

청주여자교도소는 통역가능한 직원을 통한 수용자 상담을 실시하는 등 외국인여성 수형자 전담 교도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거실 및 주변 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그러나 한편, 방문조사 결과 청주여자교도소가 외국인 여성 수형자 전담교도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및 운영상의 개선과 보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시설문제

수용형태는 기본적으로 독거수용이 원칙이지만 청주여자교도소의 76.5%가 혼거수용을 하고 있다. 청주여자교도소에서 혼거생활을 하는 많은 외국인수용자가 문화가 다른 외국인과의 대규모 혼거수용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외국인 수용자의 거실배치에 대해 최대한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나. 처우문제

교도소 내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거나 불가능한 경우는 전체응답자의 29.4%인 5명이다. 청주여자교도소는 교도소 내에서 외국인수용자가 원만한 생활을 영위하고 각종 고충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수용자에게 정기적으로 원활한 통역자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청주여자교도소의 전체 응답자 중 3명은 입소 시 생활안내를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며, 6명은 설명을 들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답변하고 있다. 따라서 청주여자교도소는 법무부 청원이나 인권위 진정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접견 및 서신에 관한 사항이나 규율, 징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도소 생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입소 시 외국인수용자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충실하게 고지되도록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외국인수용자의 진정권과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외국인수용자는 국내에 가족이 없거나 외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 부담으로 외부병원 진료를 받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통증과 증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요구된다.

청주여자교도소가 외국인용 식단을 제공하고 있지만 수용자들은 외국인용 식단은 서구 국적의 사람들에게만 제공되어 같은 아시아권이라고 해도 매운 음식이나 한국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려가 없다. 따라서 수용자의 개별적 특성을 존중하여 식단을 구성하고 식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없거나 면회자 없는 외국인 수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에 관계없이 외부교통권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청주여자교도소 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수용한 교도소에서 전체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접견 시 외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행형법시행령」 제60조를 개정하여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사용 능력에 상관없이 자국어로 면회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기도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만 통역자 등을 대동하고 면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생리대의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지급 기준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IV. 시정이 필요한 사항

청주여자교도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의 시정이 필요하다.

1. 언어소통과 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용외국인의 거실배치
2. 외국인수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의 인권위 진정이나 법무부 청원 등 권리구제 절차를 포함한 생활안내, 외국인 수용자들의 청원권과 진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언어지원과 지속적인 안내 실시
3. 본인 부담으로 외부병원 진료를 받기 어려운 수용자의 의료권 보장
4. 아시아권 출신의 수용자에게도 개별 국가의 식생활 특성을 존중하여 식단 공급
5. 외국인 수용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정기적인 전화통화 허용, 접견 시 자국어로 면회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기도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만 통역자 등을 대동한 면회허용

Ⅲ. 참고 자료

■ 목 차 ■

| | |
|----------------|-----|
| 1. 관련 규정 | 325 |
| 2. 해외사례 | 332 |

외국인 보호에 관한 법령검토

1. 현행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령(개정안 내용 보완)
- 외국인보호규칙(개정)
- 외국인보호규칙시행세칙
- 보호외국인의의류및침구의제식에관한규칙
- 행정법과 비교

2. 국제기준

- UN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모든 형태의 억류, 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UN 피구금자 보호 원칙으로 약칭)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6조, 제37조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3. 출입국관리법령 중 보호관련 규정

가. 보호의 종류

| | | | | |
|----|---|----------------|---|--------|
| 단속 | 보호 (위반조사)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1항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제55조 제1항) | 강제퇴거결정 이의신청 | 보호 (퇴거집행)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보호일시해제 등 | 강제퇴거집행 |
|----|---|----------------|---|--------|

1) 조사를 위한 보호의 적법성 여부¹³⁴⁾

- 보호명령에 의한 보호(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1항, 제2항)¹³⁵⁾¹³⁶⁾
 - 실제적 요건
 - ▶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
 - ▶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
 - 절차적 요건
 - ▶ 보호의 사유를 기재한 보호명령서발부신청서에 조사자료 첨부, 제출하여 보호명령서의 발부 신청

134) 2005년 인권위 실태조사 p.38이하 참조

135) 출입국관리법 제51조 (보호)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 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명령서의 발부를 신청할 때에는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6) 동법 시행령 제63조 (보호명령서)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명령서의 발부를 신청할 때에는 보호의 사유를 기재한 보호명령서발부신청서에 조사자료등을 첨부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보호명령결정을 한 때에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기간등을 기재한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이를 용의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이 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기간 등이 기재된 보호명령서를 발부
-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보호명령서를 대상외국인에게 내보여줄 것

2) 긴급보호(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 제4항)¹³⁷⁾

- 실체적 요건
 - ▶ 강제되거나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
 - ▶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
 - ▶ 긴급을 요하여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염려가 없는 때
- 절차적 요건
 - ▶ 대상외국인에게 이러한 취지를 알릴 것
 - ▶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기간 등을 기재한 긴급보호서 발부
 - ▶ 긴급보호서를 대상외국인에게 내보여 줄 것
 - ▶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대상외국인에게 내보여 줄 것

나. 보호기간

- 원칙적으로 10일¹³⁸⁾

137) 출입국관리법 제51조 (보호)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명의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하며, 이를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4조 (보호의 의뢰 등)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의자를 긴급보호하고자 하는 때에는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시간등을 기재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이를 용의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2.4.18>

138) 출입국관리법 제52조 (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①보호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 강제퇴거집행을 위한 보호의 경우 보호기간 제한이 없음¹³⁹⁾

다. 피보호인의 권리 고지¹⁴⁰⁾

1) 절차상의 권리고지

- 보호명령서 집행,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95호 서식’ 보호명령서 서식

2) 보호시설 보호 시 권리고지 근거

- 외국인보호규칙 제8조¹⁴¹⁾
- UN피구금자 보호원칙 원칙 13과 14,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16조 제5항
- 행형법 제8조의 2(고지사항)¹⁴²⁾
- UN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 제35조

수 있다.

②보호할 수 있는 장소는 외국인보호실·외국인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139) 출입국 관리법 제63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때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를 외국인보호실·외국인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호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가 다른 국가로부터 입국이 거부되는 등의 사유로 송환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그의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140) 2005 인권위 실태조사 p.102 참조

141) 외국인보호규칙제8조 (생활규칙 등 알리기) ①소장은 보호시설의 생활규칙 및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사항은 한국어·영어·중국어(이하 “영어등”이라 한다)로 작성하여 보호외국인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어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보호외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한 방법으로 게시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142) 2005 인권위 실태조사 p.41 참조

라. 보호사실의 통보

- 출입국관리법 제54조 (단서 조항)¹⁴³⁾, 제55조¹⁴⁴⁾
- UN 피구금자 보호원칙 원칙 16조 제1항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 ① (b)

마. 영사기관의 보호를 위한 통보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6조 제1항,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16조 제7항

바. 현행 출입국관리법 보호외국인 처우관련 조항

- 제56조의3 (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피보호자의 차별은 금지된다.
- 제56조의4 (강제력의 행사)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고자 하는 때
 3. 도주하거나 도주하고자 하는 때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

143) 제54조 (보호의 통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용의자를 보호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그의 법정 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변호인(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 또는 용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3일이내에 보호의 일시·장소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등이 없거나 용의자가 통지받을 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144) 제55조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①보호명령서에 의하여 보호된 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등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관계서류를 심사하여 그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보호된 자의 보호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앞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거나 방해하는 때

5. 그 밖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력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피보호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경찰봉·가스분사용총·전자충격기 그 밖의 보안장구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피보호자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경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계구(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수갑
 2. 포승
 3. 안면보호구
 4. 그 밖에 보호외국인의 계호(계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구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것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구의 사용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56조의5 (신체 등의 검사)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보호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피보호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여성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없는 때에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지명하는 여성이 할 수 있다.
- 제56조의6 (면회 등) ①피보호자가 다른 사람과 면회·서신왕래·전화통화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피보호자의 안전·건강·위생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회·서신왕래·전화통화의 허가절차 및 그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56조의7 (안전대책)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긴급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감시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감시장비는 피보호자의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 제57조 (피보호자의 처우) 외국인보호실 및 외국인보호소의 설비, 보호되어 있는 자의 처우·급양·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해외 사례

I. 영국

1. 개관

영국은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외국인에 대한 구금은 국가의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행하였으며¹⁴⁵⁾, 특히 가족의 경우는 퇴거 (Removal)되기 직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온건한 방식의 정책을 채택하였다.

2000년과 2002년 사이에 영국은 약 30만 건의 난민 신청을 받아 3년 연속 선진국 중 가장 많은 수의 난민 신청을 받은 국가이며, 2002년에는 세계 전체 난민 신청자 중 영국 신청자가 19%(110,700)로, 영국 역사상으로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였다. 현재는 프랑스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 인정이 기각된 자 혹은 미등록 이주자의 영국 거주가 증가함에 따라 대중의 불만은 고조되었고 영국 내 인종 간 갈등이 야기되어 영국은 이민 정책을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2002년 정부는 정부백서 “안전한 국경과 안전한 피난처 : 다양성의 통합 (Secure Border, Safe Haven : Integration with Diversity families may be detained 'for longer periods than immediately prior to removal)’”을 발표하면서 난민 신청자의 숫자를 줄이고 그 심사 절차의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내놓았다. 뒤이어 2002년 11월, 「국적난민이민법(Nationality, Asylum and Immigration

145) 1998년 정부 백서(White Paper) “이민과 난민에 대한 공평, 신속, 강력한 근대적 접근(Fairer, Faster, and Firmer- A Modern Approach to Immigration and Asylum)”

Act)」이 도입되면서 법 조항에 장기 거주를 막기 위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국가 출신의 난민 신청자와 명백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 이들에 대한 난민 심사의 속성 절차(fast track) 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퇴거 센터 설립, 난민 인정이 기각된 자의 상소 권한의 축소, 기각된 신청자 추방을 신속하게 하는 조항들을 신설하고 국경 통제 강화, 적법한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입국하는 이에 대한 벌금 강화 등의 일련의 정책을 도입하였다.

난민과 불법 체류 이주민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관한 정부 정책은 구금제도를 이용하는 빈도의 증가로 이어지기 시작하였다. 영국정부는 캠브리지셔어의 오킹턴 리셉션 센터(Oakington Reception Centre), 하몬드워스 퇴거 센터(Harmondsworth Removal Centre) 등을 설립하고 구금 후 난민심사를 진행하여 난민 인정 기각자의 퇴거(Removal)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1996년에는 난민인정 기각자의 약 20%정도만이 퇴거 되었으나 2004년에는 50%에 가까운 난민 인정 기각자들이 퇴거되었다.

2. 법적 체계

가. 난민 관련 법적 체계

영국은 1905년에 「외국인법(Aliens Act)」을 제정하여 이주자의 입국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¹⁴⁶⁾ 이후 동법은 아래와 같은 개정을 거쳐 내용을 보강해 나가고 있다.

1) 「1987년 이민법(Immigration Act 1987)」

1987년 동법을 통하여 합법적인 여행 서류 또는 비자 없이 입국한 승객에 대한 책임을 운송회사에 묻기 시작하였다.¹⁴⁷⁾

2) 「1993년 난민이민법(Asylum and Immigration Act 1993)」

동법은 1951년의 UN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의거한 난민의 정의를 도입하면서 난민 신청자들과 난민 가족의 지문 확인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난민의 거주 권한을 현저히 줄였다.¹⁴⁸⁾

146) (2004) 주요국가 이민정책 비교연구, 법무부

147) (2004) 주요국가 이민정책 비교연구, 법무부

3) 「1996년 난민이민법(Asylum and Immigration Act 1996)」

영국 내에 있는 난민들의 기초 생활 보조금의 권리를 박탈하였다. 또한 이민법 위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였으며 난민신청자가 귀국해도 안전하다고 고려되는 국가 목록을 작성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¹⁴⁹⁾

4) 「2002년 국적난민이민법(Nationality, Immigration and Asylum Act 2002)」

2002년 이민법은 난민신청을 기각 당하였을 때에 퇴거를 촉진하고 난민신청과정의 합리화 등을 도모하였다. 또한 불법행위와 인신매매 밀입국 등의 조직 범죄를 차단함으로써 불법이주를 방지하고 노동이민제도(Labour Migration System)라는 이주 장려 정책도 도입되었다. 노동이민제도는 노동 시장의 요구에 맞추어 기술을 가진 인력은 물론 그렇지 못한 노동자까지 유인하도록 개정되었다.¹⁵⁰⁾

5) 「2006년 국적난민이민법(Nationality, Immigration and Asylum Act 2006)」

2006년 이민법은 오래된 법률을 개선하고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유학생이 입국을 거절당했을 시에 항소를 할 수 없게 하였으며 경찰에게 항구나 공항에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또한 1981년 「영국 국적법(British Nationality Act)」을 개선해 시민권 신청을 기각하는 이유의 하나로 '공공의 위험이나 적'이라는 항목을 삽입하였다.¹⁵¹⁾

나. 난민신청 과정

난민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진행 과정 동안 입국을 허락하는데 이 때에는 리셉션센터에서 생활하거나 혹은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으며¹⁵²⁾, 난민지원서비스(National Asylum Support Service) 또는 지방 정부에서 제공한 집에서 살 수도 있다.

148) (2004) 주요국가 이민정책 비교연구, 법무부

149) (2004) 주요국가 이민정책 비교연구, 법무부

150) (2004) 주요국가 이민정책 비교연구, 법무부

151) [http : //www.migrationwatchuk.org/Briefingpapers/legal/Immigration_asylum_and_nationality_act.asp](http://www.migrationwatchuk.org/Briefingpapers/legal/Immigration_asylum_and_nationality_act.asp)

152) 정부가 거주지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하고 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난민신청서가 기각 당하였다면 10일안에 항소를 신청하거나 자진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¹⁵³⁾ 항소는 모든 사항이 충분히 숙고되지 않았을 때에나 이전 결정이 인권 침해적 이라고 생각될 때 사용 가능하다.¹⁵⁴⁾

항소에도 난민 신청자가 난민 신분을 받지 못하였다면 자신의 본국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영국을 떠나야 한다. 만일 떠나는 것을 거부한다면 강제퇴거 시킬 수 있으며 출국할 때까지 강제퇴거센터(Removal Center)에 구금시킬 수 있다.¹⁵⁵⁾

다. 신(新)난민신청제도(The New Asylum Model, NAM)

2005년 2월, 신난민신청제도(NAM)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난민의 빠른 사회통합(사회 적응)과 난민인정 기각자의 신속한 출국을 촉진하기 위해서 신설되었다. 난민업무 담당자 간의 케이스 별 분담(Case Ownership) 등을 통해 대부분의 난민신청 케이스의 결과가 11일 만에 빠르게 결정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성인 난민 신청자의 경우 증거 확인서(Statement of Evidence Form) 과정을 없애 신속하게 난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라. 구금자 속성절차(Detained Fast Track)

구금자 속성절차의 특징은 난민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는 동안 난민 신청자는 구금되어 있다는 것이다. 구금자 속성절차는 오킹턴 리셉션 센터(Oakington Reception Centre), 하스몬스워스 강제퇴거센터(Harmondsworth Immigration Removal Centre), 알스우드 강제퇴거센터(Yarl's Wood Immigration Removal Centre)의 세 곳에서 실행되고 있다. 오킹턴 리셉션 센터(Oakington Reception Centre)는 이미 2000년부터 이러한 제도를 실행하고 있었다.

속성절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난민신청자의 경우, 난민 신청 후 이틀째 되는 날 인터뷰를 하고 3번째 날에 결과를 수령한다. 항소를 할 때까지 2일의

153) 난민신청과정 아무 때나 본인이 원한다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154) Understanding the Asylum Process, <http://www.bbc.co.uk/dna/actionnetwork/A2151686>, BBC

155) Understanding the Asylum Process, <http://www.bbc.co.uk/dna/actionnetwork/A2151686>, BBC

시간이 주어지고 항소 인터뷰는 9번째 날에 하게 된다. 난민 신청자는 항소가 끝날 때까지 구금된다. 정부는 “내무부 5개년 전략계획(Home Office Five Year Strategy)”¹⁵⁶⁾을 통해 난민 신청 케이스의 30%를 속성절차를 통해 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스몬드(Harmondsworth) 와 알스우드(Yarl's Wood) 강제퇴거센터의 경우, 수용되어 있던 난민 신청케이스 중 18%의 사람들이 속성절차를 밟도록 하였다 (2006년 1월 31일 자). 하스몬드 강제퇴거센터의 공식적인 통계자료에 의하면 이들 속성절차를 밟은 이들 중 99%가 기각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단지 1%만이 난민 인정을 받은 것에 비하여 급행절차에 해당되지 않았던 난민 신청자의 경우, 22%가 난민 신분을 인정받았다. 속성절차를 통해 난민 심사를 받은 이들은 대부분 항소하지만 난민신분을 얻을 확률은 적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90명의 항소 중 7명꼴로 정당성을 인정받았으며 2006년 1월과 2월에 있었던 항소 중 55%(72/132)가 아무런 대리인 없이 항소를 진행하였다.¹⁵⁷⁾

마. 법률지원

강제퇴거센터에 구금되어 있는 이들이 받는 법률지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이기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얻어야 하며 증거 중 구금자의 본국에서 받아야 하는 정보 등의 획득도 어려워 사건을 수임하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수용자의 대부분이 자신의 케이스의 진행과정을 잘 알지 못하며 이는 강제퇴거센터가 전화연결, 편지, 팩스 연결 등을 통제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법률지원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2005년 12월 구금법률조언(Detention Duty Advice)이라는 제도가 생겼다. 이는 수용자가 30분 동안 무료로 법률조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다만 일주일에 각 강제퇴거센터 당 20명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¹⁵⁸⁾

156) 한번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 2월 부터 시행되었다. 현재 10% 범죄율 감소를 목표로 잡고 있다.

157) [http : //www.theyworkforyou.com/wrans/?id=2006-03-27d.59705.h&s=section%3Awrans+speaker%3A10123](http://www.theyworkforyou.com/wrans/?id=2006-03-27d.59705.h&s=section%3Awrans+speaker%3A10123)

158) (2007) Detention of Asylum Seekers in the UK, Information Centre about Asylum and Refugees (ICAR)

바. 가석방

가석방은 대개 난민이민재판소(AIT)나 출입국 관련 정부가 담당한다. 난민이민재판소(AIT)는 구금에 따르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경우 가석방을 허락하고 있다. 범죄자의 경우 가석방에는 인터뷰가 필요하나 이주자의 경우 인터뷰가 필요 없다.¹⁵⁹⁾

3. 정부 기관

가. 내무부(Home Office)

내무부는 정부기관으로서 이주자의 사회적응, 국가안보, 국경수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¹⁶⁰⁾ 또한 내무부는 비자, 출입국, 자국민의 여권 등을 관리하고 있다. 요즘에 영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신분증(ID Card)¹⁶¹⁾도 내무부가 관리하는 분야 이다. 산하의 국경이민국(Border and Immigration Agency, BIA)가 비자와 출입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¹⁶²⁾

나. 국경이민국(Border and Immigration Agency, BIA)

국경이민국은 내무부 소속으로 영국의 국경수비 및 방문, 휴가, 비즈니스 등 여러 이유로 영국에 입국을 원하는 사람들을 관리 하며 적정 정책 법률 등의 수립에도 역할을 맡고 있다.¹⁶³⁾

159) 2002 Nationality, Immigration and Asylum Act

160) <http://www.homeoffice.gov.uk/about-us/purpose-and-aims/>

161) 전자 기기로 사람의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 테러리스트를 검거하는데 쓰여질 것이라 하지만 많은 인권 단체가 사람의 인체를 정보로 쓰는 것에 반대 하고 있고 이것에 막대한 예산이 쓰여질 것으로 생각 되 시민들도 많은 반대를 하고 있다.

162) <http://www.bia.homeoffice.gov.uk/>

163) <http://www.bia.homeoffice.gov.uk/> 과거 Immigration and National Directorate의 업무를 맡고 있다.

다. UK Visas

UK Visas 또한 내무부에 속한 기관 중 하나로 영국 외의 해외에서 영국 입국을 관리하고 있다.¹⁶⁴⁾ 입국심사관(Entry Clearance Officer)은 UK Visas에 속한 사원들이다. UK Visas는 2000 명이 넘는 사원들이 있고 180명 정도가 런던에서, 나머지는 전 세계 각국에서 일하고 있다. 국경 및 이민국이 영국 내에서 출입국을 관리 한다면 UK Visas는 영국 외부에 중점을 두고 영국의 출입 등을 관리하고 있다.

라. 난민이민재판소(Asylum and Immigration Tribunal)

이 기구는 출입국관련 결정을 포함하여 내무부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재검토 하여 결정 하는 곳으로 법무부 산하 기구이다. 이민과 난민 등에 관한 결정의 재검토를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특히 정치적 망명, 난민신청, 강제퇴거, 가족방문사유 입국 금지 등에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여 영국 전역에서 항소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¹⁶⁵⁾ UK Visas와 난민이민재판소는 정확한 정보와 안내를 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4. 강제퇴거센터

가. 강제퇴거센터 현황

| 강제퇴거센터명 | 소재지 | 운영주체 ¹⁶⁶⁾ | 수용자유형 | 수용인원 |
|------------|-----------------------|---------------------------------------|-------|------|
| Campsfield | Oxfordshire | Global Expertise in Outsourcing (GEO) | 남성 | 198 |
| Colnbrook | Near Heathrow Airport | Premier Detention Services | 남성 | 313 |
| Dover | Kent | The Prison Service | 남성 | 316 |

164) [http : //www.ukvisas.gov.uk/servlet/Front?pagename=OpenMarket/Xcelerate/ShowPage&c=Page&cid=1006_977150115](http://www.ukvisas.gov.uk/servlet/Front?pagename=OpenMarket/Xcelerate/ShowPage&c=Page&cid=1006_977150115)

165) (2007) Detention of Asylum Seekers in the UK, Information Centre about Asylum and Refugees (ICAR)

| 강제퇴거센터명 | 소재지 | 운영주체 ¹⁶⁶⁾ | 수용자유형 | 수용인원 |
|---------------|------------------------|-------------------------------|---------------|-------|
| Dungavel | Lanarkshire | Group Four Securicor | 남성, 여성, 가족 | 190 |
| Harmondsworth | Nr Heathrow Airport | Kalyx | 남성 | 501 |
| Haslar | Hampshire | The Prison Service | 남성 | 160 |
| Lindholme | South Yorkshire | The Prison Service | 남성 | 112 |
| Oakington | Cambridgeshire | Global Solutions Ltd (GSL) | 남성 | 352 |
| Tinsley House | Nr Gatwick Airport | GSL | 남성, 여성, 가족 | 137 |
| Yarl's Wood | Bedfordshire | GSL | 남성, 여성, 가족 | 405 |
| 총 수용인원 | | | | 2,684 |

나. 강제퇴거센터 운영주체

「2002년 국적이민난민법」 이후 구금센터(Detention Centre)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강제퇴거센터(Immigration Removal Centre, IRC)로 개칭되었다. 이러한 강제퇴거센터 10개 중 7개가 개인 업체에게 맡겨져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모든 강제퇴거센터의 운영을 민간영역에 넘기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사기업의 책임 회피 가능성, 여론 비판에 대한 무감각 및 구금관련 규칙 미준수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¹⁶⁷⁾

모든 운영자들은 구금규칙(Detention Centre Rules)을 따라야 한다.¹⁶⁸⁾ 「1999년 이민난민법」에 의하면 정부는 강제퇴거센터 운영을 사기업에게 맡길 수 있지만 각 센터에 정부파견 관리자가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한다. 이 파견된 관리자

166) 영국에서는 각 개인의 NGO나 회사가 보호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보호소를 운영하는 일에 정부의 5년 계획의 한 부분으로 일하고 있다.

167) (2007) Detention of Asylum Seekers in the UK, Information Centre about Asylum and Refugee

168) [http : //www.ncadc.org.uk/about/capacity.html](http://www.ncadc.org.uk/about/capacity.html)

는 두가지 책임을 맡게 되는데 이는 정부에 강제퇴거센터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강제퇴거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조사 및 보고를 하는 것이다.¹⁶⁹⁾

각 강제퇴거센터는 관리 및 감시 기관인 독립감시이사회(Independent Monitoring Board)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시민단체 혹은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매주 퇴거센터를 방문하고 내무부에 보고서를 쓴다. 수용자들은 이들 방문 시민들에게 건의나 요구할 수 있다.¹⁷⁰⁾

5. 단 속

가. 단 속

시민단체인 ‘이주워치(Migration Watch)’¹⁷¹⁾의 앤드류 그린 경(Sir Andrew Green)은 대부분의 여론이 심지어는 합법적인 이주자까지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고 60%가 자신들의 문화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이주자에 대한 일반적인 피해 의식이 대중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정부 정책도 대중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이주정책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불법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은 이와 같은 고민에 핵심에 있으며 적절히 대처하지 않을 경우 이주 시스템이나 법률의 신뢰성이 저하되며 이런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더 나아가 노동자의 착취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¹⁷²⁾ 정부는 이러한 이주자의 체류자격 관리 및 단속이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노동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많은 수의 난민 신청자들은 신청서 제출 뒤에는 신분이나 신청사항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퇴거센터에 구금 할 필요가 없다

169) [http : //www.opsi.gov.uk/acts/acts1999/ukpga_19990033_en_13#pt8-pb2-11g153](http://www.opsi.gov.uk/acts/acts1999/ukpga_19990033_en_13#pt8-pb2-11g153)

170) (2007) Detention of Asylum Seekers in the UK, Information Centre about Asylum and Refugee

171) 영국이 유럽에서 2번째로 제일 인구당 면적이 좁은 나라로 (1번째는 홀란드) 너무 규모가 큰 이주민들은 영국에도 여러 영국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는 비 정부적인 기관이다.[http : //www.migrationwatchuk.org/whoware.asp](http://www.migrationwatchuk.org/whoware.asp)

172) (2006) Immigration Control, Fifth report of the Session 2005 2006, House of Commons, Home Affairs Committee

는 주장을 하고 있다.¹⁷³⁾

나. 단속 대상자

- 비자 신청을 하지 않은 자
- 가짜 서류로 ‘합법적’ 절차를 걸쳐 들어온 자
- 합법적으로 들어왔지만 비자 기간이 지난 후에도 거주를 한 경우
- 항소가 기각되었지만 계속 영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 합법적으로 들어왔지만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경우 (예를 들면 허가증 없이 직업을 얻거나 최소 생계 보조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¹⁷⁴⁾

다. 단속의 방법

단속의 권한은 출입국 관리 공무원과 경찰들에게 있으며 단속은 대부분 정부의 정보에 의존하여 행해진다. 특히 경찰은 운전면허소(Driver and Vehicle Licensing Agency), 국세청(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등에게서 정보를 얻는다. 경찰은 거짓 학생비자 소지자 및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주자도 검거할 수 있다.¹⁷⁵⁾

내무부 소속 항공협력직원(Airline Liaison Officers, ALOs)¹⁷⁶⁾은 영국으로의 비행기 탑승 전 알맞은 체류 비자, 여권 등을 검토하며 수행권한(Authority to Carry)¹⁷⁷⁾ 시스템에 의거하여 출입국을 원하는 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있으며 적합한 입국관련

173) IND Public Enquiries E mail, 15th August 200

174) (2006) Immigration Control, Fifth report of the Session 2005–2006, House of Commons, Home Affairs Committee

175) IND Public Enquiries E mail, 15th August 200

176) 내무부가 4백만 파운드를 들인 거액의 프로젝트로 향후 5년간 국경을 더욱 강력히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해 공항에서 비자, 여행 서류 등을 검토하게 하였다.
[http : //www.ind.homeoffice.gov.uk/6353/11464/irispressboarderstrengthened.pdf](http://www.ind.homeoffice.gov.uk/6353/11464/irispressboarderstrengthened.pdf)

177) 모든 영국 출입국을 원하는 사람들이 경찰과 보안의 데이터베이스에 검색되어 ‘안전한 사람’ 인지 아니면 ‘위험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스템이다.
[http : //www.statewatch.org/news/2003/nov/09ukpass.htm](http://www.statewatch.org/news/2003/nov/09ukpass.htm)

서류를 요구한다. 이와 같은 영국 입국 전 부적합한 입국 신청자를 입국 거부하는 제도는 서류 없이 영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의 수를 현저히 줄였다.

2004년 56,920명이 영국에서 강제출국 또는 자진출국 되었으며 이 중 34,955명이 영국 입국장소(공항이나 항구)에서 강제퇴거 당하였다.¹⁷⁸⁾

6. 강제퇴거센터 시설 및 처우

가. 시설

1) 음식

구금 세부 규칙(Detention Centre Rules)은 정상적인 음식과 보통 사람이 먹는 음식의 양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강을 고려한 영양이 충분히 있는 식단이여야 하며 또한 종교, 문화, 의료 이유 등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메뉴를 제공하여야 한다.¹⁷⁹⁾ 도버 출입국강제퇴거센터는 매주 수요일에 메뉴를 건네주고 그 주의 금요일까지 주문을 받는 방법을 쓰고 있다.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도 여러 종류가 있고 심지어는 유제품을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Vegan)들을 위한 메뉴도 4개나 준비되어 있다. 또한 주식을 감자나 밥 둘 중 하나로 선택하게 하여 개인 취향을 고려하였으며 큰 식빵 한 덩어리는 3일에 한번씩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은 전날 저녁에 아침식사 꾸러미를 제공한다.¹⁸⁰⁾

2) 구금 환경

영국은 알맞은 구금 환경이 모든 수용자를 위해 이루어지기 위해 노력하며 크기, 조명, 냉·난방, 환기 등이 수용자들의 건강에 알맞아야 하고 언제나 강제퇴거센터의 직원과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있다.¹⁸¹⁾ 쾌적함을 높이기 위하여 한 방에 체류하는 사람들 수를 6명으로 줄였다.

178) (2005) Control of Immigration : Statistics United Kingdom, 2004, National Statistic

179) (2001) Detention Centre Rules, <http://www.aviddetention.org.uk/Rules%20-%20Avid.htm>

180) A Detainee Introduction to Dover Immigration Removal Centre, Dover Immigration Removal Centre

3) 침구 등 제공 물품

깨끗한 침대보, 배게, 이불 등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하며 다른 수용자가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트리스 위에서 침대보 없이 자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

나. 정보의 제공

모든 수용자는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강제퇴거센터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다. 안내서는 항상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 개가 있어야 한다. 만일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나 글을 읽지 못한다면 직원이 그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수용자는 이 안내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강제퇴거센터의 규칙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¹⁸²⁾ 도버 강제퇴거수용소의 경우, ‘수용자를 위한 강제퇴거센터 안내서(A Detainee Introduction to Dover Immigration Removal Centre)’를 제공하고 있다. 당 안내서는 건의하는 법, 허용된 물품들, 허용되지 않은 물품들 등이 설명하고 있으며 통역에 관하여서도 안내하고 있다.

구금 지침에 따르면 '인터뷰 등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통역이 있거나 해당 구금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수용자는 매 달 자신의 케이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계속 감금이 되고 있는지 수용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정보를 받아 볼 수 있어야 한다.¹⁸³⁾

다. 외부와의 소통

영국의 강제퇴거센터에서 외부와의 소통은 잘 되 있는 편이다. 가족이 면회를 할 수 있고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도 면회가 가능하다. 편지 발송은 항상 가능하며 수신 편지는 본인이 개봉하며 만일 위험물질 등이 담겨져 있는 증거

181) (2001) Detention Centre Rules, <http://www.aviddetention.org.uk/Rules%20-%20Avid.htm>

182) (2001) Detention Centre Rules, <http://www.aviddetention.org.uk/Rules%20-%20Avid.htm>

183) (2004) Report on an unannounced inspection of Campsfield House Immigration Removal Centre, HM Chief Inspector of Prison

가 있거나 범죄 관련 물품이 발견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원 앞에서 편지를 열어야 한다. 모든 소포는 본인이 뜯을 수 있지만 직원이 보는 앞이어야 한다. 호출기는 강제퇴거센터에서 지급하며 의사나 외부전화가 왔을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 자신이 전화를 거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것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법적 대리인이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 때에도 자비로 부담하여야 한다. 휴대폰은 카메라가 없는 휴대폰 사용만 가능하며 이것은 면회 때 건네주거나 소포로 붙일 수 있다. 정부비용으로 법적 대리인이나 변호사에게 무료로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며 팩스, 복사 등 또한 정부가 비용을 대기 때문에 수용자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¹⁸⁴⁾

라. 개인 사생활 보호

각 수용자의 방은 정기적으로 검사된다. 또한 수용자가 강제퇴거센터에 입소할 때, 퇴거할 때 신체수색을 한다. 몸수색과 가방 수색은 수용자가 강제퇴거센터를 떠날 때 시행하며 금속탐지기는 면회가 올 때 사용되며 면회 때에는 신체수색을 받아야 한다. 수용자는 옷을 벗은 채로 수색되지는 않지만 만일 수용자가 불법적인 물품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잡히면 옷을 벗은 채로 몸수색을 할 수 있는 영장이 발급된다.¹⁸⁵⁾

마. 의료 서비스

1) 국가보건시스템(National Health System)

국가보건시스템은 영국정부가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무료 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국가보건시스템은 영국의 주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GP)에 의한 일차 진료 및 병원, 장기간 의료관리, 치과 그리고 안과 등의 서비스를 포함한다.¹⁸⁶⁾

184) A Detainee Introduction to Dover Immigration Removal Centre, Dover Removal Centre

185) A Detainee Introduction to Dover Immigration Removal Centre, Dover Immigration Removal Centre

186) http://en.wikipedia.org/wiki/National_Health_Service , Wikipedia, 30th July 2007

2) 강제퇴거센터의 국가보건시스템

모든 강제퇴거센터에는 의사가 있다. 이 의사는 다른 의사들과 진료 내용을 논할 수 있으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조심해야 한다.¹⁸⁷⁾ 또한 강제퇴거센터의 국가보건시스템은 정신 분야 쪽의 서비스에도 힘을 기울인다. 대다수의 수용자가 들어올 때는 건강하더라도 강제퇴거센터의 생활에 의거한 건강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특히 노인이나 임산부 같은 경우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¹⁸⁸⁾ 도버의 강제퇴거 센터는 제공하는 안내서에서 스트레스 관련 처우나 대처를 설명하고 있다. 이 안내서는 스트레스의 증상을 설명하고 그 이후의 영향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항상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어라’나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라’ 또는 ‘사건이 지났다는 것을 상기해라’¹⁸⁹⁾ 등, 실질적인 조언을 안내서에 써 줌으로서 수용자가 더욱 정신적 안정을 느끼게 도와준다.

3) 국가보건시스템의 문제점

수용자들의 국가보건시스템 사용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는 전문 분야를 전공한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영국의 국가보건시스템은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서 일반의를 먼저 만나야 하는데 이런 일반의들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05년 6월 27일에 사망한 Ramazan은 두통과 불면증 소화 불량을 이야기 하며 일반의를 찾았지만 일반의는 이것을 스트레스 관련 질병으로 보았다. 그러나 Ramazan은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말았다. 이러한 부주의한 처방에 의한 사고가 알려지면서 강제퇴거센터에 일반의만이 배치되어 있는 사실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¹⁹⁰⁾

두 번째 문제는 통역 문제이다. 의사가 한 처방을 잘 듣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에서 발간한 자료에서 국가보건시스템 관계자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우리는 8가지의 언어가 사용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 우리는 이 중 2개 언어 통역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187) (2001) Detention Centre Rules, <http://www.aviddetention.org.uk/Rules%20-%20Avid.htm>

188) (2003) Asylum Seekers in Dispersal Healthcare Issues, Home Office

189) A Detainee Introduction to Dover Immigration Removal Centre, Dover Immigration Removal Centre

190) (2006/7) Campsfield Monitor, www.closecampsfield.org.uk

여기서는 32개의 다른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¹⁹¹⁾

바. 운동, 교육 프로그램

수용자가 반복되는 생활에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운동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버 강제퇴거센터에는 도서관 운동시설 등의 시설이 있어 레크리에이션 등의 활동에 참가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해당 시설에서 일을 할 수도 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가할 수 있으며 도서관은 다문화, 다종교에 대응하기 위한 가능한 여러 종류의 책을 구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¹⁹²⁾

1) 도서관

종교 및 법률관련 서적을 포함한 다양한 도서, 신문, 사전, 그리고 강제퇴거센터 안내서 등이 여러 언어로 구비되어 있다. 도서관에는 30여개국 언어로 된 도서가 구비되어 있으며 소설, 논픽션등이 포함되어 있다. 신문은 매일 여러 언어로 제공되며 도서관 안에서만 읽을 수 있다. 사전도 준비되어 있어 1주일 동안 대여가 가능하다. 종교 서적이 적기는 하지만 1주일 동안 대여가 가능하고 강제퇴거센터안내서는 사본을 공급하기도 한다. 법관련 서적은 도서관 안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다.¹⁹³⁾

2) 운동시설

수용자가 구금생활 동안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반복적인 일상의 지루함을 이기도록 하기위해 운동시설을 운영한다. 도버 강제퇴거센터에서는 매일 아침, 오후 그리고 저녁의 정해진 시간에 운영한다. 이 곳에서의 사용 가능한 시설은 헬스클럽, 달리기, 팀에 5명씩 하는 축구게임, 각종 운동경기, 크리켓 등이 있다.¹⁹⁴⁾

191) (2003) Asylum Seekers in dispersal healthcare issues, Home Office

192) (2001) Detention Centre Rules, [http : //www.aviddetention.org.uk/Rules%20-%20Avid.htm](http://www.aviddetention.org.uk/Rules%20-%20Avid.htm)

193) A Detainee Introduction to Dover Immigration Removal Centre, Dover Immigration Removal Centre

194) A Detainee Introduction to Dover Immigration Removal Centre, Dover Immigration Removal Centre

사. 규율과 징벌

규율과 징벌은 수용자들을 관리,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때 수용자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도버강제퇴거센터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안내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3일 동안 지속되는 구두 경고, 그 뒤 3개월 동안 행동이 나아지지 않을 시 첫 번째 정식 경고가 서신으로 보내지고 28일 간의 기간을 갖게 된다. 만일 행동거지가 계속 불만족스럽다고 판단되면 두 번째 정식 경고를 서신을 발송하며 28일 동안 지속되는 두 번째 경고 기간 중 규칙을 다시 어겼을 시에는 시설 등을 이용하는 권리를 박탈할 것이라고 통지한다. 또한 ‘심각한 규칙 위반’ 이라 하여 ‘건물훼손’, ‘다툼’, ‘무기나 흉기 소지’, ‘도주’ 등이 포함이 되고 이 경우 Hythe Unit 즉 독방에 배치된다. 이 독방에서는 처음에는 24시간에 한번 감시가 되고 이후에는 7일에 한번 감시 한다.¹⁹⁵⁾

아. 진정

진정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퇴거센터 운영에 관한 행정 진정(Operational Complaints), 즉 난민 신청에 대한 수속 절차에 대해 건의를 한다거나 내부 사항에 정확한 안내서가 없는 것 등에 대해 건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정식 진정(Formal Complaints)으로서 강제퇴거센터 관리자가 수용자에게 규율에 어긋난 행동을 할 경우에 대한 진정이다. 국경이민국, 내무부에 서신을 쓰거나 이메일, 또는 전화나 팩스 등을 활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¹⁹⁶⁾ 수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언어로 서신을 쓸 수 있다.¹⁹⁷⁾ 진정을 할 때에 본인의 개인정보(이름, 국적, 생일) 등을 적어야 하며 때로는 다른 문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대신해 진정 할 수도 있다. 국경이민국은 진정을 접수한 후 2일 안에 접수 확인을 하며 진정접수자의 직통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고 향후 연락을 촉진한다. 행정진정은 4주안에, 정식진정은 8주 안에 진정결과를 통보하며 진정인이 만일 진정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재진정할 경우 심사원(Reviewing Officer)이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한다.¹⁹⁸⁾

195) A Detainee Introduction to Dover Immigration Removal Centre, Dover Immigration Removal Centre

196) [http : //www.ind.homeoffice.gov.uk/contacts/complaints](http://www.ind.homeoffice.gov.uk/contacts/complaints) , 30th July 2007

197) (2001) Detention Centre Rules, [http : //www.aviddetention.org.uk/Rules%20-%20Avid.htm](http://www.aviddetention.org.uk/Rules%20-%20Avid.htm)

자. 취업

현재 수용자의 유급 직업은 제공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도버 강제퇴거센터나 캠프스필드 강제퇴거센터에서는 자원봉사 일을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¹⁹⁹⁾

6. 아동 구금

가. 최소 감사가능 조건

보호소는 「구금업무령(Detention Services Order 5/2003)」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유치 업무 아동 보호(Detention Services' Child protection) 정책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강제퇴거센터에서는 효율적 운영, 안전 유지의 목적을 위해서만 구금자와 그 부양 아동 사이의 접촉을 제한할 수 있다. 강제퇴거센터에는 항상 최소 2명의 직원은 관련 근무를 해야 한다. 아동들은 가족 공동체 지역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인접한 방에 배치되어 있어야 하고, 강제퇴거센터는 필요한 숙소, 자원,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강제퇴거센터는 아동, 임산부가 평소 식사시간 외에도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강제퇴거센터 안에서 아동을 동반한 부모가 인터뷰를 해야 하는 곳에서는 아동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²⁰⁰⁾

나. 교육, 운동 교육 그리고 놀이 시설

보호소는 취학 연령 아동이 공휴일을 제외하고 1년 중 50주, 한 주당 23시간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만일 취학 연령 아동이 14일 이상 거주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센터는 취학연령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동을 위해 제공하는 교육은 국가 커리큘럼 전달을 위해 가족 숙소 지역 한 적합한 곳에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강제퇴거센터는 나이가 어린 아동을 위해 전문가를 양육시설에 두어야 하며, 각 연령대에 적합한 장난감, 게임 비디

198) [http : //www.ind.homeoffice.gov.uk/contacts/complaints](http://www.ind.homeoffice.gov.uk/contacts/complaints) , 30th July 200

199) (2004) Report on an unannounced inspection of Campsfield House Immigration Removal Centre, HM Chief Inspector of Prisons, A Detainee Introduction to Dover Immigration Removal Centre, Dover Immigration Removal Centre

200) 이주아동 구금관련 해외사례 연구, 김재원

오 기기를 두어야 한다. 강제퇴거센터는 부양 아동을 위한 교육으로서 같은 시각 어디서 다른 활동들의 참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 확인해야 하고, 부모는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아동과 같이 있을 기회를 가져야 하며 선생님과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상담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강제퇴거센터는 부모들에게 다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²⁰¹⁾

II. 캐나다

1. 개관

캐나다는 전세계적으로 많은 수의 이민자를 수용하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캐나다는 미국이나 호주 등 여타 대표적인 이민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미등록이주자(undocumented migrants)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해오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캐나다의 난민제도를 악용하여 밀입국이나 인신매매의 알선이 증가고 이에 따라 불법 체류가 늘어나면서 미등록이주자 문제가 점차 사회적 이슈로 주목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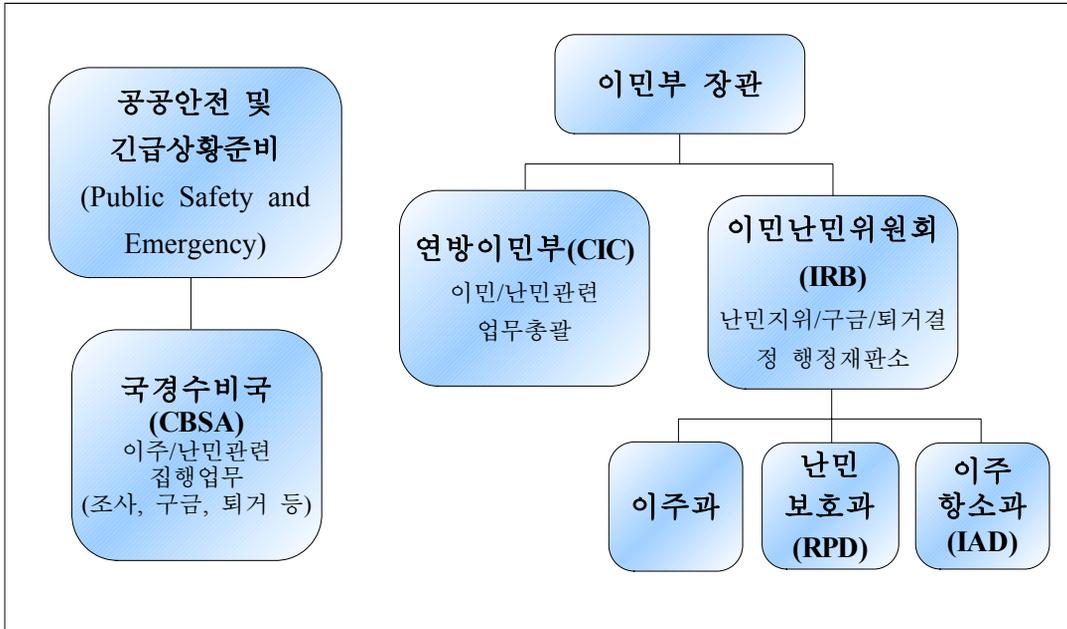
2. 이주관련 법제의 변천

캐나다의 이주 관련 법제는 다음과 같이 변화해 왔다.

- 시민권법(Citizenship Act, 1974)
- 캐나다 이민부설립법(Department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Act, 1994) : 본법에 의해 캐나다연방이민부(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C)가설립되었다.
- 이주난민보호법(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of 2002, IRPA) : 기존의 이주, 난민관련 법규정을 통합한 이주법이다.

201) 이주아동 구금관련 해외사례 연구, 김재원

3. 이주관련 국가기구



[캐나다 연방정부 이주 및 난민보호법 집행기관]

가. 캐나다 연방이민부(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C)²⁰²⁾

1994년 설립된 본 부서는 이민과 난민 문제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고 있다. 시민권 부여, 이민자 선정, 비자발급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인적자원개발부(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HRDC)와 함께 숙련 이주노동자 및 임시 취업이주자들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캐나다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난민비호요청의 적합성을 심사 및 결정하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이민난민위원회(IRB)로 회부하여 그 결정을 요청한다. 이주법 집행의 중심기관으로서 난민에게 보호 및 재정착의 기회를 제공하며 새롭게 캐나다 사회로 편입해 오는 이주자의 사회 적응 및 통합을 지원한다.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이민과 난민보호에 관련된 모든 일을 총괄한다.

202) CIC : <http://www.cic.gc.ca/english/resources/statistics/facts2006/index.asp>

나. 이민난민위원회(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IRB)²⁰³⁾

연방이민부(CIC)와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캐나다 최대 규모의 독립 행정재판소이다. 구금 및 퇴거에 대한 결정, 난민지위 결정, 연방이민국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심사하는데 각각의 업무는 산하에 있는 이주과(Immigration Division, ID), 난민보호과(Refugee Protection Division, RPC), 이주항소과(Immigration Appeal Division, IAD)가 분담하고 있다. 이들 업무 중에서도 대부분 난민지위결정 사건을 다룬다.

다. 캐나다 국경수비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

2003년 12월에 신설된 국경수비국은 불법이주 조사 및 방지, 구금, 퇴거, 불법입국 사전차단 등 이주 및 난민문제와 관련한 집행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 전역에 1,370개, 국외에 40개의 사무소를 두어 출입국 관리를 집행하며 필요에 따라 연방경찰국과 협력하기도 한다.

라. 캐나다 연방법원 공판국(Canada Federal Court, Trial Division)

퇴거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항소기관으로서이민난민위원회(IRB)의 모든 재심결정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권리를 연방이민부 담당자 또는 당사자가 가지고 있다.

마. 이주법 집행에 있어서 연방정부와 지방자치정부 간의 관계

캐나다 헌법은 이주문제를 연방정부와 지방자치정부가 공동 책임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991년부터 몇 개 주는 쌍무협정을 통하여 부분자치적 이민정책을 집행해 오고 있다. 퀘벡(Quebec)주를 비롯하여 마니토바(Manitoba), 뉴브런즈윅(New Brunswick),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 주는 주정부추천이주(Provincial Nominee Program)를 이용해 주정부가 지정한 한정된 수의 이주자의 입국만을 허용하고 있다.

203) IRB : http://www.irb-cisr.gc.ca/en/about/index_e.htm

4. 퇴거집행절차

캐나다 정부에 의한 퇴거명령은 그 정도에 따라 출국명령(removal order), 입국거부명령(exclusion order), 추방명령(deportation order) 등으로 구분된다. 이민난민위원회 이주과(Immigration Division, ID)의 퇴거결정에 대해 이주항소과(Immigration Appeal Division, IAD)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연방법원에 재심리(review)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2002년 새로운 이주난민보호법(IRPA)이 마련되면서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 혹은 범죄자인 경우에는 재심리 신청 자격이 박탈된다. 이주난민보호법은 퇴거직전 위험요소평가(Pre-Removal Risk Assessment, PRRA)를 실시하여 퇴거 대상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소를 평가하여 최종 퇴거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국경보호 및 비정규이주 차단

이주정보네트워크의 수립을 통해 비정규 이주 및 이에 동반되는 범죄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며 허위문서 감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이주보전담당관(Migration Integrity Officer, MIO)을 45개 외국 주요 지역에 파견하여 외국정부, 지역정보기관, 항공사와 협력하여 밀항과 인신매매를 포함한 비정규 입국을 차단하고자 한다.

나. 체포

국경수비국은 이주난민보호법 관할 하 출입국법을 위반한 외국국적인과 영주권자 모두의 입국을 막거나 필요에 따라 강제송환할 수 있다. 단, 영주권자 체포를 위해서는 소환장이 필요하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전쟁범죄, 조직범죄에 가담한 자 혹은 중범죄를 저지른 사의 경우는 항소권이 없다. 이주항소과의 항소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퇴거는 지연된다. 국경수비국 직원이 공항 또는 국경에서 체포와 구금을 집행한다. 캐나다에서의 구금과 퇴거는 범죄자로 간주되는 자들에게만 적용된다.

다. 퇴거명령(Removal Orders)

1) 퇴거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퇴거대상자가 된다.

- 이주난민보호법의 규정을 어긴 자
- 형법을 어겨 범죄자의 신분을 가진 자

임시 혹은 비영주 비자가 만기 되었거나 취소된 경우, 주어진 시간 내의 귀환이 요구되며 이를 지키지 않는 자들은 퇴거명령을 받거나 체류허가심리를 거쳐야 한다. 심각한 근거에 입각하여 이주법을 위배한 경우 반드시 퇴거 되어야 하며, 입국 시 돈이 없거나 신분이 불분명한 자는 체류허용심리를 거치지 않고 즉시 떠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범죄의 경우, 추방명령 대신 출국명령이 내려진다.

난민지위자격신청의 경우, 신청과 동시에 퇴거명령이 내려지고 체류허가심리에서 난민지위신청이 기각결정 되었을 시, 즉시 자진 출국한다는 것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한다. 이민난민위원회의 이주과 담당자가 최종적인 퇴거명령을 내리며 그 결정에 대한 연방이민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2) 퇴거의 종류

퇴거에는 세 가지종류가 있으며, 모든 퇴거명령 경우에 대해 대상자 개개인 및 변호사에게 퇴거명령의 종류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출국명령(departure order) : 지명된 사람은 자발적으로 즉시 떠나야 한다.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내에 자발적으로 떠나지 않거나, 국경수비국의 출국허가를 받지 않고 떠날 시 출국명령이 자동적으로 추방명령(deportation order)으로 전환된다. 지시된 모든 절차를 거쳐 출국한 자는 향후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다
- 입국거부명령(exclusion order) : 대상자의 입국을 1년 또는 2년 동안 허락하지 않는다

- 추방명령(deportation order) : 대상자의 입국을 영구적으로 거부한다.

퇴거명령과 동시에 국경수비국은 이후의 절차를 가능한 신속히 집행한다. 퇴거대상자의 가족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퇴거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으나 이들은 미래에 입국허가 없이도 입국할 수 있다.

5. 구금

불법체류자 문제가 캐나다 내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 10년간 난민지위신청 기각자의 체류가 늘어나면서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난민신청 기간동안 신청자를 구금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난민으로 분류되지 않는 이주자들이 캐나다로 입국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인신매매 및 이주자 밀항을 조직하는 조직범죄가 늘어났고 특히 홍콩과 밴쿠버를 오가는 밀항조직이 활성화 되었다. 미국-캐나다 국경을 넘는 비정규이주자의 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미국이나 호주와 달리 공공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비정규이주자(irregular migrant) 혹은 난민지위신청자(asylum-seeker)를 구금할 수 있다.

가. 구금대상자

구금집행권은 2003년 연방이민부에서 국경수비국으로 이전되었다. 캐나다는 미국이나 호주와는 달리 공공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구금을 하도록 한다. 즉, 캐나다에서는 모든 비정규이주자 또는 난민지위신청자들이 합법적으로는 구금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서만 구금을 시행할 수 있다.

- 체류자격 심리 등의 이주절차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 과거의 범죄경력을 고려, 공공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
- 신원이 확실치 않은 외국인
- 전쟁범죄자

나. 구금 결정 시 고려사항

구금을 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 유죄판결, 특히 성폭력, 폭력, 무기, 마약밀매 등의 범죄경력
- 과거에 이주법 또는 규범을 어긴 경력
- 지역사회와의 친분
- 신분확인을 위한 연방이민부와 협조 정도
- 인신매매 등의 조직범죄에 가담한 경우
- 공공위험에 대한 장관의 의견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 구금은 최종적 수단으로만 쓰이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국경수비국 담당자들은 캐나다 권리와 자유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에 의거하여 구금 대상자들에게 구금의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이들의 법적권리(예를 들어, 국적에 따른 대사관에 체포와 구금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권리 등)를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48시간 이내 개개인의 사례를 검토하여 구금되어야 하는지, 특정 조건부로 구금 해제되어야 하는지, 무조건적 구금해제가 되어야 하는지 결정하고 구금 결정은 7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구금 지속 시 매 30일 마다 재심사 된다. 이러한 심사는 신변보호요청이 없는 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주난민보호법에 의해 체포, 구금된 자들은 연방이민부담당자나 이민난민위원회 이주과의 담당자에 의해서만 구금해제될 수 있다. 국경수비국은 캐나다 전국에서 집행 사무관을 고용하여 이주난민보호법을 위반한 자들을 조사한다. 국경수비국은 지방경찰과 다른 국내외 단체들과 협력한다.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도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민난민위원회에 난민보호지위 신청을 할 수 있다. 난민지위신청 시 출국명령(departure order)이 발행되어 지위부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보류되었다가 지위신청이 기각됨과 동시에 출국하도록 한다. 이민난민위원회의 심사와 결정

은 약 1년이 걸리며 이 기간 동안 고용자격, 교육, 의료서비스 이용 등의 권리가 주어진다.

구금은 주로 몬트리올이나 토론토에 있는 이주구금센터에서 이루어지는데, 72시간 이하의 구금의 경우에는 밴쿠버 센터에서 이루어진다. 구금해제결정은 국경수비국 직원이나 이민난민위원회 이주과 직원이 결정하고 단서조항 또는 보증금이 부과되거나 캐나다 시민이나 영주권자인 제3자가 보증금을 대신 지불하고 서명할 수 있다.

구금의 법적 근거는 이주난민보호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구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심사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안보상의 이유 혹은 인권이나 국제적 권리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캐나다로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는 의심의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 캐나다로의 입국이 허용 불가능하고 공공에 위협이 된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 심사, 입국허가청문회, 퇴거명령결정을 위한 절차 등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 신분증명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다. 구금시설 내에서의 처우

이주난민보호법에 의해 구금된 자는 그 처우에 있어서 어느 때나 존중된다. 피구금자는 그들이 가지게 되는 법적 권리를 고지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그들의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고지 받는다.

국경수비국은 피구금자들이 안전한 환경에 보호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피구금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그들의 문화에 따라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 국경수비국은 구금 시설의 생활 조건에 관련하여 피구금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며, 구금 장소는 피구금자가

그들 스스로 혹은 타인에 대해 보이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피구금자는 자비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격이 되는 경우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구금의 이유를 통지 받게 되며 본인의 요구에 따라 본국대사관이나 영사대리인과 접촉할 수 있다. 만약 캐나다에서의 난민보호 신청을 이유로 본국 영사대리인과 접촉하고 싶지 않다면 캐나다에 있는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에 구금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구금심리(detention review), 이민공청회(immigration hearings) 등의 절차 중에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면 통역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지역공동체나 종교기관 등 NGO에 의한 지원 또한 받을 수 있다. 피구금자가 원한다면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과의 연락을 주선해 주기도 하고 통역을 제공하기도 한다.

구금 시설 내에서의 응급의료치료는 어느 때나 이용 가능하다. 구금 시설 내에서 무기로 사용되어 인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압수할 수 있다.

하루에 세 끼의 식사가 제공되며 개개인의 의료적 필요에 따라 식단 및 식생활의 조정이 가능하다.

면회시간과 면회자 수는 각 시설 내부 규정에 따라 상이하다. 면회 장소에서만 접견이 가능하며 면회 장소가 없는 시설에서는 변호사 혹은 영사관 직원만이 특별 약속을 통해 면회가 가능하다. 변호사의 면회는 시설의 일반면회 시간에 가능하고 그 외 시간 면회는 시설 관리자의 허가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전화는 특정 공간과 시간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몇몇 시설에서는 서신 왕래가 가능하며, 그 서신들은 모두 개봉 및 검열된다. 법원이나 변호사로부터 온 서신의 경우는 본인의 출석 가운데에 개봉 및 검열된다.

국경수비국은 이송되거나 시설 내부 혹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절차에 참석하는 이들을 수색 및 포박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단, 장애인, 노약자, 미성년자, 임산부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라. 구금의 재심리(Detention review)

국경수비대 공무원이 최초 48시간 내에 구금의 적합성을 심사한다. 더 이상 구금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시에는 조건부로 구금해제가 이루어진다. 구금 최초 48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심사하여야 하나, 이 시간이 경과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이민부 직원이 구금의 사유를 심사한다. 구금이 지속될 시, 이민부 직원은 이후 7일 이내에 본 사건을 다시 심사하게 된다. 7일 간의 심사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매 30일 마다 최소한 한 번씩은 구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매 심사 때마다 당사자는 출석해야 하며 이 때에는 변호사가 동석할 수 있다.

마. 구금일시해제(Release from detention)

심사가 끝난 후 이민부 직원이 구금의 지속여부에 대한 명령을 발행한다. 구금해제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부로 이루어진다.

- 예치금(deposit) : 이는 피구금자가 구금으로부터의 일시해제조건을 준수할 것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모든 구금해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전제 하에 사건의 결론이 난 6-8주 이후보증인에게 돌려준다.
- 보증금(guarantee) : 이는 예치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대신 구금일시해제 된 피구금자가 해제조건을 어길 시 보증인이 일정 금액의 돈을 지불한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보증인은 반드시 캐나다 시민권자 이거나 영주권자 이어야 한다.

6. 자발적본국귀환지원(Assisted Voluntary Return)

타 이민유치국가들보다 비교적 개방된 이주정책을 유지해 온 캐나다에서는 아직 귀환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출국하도록 한 경우는 없다.

Ⅲ. 미국

1. 개관

이주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세워진 이래로 항상 입법의 중요 주제 중의 하나로 다루어져 왔다.

2. 이주관련 법제의 변천²⁰⁴⁾

1952년 제정된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52, INA)을 중심으로 수차례의 관련 입법 및 개정을 통해 그 내용이 수정되어 왔다.

가.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기존의 이민 관련법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이민국적법은 미국 이민법의 기본이 되는 법제이다. 고숙련 이민자 유치를 위한 노력이 반영된 본 법안에서는 불법체류자 퇴거에 대한 근거를 확장하고 퇴거절차를 개선하였다. 경찰과 이주세관집행국(Bureau of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의 편의를 위하여 모든 외국인의 정보를 중앙 집중화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나. 1986 이민개혁과 통제법(The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of 1986, IRCA)

본 법은 비정규이주를 감소시키고 미국경제에 필요한 합법 이민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과되었다. 본 법을 근거로 고용주들로 하여금 신규고용 외국인노동자의 합법적 신분을 증명하도록 하였고 불법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주를 처벌하도록 하는 고용자처벌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본 법을 통해 1982년부터 체류해 온 불법체류외국인과 일부 농업노동자 등 2백 7십만여 명의 불법체류외국인을 사면하는 합법화 조치를 실시하였다. 새로운 고용허가정책을 도입하였고, 1백 80만에 이르는 비정규이주자를 체포하는 등 불법이주 통제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204) p.45, 법무부 ‘주요국가 이민정책 비교연구’, 2004.12

다. 1990 이민법(Immigration Act of 1990, IMMACT)

고급노동인력(skilled workers)의 수요 충족을 위해 합법이민 할당량을 증대했으며, 귀화자격조건을 완화한 반면 임시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였다. 모든 퇴거정책에 대한 근거를 재검토하여 퇴거정책을 수정하였고, 법무부장관에게 분쟁과 자연재해의 영향이 있는 특정국가 출신 비정규 이주자에 대한 임시보호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보장해 주었다. 국경수비 인원을 증대하고 1986년 고용주 처벌제도 개정하였으며 서류위조에 대한 규정 등을 새로이 재정하였다.

라. 1996 불법이민개혁과 이민자 책임법 (The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IIRIRA)

본 법안을 통해 신속퇴거절차(expedited removal)를 제외한 모든 퇴거절차가 통합되었고 막대한 예산이 집행능력 강화에 투입되었다. 과거의 퇴거제도는 강제퇴거(deportation), 자발적 귀환(voluntary departure), 추방(exclusion) 등으로 구분되었으나 본 법의 도입으로 인해 강제퇴거와 추방은 하나로 통합되었고 자발적 귀환은 정부의 재량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였다. 새로 도입된 신속퇴거법안(expedited removal)은 이민행정국의 집행관에게 입국외국인의 위조서류 혹은 허위진술을 발견하는 경우, 또는 적절한 문서의 부족으로 입국할 수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재판과 재심리 없이 퇴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단, 해당 외국인이 본국귀환 시 탄압이나 고문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고문방지협약(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에 의거하여 난민지위신청권이 주어지며, 해당 외국인이 난민지위신청 의지를 밝힌다면 난민담당직원에게 넘겨져 이민법정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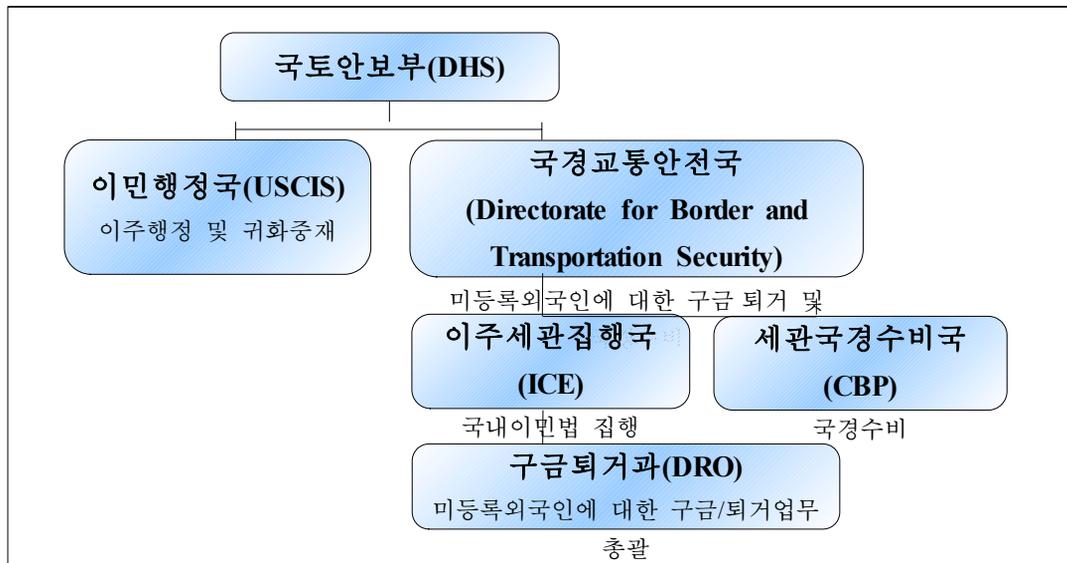
2. 이주관련 국가기구

미국 내 불법체류자 퇴거와 관련해서 2003년 3월 이전까지는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산하 이민귀화청(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INS)이 이민법 집행을 총괄해 왔으나, 2003년 3월 이후로는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로 그 업무가 이전되었다. 과거의 이민귀화청(INS)은 국토안보부(DHS)의 산하기구가 되었고 명칭 또한 이민행정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USCIS)으로 변경되었다.

가. 이민행정국(USCIS)²⁰⁵⁾

국토안보부(DHS)의 일부 기관으로서 이주행정과 귀화중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민행정국(USCIS)은 이주비자소송, 귀화 소송, 망명이나 난민신청, 그 외의 사건 등에 대한 판결을 포함하여 이주서비스정책 및 우선순위를 정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²⁰⁶⁾



[2003년 3월 이후 미국의 이민법 집행기관]

205) USCIS : www.uscis.gov

206) <http://www.ice.gov/pi/dro/facilities.htm>

나. 이주 및 세관집행국(ICE)²⁰⁷⁾ 산하 구금 및 퇴거관리과(DRO)²⁰⁸⁾

국토안보부(DHS)산하 국경교통안전국(Directorate for Border and Transportation Security)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구금, 퇴거 및 국경 수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퇴거대상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구금 및 퇴거는 이주세관집행국(Bureau of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산하 구금퇴거관리과(Office of Detention and Removal Operation, DRO)에서 담당한다.

구금퇴거관리과(DRO)는 모든 이민법 집행의 마지막 단계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불법체류 외국인의 퇴거를 총괄, 집행한다. 즉, 퇴거대상 외국인을 보호하고 그들의 법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마지막 퇴거명령이 내려지면 이를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구금및퇴거관리과(DRO)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퇴거대상 외국인의 구금, 보호, 퇴거, 귀향 등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며, 직원들은 식사, 보호시설, 의료, 상담, 레크리에이션을 포함하는 외국인 구금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거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보, 외국정부와의 연락, 여행준비, 호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신속퇴거(expedited removal)제도가 도입됨과 동시에 범죄 및 위험요소가 있는 불법외국인과 도주자를 감정, 확인하고 신속퇴거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다. 이민검사행정총괄실(EOIR)과 이민항소위원회(BIA)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퇴거결정은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산하 이민검사행정총괄실(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EOIR) 내의 지역재판소에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항소는 이민검사행정총괄실 내의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 BIA)에서 할 수 있다.

퇴거재판 시 불법입국 사실을 인정할 경우, 정부관할 하에 자발적으로 귀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며 이를 따르는 경우에는 향후 재입국이 가능하나,

207) ICE : <http://www.ice.gov/about/dro/contact.htm>

208) Office of Detention and Removal Operation : <http://www.ice.gov/pi/news/factsheets/dro110206.htm>

주어진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벌금, 추방, 혹은 10년 형에 이르는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민검사행정총괄실(EOIR)의 연방사무소에는 12명의 재판관이 임명되어 있으며 전국에 52개 지방법원과 200명의 이민재판관이 있고, 이민항소위원회(BIA), 이민대법관실(Office of the Chief Immigration Judge, OCIJ) 및 대행정심리위원회(Office of the Chief Administrative Hearing Officer, OCAHO)로 구성되어 있다. 이민법정은 퇴거, 합법화, 퇴거과정의 종결 등을 결정하며, 판사는 퇴거대상자와 국토안보부(DHS)의 의견 및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고 항소가능여부를 결정한다. 퇴거대상자는 이민판사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이민항소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민항소위원회의 판결은 연방 법원에서 재심리 될 수 있다.

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관계

과거에는 비정규이주자가 형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경찰에게 집행 권한이 있었으나 이민국적법을 어겨 단순히 불법이주자가 된 경우에는 주경찰의 집행 권한이 허락되지 않았다. 하지만 1996년 테러방지및효율적사형법(Anti-Terrorism and Effective Death Penalty Act, AEDPA), 1996년 불법이민개혁과이주자책임법, 그리고 2001년 새 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축에 의해 주경찰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미국 의회의 사법위원회 산하 이주 분과위원회(US Congress, Judiciary Committee, Subcommittee on Immigration)에서는 이주관련법 제정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며 청문회를 열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

4. 퇴거집행절차

연방정보부(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는 2001년 9.11 사태 이후 국가범죄정보센터(National Crime Intelligence Center, NCIC)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고 미국 내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등록시켜 놓았다. 또한, 국가안보출입국등록시스템(National Security Entry Exit Registration System, NSEERS)을 도입하여 입국 외국인의 지문, 사진, 특정국적자에 대한 특별 재등록(special re-registration) 등을 요구하도록 하였던

데, 이 시스템을 따르지 않는 외국인 또한 국가범죄정보센터에 등록되어 퇴거 대상자가 되는 등 이전에 비해 퇴거집행이 한층 강화되었다.

가. 퇴거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민국적법(INA)에 의거하여 추방 대상이 되는 외국인으로 규정된다.²⁰⁹⁾

-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또는 합법적으로 입국하였으나 비이민비자 기간을 초과한 모든 외국인
- 이민법을 비롯한 미국의 법을 어긴 외국인
- 비이민비자를 위반하거나 입국 시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
- 조건부 영주권이 중지된 경우
- 밀수, 자신의 밀항 및 다른 외국인의 밀수, 밀항을 유도, 원조, 선동, 격려한 외국인
- 위조여권을 사용하거나 위장결혼을 한 자

나. 퇴거절차

외국인은 건강상태, 범죄사실, 경제적 사정, 국가안보위협, 이민법에 정의되어 있는 사유에 의해 법적으로 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민판사가 퇴거대상자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외국인은 문서에 나온 내용에 대하여 인정 또는 불인정하여 재판결과에 대하여 이민항소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

5. 구금

미국 전역에 현재 8개의 구금시설(Service Processing Centers, SPCs)과 7개의 계약 시설(contract facilities)이 있다. 구금자들의 건강관리²¹⁰⁾는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DHHS)에서 책임지며,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청소년은 구금퇴거관리과(DRO)의 특별 규정에 따라 다루어지며 이들을 보호

209) [http : //uscis.gov/graphics/lawsregs/INA.HTM](http://uscis.gov/graphics/lawsregs/INA.HTM)

210) Detainee Health Care : [http : //www.ice.gov/pi/news/factsheets/detaineehealthcare.htm](http://www.ice.gov/pi/news/factsheets/detaineehealthcare.htm)

하는 책임은 보건복지부의 난민정주과(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와 비동행아동 서비스과(Division of Unaccompanied Children Services)에서 맡고 있다.

가. 구금 시설 현황

[미국 구금시설 현황]

(2006. 8. 21. 기준)

| 순번 | 구금시설 | 소재지 |
|----|---------------------------------------|-------------|
| 1 | Aguadilla Service Processing Center | Puerto Rico |
| 2 | Aurora Contract Detention Facility | Colorado |
| 3 | Buffalo Federal Detention Center | New York |
| 4 | El Centro Service Processing Center | California |
| 5 | Elizabeth Contract Detention Facility | New Jersey |
| 6 | El Paso Service Processing Center | Texas |
| 7 | Eloy Contract Detention Facility | Arizona |
| 8 | Florence Service Processing Center | Arizona |
| 9 | Houston Contract Detention Facility | Texas |
| 10 | Krome Service Processing Center | Florida |
| 11 | Laredo Contract Detention Facility | Texas |
| 12 | Queens Contract Detention Facility | New York |
| 13 | Port Isabel Service Processing Center | Texas |
| 14 | San Diego Contract Detention Facility | California |
| 15 | San Pedro Service Processing Center | California |
| 16 | Tacoma Contract Detention Facility | Washington |

※ 출처 : <http://www.ice.gov/pi/dro/facilities.htm>

불법체류외국인의 구금과 퇴거는 이주세관집행국(ICE)의 최우선적인 업무이며 많은 자원이 투입된다. 구금퇴거관리과(DRO)는 각 구금시설이 피구금자의 보호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국가 구금기준(Detention Standards)²¹¹⁾을 충족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구금기준은 피구금자에게 적합한 생활환경조건을 구체화 하고 있는 매뉴얼이며, 본 매뉴얼은 이주세관집행국(ICE)에 의한 피구금자 처우와 관련한 단일 정책 및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6. 자발적본국귀환지원(Assisted Voluntary Return)

강제적 퇴거에 소비되는 자원과 집행기관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퇴거대상자가 불법으로 입국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법정소환 및 발언기회 선택권을 포기하면, 이민판사가 퇴거대상자에게 자발적으로 귀환할 수 있는 기간 120일을 허락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의 귀환을 돕는 본 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멕시코 이주자의 본국귀환을 돕거나 미국-멕시코 국경의 인신매매 및 이주자 밀항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미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 아리조나주 정부가 협력하여 참여해왔다. 멕시코국적 이주자의 수가 지리적 조건 때문에 급증해 왔고 국경단속이 강화된 후 인신매매 및 이주자 밀수가 급증하여 사상자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주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정책이기도 하다.

7. 미국 내 미등록이주자 현황

미국 내 미등록이주자는 통계자료를 보면 미등록이주자의 수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전체 미등록이주자 중 절반에 가까운 수가 공항이나 항구로 입국할 때 세관직원에게 의해 검문을 받은 후 합법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미등록이주자 인구 중에 45%에 해당하는 자는 방문비자나 단기

211) <http://www.ice.gov/partners/dro/opsmanual/index.htm>

체류비자로 입국한 후 비자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초과 체류자"가 된 경우이다. 또 다른 적은 비중의 미등록이주자들은 멕시코에서 국경통과증(Border Crossing Card)을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자들로서, 입국 이후에 국경지역에서 제한된 기간동안 단기간 머물 수 있다는 입국 조건을 어겨서 불법체류가 된 경우이다.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나머지 미등록이주자의 경우는 입국에서부터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몇몇은 화물트럭 등에 몸을 숨겨 세관의 입국 심사를 피한 경우이고, 또 다른 이들은 아리조나(Arizona)의 사막을 건너거나 리오그란데(Rio Grande) 강을 건너 입국한 자들이다. 퓨히스패닉센터(Pew Hispanic Center)는 2006년 현재 미국 내에 1천1백50만명에서 1천2백만명 사이의 미등록 이주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 중 40-50%에 해당하는 4백50만명에서 6백만명이 합법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들 중 4백만에서 5백50만명은 관광비나나 출장비자 등과 같은 비이민비자로 입국했으며 25만에서 50만명은 국경통과증(Border Crossing Card)로 입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안보부(DHS)는 2004년에 1억 7천9백만 명의 비이민입국이 이루어졌다고 추산하고 있다. 그 중 1억 4천8백만에 해당하는 자들은 국경통행증을 가지고 단기간 동안 수시로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캐나다인과 멕시코인이었으며 3천8십만 명은 단기 비이민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었다. 통과증을 가진 사람들이 초과체류하기 쉬운 이유는 이들이 미국을 입국한 이후 출국했는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수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합법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자들의 극히 적은 비율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이 당초 입국요건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체류한다 하더라도 그 미등록이주인구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대할 수 있다. 퓨히스패닉센터는 매년 모든 입국 형태를 통해 평균 70만에서 85만의 새로운 미등록이주자 인구가 미국에 들어온다고 추정했다. 비이민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중에 약 1~1.5%가 초과체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매년 25만에서 35만 명이 미등록 인구로 추가되는 것과 동일하다. 미국 정부책임처(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는 초과체류자의 정

확한 명단을 얻을 수가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출국신고서가 완전히 수거되기 어렵고 수거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입국신고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2005년 3월 추정치 중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66%의 미등록이주자가 미국에서 10년 혹은 그 이하의 기간 동안 거주해왔고 4백40만에 해당하는 40%가 5년 혹은 그 이하의 기간 동안 거주했다. 미등록이주자 중 49%에 해당하는 5백40만 명이 성인 남성이고 35%인 3백90만 명이 성인 여성이었다. 아동 인구는 16%에 달하는 1백80만 명 이었다.

IV. 호주

1. 개관

과거 인종차별주의적 이주정책²¹²⁾을 펴는 국가로 인식되어왔던 호주는 현재 미등록 이주자들의 단속 및 구금에 있어서는 강력지만, 가족, 아동 이주자 등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자들에 대한 여러 대안적 구금수단을 운영하고 이들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처우하도록 하는 양면적 이주자 구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

2. 정부기관

가. 이민시민권부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 DIAC)²¹³⁾

호주는 이주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로 이민시민권부를 두고 있다. 현재의 이민 시민권부는 1945년 이민부(Department of Immigration)에서 시작되었다가 최근 이민다문화부(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ffairs)였던 것이 2007.

212) 1900년대부터 유럽에서 오는 이주자를 주로 받아들이고자 했던 인종차별주의적 이주정책은 단계적으로 완화되다가 1973년 The New Wiltam정부가 ‘인종적, 피부색 혹은 국적 등을 이유로 호주의 출입 또는 거주허가에 불이익은 없을 것임’을 선언하면서 'White Australian Policy'는 철폐되었다.

213) ‘호주 이민 Fact Sheet 3. 이민시민권부’, 이민시민권부

1. 23. 개각으로 이민시민권부로 명칭에서 ‘다문화’가 빠진 채 개편되어 왔다. 설치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민시민권부는 200여개 국가로부터 6백5천만명의 이주자를 받아들여 정착시켰으며, 이중 66만명은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착한 경우이다.

현재 이민시민부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 이민 및 일시적 입국
- 난민 및 인도주의적 입국 및 체류
- 국경수비의 내용을 포함한 이민법의 집행
- 피난처
- 인근해 비호신청자(asylum seeker)관련 업무처리
- 정착 지원
- 번역 및 통역 지원
- 호주 시민권
- 다문화주의의 장점에 대한 홍보

이민시민권부는 캔버라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주 전역에 14개 지역사무소와 2개 분소가 있다. 이민시민권부는 또한 61개 국가에 66개 호주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민시민권부는 3개 국 13개과로 나뉘어 지는 데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이민, 난민, 다문화 프로그램 국
(Immigration, Refugee and Multicultural Programme Group)
 - 시민권, 정착 및 다문화 업무과
 - 난민, 인도주의 및 국제 업무과
 - 이민 및 일시적 입국과
- 국경, 승인, 구금 및 정보화 국 (Borders, Compliance, Detention and Technology Group)
 - 승인정책 및 케이스 조정과
 - 국경안전과
 - 구금서비스과
 - 시스템운영과

- IT 서비스 및 보안과
- 고객 및 법인 서비스 국 (Client and Corporate Services Group)
 - 부처 법인 지원 및 보장과
 - 고객 서비스과
 - 법무과
 - 재정 전략 및 보고과
 - 인적 서비스, 가치 및 교육과

이민시민권부가 관할하고 있는 법률로는 「1958년 이민법(Migration Act 1958)」이 있고, 「호주시민권법(Australian Citizenship Act 2007)」, 「아동의 이주 후견인법(Immigration Guardianship of Children Act 1946)」, 그리고 「이주교육법(Immigration (Education) Act 1971)」 등이 있다.

나. 이민재심재판소 및 난민재심재판소

이민재심재판소(Migration Review Tribunal)와 난민재심재판소(Refugee Review Tribunal)는 이민시민권부의 사증 혹은 사증과 관련된 결정을 재심사하는 독립적, 최종적 결정기관으로 이민재심의 경우 일반적 비자에 대해서, 난민재심의 경우 난민비자와 관련하여 결정을 하고 있다. 두 재판소는 「1958년 이민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재판소의 관할권 및 권한은 동법과 ‘1994년 이민규칙(Migration Regulations 1994)’에 명시되어 있다. 모든 재판관들과 직원들은 두 재판소에 교차되어 임명되며 재정 등과 관련하여서는 하나의 기관으로 운영된다. 재판소가 최초 결정기관에 비하여 더욱 많은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같은 법률과 동일한 정부의 정책 틀 내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²¹⁴⁾

이민재심재판소 및 난민재심재판소를 최종적 결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호주 연방 치안 법원(Federal Magistrates Court of Australia)에서 두 재판소의 판결을 재심할 수는 있으나 이 것은 본안 혹은 비자발급 여부에 대해서가 아닌 재판소의 판결 시 재판 관할권상 오류(jurisdictional error)가 있는지의 여부만을 판단하기 때문이다.²¹⁵⁾

214) <http://www.mrt-rrt.gov.au>

3. 이민법 및 이민규칙

가. 「1958년 이민법(Migration Act 1958)」²¹⁶⁾

호주의 1958년 이민법은 호주 본토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모든 외국국적자는 구금대상이며, 호주에 체류하도록 허가를 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무적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퇴거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 비시민(non-citizens) 체류자들은 사증 없이 호주로 입국하였거나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사증이 만료되었는데도 체류하는 경우, 사증이 취소된 경우, 비자 없는 불법 외국 어선의 선원인 경우 등이다. 다만 난민으로 밝혀진 경우는 건강이나 자격요건에 따라 즉시 구금에서 해제된다.

2001년 9월, 의회는 「1958년 이민법」 개정을 통하여 합법적인 정부의 허가 없이 ‘인근해역(excised offshore places)’에 도달하는 자들을 이민부 장관이 개별적으로 체류허가를 하지 않는 이상 비자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법개정의 목적은 불법적으로 호주의 인근해역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비자신청을 할 수 있었던 관행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난민신청을 위한 경우 이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국가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이민규칙(Migration Regulations)’²¹⁷⁾

이민규칙은 비자발급을 위한 세부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연방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이민시민부장관의 권고에 따라 영연방 총독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민규정의 개정은 연방 의회에 보고되어야 하고 양원 중 하나에 의하여 거부될 수 있다.

215) [http : //www.fmc.gov.au](http://www.fmc.gov.au)

216) ‘호주 이민 Fact Sheet 82. 이주자 구금’, 이민시민권부

217) ‘호주 이민 Fact Sheet 3. 이민시민권부’, 이민시민권부

4. 이주자 구금(Immigration Detention)

호주의 이주자 구금 정책은 1992년 최초로 소개되고 1994년 확대 개편된 이후에 현재까지 유지되어오고 있다. 호주정부는 이주자 구금시설이 호주 이주 프로그램 전반의 완결성을 유지하고 많은 공공정책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가. 이주자 구금수단의 종류²¹⁸⁾

호주의 이주자 구금수단은 ‘이주자 구금센터(Immigration detention centres, IDC)’, ‘이주자 주택(Immigration residential housing, RH)’, ‘이주자 단기 숙박시설(Immigration transit accommodation)’, 그리고 ‘지역 구금(Community detention)’으로 구분된다.

1) 이주자 구금센터

이주자 구금센터는 사증이 만료된 상태로 거주하거나 사증 조건에 맞지 않은 활동을 하였거나 호주 입국 시 입국이 거절된 경우의 사람들을 주로 구금하는 곳으로 아래 7개의 센터가 있다.

- Villawood (1976년 설치, 시드니 소재)
- Maribyrnong (1966년 설치, 멜버른 소재)
- Perth (1981년 설치)
- Christmas Island (2001년 설치)
- Cocos (Keeling) Islands (2001년 설치)
- Baxter (2002년 설치, Port Aujusta 소재)
- Northern (2001년 설치, Darwin 소재)

Northern 이주자 구금센터는 어업, 환경 종사자나 기소 예정이거나 퇴거를 기다리는 경우를 구금하고 있다. 최근 호주의 이주자 구금센터들은 Villawood에서 오락, 의료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고 Baxter에서 쾌적함을 높이기 위한 시설 개선을 하는 등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218) ‘호주 이민 Fact Sheet 82. 이주자 구금’, 이민시민권부

2) 이주자 주택

이주자 주택은 도주의 우려가 적고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자들, 특히 아동을 동반한 가족단위의 경우에 대해서 시설보다는 가족적이고 독립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이주자주택 자격 조건에 부합한다면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주자 주택의 장점이라면 거주자들이 음식을 스스로 조리하고 전형적인 가사업무의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반하는 것을 전제로 지역의 식료품점 등 상점이나 다른 가정 혹은 개인적으로 필요한 곳을 방문할 수 있으며, 지역 오락시설이나 지역내 교육 및 개발목적의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주자 주택은 Port augusta, Perth 및 시드니 세 곳에 위치하여 있다.

3) 이주자 단기 숙박시설

이주자 단기 숙박시설은 도주의 우려가 낮은 의료적 문제가 있는 자들의 단기 수용을 위하여 설치될 시설로 멜버른과 브리스본의 경우 2007년에서 2008년에, 아델레이드의 경우 2008년에서 2009년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주자 단기 숙박시설은 호스텔 형태의 숙박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며 중앙 식당과 어느 정도 독립(semi-independent)적인 생활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임에 따라 이주자 구금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보다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가 적다.

4) 지역 구금

지역구금이란 「1958년 이민법」 197AB조항에 의하여 이민부장관이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경우에 대한 이주자 구금의 형태로, 해당 지역 내에서는 동반자나 제약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구금의 경우 아동을 동반한 가족들, 보호자 없는 아동, 혹은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자들 등은 특정하게 제공된 주소지에서 거주하게 되며, 보고를 전제로(reporting conditions)하고 이민부가 업무를 위하여 연락할 경우 응답하여야 한다.

이민시민권부는 지역구금 제도하의 자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NGO와 연계하여 업무를 하고 있으며, NGO들은 이민시민권부의 자금을 받아 이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청구서의 비용을 지불하고 생활비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NGO들은 사안별 담당자를 두고 지역 구금자들이 필요할 경우 의료, 카운셀링, 지역의 지원서비스(care services) 및 사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 이주자 구금 현황

호주는 매년 총 6,000~7,000명가량의 이주자가 구금되어 왔으며 인도네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한국 등의 국가 출신자들이 다수이다. 연도별 전체 구금자 누계는 아래와 같다.

[연도별 구금자 수 및 주요 국적]²¹⁹⁾

| 연 도 | 구금자수(명) | 국 적 |
|-----------|---------|---------------------------------------|
| 1997-1998 | 2,716 | - |
| 1998-1999 | 3,574 | - |
| 1999-2000 | 8,205 | - |
| 2000-2001 | 7,881 |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팔레스타인 |
| 2001-2002 | 7,808 |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
| 2002-2003 | 6,602 | 인도네시아 ²²⁰⁾ , 중국, 말레이시아, 한국 |
| 2003-2004 | 6,196 | 인도네시아(68), 중국, 말레이시아, 한국 |
| 2004-2005 | 7,410 | 인도네시아(68), 중국, 말레이시아, 한국 |
| 2005-2006 | 6,490 | 인도네시아(68), 중국, 말레이시아, 한국 |

219) ‘호주 이민 Fact Sheet 82. 이주자 구금’, 이민시민권부

220) 인도네시아 출신 구금자들은 대부분 단기간동안만 구금된 불법 조업 어부들이다.

2007. 11. 9. 기준으로 보면 총 493명의 이주자들이 호주에서 구금되어 있으며, 이주자구금센터에 398명, 이주자주택에 10명, 지역구금 방식으로 48명, 그 외에 대안적 일시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가 37명이다. 대안적 일시구금이란 지역구금이나 개별 가정에 한명을 지정하여 동반 등 도움을 받는 경우 및 교정시설, 주택 감시, 호텔, 아파트, 위탁보호, 병원 등의 경우를 말한다. 구금수단 및 장소별 구금자의 수는 아래와 같다.

[구금소별 구금자 수]²²¹⁾

(2007. 11. 9.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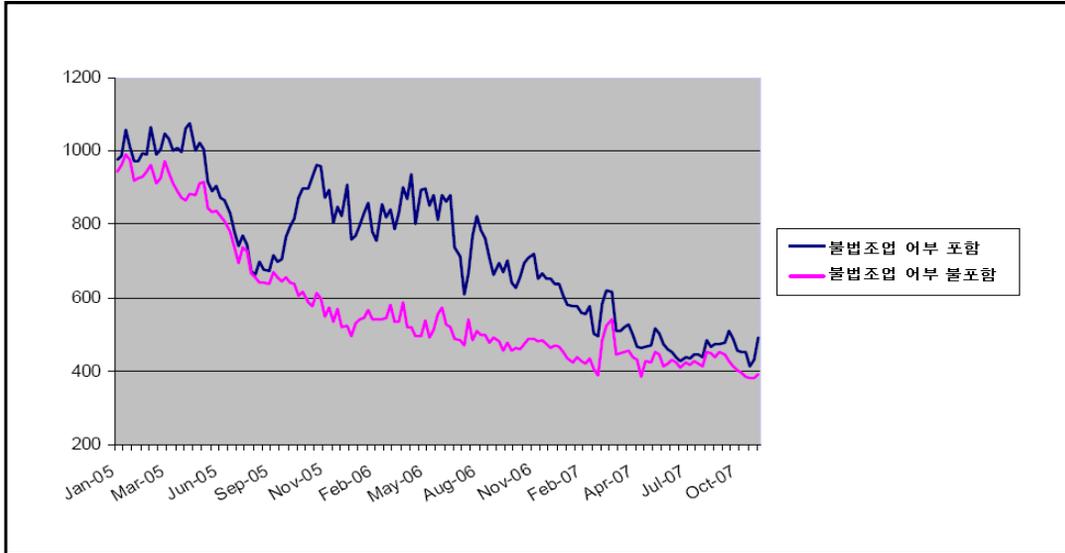
| 구금수단 | 장소 | 남성 | 여성 | 아동 | 전체 |
|----------------|------------------|-----|----|----|-----|
| 이주자구금센터 | Villawood | 221 | 19 | 0 | 240 |
| | Northern | 80 | 0 | 0 | 80 |
| | Maribyrnong | 61 | 7 | 0 | 68 |
| | Perth | 8 | 0 | 0 | 8 |
| | Christmas Island | 2 | 0 | 0 | 2 |
| 이주자주택 | Sydney | 4 | 3 | 0 | 7 |
| | Perth | 2 | 1 | 0 | 3 |
| 지역구금 | | 17 | 10 | 21 | 48 |
| 대안적 · 일시적 지역구금 | | 24 | 4 | 9 | 37 |
| 전 체 | | 419 | 44 | 30 | 493 |

총 493명의 구금자 중 227명은 3개월 미만 기간동안 구금되어있는 경우이다.

2005년 1월부터 2007년 10까지 구금자수 통계를 볼 때, 미등록 이주로 구금된 자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현재 약 400명 선에 있다.

221) ‘이주 통계 요약’, Detention and Offshore Service Division, 이민시민권부

[개월별 총 구금자 현황]²²²⁾



다. 이주자 구금 원칙 및 기준

육상의 이주자 구금 수단(detention arrangements)들은 호주의 이주구금 정책과 일치하는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가지고 있다.²²³⁾

- 이주자 구금은 강제적 ‘행정 구금’이며 무기한 구금이거나 교정 구금이 아니다.
- 구금된 이주자들은 법률 내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처우를 받아야 한다.
- 구금 행정 정책과 관행은 ‘관심어린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기반으로 한다.
- 아동을 동반한 가족의 경우 이주자구금센터 등 시설에 기초한 구금수단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한다.
- 시설 위주의 구금수단에 있는 이주자들은 질 높은 숙소와 의료서비스, 음식 서비스와 기타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아야 한다.
- 구금자들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동안만 구금되어야 하며, 시설 위주의 구금수단의 경우는 특히 그렇다.

222) ‘이주 통계 요약’, Detention and Offshore Service Division, 이민시민국부

223) ‘호주 이민 Fact Sheet 82. 이주자 구금’, 이민시민국부

- 구금자들의 개별적 사안에 대하여 세심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따라서 필요시 이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틀 내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위험 요소 평가를 통하여 운영 관련 의사결정을 보완하도록 한다.
- 구금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향상되어야 하고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호주의 이민시민권부는 영연방 움부즈만실, 호주의 인권기회평등위원회와 협의 하에 이주자 구금기준(immigration detention standards : IDS)을 개발하여 적용하여 왔으며, 각 이주자 구금센터의 이민시민권부 공무원들은 각 구금 서비스 제공자(Detention Services Provider : DSP)들이 이주자 구금기준에 부합하는 업무활동을 하는지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한다.

이주자 구금기준은 가족단위, 아동, 노인 및 특별한 고려가 요구되는 자들을 포함하여 구금된 자들의 세심한 처우를 강조하고 있으며, 구금중인 자들에 대한 관심어린 주의(care)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구금 서비스 제공자들이 성별, 문화, 건강 및 연령 등 구금자들의 개인적 필요를 고려하여 업무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라. 이주자 구금 처우

구금자들이 삶의 동등한 권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각 이주자 구금센터들은 구금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여러 처우를 제공하여야 한다.²²⁴⁾

- 의료서비스 : 간호직원은 현장근무하며 의사, 치과 의사, 심리치료사, 정신과 의사 및 카운셀러는 센터에 따라 현장근무 하거나 지역사회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영어 강의 및 문화, 여가, 스포츠 활동 등 제공
- 종교 : 종교적 예배, 기도 및 교회서비스가 가능한 공간 제공 및 외부 성직자들이 종교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함.
- 전화, 신문 및 TV 시청

224) ‘호주 이민 Fact Sheet 82. 이주자 구금’, 이민시민권부

- 식수, 차, 커피, 우유와 설탕 무제한적 공급

구금자 중 아래의 경우 등을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자들로 보고 이주자 구금 기준에서는 이들에 대한 처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²²⁵⁾

- 노인 (동행 혹은 비동행)
- 아동 (특히, 비동행인 경우)
- 임산부
- 여성 (동행 혹은 비동행)
-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는 구금자
- 심리적, 정신학적 치료가 필요한 구금자
- 자해의 위험이 있는 구금자
- 장기 구금자
- 고문 피해자 혹은 외상성 증상(trauma)이 있는자
- 육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인

1) 의료

구금자들은 심리학과, 정신과 등을 포함한 의료 관리를 필요한 때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건강관리 시 구금자의 문화적 배경이 고려되어야 하며 시설 내부의 조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외부의 자문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구금자들은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자신의 건강상태 및 의료적 문제로 이송될 지의 여부를 포함한 치료방식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²²⁶⁾

2006년 설치된 구금자 의료자문 기구(Detention Health Advisory Group)는 이민 시민권부에 구금 중인 이주자들의 보건의료 특히 정신보건의 향상을 위한 설계, 이행 및 모니터링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기구이다. 이러한 구금자 의료자문 기구는 심리학, 정신과, 공공의료, 치과, 난민 서비스 및 간호 등 분야의 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있다.²²⁷⁾

225) 이주자 구금 기준(Immigration Detention Standards and Performance Measures), 이민시민권부

226) 이주자 구금 기준(Immigration Detention Standards and Performance Measures), 이민시민권부

227) ‘호주 이민 Fact Sheet 82. 이주자 구금’, 이민시민권부

2) 의복 및 침구

구금자들이 자신의 의복이나 신발, 양말 등이 없을 경우 이들의 필요에 맞는 적절한 물품의 지급이 가능하고, 자신의 의복 등이 있을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경우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또한 침구류 및 타월 등도 제공된다. 구금자들은 개인적 의복과 침구류 등을 사용용도에 맞게 스스로 깨끗이 유지할 책임을 지며 이러한 유지를 위한 서비스나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²²⁸⁾

3) 식사

구금자들은 자신의 건강상태나 종교에 따른 적절한 식사를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식수는 항상 제공된다. 유아를 위한 특수식이 제공되며 유아 및 아동을 위한 우유는 언제나 제공된다.²²⁹⁾

4) 교육²³⁰⁾

학령기의 아동들은 그들의 연령과 지적수준 및 영어 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며, 시설 내 혹은 지역사회 내의 교육이 가능하다. 이러한 교육은 호주의 교육과정에 가급적 일치하여야 하고 아동의 개별적 특성과 구금의 임시적 성격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령기 아동에 대한 교육은 아동의 문화적·종교적·언어적 필요를 고려하여야 하고 적절한 종류와 양의 교육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학령기의 아동들은 여러 방과후 및 휴일 프로그램, 그리고 적절한 교육 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미취학 아동에 대한 유아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성인의 경우 영어교육 등 호주의 다문화적 삶의 방식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에의 접근이 가능하다.

228) 이주자 구금 기준(Immigration Detention Standards and Performance Measures), 이민시민권부

229) 이주자 구금 기준(Immigration Detention Standards and Performance Measures), 이민시민권부

230) 이주자 구금 기준(Immigration Detention Standards and Performance Measures), 이민시민권부

5) 외부 감사 및 진정권²³¹⁾

이주자 구금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의회 감사 대상이며 행정적 그리고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주자들이 인간적이고 적절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는지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인권기회평등위원회, 영연방옴부즈만,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및 이주자구금자문기구(IDAG) 등의 기구가 정기 감사를 시행하게 된다.

이주자구금자문기구(Immigration Detention Advisory Group, IDAG)는 호주내 이주 및 인도주의 분야의 선별된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2001년 설치되었으며, 2006년 그 위임사항이 개정되면서 자문과정과 역할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개정으로 이주자구금자문기구는 지역구금 시스템의 적절성(appropriateness) 및 충분성(adequacy)에 대하여 자문을 하고 이주자 구금 프로그램에 대한 전략과 자문 프로세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기여하게 되었다.

이주자구금자문기구는 이주자구금센터의 단허졌던 빗장을 푸는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구금센터 직원들, 구금자들, 그리고 구금자 대표 회의와 대화할 수 있으며, 각 센터의 운영과 환경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게 되는 여러 외부 관계자들과도 연계되어 이들의 생각과 관점들에 대한 의견을 접할 수 있다.

모든 구금자들은 구금기간 중 이주자 구금 센터의 운영 및 처우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특히 영연방옴부즈만은 2006년 중반부터 이주자 구금시설에 정기적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그 역할을 강화하였다.

6) 생활정보 등의 제공

구금자 입소 뒤 5일 이내에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야 한다.²³²⁾

- 시설에서의 생활을 위한 지침

231) ‘호주 이민 Fact Sheet 82. 이주자 구금’, 이민시민권부

232) 이주자 구금 기준(Immigration Detention Standards and Performance Measures), 이민시민권부

- 이용가능한 시설들
- 진정 절차
- 개인 소유물의 취급, 관리 절차
- 이민시민권부 및 서비스제공 직원(Service Provider)의 역할 및 책임

7) 구금시설 운영에의 참여

각 센터에 구금자 대표 위원회(detainee representative committee)가 있어 구금자들이 센터의 운영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문화적으로 적절한 메뉴를 만들거나 의료적 목적으로 특별한 식이요법이 요구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음식물을 조달받는 활동 등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제공된다.

8) 특수 집단 대한 처우

가) 아동

호주에서 이주 아동의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선택될 수 있다. 2005. 7. 이주자구금센터에 구금되어 있던 아동을 동반한 가족들 모두는 지역 구금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민시민권부 장관은 가족 구금에 대하여 구금 4~6주 이내에 지역구금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동행자가 없는 아동의 경우 지역 구금의 한 방식으로 위탁보호를 검토하게 된다.²³³⁾

아동들, 특히 비동행 아동들은 그들의 연령, 가족상황, 성별, 문화적·언어적·종교적 배경, 개인사, 건강상황 등을 고려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안전, 관심어린 주의, 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가족이 있는 경우 부모가 아동의 건강 및 복지에 대한 책임이 있으나 필요한 경우 자녀를 돌보기 위한 육아훈련이 제공되거나 해당 아동에 대한 케어 플랜(care plan) 개발 및 이행 등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다.²³⁴⁾

233) ‘호주 이민 Fact Sheet 82. 이주자 구금’, 이민시민권부

234) 이주자 구금 기준(Immigration Detention Standards and Performance Measures), 이민시민권부

나) 임산부

임산부는 출산 전·후 및 분만 등, 시기에 맞는 적절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며 수유중인 유아를 위한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전문적 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외부 병원에서의 출산이 가능하며, 구금 시설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 장소는 출생증명서에 기록되지 아니한다.²³⁵⁾

다) 자해 위험자

자해한 구금자 혹은 자해를 시도한 자는 가능 한한 빠른 시일 내에 의료적 지원을 하며, 사후에 심리적 혹은 정신적 치료 및 카운셀링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해의 위험 때문에 이동이 제한된 자들에 대해서는 적시에 효과적인 ‘구금자 케어 플랜(Detainee Care Plan)’이 제공되어야 하고,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조건으로 야외에 접근할 수 있으며, 감시 하에 매일 적절한 운동을 제공하도록 한다.²³⁶⁾

235) 이주자 구금 기준(Immigration Detention Standards and Performance Measures), 이민시민권부

236) 이주자 구금 기준(Immigration Detention Standards and Performance Measures), 이민시민권부

IV. 불 입

■ 목 차 ■

- | | |
|-------------------------------------|-----|
| 1. 외국인 보호시설 조사표 | 385 |
| 2.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지 | 396 |
| 3.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를 위한 심층면접지 | 407 |
| 4. 외국인 교정시설 조사표 | 424 |
| 5. 외국인 교정시설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 | 433 |
| 6. 외국인 교정시설 실태조사를 위한 심층면접지 | 442 |

2007년 외국인 보호시설 조사표

보호실/보호소 이름 : _____

조사 일시 : _____

조사자 이름 : _____

전체 보호실 숫자 : 남 : _____ 여 : _____ 독거실(독방) _____

공동 집회 장소 : 유 _____ 무 _____

수용인원 : 총 _____ 명

남자 전체 인원 _____ 명

여자 전체인원 _____ 명

시설에 관한 조사자의 전반적인 의견.

1. 독거실 (독방)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 | 비고 |
|--------------|--|------|------|----|
| | 사동번호 | 거실번호 | 실측면적 | |
| 독거실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독거실 설비 | 1. TV (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1-1 채널종류() 1-2 TV통제 (수용자 <input type="checkbox"/> 직원 <input type="checkbox"/> 2. 선풍기 <input type="checkbox"/> 에어컨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2-1 선풍기/ 에어컨 통제 (수용자 <input type="checkbox"/> 직원 <input type="checkbox"/> 3. 식탁 (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4. 사물함 (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5. 침구보관용선반 (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 | | |
| 감시카메라 (CCTV) | 1. 설치여부 (설치 <input type="checkbox"/> 미설치 <input type="checkbox"/> 2. 개수 () 3. 위치 () | | | |
| 독거실 화장실 | 1. 변기 (수세식 <input type="checkbox"/> 좌변기 <input type="checkbox"/> (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2. 차폐시설 : cm 3. 출입문 (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 | | |
| 독거실세면대 | 일반세면대 <input type="checkbox"/> 간이세면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 | | |
| 조명 | 1. 형광등 ()개 백열등 ()개 2. 작동여부 (작동 <input type="checkbox"/> 미작동 <input type="checkbox"/> | | | |
| 취침등 | 1. 형광등 ()개 백열등 ()개 2. 작동여부 (작동 <input type="checkbox"/> 미작동 <input type="checkbox"/> | | | |
| 창문 | 1.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2. 크기 () | | | |
| 수도시설 | 1.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2. 작동여부 (작동 <input type="checkbox"/> 미작동 <input type="checkbox"/> 3. 온수사용시간 (동절기 : -) (하절기 : -) | | | |

외국인 보호 및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보고서

| | | | |
|-----------------|---|---|--|
| | 2. 차폐시설 : cm 3. 출입문 (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4. 화장실내 환기시설() | | |
| 세면대 | 일반세면대 <input type="checkbox"/> 간이세면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 | |
| 조명 | 1. 형광등 ()개 백열등 ()개 2. 작동여부 (작동 <input type="checkbox"/> 미작동 <input type="checkbox"/> | | |
| 취침등 | 1. 형광등 ()개 백열등 ()개 2. 작동여부 (작동 <input type="checkbox"/> 미작동 <input type="checkbox"/> | | |
| 창문 | 1.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2. 크기 () | | |
| 쇠창살 또는 유리벽 설치유무 | 쇠창살 또는 유리벽 위치(창문 거실 복도) | | |
| 수도시설 | 1.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2. 작동여부 (작동 <input type="checkbox"/> 미작동 <input type="checkbox"/> 3. 온수사용시간 (동절기: -) (하절기: -) | | |
| 환기시설 | 1.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2. 작동여부 (작동 <input type="checkbox"/> 미작동 <input type="checkbox"/> 3. 환풍기 개수와 위치 | | |
| 난방시설 | 1.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2. 난방공급시간 (-) 3. 난방기구 종류(환풍기 리지에터 온돌 기타) | | |
| 냉방시설 | 1.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2. 냉방공급시간 (-) 3. 냉방기 조절(수용자 직원) 4. 냉방기 위치 및 종류 | | |
| 침구 | 관급침구 목록 | 자변 침구 사용가능 | |
| | |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 |
| 청결 상태 | 거실 (상/중/하) | 화장실 (상/중/하) | |
| 청소 담당자 | 청소 용역/ 피보호자/ 관리국직원/ 공익요원 | | |

3. 공통시설

1) 목욕/샤워 시설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비고 |
|--------|---|----|
| 면적 | _____ × _____미터 | |
| 샤워기 | 1. 숫자 () 2. 작동여부 (작동 _____개 미작동 _____개) | |
| 목욕허용횟수 | 1. 여름 (_____에 1회) 2. 겨울 (_____에 1회) | |
| 온수사용시간 | 1. 동절기 (-) 2. 하절기 (-) | |
| 목욕용품 | 1. 관급품 지급 <input type="checkbox"/> 자비 구입 <input type="checkbox"/> _____ 2. 지급목욕용품 목록 수건 <input type="checkbox"/> 샴푸 린스 <input type="checkbox"/> 비누 <input type="checkbox"/> 면도기 <input type="checkbox"/> 칫솔 <input type="checkbox"/> 그외 _____ | |

2) 침구/의복

| | | |
|----|---|-------------|
| 침구 | 1. 관급 침구 목록 메트리스() 모포() 베개 2. 세탁 및 침구 교환시기 3. 청결상태 () 4. 비상호출장치(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4. 기타 () | 사제침구사용 가능여부 |
| 의복 | 1. 관급의복목록 2. 개인 의복 허용목록 3. 세탁 및 의복 교환시기 4. 청결상태 5. 의복 세탁 종류와 세탁 및 건조방법 | |

3) 신체검사실

| | | |
|--------|---|--|
| 탈의용 커튼 |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 |
|--------|---|--|

외국인 보호 및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보고서

| | | |
|-----------------|--|--|
| 창문 |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 투명 <input type="checkbox"/> 불투명 <input type="checkbox"/> | |
| 신체검사 혹은 탈의보조 | 관리국 직원 <input type="checkbox"/> 공익요원 <input type="checkbox"/> 신체검사 없음 <input type="checkbox"/> | |

4) 개인 물품 보관 시설

| | | |
|----------|--|--|
| 명세서 작성 | 한다 <input type="checkbox"/> 안한다 <input type="checkbox"/> | |
| 소유자 서명여부 |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 |
| 물품 보관상태 |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input type="checkbox"/> | |

5) 세탁 시설

| | | |
|---------|--|-------------|
| 세탁기 수 | | |
| 세탁빈도 | 침구 _____일에 한 번 관복 _____일에 한 번 | 세탁 장부 사본 |
| 세탁 책임자 | 관리국 직원 <input type="checkbox"/> 공익 요원 <input type="checkbox"/> 외부 용역 <input type="checkbox"/> 그 외 _____ | |
| 건조기/건조실 |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없을 때 건조방법 : _____) | |

6) 면회실/접견실

| | | |
|------------------|---|--|
| 설치여부 |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없을 때 면회/접견장소 : _____) | |
| 면회실 1회 면회가능 수 | | |
| 칸막이 여부 |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칸막이 형태 : _____) | |
| 전화기 등의 설치 |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 |
| 특별접견실 설치여부 |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 |
| 면회/접견 시간 | | |

7) CCTV

| | | |
|-------------|--|--------|
| 작동시간 | | |
| CCTV 카메라 숫자 | | |
| 녹화테이프 보관기관 | | |
| 녹화여부 | 녹화 <input type="checkbox"/> 비녹화 <input type="checkbox"/> | |
| 감시카메라 조작 요원 | 남 ___명, 여 ___명 | 근무일지사본 |
| 감시카메라 조작 요원 | 관리국 직원 <input type="checkbox"/> 공익 요원 <input type="checkbox"/> | |
| 야간감시카메라 요원 | 남 ___명, 여 ___명 | 근무일지사본 |
| 야간감시카메라 요원 | 관리국 직원 <input type="checkbox"/> 공익 요원 <input type="checkbox"/> | |

8) 계구 보관

| | | |
|-----------|---|----|
| 계구 보관함 |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장소 : _____) | |
| 계구 불출 일지 |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 사본 |
| 계구 사용 일지 |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 사본 |
| 계구 종류 | 수갑 <input type="checkbox"/> ___개 가스 분사기 <input type="checkbox"/> ___개 줄 <input type="checkbox"/> ___개 전자 충격기 <input type="checkbox"/> ___개 몽둥이 <input type="checkbox"/> ___개 그물/그물총 <input type="checkbox"/> ___개 가죽채갈 <input type="checkbox"/> ___개 그 외 _____ | |
| 계구 보관 담당자 | 관리국직원 <input type="checkbox"/> 공익 요원 <input type="checkbox"/> | |

9) 급식

| | | |
|--------------------|----------------------|--------|
| 급식 형태 | 자체 내 조리/ 외부 용역/ 도시락/ | |
| 급식 예산 (일회 식사 당) | _____ 원 | |
| 식단표 | | 사본 확보요 |
| 영양사 유무 | | |

외국인 보호 및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보고서

| | | |
|-------------|--|--|
| 집필용구 지급 | 지급 <input type="checkbox"/> 미지급 <input type="checkbox"/> | |
| 종교생활 시설 |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규모 :) | |
| 예배시간 |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종교별 예배시간 : | |
| 기타 취미/오락 활동 | 여가를 위한 기구 | |

13) 모성보호

| | | |
|----------|---|--|
| 유아보호 시설 |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구체적인 시설 묘사 : | |
| 생리대 조달방법 | 자비 <input type="checkbox"/> 관급 <input type="checkbox"/> (한 달에 지급되는 개수 :) | |

14) 진정함 / 전화

| | | |
|-------------|--|--|
| 진정함 비치 유무 |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위치 :) | |
| 진정대상자 | 출입국관리국장 <input type="checkbox"/> 인권위원회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 |
| 진정방법 안내문 비치 | 비치 <input type="checkbox"/> 미비치 <input type="checkbox"/> (언어 :) | |
| 전화 |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위치 :) 전화기 대수 : 공중 전화기 종류 (일반/ IC / 그 외) 전화기 사용시 허가유무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전화기 사용제한시간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시간 :) | |

4. 소방시설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 비고 |
|-------|------|-----------------|----|
| 화재경보기 | 위치 | 작동여부(소방기관 점검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스프링쿨러 | 위치 (방별설치여부) | 작동여부(소방기관 점검내용) | |
| 환기장치 | | | |
| 소화전, 저수조, 방화문 등 기타 소화설비 | | | |
| 보호실 방바닥·벽의 재질 | 방바닥의 재질 | | |
| | 벽의 재질 | | |
| 당직실 제어장치 상태 | | | |
| 소방용 비상탈출 경로 | 경로별로 이동하며, 출입문 시건 상황과 비상탈출로의 열쇠관리 상황을 점검 | | |
| 출입문 열쇠관리 상황 | | | |
| 방화관리자 | | | 소방관련계획 제출요구 |

2007년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있는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는 한국 내 외국인보호시설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보호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외국인보호 정책을 개선시켜나가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답변은 통계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비밀이 완전하게 보장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 :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전화) 02-2125-9860~4 팩스) 02-2125-9868

응답 요령은 ‘_’에 ✓를, ‘□’ 안에 숫자를, ‘()’안에 글자를 써넣으시면 됩니다. -
응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는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주십시오.

본 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 인종차별팀 전화) 02-2125-9860~4 팩스) 02-2125-9868

- (3) 출입국 관리소 직원을 만났으나 출국에 관한 얘기를 들지는 못했다.
- (4) 출입국 관리소 직원을 만나서 출국 절차 및 출국 시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22-1. 단속 직후 보호실 조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은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 (1) 한국말로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 (2) 통역인의 도움으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다.
- (3) 통역인이 있었으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았다.
- (4) 통역인이 없어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다.

22-2. 통역인의 도움을 받았다면 통역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 (1) 출입국 관리소 직원
- (2)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아닌 한국인
- (3) 외부에서 온 외국인
- (4) 보호소에 내 외국인

C. 권리고지 및 청원 · 진정 관련

23-1. 귀하가 보호시설에 들어 올 때 출입국직원으로부터 귀하의 권리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 (1) 친지나 가족과 면회할 권리
- (2) 변호사나 자국의 영사와 면회하고 도움을 받을 권리
- (3) 구금된 사실에 대해 이의 신청할 권리
- (4) 외국인 보호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법무부에 청원할 권리
- (5) 외부로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할 권리

23-2. 귀하의 권리에 대한 설명을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받았습니까?

- ___ (1) 책자
- ___ (2) 보호소 벽에 붙은 안내 문
- ___ (3) 말로 설명
- ___ (4) 기타

24-1. 보호 또는 강제퇴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___ (1) 예
- ___ (2) 아니오

24-2. 구금된 외국인들은 보호 및 강제퇴거(강제출국)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구금 및 강제출국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의사가 있습니까?

- ___ (1) 예
- ___ (2) 아니오

24-3. 구금 및 강제 출국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의사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 (1) 이의 신청 후 오히려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 ___ (2) 이의 신청하더라도 별로 받아들여 질 것 같지 않아서
- ___ (3) 이의 신청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 ___ (4)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 ___ (5) 이의 신청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D. 보호소 생활, 의료, 보건 실태

25. 귀하가 외국인 보호시설에 들어 올 때 보호시설 안의 생활규칙에 대한 안내문을 보거나 출입국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까?

- ___ (1) 보호시설 생활규칙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이나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
- ___ (2) 보호시설 생활규칙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들었다.
- ___ (3) 보호시설 생활규칙에 관한 설명과 안내를 받았으나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38. 진정이나 청원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이의 신청 후 오히려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 (2) 해 보았자 이의 신청이 별로 받아들여 질 것 같지 않아서
- (3) 이의 신청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 (4)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 (5) 출국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39.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법률문제나 인권침해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자 할 경우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도움 받은 사람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1) 출입국관리국 직원
- (2) 다른 공무원
(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 (3) 보호시설 내 외국인 수용자
- (4) 합법 체류 중인 같은 나라 출신 이주노동자
- (5) 한국 주재 본국 대사관 직원
- (6) 국제기구(UNHCR, IOM 등) 직원
- (7)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관계자
- (8) 변호사
- (9) 종교인 (목사님, 스님 등)
- (10) 기타 ()
- (11) 아무도 없다

40. 귀하가 현재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한 느낌은 어떠합니까?

| | | | |
|-------|--------|----------|----------|
| 만족스럽다 | 지낼 만하다 | 다소 고통스럽다 | 매우 고통스럽다 |
| (1) | (2) | (3) | (4) |

2007년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를 위한 심층면접지

이번 조사에서는 보호소내의 식사, 의복, 침구, 의료에 관한 실태를 심층 인터뷰를 통해 파악하려고 합니다. 아래에 제시된 사항 외에도 인터뷰 대상자에게 보호소 내의 생활 전반에 대해 기타 불편한 점 등을 질문을 하면서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하면 좀더 무거운 주제에 접근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응답자가 보호소내의 생활에 별로 응답하고 싶지 않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생략해도 좋습니다. 인터뷰 대상자의 국적, 나이, 성별 등은 마지막에 기재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A. 개인적 사항

1. 보호 기간은?
(보호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장기 구급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보호소 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은?
3. 보호소의 식사에 대한 의견은?
4. 보호소에서 지급하는 의복과 침구류에 관한 의견은?
5. 보호소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의견은?

(2달 이상 수감 중인 사람들의 경우, 2달에 한번씩 실시해야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건강검진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B. 현재 아프거나 아픈적이 있는 경우

1. 아픈 곳은? 또는 병명은?
2. 수감되기 전에 지금의 질환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3. 보호소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진료를 받았다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투약, X-Ray 등 구체적인 내용)
4. 의사의 진료는 주 몇 회 정도 받았는지?
5. 의사에게 진료를 의뢰한 방법과 의사의 진료 처리 내용은?
6. 보호소 내 진료에 대한 만족도와 호전 여부는?
7. 외부에 진료를 의뢰한 적이 있는지?
8. 외부 진료 경험이 있다면 어떤 병원이며, 처치내용은 무엇이었고, 의사는 뭐

라고 했는지? 진료비 부담은 누가했는지?

9. 외부 진료 횟수와 외부 진료에 대한 만족도는?

10. 출입국 측에서 외부 진료를 거부했다면 그 이유는?

11. 현재 건강 상태는 ?

- | | |
|--------------------------------|-------------------|
| (1) 머리가 아프다 | (2) 잠을 잘 수 없다. |
| (3)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 (4)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
| (5) 호흡에 문제가 있다. | (6) 심장에 통증을 느낀다 |
| (7) 소화가 잘 안된다 | (8) 대소변을 잘 볼 수 없다 |
| (9) 허리, 어깨, 무릎 관절이 아프다 (관절염) | |
| (10) 팔, 다리 등 근육이 심하게 아프다 (근육통) | |
| (11) 기타 불편한 곳 | |

12. 심리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어느 정도 하였는지 ▷ 전혀 없다 ▷ 약간있다 ▷ 꽤 심하다 ▷ 아주 심하다 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된다.
- (2) 기운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다.
- (3)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 (4) 몸이나 마음이 떨린다
- (5) 울기를 잘한다
- (6) 어떤 함정에 빠져 헤어날 수 없는 기분이 든다
- (7) 별 이유 없이 깜짝 놀란다.
- (8) 자책을 잘한다.
- (9) 외롭다.

- (10) 기분이 울적하다.
- (11) 걱정이 많다.
- (12) 매사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 (13) 두려운 느낌이 든다.
- (14) 심장이 뛰다.
- (15) 장래에 희망이 없는 것 같다.
- (16) 공포에 휩싸이는 때가 있다.
- (17) 허무한 느낌이 든다.
- (18) 무슨일이든 조금해서 안절부절 못하다.
- (19) 기타 심리 상태

C. 면회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

현재 보호된 외국인의 면회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면회시간 외에 면회를 요청했는데 거부당한 것인지, 면회 시간 외에 면회를 요청해서 거부된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호 외국인들이 희망하는 면회 시간대는 언제인지 (토요일, 혹은 일요일)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1. 면회를 거부당한 요일이나 시간대는?
2. 출입국직원이 면회 거부 사유에 대해 설명했는지?
3. 직원이 설명한 면회 거부 사유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지?
4. 면회 거부에 대해 항의를 하거나 진정을 한 적이 있는지?

5. 만일 진정을 할 수 있다면 진정할 의사가 있는지?

D. 출입국직원의 실수로 여권 및 소지품을 분실한 경우

1. 분실품목은?
2. 어떻게 분실하게 되었는지, 분실과정과 사유는?
3. 분실에 대한 보상 여부는?
4. 분실에 대한 출입국 직원에게 항의했는지? 출입국 직원의 반응과 태도는?
5. 물품 전달 및 보관 과정에 있어서 본인의 물건 확인 과정이 있었는지?

E. 부당한 구금을 경험한 경우

출입국 보호실의 경우 유학생, 결혼 이민자, E9 비자 소지자들도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함께 단속되어 연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1.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의 종류와 남아있는 체류기간은?
2. 단속으로 인해 붙잡혔는지 누군가의 신고 혹은 경찰에 의해 구금되었는지?
3. 단속되었다면 단속 장소 및 그 사유는?
4. 법적 체류 상태를 밝혔을 때 단속직원의 반응과 태도는?
5. 누군가의 신고 혹은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면 그 사유와 과정은?
6. 단속 또는 연행 당시 출입국 직원 혹은 경찰이 보호의 사유, 장소, 보호 기간 등을 명시한 보호 명령서나 긴급 보호 명령서를 보여주고, 그에 따른 설명을 한 적이 있는지?
7. 연행 후 출입국에서 가족이나 친구, 영사기관 등에게 보호된 사실에 대해서 통지를 하겠다는 안내와 고지를 받았는지? 또는 출입국 직원에게 가족이나 친구에게 보호된 사실을 통지(또는 전화)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지?

8. 안내를 받았다면 출입국 직원이 가족이나 친구에게 보호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를 한 사실이 있는지?

F. 장기 구금의 경험이 있는 경우

1. 장기 구금 사유는?
(금품관련 미해결, 난민, 여권 등 소지품 분실, 항공권, 의료 등)
2. 구금에 대해 이의 신청할 권리를 알고 있는지?
3. 구금에 대한 이의 신청할 권리가 있는데, 현재 장기적으로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고 싶은지?
4. 하고 싶지 않다면 그 이유는?
5. 장기 구금되어 있는 문제(금품관련 미해결, 난민, 여권 등 소지품 분실, 항공료 마련)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G. 금품관련 문제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1. 금품과 관련된 애로 사항은?
2. 돈을 받기 위해서 출입국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3. 도움을 요청했다면 출입국 직원은 금품 해결 절차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했는지? 도움을 주었다면 도움 내용은?
4.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5. 금품 관련 해결을 위해 노동부, 인권 단체, 친구나 기타 한국인 등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관 또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6.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을 받았는지?
7. 금품 문제 해결이 어렵거나 기간이 장기화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해결 될 때까지 구금되어 기다릴 것인지? 포기하고 출국할 것인지?
8. 원하는 해결 방안은?

H. 난민 신청을 한 경우

1. 난민 신청 사유는?
2. 난민을 신청한 기간은?
3. 난민 신청을 요구했을 경우 출입국 직원이 난민 신청에 관한 안내 및 절차 등을 설명해주었는지?
4. 난민 신청을 하였는데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지?
5. 어떠한 방법으로 난민 신청을 했는지?
6. 난민 신청 후 출입국 직원과 난민 심사를 위한 인터뷰를 했는지 횟수와 방법은?
7. 난민 심사 인터뷰 당시 통역을 받았는지?
8. 난민 심사를 위한 조사를 받은 후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을 하였는지?

9. 난민 신청을 위해 도움을 주는 기관 (국제기구, 출입국 직원, 인권단체 등)이 있는지?

10. 난민 신청 후 출입국 직원의 태도는? 혹시 난민 신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것은 없는지?

I. 단속 과정 중 폭언, 폭행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1. 단속된 장소와 시간은?

2. 함께 단속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와 숫자는? (공장 동료, 가족 등)

3. 단속 방법과 과정은? (공장 근무 중에서, 집에서 식사 중, 취침중 등)

4. 단속을 당할 때 저항을 했는지?

5. 폭언이 있었다면 그 내용은? (누가, 누구를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6. 폭행을 당했다면 그 내용은? (누가 어디를 어떻게 몇 차례 정도 때렸는지 구체적으로)

7. 폭언이나 폭행에 대해서 진정을 하거나 출입국 직원에게 항의를 했는지?
8. 보호소에 수감된 이후 신체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상된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거나 부상 부위에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지?
9. 폭언이나 폭행에 대해서 진정을 할 의사가 있는지?
10. 진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11. 폭행을 당했다면 부상의 정도는?
12. 치료를 받았다면 어떤 치료를 누구에게 어떻게 받았는지?
(병원에 갔는지? 약만 받았는지 등)
13. 외부 치료를 받았다면 비용은 누가 부담을 했는지?
14. 폭행을 당한 후 출입국관리직원으로부터 출국하라는 종용을 받은 적이 있는지?

**J. 보호소 내에서 직원 또는 보호 외국인으로부터
폭언,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

1. 폭언, 폭행을 당한 장소와 일시는?
2. 폭언, 폭행을 당한 당시 상황은? (폭언, 폭행의 이유)
3. 폭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누가 얼마나 자주 폭언을 하는지?
4. 폭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누가 어디를 어떻게 몇 차례 때렸는지?)
5. 폭행으로 인한 외상이 있었는지? 외상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누구에게서 어떤 치료를 받았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병원비를 지불했다면 비용은 얼마이고 누가 지불했는지?
6. 폭행 후 항의, 진정 등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7. 항의, 진정을 했다면 이후 변화된 상황들이 있는지?
8. 폭행을 당한 후 출입국관리직원으로부터 출국하라는 종용을 받은 적이 있는지?

K. 진정, 청원, 이의 신청을 한 적이 있는 경우

1. 진정, 청원, 이의 신청의 사유는?
2. 진정, 청원, 이의신청의 권리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3. 어떠한 방법으로 진정을 하였고, 진정의 대상은?
4. 진정 후 출입국직원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더 친절해졌는지, 화를 냈는지 등)
5. 진정을 취하하라는 출입국 관리소 측의 회유나 압박이 있었는지?
6. 출입국 직원이 진정서나 진정기관에서 온 편지를 검열하거나 그 내용을 물어봤는지?
7. 진정 이후 전화 및 기타 행동에 대해 감시를 받았는지?
8. 폭행을 당한 후 출입국관리직원으로부터 출국하라는 종용을 받은 적이 있는지?
9. 진정한 기관의 직원이나 일처리에 대한 만족도는?

10. 진정기관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지 받았다면 그 내용과 만족도는?
11.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진정, 청원, 이의 신청 접수를 거부한 적이 있는지?

L. 독거실에 수용된 적이 있는 경우

1. 왜 독거실에 수용되었다고 생각하는지?
2. 독거실 수용에 대해 출입국 직원의 설명이 있었는지?
3. 이에 대해 동의를 했는지?
4. 독거실 수용 기간은?
5. 독거실에서는 생활은? (식사, 운동, 전화, 면회 등)
6. 독거실 수용 기간 동안 수갑 및 기타 계구 사용했는지?
7. 출입국 직원이 모욕적 말을 하거나 육체적 위협을 가한 적이 있는지?

8. 그로 인해 공포나 두려움을 느꼈는지? 아니면 분노가 컸는지?

9. 그 외기타 불이익을 받은 사항이 있다면?

M. 여성

1. 모두에게 적용되나 여성이기 때문에 보호소에서 특별히 더 불편하다고 생각 되는 일이나 차별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다면?

2. 생리대는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공급받고 있는지?
(특히 출입국보호소의 경우)

3. 보호소안에 남자 직원이 순찰을 하거나 출입하고 있는지?

4.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출입국 직원이나 기타 다른 기관에 항의나 진정 등 어떠한 노력을 해 본 적이 있는지?

N. 임산부 또는 가족을 동반한 경우

<임산부의 경우>

1. 임신 몇 개월인지?
2. 남편도 함께 보호되었는지?
3. 현재의 건강상태는? 보호소에 구금된 후 특별히 몸에 생긴 이상이나 어려운 점은?
4. 단속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밝혔는지? 그 때 출입국 직원의 답변과 반응은?
5. 임신으로 인한 일시보호해제를 요청했는지?

<자녀가 한국에 있는 경우>

1. 귀하의 자녀는 몇 살이며, 현재 누구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학교는 다니는지?
2. 수용된 이후 자녀를 만난 적이 있는지?
3. 향후 계획은? (자녀와 함께 출국, 자녀는 한국에 둔 채 출국 등)

<부부 또는 기타 가족이 함께 수용되어 있는 경우>

1. 함께 보호되어 있는 가족과의 관계는?

2. 함께 보호되어 있는 가족과 면접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횟수와 면접 방법, 시간은?

3. 함께 보호되어 있는 가족과 면접이 가능하지 않다면, 면접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이에 대한 출입국 관리소 직원의 반응은?

| 조사자 이름 | 피조사자 성별 | 피조사자 나이 | 피조사자 국적 |
|--------|---------|---------|---------|
| | | | |

2007년 외국인 교정시설 조사표

교도소 이름 : _____

조사 일시 : _____

조사자 이름 : _____

전체 거실실 숫자 : 남 : _____ 여 : _____ 독거실(독방) _____

공동 집회 장소 : 유 _____ 무 _____

수용외국인 인원 : 총 _____ 명

남자 전체 인원 _____ 명

여자 전체인원 _____ 명

시설에 관한 조사자의 전반적인 의견.

1. 독거실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 | 비고 |
|--------------|--|------|------|----|
| | 사동번호 | 거실번호 | 실측면적 | |
| 독거실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독거실 설비 | 1. TV (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1-1 채널종류()) 1-2 TV통제 (수용자 <input type="checkbox"/> 직원 <input type="checkbox"/> 2. 선풍기 <input type="checkbox"/> 에어컨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2-1 선풍기/ 에어컨 통제 (수용자 <input type="checkbox"/> 직원 <input type="checkbox"/> 3. 식탁 (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4. 사물함 (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5. 침구보관용선반 (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 | | |
| 감시카메라 (CCTV) | 1. 설치여부 (설치 <input type="checkbox"/> 미설치 <input type="checkbox"/> 2. 개수 () 3. 위치 () | | | |
| 독거실 화장실 | 1. 변기 (수세식 <input type="checkbox"/> 좌변기 <input type="checkbox"/> (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2. 차폐시설 : cm 3. 출입문 (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 | | |
| 독거실세면대 | 일반세면대 <input type="checkbox"/> 간이세면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 | | |
| 조명 | 1. 형광등 ()개 백열등 ()개 2. 작동여부 (작동 <input type="checkbox"/> 미작동 <input type="checkbox"/> | | | |
| 취침등 | 1. 형광등 ()개 백열등 ()개 2. 작동여부 (작동 <input type="checkbox"/> 미작동 <input type="checkbox"/> | | | |
| 창문 | 1.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2. 크기 () | | | |
| 수도시설 | 1.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2. 작동여부 (작동 <input type="checkbox"/> 미작동 <input type="checkbox"/> | | | |

외국인 보호 및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보고서

| | | | |
|-------|---|---|--|
| | 3. 온수사용시간 (동절기 : -) (하절기 : -) | | |
| 환기시설 | 1.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2. 작동여부 (작동 <input type="checkbox"/> 미작동 <input type="checkbox"/>) | | |
| 난방시설 | 1.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2. 난방공급시간 (-) | | |
| 냉방시설 | 1.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2. 냉방공급시간 (-) | | |
| 침구 | 관급침구 목록 | 자변 침구 사용가능 | |
| | |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 |
| 청결 상태 | 거실 (상/중/하) | 화장실 (상/중/하) | |

2. 혼거실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 | 비고 |
|--------------|---|------|------|----|
| | 사동번호 | 거실번호 | 실측면적 | |
|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설비 | 1. TV (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1-1 채널종류 () 1-2 TV통제 (수용자 <input type="checkbox"/> 직원 <input type="checkbox"/> 2. 선풍기 <input type="checkbox"/> 에어컨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2-1 선풍기/ 에어컨 통제 (수용자 <input type="checkbox"/> 직원 <input type="checkbox"/> 3. 식탁 (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4. 사물함 (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5. 침구보관용선반 (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 | | |
| 감시카메라 (CCTV) | 1. 설치여부 (설치 <input type="checkbox"/> 미설치 <input type="checkbox"/> 2. 개수 () | | | |

| | | | |
|-------|---|---|--|
| | 3. 위치 () | | |
| 화장실 | 1. 변기 (수세식 <input type="checkbox"/> /좌변기 <input type="checkbox"/> (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2. 차폐시설 : cm 3. 출입문 (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 | |
| 세면대 | 일반세면대 <input type="checkbox"/> 간이세면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 | |
| 조명 | 1. 형광등 ()개 백열등 ()개 2. 작동여부 (작동 <input type="checkbox"/> 미작동 <input type="checkbox"/> | | |
| 취침등 | 1. 형광등 ()개 백열등 ()개 2. 작동여부 (작동 <input type="checkbox"/> 미작동 <input type="checkbox"/> | | |
| 창문 | 1.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2. 크기 () | | |
| 수도시설 | 1.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2. 작동여부 (작동 <input type="checkbox"/> 미작동 <input type="checkbox"/> 3. 온수사용시간 (동절기 : -) (하절기 : -) | | |
| 환기시설 | 1.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2. 작동여부 (작동 <input type="checkbox"/> 미작동 <input type="checkbox"/> | | |
| 난방시설 | 1.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2. 난방공급시간 (-) | | |
| 냉방시설 | 1.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2. 냉방공급시간 (-) | | |
| 침구 | 관급침구 목록 | 자변 침구 사용가능 | |
| | |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 |
| 청결 상태 | 거실 (상/중/하) | 화장실 (상/중/하) | |

3. 공통시설

1) 목욕/샤워 시설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비고 |
|------|------------------|----|
| 면적 | _____ X _____ 미터 | |

외국인 보호 및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보고서

| | | |
|--------|---|--|
| 샤워기 | 1. 숫자 () 2. 작동여부 (작동 _____개 미작동 _____개) | |
| 목욕허용횟수 | 1. 여름 (_____에 1회) 2. 겨울 (_____에 1회) | |
| 온수사용시간 | 1. 동절기 (-) 2. 하절기 (-) | |
| 목욕용품 | 1. 관급품 지급 <input type="checkbox"/> 자비 구입 <input type="checkbox"/> _____ 2. 지급목욕용품 목록 수건 <input type="checkbox"/> 샴푸 린스 <input type="checkbox"/> 비누 <input type="checkbox"/> 면도기 <input type="checkbox"/> 칫솔 <input type="checkbox"/> 그외 _____ | |

2) 장애인/노약자용 시설 설치 여부

| | | |
|---------|---|--|
| 시설설치 여부 | 1. 경사로 (설치 <input type="checkbox"/> 미설치 <input type="checkbox"/> 2. 점자블럭 (설치 <input type="checkbox"/> 미설치 <input type="checkbox"/> 3. 욕실손잡이 (설치 <input type="checkbox"/> 미설치 <input type="checkbox"/> 4. 비상호출장치(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4. 기타 () | |
| 장애인 거실 | 1.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2. 출입문 (문턱: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 폭: cm) 3. 화장실문 (문턱: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 폭: cm) 4. 세면장 문 (문턱: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 폭: cm) | |

3) CCTV

| | | |
|--------------|--|--|
| 작동시간 | | |
| CCTV 카메라 숫자 | | |
| 녹화테이프 보관기관 | | |
| 녹화여부 | 녹화 <input type="checkbox"/> 비녹화 <input type="checkbox"/> | |
| 감시카메라 조작 요원 | | |
| 야간감시카메라 담당요원 | 관리국 직원 <input type="checkbox"/> 공익 요원 <input type="checkbox"/> | |

4) 급식

| | | |
|----------------------------------|---|----------------------|
| 급식 형태 | 자체 내 조리/ 외부 용역/ 도시락/ | |
| 급식 예산 (일회 식사 당) | _____ 원 | |
| 식단표 | | 사본 확보요 |
| 영양사 유무 | | |
| 급식의 양 | | |
| 반찬 가지 수 | | |
| 잡곡비율 | | |
| 특정종교 금기음식 배식시 대체식사 제공여부 | 제공 <input type="checkbox"/> 미제공 <input type="checkbox"/> (제공시 식단 : _____) | 대체식사 확인/식단표 확인 |
| 식수종류 | 수돗물 <input type="checkbox"/> 정수기물 <input type="checkbox"/> 끓인물 <input type="checkbox"/> | |
| 식수위생상태 |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input type="checkbox"/> | |
| 식수공급시설 위치 | 거실내 <input type="checkbox"/> 거실외 <input type="checkbox"/> (위치 : _____) | |
| 물컵 제공 여부 | | |

5) 조리장 위생

| | | |
|-------------------|-------------|--|
| 조리장내 근무 인원 | | |
| 조리사 위생모 착용 | | |
| 조리사 위생복 착용 | | |
| 배식 시 일회용 장갑 사용 | | |
| 식기 세척기 | | |
| 조리장 위생상태 | 상 중 하 | |

8) 모성보호

| | | |
|----------|---|--|
| 유아보호 시설 |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구체적인 시설 묘사 : | |
| 생리대 조달방법 | 자비 <input type="checkbox"/> 관급 <input type="checkbox"/> (한 달에 지급되는 개수 :) | |

9) 진정함/전화

| | | |
|-------------|---|--|
| 진정함 비치 유무 |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위치 :) | |
| 진정대상자 | 교도소직원 <input type="checkbox"/> 인권위원회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 |
| 진정방법 안내문 비치 | 비치 <input type="checkbox"/> 미비치 <input type="checkbox"/> (언어 :) | |

4. 소방시설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 비고 |
|-------------------------|-------------|-----------------|----|
| | 위치 | 작동여부(소방기관 점검내용) | |
| 화재경보기 | | | |
| | | | |
| | | | |
| | | | |
| 스프링쿨러 | 위치 (방별설치여부) | 작동여부(소방기관 점검내용) | |
| | | | |
| 환기장치 | | | |
| 소화전, 저수조, 방화문 등 기타 소화설비 | | | |
| 보호실 방바닥 | 방바닥의 재질 | | |

외국인 보호 및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보고서

| | | |
|----------------|---|--------------------|
| 벽의 재질 | 벽의 재질 | |
| 당직실 제어장치 상태 | | |
| 소방용 비상탈출 경로 | 경로별로 이동하며, 출입문 시건 상황과 비상탈출로의 열쇠관리 상황을 점검 | |
| 출입문 열쇠관리 상황 | | |
| 방화관리자 | | 소방관련 계획 제출요구 |

2007년 외국인 교정시설 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있는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는 외국인구금시설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수형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정책을 개선시켜나가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답변은 통계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비밀이 완전하게 보장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 :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전화) 02-2125-9860~4 팩스) 02-2125-9868

응답 요령은 ‘_’에 ✓를, ‘□’ 안에 숫자를, ‘()’안에 글자를 써넣으시면 됩니다. -
응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는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주십시오.

본 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 인종차별팀 전화) 02-2125-9860~4 팩스) 02-2125-9868

A. 개인적 사항

1. 귀하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1) 방글라데시 | <input type="checkbox"/> (2) 중국 |
| <input type="checkbox"/> (3) 인도 | <input type="checkbox"/> (4) 인도네시아 |
| <input type="checkbox"/> (5) 이란 | <input type="checkbox"/> (6) 가나 |
| <input type="checkbox"/> (7) 일본 | <input type="checkbox"/> (8) 카자흐스탄 |
| <input type="checkbox"/> (9) 키르기스탄 | <input type="checkbox"/> (10) 몽골 |
| <input type="checkbox"/> (11) 미얀마 | <input type="checkbox"/> (12) 네팔 |
| <input type="checkbox"/> (13) 나이지리아 | <input type="checkbox"/> (14) 파키스탄 |
| <input type="checkbox"/> (15) 필리핀 | <input type="checkbox"/> (16) 러시아 |
| <input type="checkbox"/> (17) 스리랑카 | <input type="checkbox"/> (18) 태국 |
| <input type="checkbox"/> (19) 우즈베키스탄 | <input type="checkbox"/> (20) 베트남 |
| <input type="checkbox"/> (21) 기타() | |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1) 남성 | <input type="checkbox"/> (2) 여성 |
|---------------------------------|---------------------------------|

3. 귀하는 몇 살입니까?

4. 귀하가 입국 이후 현재까지 한국에 체류한 총 기간은 얼마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1) 1년 미만 | <input type="checkbox"/> (2) 1년 - 2년 |
| <input type="checkbox"/> (3) 2년 - 3년 | <input type="checkbox"/> (4) 3년 - 4년 |
| <input type="checkbox"/> (5) 4년 - 5년 | <input type="checkbox"/> (6) 5년 - 6년 |
| <input type="checkbox"/> (7) 6년 - 7년 | <input type="checkbox"/> (8) 7년 - 8년 |
| <input type="checkbox"/> (9) 8년 - 9년 | <input type="checkbox"/> (10) 9 - 10년 |
| <input type="checkbox"/> (11) 10년 이상 | |

B. 통역문제

10. 심문과정에서 의사소통은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 (1) 한국말로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 (2) 통역인의 도움으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다.
- (3) 통역인이 있었으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았다.
- (4) 통역인이 없어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다.

11. 재판과정에서 의사소통은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 (1) 한국말로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 (2) 통역인의 도움으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다.
- (3) 통역인이 있었으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았다.
- (4) 통역인이 없어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다.

12. 현재 교도소에서 교도관들과 의사소통은 얼마나 잘 되고 있습니까?

- (1) 한국말로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다.
- (2) 통역인의 도움으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
- (3) 통역인이 있으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다.
- (4) 통역인이 없어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다.

C. 수용생활 안내 관련

13-1. 귀하가 현재의 시설에 들어 올 때 교도관으로부터 수용생활에 대한 안내를 이해 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 ___ (1) 있다(13-2에 답변해주십시오)
 ___ (2) 없다
 ___ (3) 설명을 했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
 ___ (4) 모르겠다

13-2. 귀하가 교도관으로부터 수용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 ___ (1) 형기 및 종료일
 ___ (2) 접견 및 서신에 관한 사항
 ___ (3) 규율 · 징벌에 관한 사항
 ___ (4) 청원에 관한 사항
 ___ (5) 인권위원회 진정에 관한 사항
 ___ (6) 기타

14. 수용생활에 대한 설명을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받았습니까?

- ___ (1) 책자
 ___ (2) 교도소 벽에 붙은 안내문
 ___ (3) 말로 설명
 ___ (4) 기타

D. 청원 및 인권위 진정 관련

15. 교도소 안에서 교도관이나 한국인 관리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 ___ (1) 그런 적 없다
 ___ (2) 구타 · 폭행
 ___ (3) 욕설, 모욕적인 말
 ___ (4) 소지품 · 돈 등을 빼앗김
 ___ (5) 성폭력, 성희롱

___ (6) 독거실에 수용하겠다. 집에 보내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을 당함.

___ (7) 기타

16. 교도소내에서 생활이 어려운 점이나 인권침해에 대해 법무부에 청원을 한 적이 있습니까?

___ (1) 예

___ (2) 아니오

17. 교도소내에서 생활이 어려운 점이나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한 적이 있습니까?

___ (1) 예

___ (2) 아니오

18. 진정이나 청원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 (1) 진정 후 오히려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___ (2) 해 보았자 진정이 별로 받아들여 질 것 같지 않아서

___ (3) 진정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___ (4)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___ (5) 기타

19. 교도소에서 법률문제나 인권침해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자 할 경우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도움 받은 사람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___ (1) 교도소 직원

___ (2) 다른 공무원(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___ (3) 교도소 내 외국인 수용자

___ (4) 교도소 밖 친구, 아는 사람

___ (5) 한국 주재 본국 대사관 직원

___ (6) 국제기구 직원

___ (7) NGO

___ (8) 변호사

___ (9) 종교인 (목사님, 스님 등)

___ (10) 기타 ()

___ (11) 아무도 없다

23-2. 교도소 내 진료 외에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겠다는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 (1) 외부 진료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했다.(23-3번으로 가시오)
- (2) 외부 진료 요청을 하여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 (3) 요청한 사실이 없다.

23-3. 외부 진료 요청을 거부당했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1) 돈이 없다고 하자 출입국 직원이 외부 진료를 거부 하였다.
- (2) 함께 갈 직원이 부족하다면서 외부진료를 거부하였다.
- (3) 피병이라며 거부 하였다.
- (4) 특별한 이유를 말하지 않고, 외부 진료를 거부 하였다.

24-1. 교도소의 식단은 어떠합니까?

- (1) 만족스럽다
- (2) 그저 그렇다
- (3) 만족스럽지 않다
- (4) 기타

24-2. 교도소의 식단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
- (2) 맛이 없어서
- (3) 양이 적어서
- (4) 음식물의 재료가 신선하지 않아서
- (5) 음식물의 상태가 깨끗하지 않아서
- (6) 기타

25. 귀하의 수용형태는 어떠합니까?

- (1) 혼자 지낸다.
- (2) 2명이 지낸다.
- (3) 3~5명이 함께 지낸다

___ (4) 5명이상 함께 지낸다

___ (5) 기타

26. 귀하가 현재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에 대한 느낌은 어떠합니까?

| | | | |
|-------|--------|----------|----------|
| 만족스럽다 | 지낼 만하다 | 다소 고통스럽다 | 매우 고통스럽다 |
| (1) | (2) | (3) | (4) |

2007년 외국인 교정시설 실태조사를 위한 심층면접지

A. 개인적 사항

1. 현재 구금되어 있는 총 기간은?
2. 교도소 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은?
3. 교도소의 식사에 대한 의견은?
4. 교도소에서 지급하는 의복과 침구류에 관한 의견은 ?
5. 교도소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의견은 ?
(2달 이상 수감 중인 사람들의 경우, 2달에 한번씩 실시해야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건강검진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6. 교도소의 거실상황에 대한 의견은 ?
7. 가족이 귀하의 구금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B. 현재 아프거나 아픈적이 있는 경우

1. 아픈 곳은? 또는 병명은?
2. 수감되기 전에 지금의 질환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3. 교도소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진료를 받았다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투약, X-Ray 등 구체적인 내용)
4. 의사의 진료는 주 몇 회 정도 받았는지?
5. 의사에게 진료를 의뢰한 방법과 의사의 진료 처리 내용은?
6. 교도소 내 진료에 대한 만족도와 호전 여부는?
7. 외부에 진료를 의뢰한 적이 있는지?
8. 외부 진료 경험이 있다면 어떤 병원이며, 처치내용은 무엇이었고, 의사는 뭐라고 했는지? 진료비 부담은 누가했는지?

9. 외부 진료 횟수와 외부 진료에 대한 만족도는?
10. 교도소 측에서 외부 진료를 거부했다면 그 이유는?
11. 현재 건강 상태는?

C. 면회 관련

1. 교도소에 들어온 후 면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2. 어느 정도 자주 면회를 합니까?
3. 고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 혹은 친구들과 편지나 전화 왕래가 있습니까?

D. 금품관련 문제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1. 금품과 관련된 애로 사항은?

2. 돈을 받기 위해서 교도관이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했는지?
3. 도움을 요청했다면 교도관 등은 금품 해결 절차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했는지? 도움을 주었다면 도움 내용과 결과는?
4.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E. 난민 신청을 한 경우

1. 난민 신청 사유는?
2. 난민을 신청한 기간은?
3. 난민 신청을 요구했을 경우 교도관이 난민 신청에 관한 안내 및 절차 등을 설명해주었는지?
4. 난민 신청을 하였는데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지?
5. 어떠한 방법으로 난민 신청을 했는지?

6. 난민 신청 후 출입국 직원과 난민 심사를 위한 인터뷰를 했는지 횟수와 방법은?
7. 난민 심사 인터뷰 당시 통역을 받았는지?
8. 난민 심사를 위한 조사를 받은 후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을 하였는지?
9. 난민 신청을 위해 도움을 주는 기관 (국제기구, 출입국 직원, 인권단체 등)이 있는지?
10. 난민 신청 후 교도관의 태도는? 혹시 난민 신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것은 없는지?

F. 교도소 내에서 직원 또는 다른 수용인으로부터 폭언,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

1. 폭언, 폭행을 당한 장소와 일시는?
2. 폭언, 폭행을 당한 당시 상황은? (폭언, 폭행의 이유)
3. 폭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누가 얼마나 자주 폭언을 하는지?

4. 폭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누가 어디를 어떻게 몇 차례 때렸는지?)
5. 폭행으로 인한 외상이 있었는지? 외상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누구에게서 어떤 치료를 받았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병원비를 지불했다면 비용은 얼마이고 누가 지불했는지?
6. 폭행 후 항의, 진정 등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7. 항의, 진정을 했다면 이후 변화된 상황들이 있는지?

G. 진정, 청원, 이의 신청을 한 적이 있는 경우

1. 진정, 청원, 이의 신청의 사유는?
2. 진정, 청원, 이의신청의 권리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3. 어떠한 방법으로 진정을 하였고, 진정의 대상은?
4. 진정 후 교도관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더 친절해졌는지, 화를 냈는지 등)

5. 진정을 취하하라는 교도관의 회유나 압박이 있었는지?
6. 교도관이 진정서나 진정기관에서 온 편지를 검열하거나 그 내용을 물어봤는지?
7. 진정 이후 전화 및 기타 행동에 대해 감시를 받았는지?
8. 진정한 기관의 직원이나 일처리에 대한 만족도는?
9. 진정기관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지 받았다면 그 내용과 만족도는?
10. 교도관이 진정, 청원, 이의 신청 접수를 거부한 적이 있는지?

H. 독거실에 수용된 적이 있는 경우

1. 왜 독거실에 수용되었다고 생각하는지?
2. 독거실 수용에 대해 출입국 직원의 설명이 있었는지?
3. 이에 대해 동의를 했는지?

4. 독거실 수용 기간은?
5. 독거실에서는 생활은? (식사, 운동, 전화, 면회 등)
6. 독거실 수용 기간 동안 수갑 및 기타 계구 사용했는지?
7. 교도관이 모욕적 말을 하거나 육체적 위협을 가한 적이 있는지?
8. 그로 인해 공포나 두려움을 느꼈는지? 아니면 분노가 컸는지?
9. 그 외기타 불이익을 받은 사항이 있다면?

I. 여성

1. 모두에게 적용되나 여성이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특별히 더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일이나 차별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다면?
2. 교도소안에 남자 직원이 순찰을 하거나 출입하고 있는지?

3.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4.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출입국 직원이나 기타 다른 기관에 항의나 진정 등 어떠한 노력을 해 본 적이 있는지?

J. 임산부 또는 가족을 동반한 경우

<임산부의 경우>

1. 임신 몇 개월인지?
2. 남편은 어디 있는지?
3. 현재의 건강상태는?
4. 배방, 식사, 운동, 목욕에 대한 배려를 받고 있는지?
5. 보조의약품을 지급받고 있는지?
6. 의사의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지?

<자녀를 대동하고 있는 경우>

1. 특별거실이 있는지?

2. 특별거실의 상태는 어떠한지?

3. 유아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잘 공급받고 있는지?

4. 한국에 향후 자녀를 돌보아줄 사람은 있는지?

| 조사자 이름 | 피조사자 성별 | 피조사자 나이 | 피조사자 국적 |
|--------|---------|---------|---------|
| | | | |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보호 및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보고서

|인쇄일| 2008년 3월 3일

|발행일| 2008년 3월 3일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인쇄일|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http://www.humanrights.go.kr>

|전 화| 02)2125 - 9860

|F A X| 02)2125 - 9868

|인쇄소|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리드릭) 02)2269 - 1919(代)

ISBN : 978-89-6114-043-0 93330 (비매품)